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산업기술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정책관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산업정책관 ····· 1

<일반회계>

(1)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 ····· 4
(2) 공학교육혁신지원 ····· 13
(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20
(4)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 36
(5)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 53
(6)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 67
(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사업 ····· 71
(8)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R&D) ····· 77
(9)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89
(10)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사업 ····· 96
(11)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108
(12)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116

<에특회계>

(13)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 121
(14)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 132
(15)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 146

2. 지역경제정책관 ····· 153

Ⅰ. 세 입 ····· 155

(1) 기타재산수입(지특회계) ····· 158
(2) 기타경상이전수입(지특회계) ····· 160

Ⅱ. 세 출 ····· 163

<일반회계>

(1) 산업단지환경조성 ····· 166
(2) 종합비즈니스센터 ····· 171
(3)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 180
(4) 지역발전위원회 지원사업 ····· 189
(5)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 194
(6)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 ····· 200

<지특회계>

(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사업 ····· 205
(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215
(9)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223
(10)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234
(11) 지역투자촉진 ····· 244
(12) 개성공단입주기업투자촉진한시지원 ····· 252
(13) 지역투자촉진(세종) ····· 257
(14)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261
(15)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271
(16) 지역특성화산업육성 ····· 280
(17)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 291
(18)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 295
(19) 지역산업육성지원 ····· 299
(20)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 306
(21)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 ····· 311

3. 산업기술정책관 ····· 317

<일반회계>

(1)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 320
(2)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329

(3)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347
(4)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376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388
(6)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 394
(7) 산업기술국제협력(R&D) ····· 401
(8) R&D관리기관지원 ····· 410
(9)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 423
(10) 국가전략프로젝트 ····· 435
(11)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사업 ····· 441
(12)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 448
(13)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사업 ····· 455
(14)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사업 ····· 466

<에특회계>

(15)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 477
(16)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487
(17)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 ····· 492
(18)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특) ····· 500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	672	672	638	△34	△5.1
○공학교육혁신지원	16,200	16,109	15,100	△1,009	△6.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50,209	52,361	67,520	15,159	29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사업	1,479	1,479	1,631	152	10.3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1,169	1,412	1,369	△43	△3.0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895.8	851	595	△256	△3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3,950	4,099	4,108	9	0.2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R&D)	5,976	5,767	5,178	△589	△10.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000	12,450	43,795	31,345	251.8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1,895	1,572	1,187	△385	△24.5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25,062	25,062	19,740	△5,322	△21.2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00	9,945	7,928	△2,017	△20.2
소계	**120,507.8**	**131,779**	**168,789**	**37,010**	**2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2,933	2,640	2,376	△264	△10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21,156	17,280	12,066	△5,214	△30.2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	-	1,868	1,868	순증
소계	**24,089**	**19,920**	**16,310**	**△3,610**	**△18**
총계	**144,596.8**	**151,699**	**185,099**	**33,400**	**22**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	672	672	638	△34	△5.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100 - 3133 - 301

* 담당자 : 산업정책국장(원동진), 산업정책과장(황수성, 044-203-4210), 주무관(배명균, 044-203-420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정액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산업연구원

2. 사업목적

○ 미시적 산업통계의 통합검색·분석이 가능한 웹기반 시스템(ISTANS)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산업정책 수립 및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ISTANS : 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 인터넷 사이트 주소 : www.istans.or.kr

○ 웹 기반의 산업통계분석시스템 및 포털 기능을 향상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분석 관련 보고서 정기 발간 및 산업통계 활용도 제고

○ 궁극적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미시적 모니터링, 정책현안과제 발굴 및 시의성 있는 통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통계의 다양한 활용 및 저변확대 도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135백만원

○ 기업 재무구조와 혁신역량 관련 신규 통계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30백만원

○ ISTANS 산업분석 콘텐츠 및 DB 리뉴얼 기획 및 개발 : 45백만원

○ 산업통계를 활용한 산업동향분석 정보 제공 : 60백만원

② 산업통계 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 및 강화 : 375백만원

○ 기존 ISTANS 주요 산업통계 DB 확충 및 업데이트 관리 : 100백만원
- 60대산업의 주제별·산업별 통계, 거시경제통계, 국제통계, 기업통계 등

○ ISTANS 산업통계코드(40대 제조업, 20대 서비스업) 확장 및 관리 : 110백만원
- ISTANS 자체코드 소분류기준 26,000개 관리

○ ISTANS 포털 개선, 시스템 유지 위한 SW, 서버 등 관련 장비 구입 : 165백만원
- 중소기업 부문 신규 통계 콘텐츠 DB 및 시스템 구축 : 30백만원
- 2차년도 시스템 개선사업 지속 : 시스템 고도화 관련 장비 구입 = 125백만원
- ISTANS 홈페이지 유지보수 = 10백만원

③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 80백만원

○ ISTANS 활용 산업통계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30백만원
- 주요산업 동향지표 발간 (연 2회) 등
- 산업통상자원 통계집 발간 (연 4회) 등

○ ISTANS 홍보활동(논문경진대회, 사용자교육 등) : 14백만원

○ 실물산업경제 포럼 및 미시산업통계 협의회 운영 : 36백만원
- 실물산업경제 포럼(가칭) 운영 :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미시산업통계협의회(가칭) 운영 : 4회 × 5백만원 = 20백만원

④ 미시산업통계 설문조사(ISDB) 실시 및 시스템 확충 : 48백만원

○ 기업경기실사지수, 산업구조변화 등 정기 설문조사 실시 : 48백만원
- 업종별,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분기별) = 33백만원
- 산업구조통계조사(연2회) = 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융합화, FTA확산 등에 따른 세계시장 구조 및 산업성장 목표 변화, 창조산업 육성 등 정책적 산업통계수요 확대 등으로 신속한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는 산업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이 반드시 필요

- 국내외 통계생성 기관별로 상이한 산업통계(68개 출처, 105개 통계코드)를 일관된 산업분류 기준과 범위로 연계하여 산업간·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산업통계 포털은 본 ISTANS가 유일

○ 다양한 정책수요를 지원하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현안 발굴과 산업구조 분석 등을 위해 산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 마련이 긴요

- 또한 이를 위해 산업통계 및 분석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수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17안 (B)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 (순증액, +a)			%
□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구축	**672**	**672**	**-**	**638**	**△34**	**△5.1**
▪ 산업통계 콘텐츠 개발/확대	150	150	-	135	△15	△10.0
▪ 산업통계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강화	390	390	-	375	△15	△3.8
▪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84	84	-	80	△4	△4.8
▪ 미시산업통계 설문조사(ISDB) 및 시스템 활용	48	48	-	48	-	-
□ 비목(합계)	672	672	-	638	△34	△5.1
○ 민간경상보조 (320-11)	672	672	-	638	△34	△5.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융합화, 스마트화 등 산업 트렌드 및 경쟁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수립의 적시성 제고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시적 산업통계의 통합검색·분석이 가능한 웹기반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을 구축·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6.72	▪ ISTANS 콘텐츠 개발/확대(1.50) ▪ 산업통계 포탈·분석시스템 확충(3.90) ▪ 산업통계시스템 이용확산·활성화(0.84) ▪ 미시산업통계 설문(ISDB) 시스템(0.48)
'17	6.72	▪ ISTANS 콘텐츠 개발/확대(1.50) ▪ 산업통계 포탈·분석시스템 확충(3.90) ▪ 산업통계시스템 이용확산·활성화(0.84) ▪ 미시산업통계 설문(ISDB) 시스템(0.48)
'18	6.07	▪ ISTANS 콘텐츠 개발/확대(1.50) ▪ 산업통계 포탈·분석시스템 확충(3.25) ▪ 산업통계시스템 이용확산·활성화(0.84) ▪ 미시산업통계 설문(ISDB) 시스템(0.48)
'19	4.43	▪ ISTANS 콘텐츠 개발/확대(1.11) ▪ 산업통계 포탈·분석시스템 확충(2.00) ▪ 산업통계시스템 이용확산·활성화(0.84) ▪ 미시산업통계 설문(ISDB) 시스템(0.48)
'20	4.03	▪ ISTANS 콘텐츠 개발/확대(0.71) ▪ 산업통계 포탈·분석시스템 확충(2.00) ▪ 산업통계시스템 이용확산·활성화(0.84) ▪ 미시산업통계 설문(ISDB) 시스템(0.4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3조 제9호

*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 산업발전법 제14조

*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 추진경위

- 2002. 12. (구)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동향 및 산업혁신과정에 대한 기초통계와 정보부족이 지적되면서 주력기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제기

- 2003. 6. 주력기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국제비교 가능한 DB 마련 차원에서 본 사업의 추진검토

- 2004. 4.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장기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04. 8. 18. 대통령은 “부처별로 정책결정에 꼭 필요한 효과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확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정부혁신 워크숍)

- 2005. 5. ISTANS D/W, ISTANS 포털 서비스 개시

- 2005. 10.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2013. 2.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3.0,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경제적 안정판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중 사례(evidence) 기반의 정책기획과 구상 필요성이 증대

- 2013. 8.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에 따른 통상·에너지분야의 전문적 분석, 실물경제에 대한 분석요구가 확대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기초통계기반 구축, 장기적·안정적 통계수집 및 분석기반 확충 필요성 증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구축	4	6	6.72	6.72	6.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 **(4)**	- (-)	- (-)	4 (4)	**4** **(4)**	- (-)	- (-)
'14년	**6** **(6)**	- (-)	- (-)	6 (6)	**6** **(6)**	- (-)	- (-)
'15년	**6.72** **(6.72)**	- (-)	- (-)	6.72 (6.72)	**6.72** **(6.7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13.6월 평가결과 보통(78.8점)
- (지적사항) 사업추진실태 점검·문제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일부 미흡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추진실태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자체 기획회의와 점검회의를 확대 추진중
-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평가위원(5명)을 선정, 동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매년 6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13년부터 평가위원 8명으로 확대)
  * 평가대상 : ISTANS 포털, 사업최종보고서, ISTANS매뉴얼, 주요산업동향지표
  * 평가결과 : '12년 92.6(100점 만점), '13년 92.6(100점 만점), '14년 94.4(100점 만점)

- 2015년 5월 국회 결산에서 ISTANS 성과지표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라는 요청에 따라 2015년 12월 정기 사용자만족조사부터 외부기관에 의뢰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산업통계의 신속한 공표 및 통계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통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경제분석청(BEA)에서는 산업활동 분석에 필요한 상호연관성이 높은 각종 통계를 추정·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양질의 산업통계를 신속하게 제공

- 산업별 GDP, 투입산출표, 업종별 무역통계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물 경제의 미시적 분석과 정책과제 개발이 용이하도록 운용

○ **(캐나다)** 상무부(Industry Canada)에서 온라인상 산업·기술정책 종합 웹 포탈(strategis.gc.ca) 구축

- 산업·기술 관련 통계와 분석결과를 상시적으로 제공

○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 및 무역 관련 통계를 온라인상 구축(www.meti.go.jp),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및 경쟁국과 상호 비교 가능한 통계 등 제공

- 경제산업정책국 內 조사통계부(3과 4실)에서 수행 중

- 통계발표시 업종별 단체 등의 자문 의견 수렴, 분기별로 “산업활동분석”을 발간하여 광공업, 3차(서비스)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 투자, 수출입 동향 통계 제공

○ **(대만)** 행정원 主計處(산업수급, 설비투자관련 기본통계 제공)와 별도로 경제부내 통계처에서 수급, 자동화, R&D 등 통계기반을 구축

- 대만정부는 대만경제연구원(TIER) 등과 공동으로 산업혁신 관련 통계구축·지표 개발을 추진 중

(5) 사업추진절차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행전략을 기본으로 함

-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 산업통계 생산 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및 연계의 어려움을 극복
- 사업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비교·검토하여 적용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기능별·업종별 전문가 회의체)

○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은 미시적 산업통계의 통합검색과 조회, 산업통계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산업통계 분석 관련 종합정보의 웹 환경 제공이라는 단계를 거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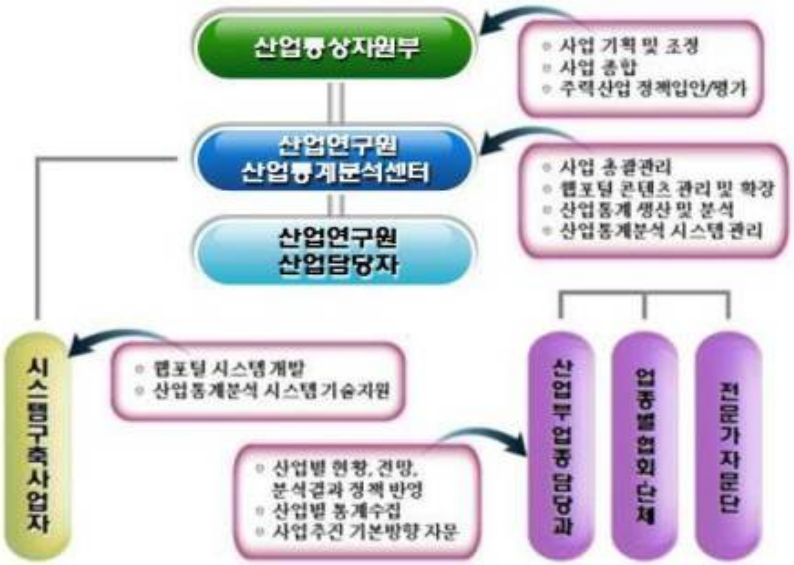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계속사업이며, 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공학교육혁신지원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공학교육혁신지원	16,200	16,109	15,100	△1,009	△6.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61 - 303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산업인력과장(박영삼, 044-203-4430), 사무관(원미연, 044-203-422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21 (3+3+4,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공학교육혁신센터 62개,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6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9개,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1개,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1개,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1개 등 80개 센터 지원
지원조건	지원형태 : 출연금 (비율 100% 이내) 지원조건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민간현금 대응투자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 및 전문대학 등

2. 사업목적

○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창의·융합형 청년공학인재 양성

○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과대학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산업계 수요 기반 창의·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공학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거점센터 중심의 융합 신기술·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공학교육혁신 성과의 발굴·확산 등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공학교육혁신지원 : 15,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센터 : 59개 센터 x 200백만원 = 11,8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6개 센터 x 250백만원 = 1,5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9개 센터 x 100백만원 = 9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1개 센터 x 100백만원 = 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1개 센터 x 200백만원 = 200백만원
- 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 6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신기술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며,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측면의 교육혁신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세계순위는 55위로 전년대비 17단계 하락한 상황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IMD, '16)>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경쟁력	22위	22위	26위	25위	29위
대학교육경쟁력	42위	41위	53위	38위	55위

○ 그간 공과대학의 성장지원과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계 등 공학교육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요구** 증가

*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 이공계 인재가뭄의 원인으로 '대학교육(48.4%)', '빠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53.2%)'이 문제라는 응답 (조선일보, '16.10)

○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제고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실무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우수 공학인재 양성기반 구축** 필요

- 신기술·신산업분야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산업체 수요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필요

- 공학교육혁신센터 등 80여개 센터 지원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 우수성과 발굴, 대내외 홍보,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확산**이 중요

* 매년 11月 공학교육페스티벌(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포함) 개최를 통한 성과시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공학교육혁신지원**	**16,200**	**16,109**	**15,100**	**△1,009**	**△6.3**
▪ 공학교육혁신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16,200	**16,109** (62개×200백만) (6개×250백만) (9개×100백만) (1개×100백만) (1개×200백만) (1개×300백만) (709백만)	**15,100** (59개×200백만) (6개×250백만) (9개×100백만) (1개×100백만) (1개×200백만) - (600백만)	**△1,009**	**△6.3**
□ **비목**(합계)	**16,200**	**16,109**	**15,100**	**△1,009**	**△6.3**
○출연금(350-01)	16,200	16,109	15,100	**△1,009**	**△6.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학교육혁신센터 등 전국 공과대학 센터를 통해 각 대학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성화 전략 및 공학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

○ 공학교육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해외 우수 공학교육방법론 연구 및 성과확산, 산업체 연계 및 참여프로그램 확대, 산학교류 활성화 등의 세부 프로그램 진행

○ 공학교육페스티벌 등 공학교육혁신 성과를 시현하고 공학에 대한 대외인식 제고 및 공학교육혁신 체계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61.09	▪ 공학교육혁신센터 : 62개 x 200백만 = 12,4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6개 x 250백만 = 1,5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9개 x 100백만 = 9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1개 x 100백만 = 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1개 x 200백만 = 2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 1개 x 300백만 = 300백만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 709백만원
‘17	151	▪ 공학교육혁신센터 : 59개 x 200백만 = 11,8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6개 x 250백만 = 1,5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9개 x 100백만 = 9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1개 x 100백만 = 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1개 x 200백만 = 200백만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 600백만원
‘18	161.09	▪ 공학교육혁신센터 : 62개 x 200백만 = 12,4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6개 x 250백만 = 1,5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9개 x 100백만 = 9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1개 x 100백만 = 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1개 x 200백만 = 2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 1개 x 300백만 = 300백만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 709백만원
‘19	161.09	▪ 공학교육혁신센터 : 62개 x 200백만 = 12,4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6개 x 250백만 = 1,5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9개 x 100백만 = 9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1개 x 100백만 = 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1개 x 200백만 = 2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 1개 x 300백만 = 300백만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 709백만원
‘20	161.09	▪ 공학교육혁신센터 : 62개 x 200백만 = 12,4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6개 x 250백만 = 1,5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9개 x 100백만 = 900백만원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1개 x 100백만 = 1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1개 x 200백만 = 2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 1개 x 300백만 = 300백만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 70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추진경위

- ‘06.11 수요자 중심의 공과대학 혁신방안 VIP 보고
- ‘07.5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시행(산업자원부)
- ‘07.6 50개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5개 거점센터 선정
- ‘08.5 10개 공학교육혁신센터 추가 선정
- ‘08.9 산업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 이관
- ‘11.3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전문대) 신규 선정
- ‘12.3 2단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12~’21)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14.12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업무 이관
- ‘15.3 2단계 2기(~’18.2)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시행
- ‘16.5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및 정보센터 신규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공학교육혁신지원	167	167	162	161.09	15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감사원 감사)

- (평가지표) 선정평가 시 정량지표의 경우 공학계열 중심 활용 → '15년부터 신규과제 공고 시 반영 (정량지표로서 ①공학계열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②공학계열 재학생 충원율, ③공학계열 취업률 반영)
- (사업비 지원) 대학규모별 차등지원 검토 필요 → 과제별 지원 예산이 소규모인 관계로 차등지원의 효과가 미비하므로, 향후 예산 증액 시 차등지원 검토 예정
- (공학인증) 혁신센터 선정 시 공학인증프로그램 수행여부에 대해 가점부여 방식의 평가수행 필요 → '15년부터 신규과제 공고 시 반영 (인증프로그램 보유 대학 가점 부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엔지니어 2020(The Engineer of 2020) : 미국의 경쟁력 확보는 연구 뿐 아니라, 우수한 공학교육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천명하고, 공학한림원(NAE)을 중심으로 미래의 공학인상 제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

* 스탠포드 D.School 사례
: 창의·혁신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커리큘럼+교육방식+교육공간 제공
[교육공간] 아이디어 구현 및 토론/교육 공간 제공
[교육방식] 학생 및 교수 모두 전공분야가 다른 집단으로 구성하여 협업방식으로 교육
[교과과정] 공학과 연계하여 지역 및 국제사회 이슈 고찰 및 문제점 도출 + 해결

○ (유럽) 볼로냐 선언(The Bologna Declaration) : 학제개편, 실험실습 강조, 산업계 수요반영 강화 등 공학교육시스템 혁신 강조

(5) 사업추진절차

○ 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50,209	52,361	67,520	15,159	2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200 - 3274 - 301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산업인력과(박영삼과장, 044-203-4220), 사무관(원미연, 422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민간 Matching)
사업시행주체	대학, 연구소, 단체 등

2. 사업목적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제조혁신 전문인력양성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고급기술 인력양성 33,420백만원

○ (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특성화대학 지원 등 전문 설계인력 양성 지원 3,890백만원

-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 : 3개대학×500백만원내외=1,500백만원
- 해양플랜트설계전문엔지니어양성 : 150명×3백만원내외=450백만원
- 해양플랜트 국제공인 품질전문가 양성 : 150명x3백만원=450백만원

▪ 한-영 해양플랜트 글로벌 전문인력양성 : 2개대학×745백만원=1,490백만원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 다양한 산업분야의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영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1,440백만원

▪ 창의·융합 석사과정 지원 : 2개대학원×520백만원내외=1,040백만원

▪ 로봇 오픈아카데미 지원 : 2개대학원×200백만원내외=400백만원

○ (환경규제및안전전문인력양성) 화학사고 예방과 환경규제 대응 목적으로 환경안전경영 및 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1,880백만원

▪ 환경규제 및 안전 대학원 과정 지원 : 3개대학원×560백만원=1,680백만원

▪ 환경안전경영 고급인력 양성 기반구축 : 200백만원

○ (하이브리드및슈퍼섬유소재전문인력양성) 미래 첨단산업과의 하이브리드 섬유제조 전문인력양성 및 전후방 연계형 Hybrid 모듈화 교육을 위한 사업비 780백만원

▪ 하이브리드 섬유소재 설계, 가공 · 제품화 대학원 과정 지원 : 3개대학원 × 260백만원내외 = 780백만원

○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융합 기술역량 및 현장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뿌리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공급 지원 2,250백만원

▪ 뿌리산업대학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4개대학원×562.5백만원= 2,250백만원

○ (디스플레이장비부품전문인력양성) OLED, Flexible,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인력양성 사업비 1,920백만원

▪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대학원 과정 지원 : 6개대학원×320백만원내외=1,920백만원

○ (건설기계산업R&D전문인력양성) 건설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 기술 트랜드를 선도하는 건설기계R&D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 1,430백만원

▪ 건설기계 특화 대학원 과정 지원 : 3개대학원×410백만원내외=1,230백만원

▪ 고용연계 시스템 구축 및 단기과정 : 1개기관×200백만원=200백만원

○ (수송기기특화조명핵심기술전문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송기기 LED 융합조명산업의 기업 맞춤형 고급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 1,950백만원

- 자동차 LED융합조명 대학원 과정 지원 : 1개대학원×975백만원=975백만원
- 조선/해양플랜트 LED융합조명 대학원 과정 지원 : 1개대학원×975백만원 =975백만원

○ (재활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 공학지식에 장애, 심리, 상담, 치료 등의 장애극복 소양을 갖춘 석박사급 융합인력양성 및 고용연계 과정운영을 위한 사업비 880백만원

- 재활산업기술관련 공학, 임상의학 융합 대학원 과정 지원 : 2개대학원 ×440백만원=880백만원

○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지능형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SoC-SW 융합형 설계 전문인력양성 사업비 4,900백만원

- 석박사 과정 지원 : 5개 분야 x 537.5백만원내외: 2,650백만원
- 비학위과정 실무 인력양성 : 2,250백만원

○ (첨단센서산업 전문인력양성) 첨단센서 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MEMS 분야 석사급 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600백만원

- 첨단센서 전문인력 대학원 과정 지원 : 2개(총7개대학원)×300백만원 =600백만원

○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양성) 조선해양산업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퇴직인력 중심 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한 퇴직인력 전문 인력양성(설계, 고기능) 및 전문가 활동 등 7,000백만원

- 핵심 기술인력 양성 : 7,000백만원
  - 생산공정, 의장공정 등 10개과정(과정당 3개월) x 20명 x 3개 지역 x 4백만원=2,400백만원
  - 고기술 인력을 교수체용(40명), 교재개발, 전직지원 등=600백만원
  - 산학프로젝트 교육 10개 x 3개지역 x 100백만원(1개과제당)=3,000백만원
  - 기술코칭 20개위원회 x 5회/年 x 20명 x 0.5백만원=1,000백만원

○ (미래형자동차 R&D전문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융합 R&D 전문인력양성 1,500백만원

- 대학-기업 컨소시엄 구성, 고용연계 프로그램, 단기전문교육 운영 등 : 210백만원
- Joint Lab기반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현장 적용형 실험실습·산학 공동프로젝트 등 : 3개×430백만원=1,290백만원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 융복합 기술 혁신과 수요·공급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요 연계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 1,500백만원

- 대학-기업 컨소시엄 운영(운영설계, SW솔루션, HW솔루션 트랙 등) : 3개×450백만원 = 1,350백만원
- 공통실습 및 단기전문교육 지원 등 : 1개기관×150백만원내외=150백만원

○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양성) 산업연계 PBL기반 실무형 석·박사과정 및 서비스 플랫폼 분야(6대)에 대한 드론응용기술 개발 전문인력양성 1,500백만원

* 6대 분야: 국방, 농업, 안전진단 및 감시, 물류수송, 보안/경비, 3차원 측량

- 대학-기업 컨소시엄 운영, PBL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 4개×325백만원 =1,200백만원
- 협력기업 프로젝트 발굴, 공모전·페스티벌 운영 등 : 1개기관 ×200백만원=200백만원

② 소프트파워 전문인력양성 :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공통기반분야 인력양성 24,800백만원

○ (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인력양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적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사업비 3,900백만원

- 디자인기술융합전문대학원 과정 지원 : 3개대학원×650백만원내외 =1,950백만원
-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지원 : 4개지역디자인센터×487.5백만원내외 =1,950백만원

○ (한국형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국가 R&D 기술 사업화 역량제고를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육성과 新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MOT 인력양성 사업비 4,950백만원

▪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과정 지원 : 7개 대학원×707백만원내외=4,950백만원

○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 엔지니어링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역량을 겸비한 엔지니어링 고급 인력양성 사업비 7,670백만원

▪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 지원 : 2개대학원×685백만원=1,370백만원

▪ 엔지니어링 개발연구센터 지원 : 1개센터×5,300백만원=5,300백만원

▪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 교육 : 1개컨소시엄×1,000백만원=1,000백만원

○ (창의산업융합특성화인재양성) 인문·기술의 다학제적 융합화 능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별 산업융합 핵심인력 양성 5,730백만원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지원 : 10개대학원×573백만원내외=5,730백만원

○ (임베디드 SW전문인력양성) 주력산업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임베디드 SW 관련 기획, 설계, 검증, 인증 등 특화 전문 인력양성 사업비 2,550백만원

▪ 4개 주력산업분야(자동차/기계로봇/의료기기/전자) : 4대분야 x 487.5백만원 =1,950백만원

▪ 2개 주력산업분야(조선/항공)×산업분야별 300백만원=600백만원

③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산업계 주도 산학 공동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연계형 인력 양성 3,900백만원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대학원 지원 : 12개 컨소시엄×325백만원내외 =3,900백만원

④ 인적자원생태계조성 : 통계,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창의인재 육성 지원 등 인력양성에 필요한 기반구축 사업 4,855백만원

○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청소년 대상 체험위주의 융합형 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기술인력 양성 사업비 1,100백만원

▪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운영 : 5개대학×220백만원=1,100백만원

* 청소년 기술경진대회 운영, 기술아카데미 지원 등

○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산업별·지역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DB구축을 위한 사업비 688백만원

▪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조사기획 및 수급동향 실태조사 : 500백만원

▪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운영 등 : 188백만원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067백만원

▪ 수요-공급의 적재적소의 플랫폼 역할 확대를 통한 업종별 협의체(SC) 운영 강화 등 : 일반 SC 16개 협의체 × 130백만원 내외 ≒ 2,167백만원, 선도 SC 3개 협의체 × 330백만원 내외 ≒ 900백만원

⑤ 기획평가관리비 : 산업기술인력 정책연구, 신규사업 연구기획,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비 545백만원

▪ 산업기술인력 정책연구 및 신규사업 연구기획 등 : 365백만원

▪ 산업부 인력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 1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적인 유망기술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창의성에 근거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연구인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 산업기술 인력양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인적자원 투자의 불확실성, 기술변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속도가 높음

- 따라서,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정부지원 없이 시장공급에 의존할 경우 수급실패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대졸자 및 고급기술인력(석·박사급)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고급연구인력 및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 지원 등의 지속추진 필요

- 중소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술직과 연구직에 대한 인력 부족률이 전체 1.48보다 높은 2.58, 1.88로 타 직종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 속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력수급이 불균형 상태

- 신성장 분야, 엔지니어링분야 등 高度의 지식집약산업의 창의적인 최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재부족 심각

-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인력 지원이 필요

○ 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 니즈간 격차로 인해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과다한 수준임

- 따라서, 산업계 니즈를 통해 도출된 교육과정 개편 및 인턴십 등을 통해 기업 니즈와 대학 교육간 간극 최소화가 필요

* 10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은 약 150만명 수준으로 부족인원은 37천명 수준. 구직자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숙련·경험·자격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숙련 불일치(48.0)가 부족의 가장 큰 원인임 ('14년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 신입사원 1인당 5,959만원이 소요되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총 18.3개월 소요 ('13년 경총 조사결과)

- 또한 산업계 수요를 정부의 인력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인력수급 현황 파악 등 인프라 확충도 필요

○ 미래의 창의·융합 산업리더가 될 유소년을 위한 공학기술 체험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산업기술 저변창출 및 문화형성 노력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50,209**	**52,361**	**67,520**	**15,159**	**29**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19,204**	**19,460**	**33,420**	**13,960**	**71.7**
▪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	4,100	3,990 (3개대학×500=1,500) (150명×3.3=495) (150명×3.3=495) (2개대학×750=1,500)	3,890 (3개대학×500=1,500) (150명×3=450) (150명×3=450) (2개대학×745=1,490)	(100)	(2.5)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	1,350	1,470 (2개대학×535=1,070) (2개기관×200=400)	1,440 (2개대학×520=1,040) (2개기관×200=400)	(30)	(2)
▪환경규제및안전전문인력양성	2,000	1,920 (3개대학×580= 1,740) (기반구축=180)	1,880 (3개대학×560=1,680) (기반구축=200)	(40)	(2.1)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하이브리드및슈퍼섬유소재 전문인력양성	800	800 (3개대학×266 =800)	780 (3개대학×260=780)	(20)	(2.5)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	2,300	2,300 (4개대학×575=2,300)	2,250 (4개대학×562.5=2,250)	(50)	(2.2)
▪디스플레이장비부품전문 인력양성	1,120	1,040 (6개대학×173=1,040)	1,920 (6개대학×320=1,920)	880	84.6
▪건설기계산업R&D전문 인력양성	1,120	1,040 (2개대학×420=840) (고용시스템구축 및 단기과정=200)	1,430 (3개대학×410=1,230) (고용시스템구축 및 단기과정=200)	390	37.5
▪수송기기특화조명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2,000	2,000 (2개대학×1,000=2,000)	1,950 (2개대학×975=1,950)	(50)	(2.5)
▪재활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	1,000	900 (2개대학×450=900)	880 (2개대학×440=880)	(20)	(2.2)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	-	4,000 (4개분야×550=2,200) (실무인력양성=1,800)	4,900 (5개분야×537.5=2,650) (실무인력양성=2,250)	900	22.5
▪첨단센서 전문인력양성	-	(이관)	600 (2개×300=600)	600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양성	-	(신규)	7,000 (기술인력양성=3,000) (산학프로젝트=3,000) (기술코칭=1,000)	7,000	
▪미래형자동차 R&D 전문 인력양성	-	(신규)	1,500 (JointLab기반 3개x430=1,290) (대학-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운영=210)	1,500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 인력양성	-	(신규)	1,500 (3개x450=1,350) (공통실습, 단기교육 등=150)	1,500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양성	-	(신규)	1,500 (PBL기반 4개x325=1,300) (프로젝트 발굴, 공모전 등=200)	1,500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1,350	(이관)			
▪패션봉제전문인력양성	444	(이관)			
▪바이오제조GMP기술인력양성	1,620	(이관)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	**21,084**	**23,140**	**24,800**	**1,660**	**7.2**
▪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인력양성	4,000	4,000 (3개교×765=2,300) (4개센터×425=1,700)	3,900 (3개대학×650=1,950) (4개센터×487.5=1,950)	(100)	(2.5)
▪한국형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5,300	5,070 (7개대학×724=5,070)	4,950 (7개대학×707=4,950)	(120)	(2.4)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	6,954	6,840 (2개교×700=1,400) (1개센터×5,440=5,440)	7,670 (2개교×685=1,370) (1개센터×5,300=5,300) (1개컨소시엄x1,000=1,000)	830	12.1
▪창의산업융합특성화인재양성	4,830	5,230 (10개교×523=5,230)	5,730 (10개교×573내외=5,730)	500	9.6
▪임베디드 SW 전문인력양성	-	2,000 (4개분야×500=2,000)	2,550 (4개분야×487.5=1,950) (신규 2개분야×300=600)	550	27.5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4,000**	**4,000**	**3,900**	**(100)**	**(2.5)**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 양성	4,000	4,000 (12개컨소시엄×330내외 =4,000)	3,900 (12개컨소시엄×325내외 =3,900)	(100)	(2.5)
<인적자원생태계조성>	**5,376**	**5,216**	**4,855**	**(361)**	**(6.9)**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사업	1,230	1,120 (5개대학×224=1,120)	1,100 (5개대학×220=1,100)	(20)	(1.8)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600	600 (수급동향실태조사=400) (조사결과DB 구축·운영 =200)	688 (수급동향실태조사=500) (조사결과DB 구축·운영 =188)	88	14.7
▪산업별인적자원 개발협의체	3,396	3,396 (일반 협의체 14개×183내외=2,566) (선도 협의체 2개×415내외=830)	3,067 (일반 협의체 16개×130내외=2,167) (선도 협의체 3개×330내외=900)	(329)	(9.7)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 구축	150	100 (시스템운영,유지 보수비)	삭제	(100)	
<기획평가관리비>	545	**545**	545	**0**	-
▪기획평가관리비	545	545 (성과분석, 신규 연구기획)	545 (성과분석, 신규연구기획, 성과관리시스템)	0	-
□ **비목**(합계)	**50,209**	**52,361**	**67,520**	**15,159**	**29**
○ 연구개발출연금(360-05)	**50,209**	**52,361**	**67,520**	**15,159**	**2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 R&D정책, 산업부 R&D전략, 글로벌 기술동향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 양성의 중장기 방안 수립

▪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 R&D인력 양성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연계형 사업 확대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업종별 시급성을 고려, 단기적·직접적인 인력공급과 고용지원 확대, 인력양성과 기업취업의 연결고리 강화

○ 산학협력에 기반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 산업계 수요(SC 활용 등)를 교육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현장 실무에 적합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23.61	▪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194.60) ▪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231.40) ▪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40.00) ▪ 인적자원생태계조성(52.16) ▪ 기획평가관리비(5.45)
'17	675.20	▪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334.20) ▪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248.00) ▪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39.00) ▪ 인적자원생태계조성(48.55) ▪ 기획평가관리비(5.45)
'18	515.61	▪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194.60) ▪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223.40) ▪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40.00) ▪ 인적자원생태계조성(52.16) ▪ 기획평가관리비(5.45)
'19	515.61	▪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194.60) ▪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223.40) ▪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40.00) ▪ 인적자원생태계조성(52.16) ▪ 기획평가관리비(5.45)
'20	509.66	▪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194.60) ▪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217.45) ▪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40.00) ▪ 인적자원생태계조성(52.16) ▪ 기획평가관리비(5.4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19조, 제20조의2
- 산업발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28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 추진경위
- '09. 1월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QoLT 기술개발 기획보고서> 연구과제 수행
- '09. 7월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관리 방안』 수립
- '10. 4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
- '11. 3월 지식경제부 2011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 '11. 6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2. 5월 비상경제대책회의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 발표
- '13. 2월 지식경제부 2013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 '13. 1월 2013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 '13. 2월 지식경제부 2013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 '13. 6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 '13.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 '13. 7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조선·해양플랜트 기획·설계역량 강화)
- '13. 9월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
- '13. 11월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 '13. 11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 '13. 12월 미래 시장선도형 200대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
- '13. 12월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
- '13. 12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선정·추진
- '14.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14. 3월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 '14. 4월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4. 8월 SC 역량강화 및 기능확대를 위한 3개 부처 공동 MOU 체결
- '15. 4월 산업인력양성사업 개편
- '16. 2월 산업부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671.11	469.04	502.09	523.61	675.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469.04)	( )	( )	(469.04)	(469.04)	( )	( )
'15년	(502.09)	( )	( )	(502.09)	(502.09)	( )	( )
'16년	(523.61)	( )	( )	(523.61)	(523.61)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교육, 훈련, 과학, 고용 등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과 '인적자원'의 창조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인적자원을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특히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강조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등 HRD를 국가핵심 전략으로 채택

> [미국의 Engineer of 2020]
> 『국가혁신전략(Innovate America』('04)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지원, 차세대 혁신주도자 육성 등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강조

○ 선진 각국은 첨단기술분야 및 고부가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

- (미국) 국방부와 과학재단(NSF) 주도로 로봇 관련* 항공, 국방, 우주, SW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 및 다학제적 융합형** 박사과정 대학원생 지원

* 'Robotics Alliance Project(NASA)', 'Robotics Education at CMU(CMU)' 등 청소년,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인 대상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IGERT(Integrative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Traineeship) 프로그램에서 연구과제를 통해 인건비, 교육실습비 등 5년간 평균 3.3백만~3.5백만달러 지원

- (중국) 제2차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육성전략(2012)을 통해 산학협 협력 촉진을 통한 고등교육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화

- (일본) 전통적인 메카트로닉스 및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금속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지능형 로봇분야로 유입 유도

* 'Integrated Machine Intelligence Lab(입명관 대학)', 'RoboCasa(와세다 대학)' 등에서 체계적인 로봇교육과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업중심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취업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 (미국) 산·관·학 협력을 통한 코오프(Co-op)교육의 체계화,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과 산업계 관련 실용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전문과학석사학위(PSM)* 등을 통해 산업밀착형 교육 실시

  * 美 일리노이 大 식품과학 및 인간영양 프로그램 등 NSF는 학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PSM 개설 대학에 1,500만 달러 지원

- (프랑스) CIFRE 프로그램 : 박사과정 학생들의 취업과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대상 지원 프로그램(1981년~)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박사과정 학생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및 논문 준비 지원
- (일본) Job Card라는 컨설팅을 통한 취업지원제도 內 직업능력형성 프로그램의 하나인, '실천형인재양성제도'를 운영하여 이공계 인력 취업지원

  * 실천형인재양성제도는 신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영국) 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 취업자 개인맞춤형 교육 및 취업 계획을 지원하는 청년뉴딜프로그램 운영

  * 민간부문 정부 보조금 취업 과정을 통해 인턴 형태로 근무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직무 교육,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별 교육 기회를 보장

○ 과학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 자국 내 과학자 및 기술자의 고용, 교육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SESTAT(Scientists and Engineers Statistical Data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호주) 경제, 환경 및 에너지, 산업, 인구, 지역 등 각 주제별로 통계조사 결과를 구분해 놓고 있으며, 산업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산업"의 주제 중 Science & Innovation 부문과 "인구" 주제 중 Education & Training 부문 및 Work 부문에서 다루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업부 인력사업의 총괄전담 기능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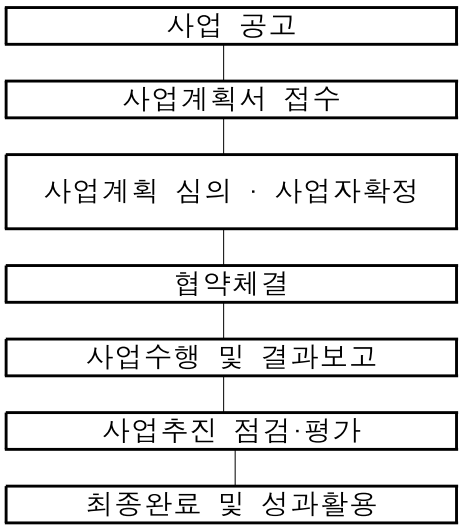

○ 전담기관이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전담기관

○ 전담기관의 심사,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부장관이 주관기관 선정 확정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의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활용 계획 보고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사업	1,479	1,479	1,631	152	10.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60 - 301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업협력과(박대규, 044-203-4230), 사무관(박석현, 044-203-42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6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70% 내외, PMS 지원율에 따라 변동)
사업시행주체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사업목적

○ 생산성경영체제(PMS) 보급·확산, 국가생산성통계, APO 국제협력 등 국가생산성혁신기반 구축으로 기업·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생산성경영체제(PMS) 보급·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 역량 수준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 322백만원

- 심사(진단) : 0.9백만원×3.6MD×39%(평균보조율)×125개사≒158백만원
- OJT컨설팅 : 1.0백만원×7.5MD×39%(평균보조율)× 56개사≒164백만원

· 보조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10~60%)

– 생산성경영체제 (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개요

·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등급(Level) 부여 후, 등급향상을 위한 과제해결 활동(컨설팅) 지원

· 경영관리의 다차원적 통합을 통한 경영생산성 향상 접근방식으로 기업전반적인 관점에서 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 개선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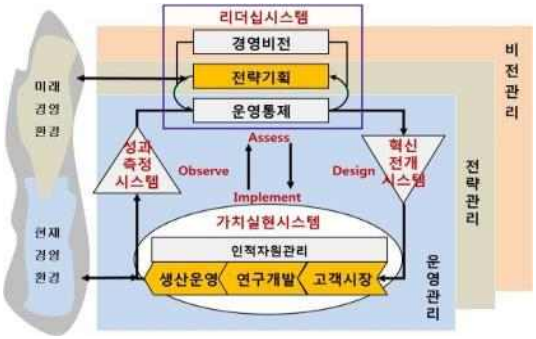

PMS 범주	배점
1. 리더십	150 점
2. 생산성혁신 전개	140 점
3. 고객과 시장 관리	120 점
4.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90 점
5. 인적자원 관리	120 점
6. 프로세스 관리	180 점
7. 생산성 경영성과	200 점
총점	1,000 점

<PMS의 기본구조와 범주 및 배점>

· 각 범주별로 성숙도 단계(5개 Stage)를 정의하고, 각 부문의 핵심 프로세스 역량 평가 및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지침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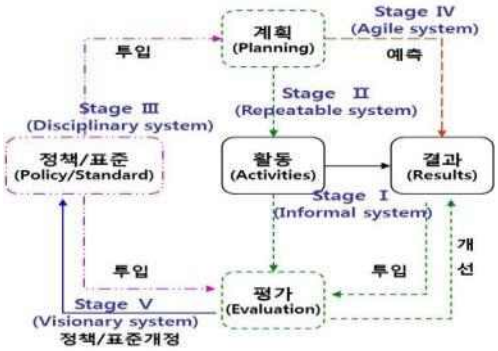

성숙도단계 기본개념	충족률	PMS등급
Stage V	91~100%	Level 10
Visionary system	81~90%	Level 9
Stage IV	71~80%	Level 8
Agile system	61~70%	Level 7
Stage III	51~60%	Level 6
Disciplinary system	41~50%	Level 5
Stage II	31~40%	Level 4
Repeatable system	21~30%	Level 3
Stage I	11~20%	Level 2
Informal system	0~10%	Level 1

<PMS 성숙도단계 개념 및 등급(Level) 판정>

② 국가생산성통계 : 생산성향상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기업, 산업, 지역, 국가간에 비교 가능한 6종의 생산성 통계 측정·발표를 위한 사업비 309백만원

– 통계 6종×51.5백만원=309백만원

·생산성통계/산출 분석비, DB구입비, 조사연구비, 인쇄비 등

– 국가생산성통계 발표 현황

구분	통 계 명	주 요 내 용
산업 수준	① 노동생산성지수(분기별)	전산업 및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를 분기별로 추계·분석(2010=100)
기업 수준	②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1978년부터 매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생산성 등을 측정, 상장기업의 경영상태를 산업별·기업별로 분석
	③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업종별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분석 및 기초통계 생성
	④ 기업규모별 / 지역별 총요소생산성분석(격년)	·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통해 기업규모별 격차 및 생산효율성 비교분석 · 지역차원(전국 16개 시도)의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및 성장요인을 비교분석
국제 수준	⑤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국민경제 및 산업차원에서 노동생산성 수준(증가율) 및 단위노동비용 등을 측정, OECD 회원국과 비교분석
	⑥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및 기초DB(KIP DB) 구축	EU와 OECD 등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방법론(KLEMS)에 입각하여 전산업차원의 기초DB를 구축, 국가·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및 경제성장요인의 비교·분석

③ APO 국제협력 : 생산성 전문가 파견 등 회원국간 교류·협력 지원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460백만원

– 회원국간 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 6개 과제× 27백만원 ≒ 160백만원

·초청인사 퍼디움, 외부시설사용료, 외부강사료 등

– ‘17년 아시아생산성기구 대표자 총회(WSM) = 300백만원

·시설 사용료, 행사장 조성비용, 사무국 운영경비 등

·지원인력 인건비, 참가자 지원비(과제당 20명), 외부시설사용료, 외부강사료 등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개요

·아시아 생산성 향상과 공동 번영을 위해 일본·한국 등이 주도하여 ‘61.4월에 발족한 국제기구로서 생산성혁신기법교류, 교육, 회원국 경제협력 모색, 생산성 혁신 기법 전문가 파견 등 수행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APO 공식회의	○ APO 이사회, 생산성본부 회장 회의 각 1회 ○ 사업계획, 예산, 프로그램 확정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수행	○ 해외전문가 대상 국내프로그램 4회 개최 ○ 한국의 우수기업, 기관 소개 및 홍보
APO 프로그램 전문가파견	○ 국내 생산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 해외개최 프로그램에 파견하여 최신 동향 및 기법 습득 및 공유

·아시아생산성기구 대표자 총회(WSM) 소개

* (실행계획 수립) APO 이사회(GBM) 결정사항의 집행계획 수립
* (회의 아젠다 수립) 매년 개최 예정인 프로젝트 및 아젠다 확정
* 통상 주최국 소관 부처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진행되며, 각국 국가대표로 고위공직자 참석
*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수출촉진 지원기회로 활용 가능

④ 2·3차 협력사 생산성 혁신지원 동방성장 기반 구축

- 2·3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생산혁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혁신 3.0」 추진 기반 구축 사업비 370**백만원**

- 동반성장 재원 출연독려 및 관리 등 170백만원

◆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지원 동반성장 기반구축

- 개요 : 대중소 협력을 통한 2·3차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의 생산 혁신 지원(공정·경영·생산기술 컨설팅, 설비투자 등) 및 산업 전반에 혁신 전파(교류회, CEO·관리자 교육 등)
- 재원 : 대기업(年 330억원) 등의 동반성장 출연재원 활용
- 추진 조직 : 중앙추진본부(대한상의) 및 하부의 단체별 추진본부(중견련, 생산성본부, 업종별 단체 등), 재원관리본부(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기업 등
- 주요 추진 성과 : 5,998개 중소기업 지원, 11,913개 혁신과제 수행
  - 1차년도('13.8～'14.7) : 1,957개 중소기업 지원, 3,656개 혁신과제 수행
  - 2차년도('14.8～'15.7) : 2,027개 중소기업 지원, 3,685개 혁신과제 수행
  - 3차년도('15.8～'16.7) : 2,014개 중소기업 지원, 4,572개 혁신과제 수행

□ 지원 필요성

○ 생산성혁신은 단기간 내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고히 하고 원자재, 환율 등 각종 비용 상승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 우리나라 전체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2위(OECD 평균 95%)
- 이중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에 그치고 있어 OECD 평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65%임을 감안할 때 그 격차는 매우 큰 상황임

○ 범국가적인 생산성혁신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 스스로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 국가생산성통계 발표, APO 국제협력 등 **국가생산성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국가생산성혁신 기반구축	**1,479**	**1,479**	**1,631**	**152**	**10.3**
▪ PMS보급·확산 (산출근거)	359 (181개×2백만×100%)	**359** (190개×1.9백만×100%)	322 (181개×1.78백만)	△37	△10.3
▪ 국가생산성통계 (산출근거)	360 (6개×60백만×100%)	360 (6개×60백만×100%)	309 (6종×51.5백만)	△51	△14.2
▪ APO국제협력 (산출근거)	160 (6개×27백만×100%)	160 (6개×27백만×100%)	160 (6개×27백만) 300 (1개×300백만)	300	188.0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지원 동반성장 기반 구축 (산출근거)	**600** (1개×600백만)	**600** (1개×600백만)	540 (1개×540백만)	△60	△10.0
□ **비목**(합계)			**1,631**	**152**	**10.3**
○ 민간경상보조 (320-01)	1,479	1,479	1,631	152	10.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사업 지속 추진

○ 생산성 수준이 현격히 낮은 중소기업 지원과 세계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타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지속보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4.7	▪ PMS보급·확산 1.9백만원×190사 ≒ 359백만원 ▪ 국가생산성통계 60백만원 ×6종 = 360백만원 ▪ APO국제협력 27백만원 ×6개 ≒ 160백만원 ▪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지원 동반성장 기반 구축 600백만원×1개 = 600백만원
‘17	16.3	▪ PMS보급·확산1.78백만원×181사 ≒ 322백만원 ▪ 국가생산성통계 51.5백만원 ×6종 ≒ 309백만원 ▪ APO국제협력 65백만원 ×7개 ≒ 460백만원 ▪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지원 동반성장 기반 구축 540백만원×1개 = 540백만원
‘18	12.6	▪ PMS보급·확산 2백만원×180사 ≒ 359백만원 ▪ 국가생산성통계 60백만원×4종 ≒ 247백만원 ▪ APO국제협력 27백만원 ×6개 ≒ 160백만원 ▪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지원 동반성장 기반 구축 500백만원×1개 = 500백만원
‘19	9.2	▪ PMS보급·확산 2백만원×200사 ≒ 405백만원 ▪ 국가생산성통계 60백만원×6종 = 360백만원 ▪ APO국제협력 27백만원 × 6개 ≒ 160백만원
‘20	11.7	▪ PMS보급·확산 2.백만원×327사 =654백만원 ▪ 국가생산성통계 60백만원×6종 = 360백만원 ▪ APO국제협력 27백만원×6개 ≒ 16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27조 : 생산성향상 사업 장려
- 산업발전법 제32조 : 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 위탁업무 추진
- 외무부 외방 제6679호 : APO 관련사업 위임
- 통계청 353-1108호 외 : 생산성관련 통계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출

○ 추진경위

- 1961.04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가입, 한국생산성본부 업무위탁
- 1986.07 한국생산성본부 특수법인화(산업발전법 제32조), 지원사업 개시
- 2006.01 생산성경영체제(PMS) 보급·확산 사업 실시
- 2006.06 제48차 APO이사회 서울 개최
- 2010.10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 보고(국경위)
- 2016.09 제40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국가생산성 혁신기반구축	15.9	14.8	14.7	14.7	1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기획재정부 절감계획에 따라 50백만원 불용처리('13년)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5.9 (15.9)	0 (0)	0 (0)	15.9 (15.9)	15.4 (15.4)	0 (0)	0.5 (0.5)
'14년	14.8 (14.8)	0 (0)	0 (0)	14.8 (14.8)	14.8 (14.8)	0 (0)	0 (0)
'15년	14.7 (14.7)	0 (0)	0 (0)	14.7 (14.7)	14.7 (14.7)	0 (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보통' 등급 사업으로 평가('12.6월)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12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존치평가) 결과 '정상추진'으로 평가 ('12.6월)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우수' 등급 사업으로 평가 ('14.5월)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1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추진' 으로 평가 ('16.7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의 생산성향상운동

○ 민간이 주도하는 APQC(American Productivity & Quality Center, 1977)에서는 인간을 통한 생산성향상 이념 하에 미국 생산성향상운동 주도(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제정 등 역할 수행)

○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을 통해 미국경제의 국가생산성통계 집계 및 발표
- 세부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통계(분기 및 연간)
- 세부산업별 총요소생산성 통계(연간)

○ 오바마 2기정부 2014-2018 전략기획 추진
- “America is open for business”, Strategic Plan 2014-2018 : 무역 및 투자활성화, 혁신역량강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목적(미 상무부)
-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디지털경제의 강화, 산업기반의 숙련촉진, 혁신집약(innovation-intensive)산업의 성장 등 세부전략 추진

□ 독일의 생산성향상운동

○ 인더스트리 4.0에 의한 제조업 창조경제 추진
- 생산공정, 조달물류, 서비스까지 통합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목표.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센서 등 기반기술개발 집중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선도
- 무겁고 경직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가볍고 유연한 다품종 대량생산으로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

(5) 사업추진절차

①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신청서식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② **보조금 교부** 산업부 → 보조사업자	o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③ **보조사업 수행 및 사업 착수·추진상황보고**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보조사업 내용변경,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시 승인 o 사업착수보고, 사업수행상황보고
⬇	
④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보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을 완료시, 폐지의 승인을 얻은때, 회계연도 종료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때
⬇	
⑤ **보조금 금액 확정(정산) 및 통지** 산업부 → 보조사업자	o 보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확인 o 보조금액 확정
⬇	
⑥ **교부잔액 지급 또는 정산 잔액 반납 조치**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수입이자 및 잔액 반납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산업발전법 제32조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산업발전법 제27조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6년)

구 분	취업자당[1] 노동생산성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시간당[1] 노동생산성
		제조업[2]	서비스업[3]	
룩셈부르크	1위	18위	1위	1위
아일랜드	2위	1위	3위	5위
노르웨이	3위	11위	7위	2위
미 국	4위	2위	2위	3위
벨기에	5위	4위	5위	4위
캐나다	13위	-	-	15위
이탈리아	15위	19위	8위	18위
독 일	17위	10위	17위	8위
영 국	18위	16위	14위	17위
일 본	20위	14위	15위	20위
한 국	**22위**	**5위**	**26위**	**28위**
칠 레	33위	-	-	33위
멕시코	34위	-	-	34위

주1) 2014년 OECD 34개국 기준

주2) 2014년 OECD 26개국 기준_일부 국가 자료미비로 제외

주3) 2014년 OECD 27개국 기준_일부 국가 자료미비로 제외

참고 외무부 외방 제6679호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가입 등

제목 : 아세아 생산성기구 가입 통고의 건

머리의 건, 외무부, 상공부, 부흥부, 한국생산성본부와의 합의대로 하기와 같이 국가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우리나라는 1961년 6월30일 아세아생산성기구, 협약의 수락통고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동 기구에 가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記 -

o 아세아생산성기구에 정부명의로 가입하고,
o 아세아생산성기구와 관련된 국내 활동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담당하고,
o 아세아생산성기구 한국대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추천하여 이를 정부가 임명한다.

제목 : 아세아생산성협약에 관한 공포

단기4294년 4월14일자로 우리나라 대표가 마닐라에서 서명하였고, 단기4294년 6월17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동 6월30일 부로 가입하여 효력을 발생한 아세아생산성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10월
대 통 령 윤 보 선
내각 수반 송 요 찬
외무부장관 최 덕 신

참고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개요

□ 개 요

○ 아시아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한국 등이 주도하여 '61.4월 발족된 국제기구

○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법교류, 교육제공, 회원국간 연구과제와 경제협력 모색, 생산성혁신기법 전문가 파견 등 수행

* '15년 중소기업, 녹색생산성, NPO등 , 68개 프로젝트 계획(한국주관 3개)

○ 회원국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의결기구 및 행정조직

○ 이사회 :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선임된 이사(차관/생산성본부회장)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

* 의장 : Ms. Margarita R. Songco(필리핀 이사, '16.4월-'17.4월)

** 한국이사 한국생산성본부 홍순직 회장, 한국교체이사 산업부 산업정책관

○ 사무국 : 총무부, 공업부, 농업부, 조사기획부(동경, 35명)

* 사무총장 : Dr. Santhi Kanoktanaporn (태국, '16.9월-'19.9월)

□ 예산규모

○ 소요재원은 회원국 분담금, 특별 기부금, 회원국 사업비 등으로 조달

○ '16년 분담금 총액 : US$ 11,986,035

참고 아시아생산성기구 회원국별 분담금 내역 및 비중('17년 기준)

No	국가명	금액(US$)	비율(%)	비고
1	일본	5,465,722	45.60	
2	인도	1,761,606	14.70	
3	대한민국	1,190,466	9.93	
4	인도네시아	794,512	6.63	
5	이란	495,832	4.14	
6	대만	488,629	4.08	
7	태국	351,790	2.93	
8	필리핀	278,721	2.33	
9	말레이시아	270,539	2.26	
10	싱가폴	258,897	2.16	
11	파키스탄	214,219	1.79	
12	방글라데시	142,252	1.19	
13	베트남	138,217	1.15	
14	스리랑카	57,361	0.48	
15	네팔	17,272	0.14	
16	캄보디아	15,000	0.13	
17	피지	15,000	0.13	
18	라오스	15,000	0.13	
19	몽고	15,000	0.13	
총 액		**11,986,035**	**100.00**	

참고 아시아생산성기구 가입연도, 이사회 등

국 가	가입년도	APO 이사	APO 교체이사
방글라데시	1982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정)
캄보디아	2004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정)
대만(★)	1961	대만생산성본부 회장	경제부 국장(정)
피지	1984	노동고용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정)
홍콩	1963	홍콩생산성본부 회장	생산성본부 전무
인도(★)	1961	상공부 차관(정)	통상산업부 차관보(정)
인도네시아	1968	노동이민부 차관(정)	노동이민부 차관보(정)
이란	1965	이란생산성본부 회장	생산성본부 부회장
일본(★)	1961	외무성 국장(정)	외무성 부국장(정)
한국(★)	**1961**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정)**
라오스	2002	라오스생산성본부 회장	산업통상부 부국장(정)
말레이시아	1983	말레이시아생산성본부회장(정)	생산성본부 부회장(정)
몽골	1992	몽골생산성본부 회장	복지노동부 국장(정)
네팔(★)	1961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
파키스탄(★)	1961	산업부 차관(정)	산업부 차관(정)
필리핀(★)	1961	경제개발부 부국장(정)	생산성본부 회장
싱가폴	1969	싱가폴생산성본부회장(정)	생산성본부 전무(정)
스리랑카	1966	생산성추진부 차관(정)	생산성진흥부차관보(정)
태국(★)	1961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
베트남	1996	국가품질표준국 국장(정)	생산성본부 회장

* (★)는 원년(1961년) 가입국
* 는 민간기구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사업	1,169	1,412	1,369	△43	△3.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60 - 303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업협력과(박대규, 044-203-4230), 사무관(박석현, 044-203-42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61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 국가간 생산성 향상 정책과 생산성 혁신기법 공유 및 습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생산성향상 도모 및 정책에 반영

·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한국 등이 주도되어 1961년 4월에 발족된 국제기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17년 아시아생산성기구(APO) 분담금 1,369백만원

– '17년 분담금 $1,190,434 x 1,150원 ≒ 1,369백만원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개요 : 아시아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한국 등이 주도하여'61.4월에 발족된 국제기구로서 생산성혁신 기법교류, 교육제공, 회원국 간 경제 협력 모색, 생산성 혁신 기법 전문가 파견 등 수행

·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회원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의결기구 (이사회)	회원국에서 1명씩 선임된 이사(차관/생산성본부회장)들로 구성 * 의장 : Ms. Magarita R. Songco(필리핀 이사) **한국이사 : KPC회장, 교체이사 산업부 산업정책관
행정기구 (사무국)	총무부, 공업부, 농업부, 조사기획부(동경, 35명) * 사무총장 : Dr. Santhi Kanoktanaporn(태국, '16.9월-'19.9월)
예 산	소요재원은 회원국분담금, 특별기부금, 회원국사업비 등으로 조달 * 17년 분담금 총액 : US$ 11,986,035 (한국은 US$ 1,190,466)

· 분담금 산정방식

《 분담금 산정방식 》

○ 회원국 GNI 평균을 기초로 2개년 단위로 산정(2017-2018년도 분담금 동일)

○ 2017/2018 분담금은 회원국 6개년('09-'14) GNI 평균의 총액 중 회원국별 GNI 6년 평균('09-'14)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13. 5월 APO이사회 결정)

~2014	2015이후
1. 선 예산결정, 공식에 따라 후 분담금 배정 2. 회원국별 GNI 3년 평균 비율에 따라 결정	1. 좌동 2. GNI 6년 평균 비율에 따라 결정

– 최소분담금 45,000달러,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은 15,000달러

※ 개발국(LDC):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몽골, 네팔

– **`17년 한국분담금액 :** US$ 1,190,466 (**분담금총액(**US$ 11,986,035)*** 한국비율)**

※ 2011~2017 APO 분담금 총액은 USD 11,986,035로 동일

※ 한국분담비율 : 9.932%

□ 지원 필요성

○ APO분담금은 국제기구 가입(‘61.4월)에 따른 의무분담금
- ‘17년 분담금은 58차 이사회(‘16.4월)에서 확정
- 동 분담금의 납부는 회원국간의 합의정신(만장일치) 존중 및 AP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우리 정부도 APO를 ODA 적격기구로 분류(100% 계상비율)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2016 상반기 ODA 합동워크숍_
- 숫자로 보는 ODA(수출입은행_2015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 한국은 APO 가입초기 생산성향상 기법 등을 전수받는 입장에서 현재 회원국 중 지도적인 위치로 격상
- 생산성이 낮은 회원국의 문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 APO 협력사업 활성화로 한국의 성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국가에 우호적 이미지 제고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분담금 미납시 국가이미지 악영향 우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1,169	1,412	1,369	△43	△3.0
▪ 아시아생산성기구 분담금	1,169	1,412	1,369	△43	△3.0
□ 비목					
▪ 해외이전(340-02)	1,169	1,412	1,369	△43	△3.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PO 사업을 통해 생산성향상이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무역환경 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APO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연계 지원
- 기존 APO 공식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APO회원국과의 생산성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APO 네트워크를 국내 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플랫폼 및 채널로 활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4.1	▪ 1,237,511달러×1,141원≒1,412백만원 ('16년부담금+미납금)
'17	13.7	▪ 1,190,434달러×1,150원≒ 1,369백만원 ('17년 분담금 일부)
'18	12.1	▪ 1,057,281달러×1,143.5원≒1,209백만원
'19	8.8	▪ 772,191달러×1,143.5원≒883백만원
'20	11.2	▪ 980,324달러×1,143.5원≒1,,121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1961년 4월, 외무부 외방(방) 제6679호 '아세아 생산성기구 가입 통고의 건'에 따라 APO설립 협정에 가입

○ 추진경위

- '59.3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 생산성 원탁회의에서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 주도형의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결정
- '61.4월, 마닐라 원탁회의에서 한국, 일본, 인도 등 8개국 협약안에 조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국가생산성 혁신기반구축	12.2	12.2	11.7	14.1	1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기획재정부 절감계획에 따라 50백만원 불용처리('13년)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2.2** ( )	0 ( )	0 ( )	12.2 ( )	**11.7** ( )	0 ( )	0.5 ( )
'14년	**12.2** ( )	0 ( )	0 ( )	12.2 ( )	**12.2** ( )	0 ( )	0 ( )
'15년	**11.7** ( )	0 ( )	0 ( )	11.7 ( )	**11.7** ( )	0 ( )	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APO 분담금액 승인**(2년 주기) 회원국 → APO	o 근거 : 아시아생산성협약 o 결정 회의 : APO 이사회(매년 4월경 개최)
⬇	
② **분담금액 안내 및 납부 요청** APO → 산업부	o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	
③ **분담금 납부 의뢰 및 분담금 납부** 사업부서→지급부서→APO	o 산업부에서 해당 APO 은행 구좌로 송금
⬇	
④ **APO 사업수행, 참가지원 및 추진상황 보고**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부	o APO 주관으로 20개 회원국과 공동으로 사업수행 o 국내사업 주관, 해외참가지원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	
⑤ **사업 집행(추진) 상황 보고 및 승인** APO → 회원국	o APO사무국이 APO이사회에 사업집행 내용 보고 o 결과보고서 송부(APO→한국생산성본부→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외무부 외방 제6679호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가입 등

제목 : 아세아 생산성기구 가입 통고의 건

머리의 건, 외무부, 상공부, 부흥부, 한국생산성본부와의 합의대로 하기와 같이 국가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우리나라는 1961년 6월30일 아세아생산성기구, 협약의 수락통고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동 기구에 가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記 -

o 아세아생산성기구에 정부명의로 가입하고,
o 아세아생산성기구와 관련된 국내 활동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담당하고,
o 아세아생산성기구 한국대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추천하여 이를 정부가 임명한다.

제목 : 아세아생산성협약에 관한 공포

단기4294년 4월14일자로 우리나라 대표가 마닐라에서 서명하였고, 단기4294년 6월17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동 6월30일 부로 가입하여 효력을 발생한 아세아생산성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10월
대 통 령 윤 보 선
내각 수반 송 요 찬
외무부장관 최 덕 신

참고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개요

□ 개 요

○ 아시아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한국 등이 주도하여 '61.4월 발족된 국제기구

○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법교류, 교육제공, 회원국간 연구과제와 경제협력 모색, 생산성혁신기법 전문가 파견 등 수행

* '15년 중소기업, 녹색생산성, NPO등 , 68개 프로젝트 계획(한국주관 3개)

○ 회원국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의결기구 및 행정조직

○ 이사회 :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선임된 이사(차관/생산성본부회장)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

* 의장 : Ms. Margarita R. Songco(필리핀 이사, '16.4월-'17.4월)

** 한국이사 한국생산성본부 홍순직 회장, 한국교체이사 산업부 산업정책관

○ 사무국 : 총무부, 공업부, 농업부, 조사기획부(동경, 35명)

* 사무총장 : Dr. Santhi Kanoktanaporn (태국, '16.9월-'19.9월)

□ 예산규모

○ 소요재원은 회원국 분담금, 특별 기부금, 회원국 사업비 등으로 조달

○ '16년 분담금 총액 : US$ 11,986,035

참고 아시아생산성기구 회원국별 분담금 내역 및 비중('17년 기준)

No	국가명	금액(US$)	비율(%)	비고
1	일본	5,465,722	45.60	
2	인도	1,761,606	14.70	
3	대한민국	1,190,466	9.93	
4	인도네시아	794,512	6.63	
5	이란	495,832	4.14	
6	대만	488,629	4.08	
7	태국	351,790	2.93	
8	필리핀	278,721	2.33	
9	말레이시아	270,539	2.26	
10	싱가폴	258,897	2.16	
11	파키스탄	214,219	1.79	
12	방글라데시	142,252	1.19	
13	베트남	138,217	1.15	
14	스리랑카	57,361	0.48	
15	네팔	17,272	0.14	
16	캄보디아	15,000	0.13	
17	피지	15,000	0.13	
18	라오스	15,000	0.13	
19	몽고	15,000	0.13	
총 액		**11,986,035**	**100.00**	

참고 아시아생산성기구 가입연도, 이사회 등

국 가	가입년도	APO 이사	APO 교체이사
방글라데시	1982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정)
캄보디아	2004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정)
대만(★)	1961	대만생산성본부 회장	경제부 국장(정)
피지	1984	노동고용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정)
홍콩	1963	홍콩생산성본부 회장	생산성본부 전무
인도(★)	1961	상공부 차관(정)	통상산업부 차관보(정)
인도네시아	1968	노동이민부 차관(정)	노동이민부 차관보(정)
이란	1965	이란생산성본부 회장	생산성본부 부회장
일본(★)	1961	외무성 국장(정)	외무성 부국장(정)
한국(★)	**1961**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정)**
라오스	2002	라오스생산성본부 회장	산업통상부 부국장(정)
말레이시아	1983	말레이시아생산성본부회장(정)	생산성본부 부회장(정)
몽골	1992	몽골생산성본부 회장	복지노동부 국장(정)
네팔(★)	1961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
파키스탄(★)	1961	산업부 차관(정)	산업부 차관(정)
필리핀(★)	1961	경제개발부 부국장(정)	생산성본부 회장
싱가폴	1969	싱가폴생산성본부회장(정)	생산성본부 전무(정)
스리랑카	1966	생산성추진부 차관(정)	생산성진흥부차관보(정)
태국(★)	1961	산업부 차관(정)	생산성본부 회장
베트남	1996	국가품질표준국 국장(정)	생산성본부 회장

* (★)는 원년(1961년) 가입국
* 는 민간기구

참고 6 ODA 적격 국제기구 및 ODA 편입비율

1. ODA 적격 국제기구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 다자간 ODA로 인정
- core contribution은 다자(순수다자)로 분류
- 특정 분야, 주제, 지역 등이 정해진 지원은 양자간 ODA(다자성양자)로 분류

유엔기구 및 기금 (UN: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계상비율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51
GM	Global Mechanism	100
GCF	Green Climate Fund	100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00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	United Nations	18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UNDPKO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MINURSO, MINUSCA, MINUSMA, MINUSTAH, MONUSCO, UNAMID, UNIFIL, UNIFSA, UNMIK, UNMIL, UNMIS (terminated July 2011), UNMISS, UNMIT (terminated December 2012), UNOCI]. Report contributions mission by mission in CRS++.	7
UNDPA-SZ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9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61

세계은행그룹 (WB: World Bank Group)		계상비율
AMCs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0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00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00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100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100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0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00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sation)		계상비율
WTO-ACWL	World Trade Organisation - Advisory Centre on WTO Law	100
WTO-DDAGTF	World Trade Organisation -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00
WTO-ITC	World Trade Organisation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00
지역개발은행 (RDB: Regional Development Bank)		계상비율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100
Afreximbank	African Export Import Bank	100
CAF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100
AsDB	Asian Development Bank	100
AsDF	Asian Development Fund	100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CEB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18
PTA Bank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Countries Fund	100
EBRD TFs - All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43
EBRD TFs - ODA Countries Onl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IDB FS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100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기타 다자기구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계상비율
	Adaptation Fund	100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ARC	African Risk Capacity Group	100
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100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A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100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참고 ODA 적격 국제기구, 숫자로 보는 ODA_한국수출입은행

〈참고자료 3〉

ODA 적격 국제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2)]

(1) ODA 적격 국제기구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이 다자간 ODA로 인정됨

- 일부 기구에 대한 다자간 ODA는 반영비율에 명시된 % 만큼만 인정

분류	약어	기구명	반영비율
UN기구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00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00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100
	UN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00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100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100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100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00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100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00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00

2) 2013. 10월 기준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CAF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100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IDB FS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EBRD TFs - ODA Countries Onl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EBRD TFs - All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4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Countries Fund	100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eximbank	African Export-Import Bank	100
	PTA Bank	Preferred Trade Area Bank, The Eastern and Southern Africa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기타 다자간 원조기구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Economic Co-operation	100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00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100
	CF	Commonwealth Foundation	100
	CGIAR	CGIAR Fund	100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100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100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100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100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895.8	851	595	△256	△3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프로그램코드 - 단위사업코드 - 세부사업코드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업협력과(박대규, 044-203-4230), 사무관(성항용, 420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매칭비율 - 대기업:정부=7:3, 중견기업:정부=5:5)
사업시행주체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사업목적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이 정부와 자금을 조성, 핵심 파트너로 키우고자 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 제조현장·경영 혁신 프로그램, 생산기술 향상 프로그램, 수출활성화 프로그램 등 기업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본 전제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 총 595백만원

- 21개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제공 : 552백만원

· (대기업) 18개 × 80백만원 × 30%(보조율) = 432백만원

· (중견기업) 3개 × 80백만원 × 50%(보조율) = 12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 및 공동사업비* : 43백만원

* 컨소시엄 선정·평가, 지원현황 점검, 성과분석, 워크숍 개최, 운영 수당 등

< '15년 예산내역 대비 변동된 '16년 요구 내용 >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안)
□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851백만원	595백만원
○ 생산성혁신 프로그램	851백만원 (159개 중소기업 지원)	595백만원 (21개 중소기업 지원)

□ 지원 필요성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는 民官 협력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모델

-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을 심화·확산해 나가기 위한 정부 역할 필요

○ 경영·제조현장, 생산기술, 디자인, 수출활성화 등 중소기업 입체적 진단 후 기업 상황을 고려한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종합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품질·원가·납기 등 전반의 개선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 요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895.8**	**851**	**595**	△256	△30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895.8**	851 (대기업 협력사 79개×25백만×30%) (중견기업 협력사 15개×25백만×50%) (공통사업관리)	595 (대기업 협력사 18개×80백만×30%) (중견기업 협력사 3개×80백만×50%) (공통사업관리)	△256	△30
□ 비목(합계)					
○민간경상보조(320-01)	**895.8**	851	595	△256	△3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10% 향상을 목표로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

○ 제조 중소기업 외 전 산업의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발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8.51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 8.51 - 대기업 협력사 79개× 0.25 × 30% = 5.925 - 중견기업 협력사 15개× 0.25 × 50% = 1.875 - 관리 및 공동사업비 : 0.71
'17	5.95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 595 - 대기업 협력사 18개× 80 × 30% = 4.32 - 중견기업 협력사 3개× 80 × 50% = 1.20 - 관리 및 공동사업비 : 0.43
'18	7.69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 7.69 - 대기업 협력사 18개× 80 × 30% = 4.32 - 중견기업 협력사 7개× 80 × 50% = 2.80 - 관리 및 공동사업비 : 0.57
'19	5.61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 5.61 - 대기업 협력사 14개× 80 × 30% = 3.36 - 중견기업 협력사 5개× 80 × 50% = 2 - 관리 및 공동사업비 : 0.25
'20	7.13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 7.13 - 대기업 협력사 16개× 80 × 30% = 3.84 - 중견기업 협력사 7개× 80 × 50% = 2.80 - 관리 및 공동사업비 : 0.4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27조(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추진경위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 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10.10.26, 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17.42	9.44	8.96	851	5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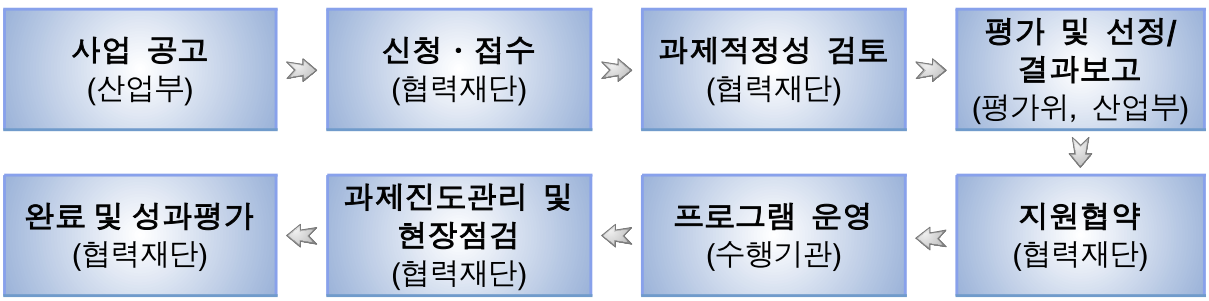

*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운영 규정 기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3,950	4,099	4,108	9	0.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4 - 3100 - 3135 - 301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업협력과장(박대규, 044-203-4230), 주무관(김은영, 423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사업('06~)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2.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성과공유제 확산(1,208백만원)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록과제 관리 등 추진 893백만원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및 성과공유 과제 관리(740백만원)
  · 성과공유제 아카데미(교육·컨설팅, 과제 발굴) 운영(90백만원)
  ·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사업비(63백만원)
-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관리(심의조정위 등) 315백만원

◇ 동반성장 투자재원(「조특법」 제8조의3)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상생법」 제2조제3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서 **출연된 재원은 전액 협력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

②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91백만원)

○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등 사업비 191백만원

-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위원회(3개 분과) 운영(120백만원)
- 공공기관 중소협력사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설문) 실시(66백만원)
- 동반성장 추진현황 점검, 정책발굴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한 공공기관 동반성장협의회(5백만원)

③ 동반성장 실태조사(724백만원)

○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 사업비 724백만원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등 사업비(350백만원)
-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 사업설명회, 전문가회의, 간담회 개최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124백만원)
- 동반성장 협력모델 발굴, 정책연구 DB 구축, 동반성장 백서 발간 등 동반성장 정책제안 및 주요 이슈 대응(250백만원)

④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534백만원)

- 동반성장 실천문화를 다양한 업종 및 2·3차 협력사로 확대를 위한 자율적 동반성장 상생협약 추진(54백만원)
-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의 집중 개최 및 동반성장 분위기 고양을 위한 동반성장 유공자포상 등 동반성장 주간행사 개최(175백만원)
- 공익캠페인, 동반성장 우수사례 전파, SNS 운영, 언론홍보 등 동반성장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확산 사업비(55백만원)
-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논의, 민간부문의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 지원(250백만원)

⑤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동반성장밸리, 536백만원)**

○ 참여 대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타사·잠재 협력사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비 395백만원

- 동반성장밸리 참여기업 및 프로그램 관리·홍보(250백만원)
- 동반성장밸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 관리(145백만원)

○ 대기업 2,3차 협력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장 및 최저리 현금조달이 가능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비 141백만원

- 상생결제 모니터링, 장려금 지급, 제도 상담 등 시스템 운영(141백만원)

⑥ **지속가능경영 확산(915백만원)**

○ 산업계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CSR 관련 국민 관심·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915백만원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포상(140백만원)
- CSR·CSV 관련 산업계 협의체 운영, 전문 인력양성, 국민참여 홍보 및 교육 실시 등(500백만원)
- 기업가정신주간 개최, CSR 필름 페스티벌 확대, CSR 논문경진대회 등 기업·국민 대상 홍보(27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23-5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추진 사항

○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기업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성장동력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생태계 조성 지원이 시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인프라구축	3,950	4,099	4,108	9	0.2
▪ 성과공유제 확산	1,550	1,365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과제 관리(750) - 성과공유 연구회/아카데미(145) -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우수 사례집 보급 등(155) -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관리(315)	1,208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과제 관리(740) - 성과공유 아카데미(90) -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우수사례공유 등(63) -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관리(315)	△157	△11.5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50	225 -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125)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70) - 동반성장 컨설팅 등(30)	191 -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120) - 중소기업 체감도조사(66) - 실무협의회(5)	△34	△15.1
▪ 동반성장 실태조사	900	810 - 동반성장지수 평가(100) - 중소기업 체감도조사(460) - 동반성장 협력모델 발굴 및 정책제안 등(250)	724 - 동반성장지수 평가(124) - 중소기업 체감도조사(350) - 동반성장 협력모델 발굴 및 정책제안 등(250)	△86	△10.6
▪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750	654 - 동반성장 주간행사(250) - 동반성장 상생협약(54) - 동반성장 우수사례 홍보 등(100) - 동반성장 문화확산 지원(250)	534 - 동반성장 주간행사(175) - 동반성장 상생협약(54) - 동반성장 우수사례 홍보 등(55) - 동반성장 문화확산 지원(250)	△120	△18.3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	395 - 동반성장밸리 참여기업 및 프로그램 관리·홍보(250) - 동반성장밸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 관리(145)	536 - 동반성장밸리 참여기업 및 프로그램 관리·홍보(250) - 동반성장밸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 관리(145)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자금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141)	141	35.7
▪ 지속가능경영 확산	500	650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포상(150) - CSR·CSV 확산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350) - 기업가정신 및 CSR 홍보 (150)	915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포상(140) - CSR·CSV 확산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500) - 기업가정신 및 CSR 홍보(275)	265	40.8
□ 비목(합계)	3,950	4,099	4,108	9	0.2
○ 민간경상보조(320-01)	3,950	4,099	4,108	9	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반성장 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중소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0.99	▪ 성과공유제 확산(13.65),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2.25), 동반성장 실태조사(8.10),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6.5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3.95), 지속가능경영 확산(6.5)
'17	41.08	▪ 성과공유제 확산(12.0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91), 동반성장 실태조사(7.24),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5.3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5.36), 지속가능경영 확산(9.15)
'18	35.19	▪ 성과공유제 확산(10.35),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64), 동반성장 실태조사(6.20),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4.60),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4.60), 지속가능경영 확산(7.80)
'19	25.7	▪ 성과공유제 확산(7.5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20), 동반성장 실태조사(4.53),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3.36),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3.36), 지속가능경영 확산(5.7)
'20	32.63	▪ 성과공유제 확산(9.6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52), 동반성장 실태조사(5.75),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4.27),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4.27), 지속가능경영 확산(7.2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성과공유제), 제14조(동반성장 실태조사), 제16조(동반성장 유공 포상),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 「산업발전법」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추진경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05.5)」에서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업 추진 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06.3)을 통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35	36	39.5	40.99	41.0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5 (35)	- (-)	- (-)	35 (35)	35 (35)	- (-)	- (-)
'14년	36 (36)	- (-)	- (-)	36 (36)	36 (36)	- (-)	- (-)
'15년	39.5 (39.5)	- (-)	- (-)	39.5 (39.5)	39.5 (39.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보통' 등급 사업으로 평가('14.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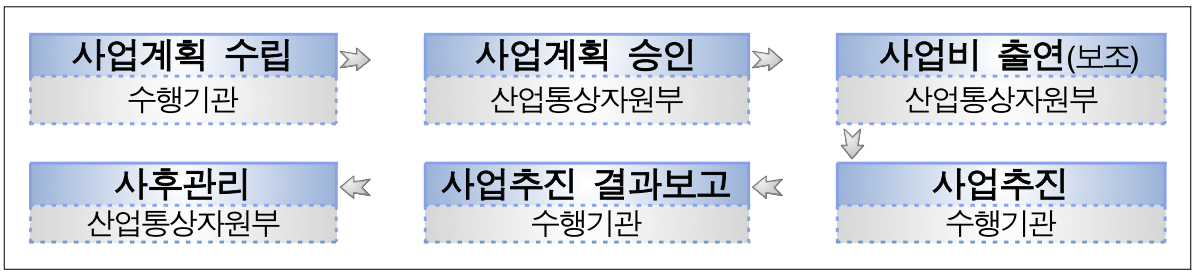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R&D)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R&D)	5,976	5,767	5,178	△589	△10.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74 - 301

* 담당자 : 산업정책국장(원동진),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문양택, 044-203-4240), 사무관(정석, 424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산업통상정책연구), 출연(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정책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청정제조기반구축)

2. 사업목적

○ (청정제조기반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공정·제품의 보급·확산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

○ (산업통상정책연구) 중장기적 기획, 법령 제개정 사전조사 등 체계적 산업통상정책을 위한 정책연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청정제조기반구축

- 중소·중견기업 청정제조기술 개발·보급 : 2,440백만원

▪ (청정공정) 전국 대상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 확산(2,240백만원)

* 청정공정기술 표준모델을 통한 환경비용 저감, 사전예방 등 환경성+경제성 확보기술 보급・확산 (300개기업 × 약 7.47백만원 = 2,240백만원)

□ **청정제조기술 개발·보급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환경규제 강화, 신기후체제 등에 대비, **중소기업 산업공정의 고효율화·친환경화** 전환 필요

- 의무화된 사후처리기술(대기·폐수방지 등) 이외에 **청정공정 분야**에 대한 자발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저조**

○ (추진방향) 중소 사업장 내 **청정제조공정의 보급을 전국 단위로 추진**

* ① 환경오염 다배출공정(열처리, 도금 등), ② 공통유틸리티(공기압축기, 연소설비), ③ 기타 환경규제 대상(악취, 소음)에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기술 보급에 초점

- **중소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투자회수기간이 짧은 **'저비용 고효율'의 청정기술 발굴·보급**에 중점

▪ (청정제품) 유니소재화 기술지도 및 보급확산(200백만원)

* 중소형가전제품의 자원순환 규제대응을 위한 유니소재화 기술 지도 (7개 기업 x 20백만원 = 140백만원)
* 유니소재화 기술 검증 및 경제성 평가 (3개기업 x 20백만원 = 6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60백만원)

② 산업통상정책연구

- 주요 정책수립 및 긴급 정책현안을 위한 자료 조사, 현안 분석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2,678백만원)

* 산출내역 : 54개과제내외 ×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청정제조기반구축

- 청정제조기술*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산업기술로써 '94년부터 UN 산업개발기구(UNIDO)에 의해 전 세계 기업에 보급되기 시작

* 동의어: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기술, 사전오염예방(Pollution Prevention)기술

청정생산 정의 :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① **자원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체와 ②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 환경전략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 (UNEP)

** '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의제21(Agenda21)에서 '청정생산'을 산업계의 역할로 규명

- 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 기업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자원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함으로써 경제성 제고 효과

- 본 기술은 규제로써 의무화된 사후처리기술*과는 달리 오염발생 이전에 적용하는 기술로써,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본 사업과 같은 정부 유인책(기반조성) 필요

*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저감, 수질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 한편 최근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에서 제품과 관련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Global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

* 국제환경규제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력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 및 수출 차질 우려

○ **산업통상정책연구**

- 정책의 타당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통상정책 개발·수립 및 법령 제·개정 분석 등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 '99년 '정부출연연등의 설립운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처 소관의 연구기관이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서 각 부처의 조사·연구기능 약화 우려

- IT, SW등 산업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글로벌전문기업 등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산업부의 연구수요는 매년 증가하나, 정책연구 용역 예산은 턱없이 부족

* 신청/선정 건수 : (13) 85/44건, (14) 92/63건, (15) 102/69건

- 결과물 공개(PRISM)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계 및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간접 지원

* 아울러, 산업통상정책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중장기 기획, 성과분석 등과 연계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사업 추진을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R&D)	5,976	5,767	5,178	△589	△10.2
▪ 청정제조기반구축 (산출근거)	2,936	3,089 (계속3개×1,006백만×100%) (기평비 72백만원)	2,500 (계속2개×1,220백만×100%)] (기평비 60백만원)	△589	△19.1
▪ 산업통상정책연구 (산출근거)	3,040	2,678 (54개×50백만×100%)	2,678 (54개×50백만×100%)	-	-
□ 비목(합계)	5,976	5,767	5,178	△589	△10.2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2,936	3,089	2,500	△589	△19.1
○ 정책연구비 (260-02)	3,040	2,678	2,678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청정제조기반구축 >

○ '20년까지 다수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청정제조기술을 발굴하여 전국 차원의 중소 제조사업장에 보급·확산

- (1단계 : '10~'15) 산업계 기술수요 분석 / 지역별 기술보급 네트워크 구축 / 방법론 개발, 사업모델 개발 등 기술개발·보급 기반 구축

- (2단계 : '16~) 표준 청정제조기술 DB 구축 / 전국 단위 전문가 Pool 운영 / 기술 개발(공정기술, 친환경제품 개발) 및 보급

< 산업통상정책연구 >

○ 산업통상정책 개발 및 법령정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및 긴급 현안대응을 위한 수시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7.67	▪ 청정제조기반구축(30.89), 산업통상정책연구(26.78)
'17	57.16	▪ 청정제조기반구축(30.38), 산업통상정책연구(26.78)
'18	57.16	▪ 청정제조기반구축(30.38), 산업통상정책연구(26.78)
'19	57.16	▪ 청정제조기반구축(30.38), 산업통상정책연구(26.78)
'20	56.50	▪ 청정제조기반구축(30.03), 산업통상정책연구(26.4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청정제조기반구축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산업환경통계 등 실태조사), 제6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 산업통상정책연구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3조(산업기술혁신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등
- 산업발전법 제4조(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추진경위

< 청정제조기반구축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시범 시행('95.12월)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 확대 시행('97.11월)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중 일부를 에특회계로 이관하면서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07.1월)
- 청정제조 기반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개편('09.1월)
- R&D 구조개편에 따라 청정제조 기반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및 산업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으로 분리('10.5월)

< 산업통상정책연구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향 입법 (행안부, '11.12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정비(기재부, '12.1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R&D)	62.5	59.4	57.6	57.7	5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청정제조기반구축 : 해당 없음

○ 산업통상정책연구

- (이월 사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 추진한 긴급 정책연구용역 수요 증가 및 정책연구용역의 완성도를 상향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존 연구용역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 (불용 사유) 당초 용역계약시 계획한 출장, 회의 등 용역별 세부집행내역의 미이행 비목을 연구용역 완료후 정산시 미지급하여 불용이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62.50	4.39	-	66.89	62.23 (62.23)	1.78	2.88
'14년	59.38	1.78	-	61.16	55.45 (55.45)	5.58	0.13
'15년	57.55	5.58		63.13	59.76 (59.76)	2.78	0.5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회(산업위 '14년결산 검토보고서) 지적

- 지적사항 :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으며, 이월과제수가 많은 등 집행·관리가 부적절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성과지표를 추가

○ 하반기 정기수요조사 시기를 앞당기고 계약·집행 독려 등 과제이월 최소화 추진

2) '16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결과 ('16.3월, 보통)

○ 제도적 장치 마련, 성과분석을 통해 청정생산기술의 사업화와 실용화 연계를 모색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전략에 따라서 성과목표의 재조정이 요구됨

○ 정책연구의 경우, 정책반영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성과지표를 추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 청정생산기술 지원 프로그램

< EcoBusinessPlan Vienna : 오스트리아 >

□ 비엔나 시청이 1998년부터 시행한 청정생산 지원프로그램으로 'Green and Clean' 방식의 친환경 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청정생산 지원 프로그램

○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경우 프로그램에 등록된 70여명의 청정생산 컨설턴트와 연계하여 지원

* EcoBonus, Ecoprofit, ISO 14001, EMAS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

○ 약 1천여 기업이 참가하여 11천개 이상의 사업(약 121.5백만 유로 절감)이 시행('15년 기준)되었고, 국제적인 확장을 시도 중임

* EU에서 674천 유로를 지원받아 헝가리 Györ시의 에너지 효율 및 능력 배양 프로그램 진행

* 그리스의 Athens, 인도의 Chennai(Madras)시 등과 협력, 현지에 맞는 EcoBusinessPlan 개발을 지원

<Eco-BusinessPlan Vienna 구성 항목>

구 분	주요 내용
EcoBonus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폐기물 발생 방지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
Ecoprofit	• 빠른 자원 절감 효과를 원하는 기업 대상 • 자원 및 투입 원자재의 효율적 이용, 공정 최적화 및 폐기물 발생 방지 등
EcoQuality Label for Tourism	• 숙박 산업 대상 • 용제의 경제적, 효과적 사용, 폐기물 발생 방지 및 분리 수거, 난방 비용 절감 등
ISO 14001	• 운영 과정에 환경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국제적인 환경경영 시스템 • 기업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지원받음
EMAS(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udit Scheme)	• 종합 환경 경영 패키지 • ISO 14001 항목을 포함하여 환경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 선언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준비에 도움이 됨
Sustainable Development	• 경제/환경/사회적으로 균형이 갖춰진 지속가능한 경영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Pilot project on sustainable products and services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상품의 개선 가능성을 평가
Pilot project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for small manufacturers	• 소형/초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EMAS나 ISO 14001등에 상응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추진절차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세부계획 수립
신규 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협약체결
연차·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성과활용관리	전담기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접수

<산업통상정책연구>

부내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정책연구 수요조사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 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과제 선정
연구용역 발주	부내 소관과	일상감사 → 공고(조달청)
연구용역 추진	주관기관	중간보고/평가
연구용역 완료	부내 소관과	최종보고/평가
정책연구용역시스템 (프리즘) 등록	부내 소관과	성과활용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별첨참조

참고 **내역사업 관련 상세 설명자료**

1. 청정제조기반구축

□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공정·제품 보급·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 촉진		
사업기간	20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지원기간	2010 ~ (계속)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출연		
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6조의2, 제13조~제19조		
담당자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정석 사무관(☏ 044-203-4243)		

□ 사업내용(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청정제조기술 개발·보급

- (청정공정) 전국 대상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확산

  * 청정공정기술 표준모델을 통한 환경비용 저감, 사전예방 등 환경성+경제성 확보기술 보급·확산 (300개 기업)

- (청정제품) 유니소재화 기술지도 및 보급확산

  * 중소형가전제품의 자원순환 규제대응을 위한 유니소재화 기술 지도 (7개기업)
  * 유니소재화 기술 검증 및 경제성 평가

□ 기대효과 : 사업혁신으로 예산 삭감에도 성과는 극대화

○ 공정, 제품분야에 청정제조기술을 개발·확산하여 환경이슈 선점,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향상 등 환경 및 경제적 효과 기대

- 청정분야 기업투자 유도 : ('15) 32억 → ('17) 60억
- 기업 원가절감액 : ('15) 82억 → ('17) 200억 (2.5배)

□ 사업성과 (~15)

① 청정생산공정 확산

○ 매년 5개 지역* 100개 중소 사업장(누적 851개)에 대해 청정공정 개발·보급

* 5개지역 : 안산, 대구, 울산, 부산, 광주

- 원가절감액

구분	'13년	'14년	'15년
억원	52억원	112억원	82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KDI)에서 활용하는 사회적 할인율(5.5%) 적용

** 신규설비의 수명(내용연수) 등을 감안, 5년간의 원가절감액분을 감안

·물품 내용연수(조달청,'12.1) : 열교환기 10년, 보일러 11년, 공기압축기 11년, 열펌프 9년 등

- 기업의 자발적 투자액

구분	'13년	'14년	'15년
억원	12억원	19억원	32억원

② 청정제품 개발

○ 유니소재화 제품 개발 기획 및 지원

- 재활용 설계에 대한 유니소재화 기술 개선점 및 지재권확보 가능성 분석
- 시제품 개발(3건) : 스퍼터링타켓, 기화식가습기, 셋톱박스

	스퍼터링 타겟 : LCD 생산시 제조공정부품	기화식가습기	셋톱박스
대상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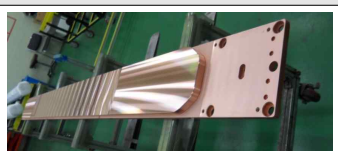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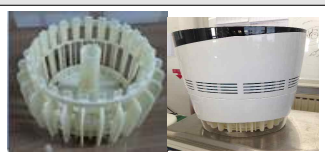	
소재 개선방향	2개→2개 (Cu, Indium→Cu, graphite)	2개→2개 (POM, PP→POM, ABS)	3개→2개 (ABS, Steel, PC → re-ABS, Steel)
구조 개선방향	나사체결형 홀(75ea) 추가 체결방법 변경을 통한 분리용이 설계	Disk Body 및 Blade의 일체형	Rear Cover 및 Bottom ocver 일체화, Rear cover Screw 2개 감소

○ 유니소재화 개념 및 일반원칙의 국제표준화 추진

- ISO TC207(환경경영) 총회 참석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력국가* 섭외

* (완료) 스웨덴, 스페인, 중국, 일본, EC, 영국, (협의중) 말레이시아, 핀란드 등

※ [참고] 국제표준화 추진 단계(전체소요기간 : 3년(기본))

예비단계(PWI) → **제안단계(NWIP)** → 준비단계(WD) → 위원회단계(CD) → 질의단계(DIS) → 승인단계(FDIS) → 출판단계(ISO)

- PWI단계는 완료('14), NWIP를 제안하기 위해 최소 5개국 이상의 적극 참여가 필요
- '16년도 ISO TC207 총회에 제안을 목표로 준비중

2. 산업통상정책연구

□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통상경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통상정책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지원기간	2010 ~ (계속)	지원대상	국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수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추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		
담당자	(산업부) 산업정책과 배명균 주무관(☏ 044-203-4209)		

□ 사업내용(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법령 제·개정 등을 위한 사전조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통상정책사업 추진

- 주요 정책수립 및 긴급 정책현안을 위한 자료 조사, 현안 분석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

□ 기대효과·성과

○ 산업통상정책 개발 및 법령정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및 긴급 현안대응

- 현안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극대화를 통해 국정과제, 업무보고 등 차질 없는 이행·달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8,000	12,450	43,795	31,345	251.8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60 - 304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업협력과장(박대규, 044-203-4230), 사무관(정민규, 044-203-42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20년(6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출연
사업시행주체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을 통해 스마트 생산 방식을 확산하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

*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취약한 중소제조 공정에서의 로봇 도입 및 활용 지원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산업의 내수시장 및 수출확대 기반 마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39,550백만원)

- (개별공장형) 686개사 × 100백만원 × 50% = 34,300백만원
- (클라우드형) 150개사 × 70백만원 × 50% = 5,250백만원

②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기반 구축 : 1,245백만원

- 사업 운영·관리 및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등(1,045백만원), 스마트공장 성과확산·홍보(100백만원), 스마트공장 표준·인증제도 운영(50백만원), 핵심운영인력 교육 등(50백만원)

③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3,000백만원

- 미래 제조 환경에 적합한 첨단제조 로봇 사용을 장려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과제 참여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유도

  * (로봇도입지원) R&D를 통해 국산화가 완료된 첨단제조로봇(협업로봇·양팔로봇 등) 중심의 시범 적용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유도

  * (시범공정) 홍보·체험이 가능한 시범공정을 통해 로봇 도입 시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래형 제조공장 표본으로 제시

  * 12개 과제 × 250백만원 = 3,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생산방식, 제품, 비즈니스 등 모든 제조분야 가치사슬 단계에 IT가 광범위하게 융합되면서 제조업 스마트 산업혁명 본격화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

○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제조분야별·공정별 우수 로봇도입 성공사례 발굴이 절실

- 중소제조기업의 로봇활용 촉진은 제조업 생산성·품질 향상 등 경쟁력 제고로 제조업의 再도약의 기회 제공

- 중소제조업의 로봇적용 노하우 축적을 통해 로봇기업(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전략 사업화를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000	12,450	43,795	31,345	251.8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7,550 (14x200백x50%/ 86x100백x25%/ 80x100백x50%)	8,000 (200개×80백만원×50%)	39,550 개별공장형 (686개×100백만×50%) 클라우드형 (150개×70백만×50%)	31,550	394.4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기반 구축	450 (컨설팅, 교육 등 250, 운영관리 200)	700 (운영관리 400, 성과확산 100, 표준 인증 100, 안전성 100)	1,245 (운영관리 1,045, 성과확산 100, 표준 인증 50, 안전성 50)	545	77.9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3,750 (15개사x250백만)	3,000 (12개×500백만×50%)	△750	△20
□ 비목(합계)	8,000	12,450	43,795	31,345	251.8
○ 민간경상보조금(320-01)	8,000	8,700	40,795	32,095	368.9
○ 사업출연금(350-02)	-	3,750	3,000	△750	△2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공장 및 로봇 확산 추진

○ 다양한 공정(업종)에 적용가능한 제조로봇 발굴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입증하고, 나아가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

* 중소제조업에 적용 가능한 제조로봇을 발굴하여 로봇적용 노하우(SI기술 등)를 축적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제조로봇의 저변 확대 유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24.5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80 ▪ 보급확산 기반구축 : 7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37.5
‘17	437.95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395.5 ▪ 보급확산 기반구축 : 12.45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30
‘18	470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400 ▪ 보급확산 기반구축 : 20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50
‘19	470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400 ▪ 보급확산 기반구축 : 20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50
‘20	470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400 ▪ 보급확산 기반구축 : 20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5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27조(사업의 장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자금지원),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등)

○ 추진경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과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 ‘14.6.26)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 발표 (제7차 무투회의, ‘15.3.19)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안」 발표 (제조혁신위원회, ‘15.10.29)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표 (관계부처합동 로봇산업정책협의회, ‘16.11.1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	-	80	124.5	4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년	80 (80)	0 (0)	0 (0)	80 (80)	80 (80)	0 (0)	0 (0)
'16년	124.5 (124.5)	0 (0)	0 (0)	124.5 (124.5)	124.5 (124.5)	0 (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 첨단 제조 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전략

○ (추진배경)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 ICT(정보(데이터)·SW·네트워킹), 자동화, 센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소재 개발·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을 통해 제조 혁신을 지원

○ (주요정책) 2012년 7월 '미국 제조업 재생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

- 제조 혁신기구(IMI,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제조분야 원천 및 사업화기술 개발, 지방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국에 15개 설치

- 제조혁신 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IMI가 개발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국 네트워크

-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첨단제조업을 최우선 지원 분야로 하도록 권고

② **일본** : 산업재흥(産業再興)플랜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혁신

○ (추진배경) 연구개발 투자 부진, 설비투자 감소, 비즈니스 모델 한계, 경영자원 효율성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한 일본 제조업의 위기 극복

○ (주요정책) 2013년 6월에 발표한 일본재흥전략 중 하나인 '일본 산업재흥플랜'에서는 첨단 설비투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조업 부흥을 독려

- 범부처 전략적 혁신진흥사업(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을 통해 에너지 및 차세대 인프라 기술 투자 강화

※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노베이션 창출 프로그램(CoI STREAM)'에서도 '인터넷×3D프린터'라는 ICT 기반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추진

③ **독일** :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구상 및 추진

○ (추진배경)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하이테크 전략 2020' 전략을 추진

○ (주요정책) 2011년 하이테크 전략 2020에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창조경제 전략인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주요 테마로 포함

- 제조업에 ICT를 접목해 모든 생산공정, 조달 및 물류,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이 목표

-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센서 등의 기반 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확산에 집중

(5) 사업추진절차

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①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 사업자 → 산업부	o 신청서식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② 보조금 교부 산업부 → 보조사업자	o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③ 보조사업 수행 및 사업 착수·추진상황보고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보조사업 내용변경,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시 승인 o 사업착수보고, 사업수행상황보고
⬇	
④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보조(출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을 완료시, 폐지의 승인을 얻은때, 회계연도 종료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때
⬇	
⑤ 보조금 금액 확정(정산) 및 통지 산업부 → 보조사업자	o 보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확인 o 보조금액 확정
⬇	
⑥ 교부잔액 지급 또는 정산 잔액 반납 조치 보조사업자 → 산업부	o 수입이자 및 잔액 반납

②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

사업계획수립	⇒	사업수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 및 분석
산업부		진흥원 (수행기관)		진흥원 (수행기관)		산업부, 진흥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1,895	1,572	1,187	△385	△24.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47 - 301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후변화산업환경과(문양택, 044-203-4240), 사무관(김수현, 424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사업목적

○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사전 대비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기반 구축

○ 금속별 전과정에 대한 물질흐름분석통계 및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시광산자원의 이용 극대화 및 자원생산성 향상 기반 강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 국제환경규제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667백만원

▪ 주요 수출국가의 제품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자료* 생산 및 산업계 전파** (465백만원)

* 규제 개요, 제개정 경과, 원문/번역문, 대응 가이드, 분석보고서 및 최신뉴스

** 전용홈페이지(www.compass.or.kr) 및 현장설명회(엑스포) 등

▪ 환경규제 대응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202백만원)

- 제품 내 화학물질 통합관리 및 전달시스템 운영 : 70백만원

▪ 기업이 제조·생산하는 제품 내 규제화학물질*정보를 공급망에서 통합관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 고도화(현재 23개 중견·중소기업과 연관기업에 보급)

* EU REACH 규정(화학물질관리규정), EU RoHS 지침(전기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미국 CPSIA(소비자 제품 안전개선법) 등

②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금속별 전과정 흐름 특징 분석 및 통계구축(450백만원)

* 8개 금속 : 금, 은, 크롬, 바나듐, 탄탈륨, 니오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 지원 필요성

○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형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 대응에 한계 표출

○ 산업계의 환경규제 관리수준 고도화가 필요하나, 대기업 외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능력은 낮은 수준

- 중소기업의 44%가 경영상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대응 비용, 전문 인력,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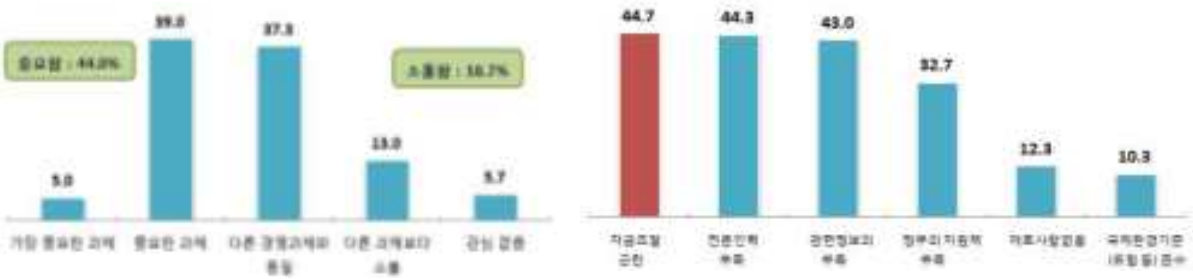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인식 및 대응 애로('15.6)>

- 국제규제에 대한 **정보부족과, 전문가확보・비용문제로 수출포기・수출진행중 반품** 등의 사례 발생

※ 대기업과 동반으로 수출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 단독수출시 환경규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 경험있는 전문기관이 적고(컨설팅, 시험분석 가능기관 해외기관 포함 6개), 건당 10억~20억의 컨설팅비용 소요

○ 산업부는 **'09년부터 국제환경규제 기업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 국제환경규제 정보, 분석자료, 온라인상담, 현장컨설팅으로 기본적이고 간접적 방식의 지원 추진 중

※ '15년 기준 4,616개 기업가입, 연 221,128명 이용 중이며, 설문결과 응답기업의 20%는 매출 발생 등 성과

- 그러나, 다수기업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의 성과는 제한적이며, **시급하고 복잡한 사안의 해결에는 한계**

- **對중소기업 직접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필요**

○ 자원생산성기반구축을 통한 금속별 물질흐름분석통계 구축은 금속별 용도, 사용량, 연관 산업규모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금속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등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

- 금속별 물질흐름분석통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가전략금속 선정 및 비축량 산정시 필수적 자료

- 또한, 폐자원의 산업원료화(재자원화) 및 도시광산자원(금속스크랩)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

- (만족도) 금속별 물질흐름통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통계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가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1,895	1,572	1,187	△385	△24.5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사업 (산출근거)	995 국제환경규제 정보 분석·컨설팅 752 (DB 구입 140 + 동향 분석 240 + 시스템 운영 132 + 규제정보 생산 60 + 엑스포 80 + 컨설팅 100) 제품 내 화학물질정보 통합 관리 및 전달시스템 운영 123 (시스템 고도화 53 + 규제 DB 업데이트 34 + 시스템 보안·운영 36) 환경규제 대응현황 조사 및 영향지수 측정 120 (현황조사 50 +영향지수 측정 70)	827 국제환경규제 정보 분석·컨설팅 667 (DB 구입 90 + 동향 분석 120 + 시스템 운영 40 + 규제정보 생산 135 + 엑스포 80 + 컨설팅 202) 제품 내 화학물질정보 통합 관리 및 전달시스템 운영 95 (시스템 고도화 80 + 규제 DB 업데이트 15) 환경규제 대응현황 조사 및 영향지수 측정 65 (현황조사 30 +영향지수 측정 35)	737 국제환경규제 정보 분석·컨설팅 667 (DB 구입 90 +동향 분석 4개 분야×30 + 시스템 운영 40 + 규제정보 생산 135 + 엑스포 80 + 컨설팅 202) 제품 내 화학물질정보 통합 관리 및 전달시스템 운영 70 (시스템 고도화 및 툴개발 70)	△90	△10.9
▪ 자원생산성기반구축 (산출근거)	900 (통계 구축 금속 7개×75+ 통계 갱신 8개×50)	745 (통계 갱신 금속 12개×62)	450 (통계 갱신 금속 8개×56)	△295	△39.6
□ 비목(합계)	1,895	1,572	1,187	△385	△24.5
○ 사업출연금(350-02)	1,895	1,572	1,187	△385	△24.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출연계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구조로 전환

- 환경규제 대응 준비 및 이행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까지 이어지는 밀착형 기업 지원 확대

○ 자원고갈의 위기와 자원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광산자원의 이용 극대화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5.72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8.27)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7.45)
'17	11.87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7.37)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4.5)
'18	14.22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7.48)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6.74)
'19	10.38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5.46)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4.92)
'20	13.17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6.93)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6.2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0조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환경규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4. 기타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지원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제37조

제37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3.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5.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6.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7.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산업발전법 제16조, 제17조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추진경위

- ‘95. 12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95. 12월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
- ‘99. 1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 ‘06. 6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07~’09 폐기물에서 금속자원 추출 및 대체소재 기술개발 지원
- ‘08. 3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_“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 ‘08. 12월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수립(국제환경규범과 시장확대)
- ‘09. 1월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사업 시행
- ‘09. 2월 녹색성장기본법에 ‘국제규범 대응(제35조)’ 반영
- ‘09. 5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소
- ‘09. 5월 산업발전법 개정 “자원생산성 향상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근거 마련
- ‘09. 7월 VIP 주재 민관투자활성화(도시광산업육성안) 대책 발표
- ‘09. 7월 지식경제부 지정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설립
- ‘09. 9월 도시광산 활성화(폐금속 자원재활용) 방안 국무회의 보고
- ‘10. 1월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 시행
- ‘11. 5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신설
- ‘11. 12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16.45	16.45	18.95	15.72	11.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6.45 (16.45)	- ( )	- ( )	16.45 (16.45)	16.45 (16.45)	- ( )	- ( )
'14년	16.45 (16.45)	- ( )	- ( )	16.45 (16.45)	16.45 (16.45)	- ( )	- ( )
'15년	18.95 (18.95)	- ( )	- ( )	18.95 (18.95)	18.95 (18.95)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기반구축사업)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12년)

○ (자원생산성기반구축사업) '10년도 사업 자율평가

- 평가결과 : 65점
- 검토의견 : ① 성과지표를 연간 통계 구축 금속수가 아닌, 총 구축 목표대비 구축 공정률로 지표 전환 제시, ② 성과지표로 DB 활용도 추가 제시
- 검토의견 대응완료 : 성과지표를 구축 공정률로 전환 및 DB 활용도 추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글로벌 환경규제 관련 >

○ 해외사례

- (미국)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벨기에 브뤼셀에 'US Mission to EU'를 설치하여 환경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EU 기관과의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
- (EU) '07년부터 약 5백만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 민간사례

- (ENHESA) "Global Regulatory Tracking" 시스템을 구축 전세계 모든 환경정책 및 규제정보를 12대 주제로 표준화, 분류하여 고객에게 법률정보 및 조언 등 고부가가치의 컨설팅・서비스 제공
- (GE) 특정화학물질이 규제 또는 연구 및 관리대상이 되기 최소 5~10년 전에 해당 물질 동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Global Chemical Tracking 시스템 구축・운영

< 물질흐름통계구축(주요 선진국) >

○ 주요 선진국은 **물질흐름분석을 위한 통계체계를 운영**하고,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을 지정·운영

○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통합적인 자원흐름 **정보 제공**, 관련 **기술개발**, **자원의 개발 및 비축**까지 담당

-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물질흐름 통계구축 : '01년부터 금속의 물질흐름에 대한 통계구축 및 매년 갱신을 통한 관련정보 제공 중(약57종)

* '07부터 경산성이 JOGMEC을 통해 민간기업·대학 등의 연구 지원

○ **(독일 지질자원연구소) 수급량**, 5년간 가격추이, 대체재 현황, 재자원화율, 문제점, 전략적 의미, 특이사항 등 **자원통합정보 제공**

○ **(미국 지질조사소)** 국내외 수급, 소비현황, 1, 2차 자원생산량, 비축량, 종사인력, 재활용률, 가격, 수입원, 국제가격동향 등 **자원통합정보 제공**

* **USGS**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BGR** :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JOGMEG** :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5) 사업추진절차

총 괄 조 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정책 및 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사업총괄관리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컨설팅, 홍보, 포털 구축·운영 등)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물질흐름통계 구축 및 분석 등) - 컨설팅 기업, 연구소, IT업체 등 · 자료조사 대행, 컨설팅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보수 등
지 원 대 상	
국내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 국내 기업 정책담당자 등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 기업의 자원 확보, 가공설비 투자, 마케팅, 교역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등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별첨 참조)

참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업지원 주요 성과

□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업지원성과 조사 결과('14.12월)

○ 187개 기업 중 57개 기업(30.5%)은 국제환경규제 정보, 컨설팅, 세미나 등의 활용을 통해 **매출발생 및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 발생'**

○ 사업화 성공 건수는 평균 2.2건, 시장점유율 확대비율은 평균 8.0%, 원가 절감 건수 평균 4.8건, 수출입 기여 건수 평균 2.2건으로 나타남

< 매출 발생/시장점유율 확대 성과 관련 (단위:건/%)>

			정부지원 이후 사업화 성공 건수	시장점유율 확대 비율	원가 절감 건수	수출입 기여 건수
		사례수	(건)	(%)	(건)	(건)
전체		(57)	2.2	8.0	4.8	2.2
기업규모	대기업	(18)	1.0	8.7	12.3	2.1
	중소기업	(26)	3.6	7.7	1.7	2.5
	벤처기업	(4)	1.3	10.0	1.0	1.0
	기타	(9)	0.8	6.8	0.3	2.1

□ 중소기업 직접 지원을 통한 수출 성사 사례

○ 해수 살균장치 제조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여 단기간 약 14만불 수출 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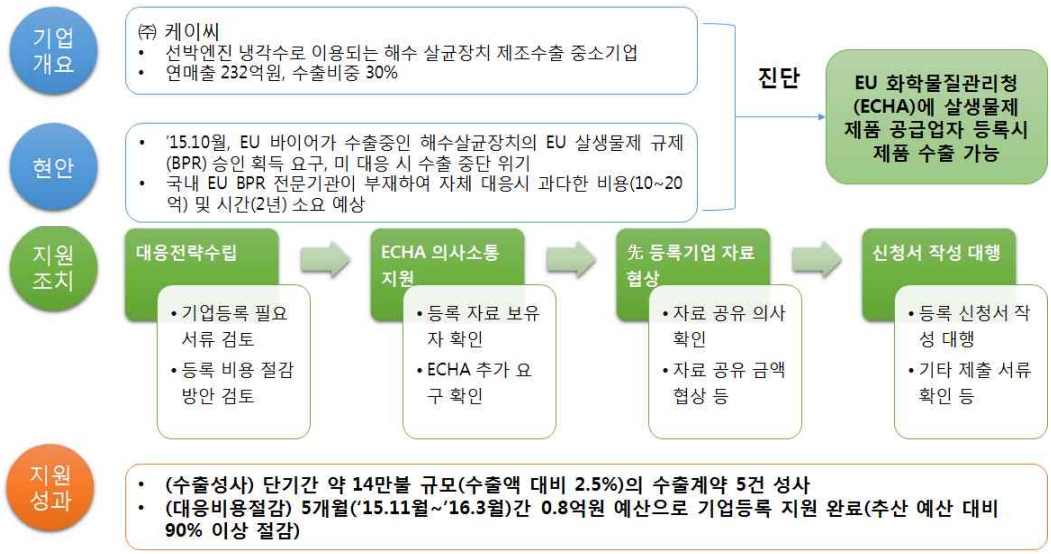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25,062	25,062	19,740	△5,322	△21.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500 - 3572 - 302

* 담당자 : 산업정책국장(원동진),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문양택, 044-203-4240), 사무관(정석, 044-203-424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11~'16년까지 총 지원사업비 : 1,600억원)
사업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사업기간 3년 이내
지원조건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33~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2. 사업목적

○ 튜닝부품, 청정생산, 개인용이동수단,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튜닝부품기술개발: ('16년) 3,000백만원 → ('17년) 2,200백만원
- (계속) 1,700백만원 = 4개 과제 × 425백만원
- (신규) 500백만원 = 2개 과제 × 333백만원 × 9/12

②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16년) 18,270백만원→ ('17년) 12,140백만원
- (계속) 9,000백만원 = 24개 과제 × 450백만 × 10/12
- (신규) 3,140백만원 = 10개 과제 × 418.7백만원 × 9/12

③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16년) 3,000백만원→ ('17년) 4,825백만원

- (계속) 3,205백만원 = 5개 과제 × 754백만 × 10/12
- (신규) 1,620백만원 = 4개 과제 × 540백만 × 9/12

④ 기획평가관리비: 과제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해 전체 예산의 2.9% 편성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1-1-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 동 사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25,062**	**25,062**	**19,740**	△5,322	△21.2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산출근거)	**19,970**	**18,270** (39개×468백만×100%)	**12,140** (신규:10개×419백만×75% 계속:24개×450백만×83%)	△6,130	△33.6
▪ 튜닝부품기술개발 (산출근거)	**1,900**	**3,000** (8개×375백만×100%)	**2,200** (신규:2개×333백만×83% 계속:4개×425백만×100%)	△800	△26.7
▪ 개인용이동수단 (산출근거)	**2,250**	-	-	0	-
▪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산출근거)	-	**3,000** (5개×600백만×100%)	**4,825** (신규:4개×540백만×75% 계속:5개×754백만×85%)	1,825	60.8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942**	**792** (사업비의 3.2%)	**575** (사업비의 2.9%)	△217	△27.4
□ 비목(합계)	**25,062**	**25,062**	**19,740**	△5,322	21.2%
○ 출연(360-05)	25,062	25,062	19,740	△5,322	21.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 기존 소규모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엄선하여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50.62	· 청정생산 : 182.7 · 튜닝부품기술개발 : 30 · 개인용이동수단 : 30 · 기획평가관리비 : 7.92
'17	263.26	· 청정생산 : 191.91 · 튜닝부품기술개발 : 31.51 · 그린자동차 : 31.51 · 기획평가관리비 : 8.32
'18	294.40	· 청정생산 : 214.62 · 튜닝부품기술개발 : 35.24 · 그린자동차 : 35.24 · 기획평가관리비 : 9.3
'19	300.62	· 청정생산 : 248.95 · 그린자동차 : 40.88 · 기획평가관리비 : 10.79
'20	266.25	· 청정생산 : 258.25 · 기획평가관리비 : 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13. (중략)

○ 추진경위

- '10.6. 산업부 R&D사업 체계개편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 및 신산업)으로 통합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해양레저장비,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디자인전문기술)
- '15년 "해양레저장비" 중기청 이관
- '15년 튜닝부품기술개발, 개인용이동수단, 청청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사업을 생산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생산시스템산업 전문기술개발	272.75	235.36	250.62	250.62	197.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자체평가('16.3) 실시 결과: 미흡

* 개편 전 세부사업인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에 대한 평가 결과

- 논문의 질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특허 SMART 지표가 하락 추세이며 매출액이 타 사업 수준과 유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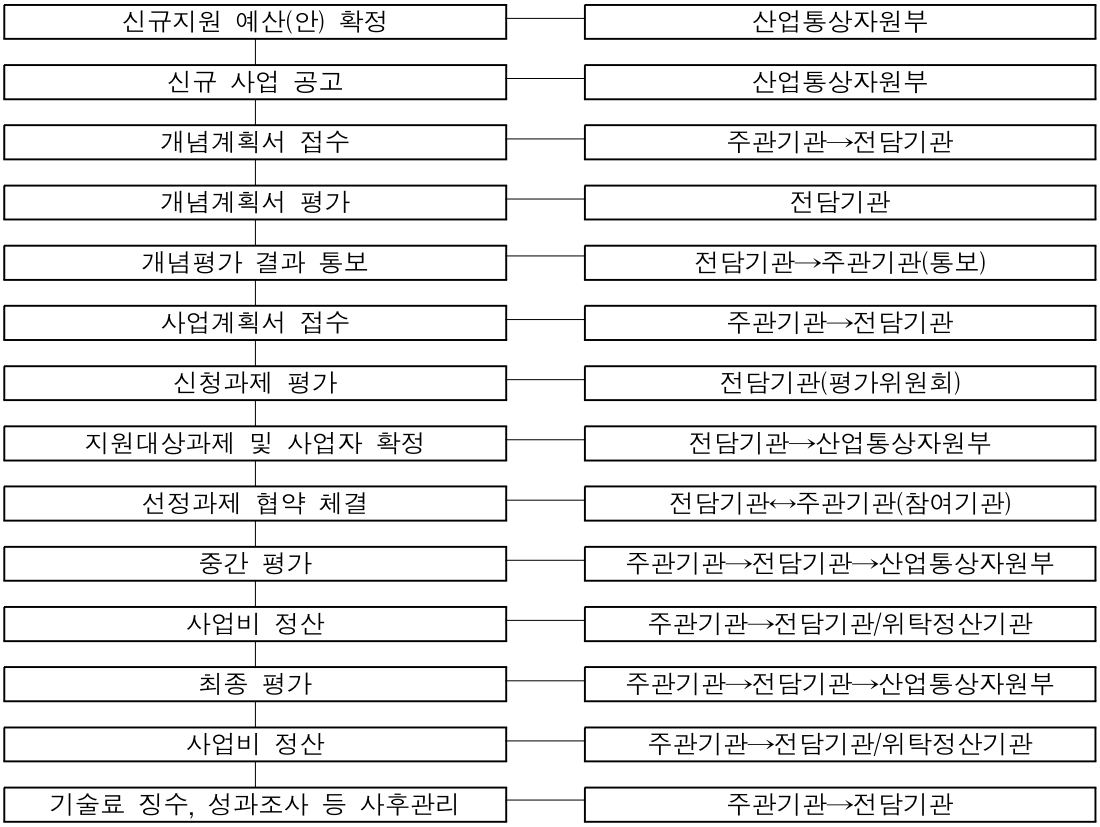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튜닝부품기술개발

1. 튜닝부품기술개발 사업 현황

○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100조원**('12 기준)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을 위시하여 **연평균 5%**씩 성장

< 주요국 튜닝시장 규모 현황('12)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35조원	23조원	17조원	14조원	0.5조원

출처 : 자동차 튜닝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학회, '12)

○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0.5조원)가 매우 작음**

* '13년 자동차 생산량(만대, 비중) : 중국 2,211(25.3%), 미국 1,104(12.6%), 일본 963(11.0%), 독일 586(6.7%), 한국 452(5.2%)

-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0.5조/30조)에 불과하여 **활성화도 부족**
- 국내 튜닝 시장의 90%이상이 외산이 장악

* 국내 튜닝부품 업체는 1,600여개, 튜닝숍은 500여개로 영세한 규모

2. 튜닝부품기술개발 사업 필요성

○ '14.6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 추진 요구됨

-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12) 0.5조원/1만명 → ('17) **2.7조원/2만명** → ('20) **4조원/4만명**

○ 해외 튜닝 전문 업체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 중소 영세 튜닝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필요

-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지원

○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100조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필요

-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우수 품질기준에 맞추어 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 지원

참고2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1. 사업목적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제거 또는 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 향상

2. 청정생산기반 지원확대 필요성

○ 국내 우위기술을 토대로 선제대응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개발 →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시장 선점 지원 확대 필요

- 대기·수질 분야 등 총 164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시행중이며('11년말 기준), EU의 선도적 환경관련 규제가 베트남 등 신흥국가로 확산 중

  * EU RoHSII는 기존의 6개 규제물질(Pb, Hg, Cr 등)에 대한 최대허용농도 규정, 베트남 RoHS 시행('12.12.1) 등 신흥국가들의 유해물질규제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

○ **(국내현황)** 국제 환경규제 대부분이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산업 등이며, 규제 시행국가 또한 국내 주요 수출국가임

- 국내 산업별 수출에서 56%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수출산업이 환경규제의 위험에 1차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전기·전자(WEEE, RoHS, 중국 가전리사이클법, 일본 J-MOSS 등), 자동차(유럽 ELV, 미국 CAFE 등), 화학 및 전 산업(REACH 등)

-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수출산업에서 청정생산기술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청정생산기술 연관 시장 규모 분석

참고3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

1. 사업목적

○ 연비규제 강화, 무공해차 의무판매 등 세계 자동차시장 변화에 대응

○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력구동 그린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효율 향상(부품 R&D)과 통합시스템 평가(실증R&D) 기술개발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2. 그린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 2020년 전력기반 그린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 점유 예상

- 2020년 전력기반 그린자동차는 900만대 규모로 성장 예상 (전체 자동차시장의 10%)
- 국내 부품社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환경 미숙,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높아 해외수출인증, 실차단위 성능평가 체계가 미약한 상황

3. 지원 필요성

○ 세계적인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에 대응 필요

- 2020년 유럽 자동차 연비규제 26.5km/ℓ, 일본 20.3km/ℓ, 국내 20.2km/ℓ
- 2025년 미국 자동차 연비규제 23.9km/ℓ, 업체별 평균연비 미달시 패널티

※ 18년부터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 '18년 판매대수의 4.5%, '21년 12% 이상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

: 친환경 가중치 1크레디트 당 5,000달러(517만원) 벌금 부과, 10만대 기준 '18년 2250만 달러(2,350억원), '21년부터 6,000만 달러(6,230억원) 연간 패널티 지불

○ 국내외 시장 수요 선점을 위한 부품의 상용화 및 실증 필요

- 국내외 완성차 업체 장거리주행 그린자동차 대거 출시 경쟁,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증대가 핵심과제임.
-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부품 및 차량의 성능평가, 실증을 통한 검증 체계가 미비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부품 성능/내구성 사전 실증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부품시장 선점 필요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00	9,945	7,928	△2,017	△20.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500 - 3571 - 305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업협력과장(박대규, 044-203-4230), 주무관(문종철, 42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17년(3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한국 제조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핵심요소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

*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 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생산운용 솔루션(SW) 개발 : 3개 과제 × 666백만원/과제

- 생산운영 빅데이터 기반 품질 데이터 분석 및 사전검증 솔루션 개발

  * 공정상 실축된 품질관련 빅데이터 수집 → 품질 검증·관리

- 스마트공장 구현에 필수적인 지능형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②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HW) 개발 : 2개 과제 × 1,050백만원/과제

- 다양한 기기와 연동을 위해 표준화된 IIoT 플랫폼 개발

  * 기존 장비의 재사용성을 높여서 스마트공장 확산 촉진

- 최적화된 생산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 시뮬레이션 개발

③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개발 : 3개 과제 × 1,179백만원/과제

- 부품 제조공장의 유연생산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요소 개발

  * 모듈형 현장자동화 기술, IoT기반 센싱정보 고도화 기술 개발 등

- 디지털 제조환경 기반의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등

□ 지원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인 스마트공장 관련 핵심요소기술 개발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00**	**9,945**	**7,928**	**△2,017**	**△20.2**
▪ 생산운영 솔루션 개발 (산출근거)	2,000	(계속) 2개× 500백만 = 1,000백만원 (신규) 1개×1,000백만 = 1,000백만	(종료) 3개 × 666백만 = 2,000백만원	-	
▪ ICT융합 스마트시스템 개발 (산출근거)	1,500	(계속)1개×1,400백만 =1,400백만원 (신규)1개×700백만 = 700백만원	(종료) 2개 × 1,050백만 = 2,100백만원	-	
▪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개발구축 (산출근거)	1,500	(계속)3개 × 648백만 = 1,944백만원 (신규)3개×1,179백만 =3,538백만원	(종료) 3개 ×1,179백만 = 3,538백만원	**△1,944**	**△35.4**
▪ 기획평가관리비	-	363(3.6%)	290(3.6%)	**△73**	**△20.1**
□ 비목(합계)	**5,000**	**9,945**	**7,928**	**△2,017**	**△20.2**
○ 연구개발출연금(360-05)	**5,000**	9,945	7,928	△2,017	△2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수단으로 활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99.45	▪ 생산운영솔루션개발 : 20 ▪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 개발 : 21 ▪ 성공모델 개발·구축 : 54.85 ▪ 기획평가관리비 : 3.6
'17	79.28	▪ 생산운영솔루션개발 : 20 ▪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 개발 : 21 ▪ 성공모델 개발·구축 : 35.38 ▪ 기획평가관리비 : 2.9
'18	108.96	▪ 생산운영솔루션개발 : 25 ▪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 개발 : 25 ▪ 성공모델 개발·구축 : 55.04 ▪ 기획평가관리비 : 3.92
'19	108.96	▪ 생산운영솔루션개발 : 25 ▪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 개발 : 25 ▪ 성공모델 개발·구축 : 55.04 ▪ 기획평가관리비 : 3.92
'20	107.70	▪ 생산운영솔루션개발 : 25 ▪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 개발 : 25 ▪ 성공모델 개발·구축 : 53.83 ▪ 기획평가관리비 : 3.8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과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 '14.6.26)

-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 발표 (제7차 무투회의, '15.3.19)

-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안」 발표 (제조혁신위원회, '15.10.29)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개발	-	-	50	99.45	79.2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년	50 (50)	0 (0)	0 (0)	50 (50)	50 (50)	0 (0)	0 (0)
'16년	99.45 (99.45)	0 (0)	0 (0)	99.45 (99.45)	99.45 (99.45)	0 (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2009년부터 '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국가 첨단 제조방식 전략계획(2012.2) 등 제조업 부흥정책을 강력 추진

- 제조공정의 디지털화·연결성 강화 및 빅데이터 등 新분석기법 부상으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

○ **(독일)** 국가 하이테크 비전 2020의 액션 플랜에 industrie 4.0을 2012년에 편입하고 2.5 유로를 투입

- 사물인터넷과 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제품개발, 생산제조, 유통 등 제조업의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여 산업 생산성 30% 향상을 목표

○ **(일본)**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 재건을 위해 아베노믹스 3대 전략 중 '산업재흥플랜'(2013.6)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개

○ **(중국)** 10년(2015~2025년)안에 전 세계 제조업 '2부 리그'에, 그 다음 10년(2025~2035년)엔 '1부 리그' 진입 뒤 세 번째 10년 기간(2035~2045년)에 1부 리그의 선두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 제시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계속, ODA)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2,933	2,640	2,376	△264	△1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42 - 306

* 담당자 : 산업정책국장(원동진), 기후변화산업환경과(문양택, 044-203-4440), 주무관(유경균, 044-203-42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5년까지 기투자액: 257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2. 사업목적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부터 사업화기반 등 단계적 지원 확대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대개도국 우호기반 확보

○ 개도국 온실가스저감사업 발굴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 및 수출 활성화 도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권역별 정책 컨설팅 지원사업 : 876백만원

○ **(산출내역)** 정책컨설팅*(800백만원) 및 정보제공**(76백만원)

* 정책컨설팅 사업 5대 권역 :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 정보제공 및 사업운영(총괄기관 운영, 선정, 평가 관리 등)

○ **(정책컨설팅)** 전문기관별 해당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컨설팅 및 법령 지원, 초청 연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유망사업 발굴·연계 등

○ **(정보제공)**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진출 지원을 위해 권역별 에너지 분야 이슈리포트 서비스 제공, 다자개발은행 등의 사업 등 발주 동향 정보 제공

② 국제기구 협력사업 : 800백만원

○ **(산출내역)** 국제기구(650백만원)* 및 MDB역량강화**(150백만원)

○ **(국제기구)** UNIDO, ACE, ADB, WB과의 정책교류,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워크숍,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추진

- (ADB) 'Asia Clean Energy Forum'공동주관, 방글라데시 가스산업효율 향상 협력사업 추진
- (ACE) ASEAN 회원국 대상 에너지효율제도 구축지원 및 역량강화
- (WB) '이집트 효율라벨링(모터) 신규품목 기술기준 수립지원' 등 협력 사업 추진
- (UNIDO) 동아프리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정책 컨설팅

○ **(MDB역량강화)** 다자개발은행 역량강화, 정보제공, 사업운영 등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및 투자 진출을 위한 장'으로 세미나 확대 개최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도국 연수 시 기업 연계활동 병행 추진

- 다자개발은행(ADB, 월드뱅크 등) 발주사업의 국내기업 수주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발주정보 기업제공

③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 700백만원

○ **(산출내역)** 프로젝트 비용지원*(600백만원), 성과평가**(100백만원)

* 프로젝트 지원비용(평균 1억 내외)* 6개 업체 지원 (600백만원)

** 사업 운영, 사업 선정 및 평가회의 개최, 한-개도국 협력사업 평가 지침 마련 및 성과 평가보고서 작성 등

□ 지원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개도국 우호기반 확보

○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온실가스감축사업 등 기후변화산업 진출 교두보 확보

○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 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투자리스크를 완화하여 개도국 사업 기회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	2,933	2,640	2,376	264	△10
▪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 사업	1,133	940 정책컨설팅 5개국(800)+ 정보제공 및 운영비(140)	876 정책컨설팅 5개국(800)+ 정보제공 및 운영비(76)	64	△6.8
▪ 국제기구협력사업	900	900 ACE, UNIDO, WB, ADB, IDB(650)+ MDB역량강화 및 운영비(150)	800 ACE, UNIDO, WB, ADB, IDB(650)+ MDB역량강화 및 운영비(150)	100	△10.6
▪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900	800 사업비(600)+ 성과평가 및 운영비(200)	700 사업비(600)+ 성과평가 및 운영비(100)	100	△12.5
□ 비목(합계)					
○출연금(350-02)	2,933	2,640	2,376	264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 사업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기업 진출대상 개도국 확대 및 수출활성화 도모

- 해외사업추진 불확실성, 사업 발굴 초기 투자비 부담 등을 지원하여 개도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 등의 사업 활성화 견인

○ 권역별 개도국 설정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해외진출의사 국내기업의 기술· 서비스가 개도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정보교류 등의 사업 지원을 강화

- 기후변화대응 국제기구(WB, ADB, ASEAN 등)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감축 정책교류 및 신규사업 추진 대상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6.4	▪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940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 800 ▪ 국제기구 협력사업 : 900
'17	23.76	▪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876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 700 ▪ 국제기구 협력사업 : 800
'18	38.8	▪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1,130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 800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시범 지원사업 : 1,000 ▪ 국제기구 협력사업 : 950
'19	37.64	▪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1,064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 800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시범 지원사업 : 1,000 ▪ 국제기구 협력사업 : 900
'20	36.51	▪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1,001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 750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시범 지원사업 : 1,000 ▪ 국제기구 협력사업 : 9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②항, ③항

> ②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3호.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7조(사업) 제 1항

> 1항.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 추진경위

- 국제박람회 총회('07.6) 및 UN 기후변화 고위급회의('07.9)에서 총리께서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계획 표명
-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전문인력 양성, 기술정보제공, 전문가 파견 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차 사업 시작
- '12년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사업」이 ODA로 분류(기재부)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32.5	32.5	29.33	26.4	23.7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2.5 (32.5)	- (-)	- (-)	32.5 (32.5)	32.5 (30.41)	- (-)	- (2.09)
'14년	32.5 (32.5)	- (-)	- (-)	32.5 (32.5)	32.5 (31.51)	- (-)	- (0.99)
'15년	29.33 (29.33)	- (-)	- (-)	29.33 (29.33)	29.33 (27.72)	- (-)	- (1.6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UN 기후변화협약**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타결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新기후체제) 출범

  * 우리정부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11.3%를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하기로 발표하였음

- 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환경기금(GEF),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감축을 위한 기술·재정을 지원

  *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산업 등의 감축 부문으로 구성 ('13년 UN FCCC 기술수요평가 보고서)

  * GEF 감축분야 투자액은('91~'15) 42억불, 공동재원은 383억불에 달함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지원 기금을 운영하고 주요국 정부·민간측과의 공동재원을 확충하여 지원함

  * '15년 기후대응금융 25,096백만불 중 80%를 감축부문(20,072백만불), 20%를 적응부문(5,024백만불)에 투자

○ **일 본**

- 일본은 교토협약 이래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

- '08년부터 5년간 총 100억불 규모 자금을 개도국·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지원하는 'Cool Earth Partnership' 추진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는 기술개발과 확산, 새로운 시장 매카니즘 조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단기자금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 선진국 간 협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 또한, 일본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에 따라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으로 2030년까지 5천만~1억톤 감축 목표 설정

*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 양국간 크레딧 제도로서 일본기업의 친환경기술·제품을 협력국가에 이전 보급하는 과정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일본 정부의 감축 목표량으로 인정받는 사업

- 일본은 16*개의 국가와 MOU 체결, 발굴된 6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프로젝트 추진 완료

* 인도네시아, 대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

* 일본 경제산업성이 '15년 12월에 발표한 '지구온난화대책'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중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 해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최대한 기여한다.'는 항목을 명시

* '15년 JCM Model Projects 예산으로는 2,000만불로 3년간 6,000만불 할당('15~'17), Collaborative Financing Programme은 1,500만불씩 4년간 6,000만불 할당('15~'18)

○ **프랑스**

- 프랑스는 ODA 백서인 "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을 통해 프랑스 원조 4대 목표의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

- 프랑스의 ODA 중심기관인 프랑스개발청(AFD)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97%가 AFD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 프랑스의 원조활동은 AFD의 원조 시행 계획인 POS(Projet d'Orientation Stratéique)에 의해 결정

- 또한, AFD는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의 조화를 목표로 "Reconciling Development and Fight against Climante Change, Action Plan 2012~2016"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은 AFD의 모든 원조 지원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칠 위험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 프랑스 '15년 ODA 규모는 8.3억 유로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6년간('15~'20) 매년 4억 유로 추가 배정, 그 중 2억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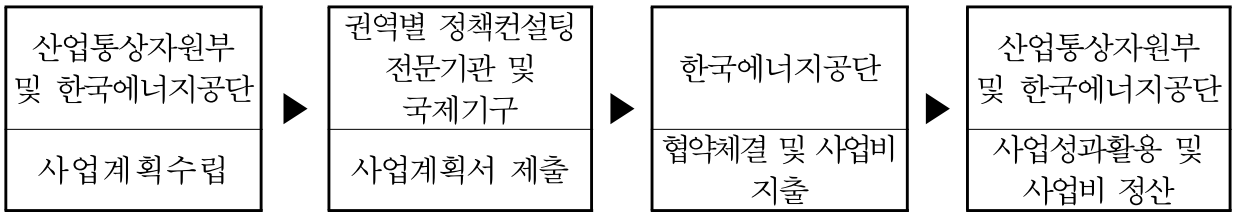

- 권역별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기관공모 ⇒ 평가 ⇒ 선정 ⇒ 협약 ⇒ 사업관리 ⇒ 사후관리
- 온실가스저감프로젝트 사업 : 사업공모 ⇒ 평가 ⇒ 선정 ⇒ 협약 ⇒ 사업관리 ⇒ 사후관리
- 국제기구 협력사업 : 협력사업 발굴·협의 ⇒ 협약 ⇒ 사업추진⇒ 사후관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붙임

참고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내역 설명서**

1. 사업 추진내용

①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해당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사업 우호기반 확보

□ 사업내용(지원내용)

○ 5대 권역 중점협력국* 6개국 대상 정책 컨설팅 지원 및 유망사업 발굴

(단위:백만원)

권역명	국가명	주관기관	예산	추진내용
동남아	인니,·캄보디아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180	산업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자문
서남아	스리랑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40	LED 보급계획 수립 정책자문
중앙아	우즈벡	㈜네오에코즈	140	에너지효율등급 도입 정책자문
중남미	페루	㈜네모파트너즈	170	에너지효율 라벨링제도 도입 정책자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알씨씨	170	에너지 진단 의무화제도 정책자문

② 국제기구 협력사업

□ 사업목적

○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등 추진

□ 사업내용(지원내용)

○ ADB, WB 등 MDB(다자개발은행) 및 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단위:백만원)

국제기구명	예산	추진내용
ACE	150	○ ASEAN+3 Mitigation 협력사업
UNIDO	200	○ 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및 기후변화 역량강화 공동추진
WB	150	○ 이집트 효율라벨링(모터) 신규품목 기술기준 수립지원 등
ADB	150	○ ACEF 공동주관 및 방글라데시 가스산업효율
MDB정보제공	100	○ MDB 온실가스감축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교육

3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도국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국내기업 수행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 조사 지원으로 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 사업내용(지원내용)

○ **(사업내용)** :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희망 사업의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 비용지원

○ **(지원비용)**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사업기간)** : 1년 이내 (4월~11월)

(단위:천원)

사업명	주관기업	정부지원금	합계	총사업비
에티오피아 철강 시멘트 산업체 온실가스저감사업	에코아이 이앤씨	146,500	49,806	196,306
우즈베키스탄 시멘트 공정변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네오에코즈	177,000	83,000	260,000
스리랑카 CO_2 포집 및 액화 탄산(L-CO_2) 판매 사업	위비즈	98,500	45,698	144,198
부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메트로텍	100,000	70,000	170,000
베트남 LED 조명교체 ESCO 민간금융모델 시범사업	네브레이 코리아	78,000	84,767	162,767
합 계		**600,000**	**333,271**	**933,271**

2. 사업성과

□ 국내기업의 개도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사업 진출을 지원하여 632억원 규모 사업 발굴 지원

사업명	체결연도 (지원연도)	규모	기업
태국 8MW 태양광 발전소 건립	2013 (2012)	286억원 (국산기자재 35억)	한국중부발전-에코네트워크 컨소시엄
인니 자카르타 300kW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시범사업(KOICA지원사업)	2014 (2013)	37억원	포스코에너지-에코시안 공동
부탄 지능형변전소 EPC 계약체결	2015 (2015)	300억원	한국전력공사
인니 섬유공장 텐터기 교체	2015 (2014)	4억원	에코아이이앤씨
중국 SK하이닉스공장 집진장치교체	2015 (2012)	5억원	에코아이이앤씨

태국 8MW 태양광 발전소 건립

인니 자카르타 ESS 모델 사업화 방안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재량, 계속, R&D)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21,156	17,280	12,066	△5,214	△30.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700 - 5702 - 302

* 담당자 : 산업정책관(원동진),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문양택, 4240), 사무관(박은정, 424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 ~ '18 (일몰시점)
총사업비	해당없음 ('16년까지 기투자액 : 1,524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33~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금속자원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 생산 공정 중에서 주요 자원으로 사용되는 금속물질 등의 사용량을 원천 감축 및 효율화하는 회수·대체·저감을 위해 추출·정제·고순도화 기술개발

○ 자원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부산물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촉매, 인쇄기기, 산업기기류 등 재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 체계적인 자원순환(금속회수·재제조)분야 R&D를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 자원순환관리 시스템개발과 산업계 보급·확산 추진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 희소금속 등 주요 금속자원의 회수·사용량 저감·대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7,368백만원(10,310→ 7,368백만원, △2,942백만원)

▪ 산출내역

- 11개 계속과제 6,967백만원
  * (기일치) 7개×783백만x12/12개월=5,480백만원
  * (종료) 4개×372백만x12/12개월=1,486백만원
- 1개 신규과제 401백만원
  * (다/상) 1개× 535백만x9/12개월=401백만원
  * 신규과제(안) : 폐기물 등으로부터 다종의 희소금속 회수 기술 및 사업화 모델 개발

②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 원천 감축과 물가안정 달성 등을 위한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82백만원(6,350→ 3,582백만원, △2,768백만원)

▪ 산출내역

- 6개 계속과제 3,185백만원
  * (기일치) 3개×712백만x12/12개월=2,135백만원
  * (종료) 3개×350백만x12/12개월=1,050백만원
- 1개 신규과제 397백만원
  * (다/상) 1개× 529백만x9/12개월=397백만원
  * 신규과제(안) : 유압시스템 등 산업기기 사용 후 재제조 기술개발

③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 자원순환의 산업계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766백만원(0 → 766백만원, 766백만원)

▪ 산출내역

- 2개 계속과제 766백만원
  * (종료) 2개×460백만x10/12개월=766백만원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으로부터 기술보급과제 이관받음

④ 기획평가관리비

-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평가·관리 비용 350백만원 (620→ 350백만원, △27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자원 고갈,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에너지·자원의 원천 감축과 순환형 산업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필수 요소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원자재 수입의존도 : 철 96.4%, 동 100%, 아연 100%, 전기동 42.9% 등
* 희유금속 광물의 80%가 5개국(중국, 캐나다, 舊소련, 호주, 미국)에 편중
* 중국은 희토류 수출관세 부과(20%), 수출제한정책 도입 등 자원무기화 강화('10년)

- 도시광산, 재제조는 자원 수급구조 개선, 첨단산업의 원료인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자원 절약 등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활성화 필요

* 녹색성장 5개년계획('09년, 녹색위), 재제조 산업 활성화 방안('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11년, 관계부처 합동)에 산업부 추진정책으로 반영

- 도시광산,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술과제 지원 필요

○ 에너지·자원순환과 관련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

- 에너지자원순환을 위한 산업인 재제조, 도시광산 산업의 경우,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

* 50인 이하 소기업 비율 : 재제조 99%, 도시광산 94%

○ 그린에너지분야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첨단산업·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확보방안 필요

- 에너지산업은 원천기술력이 취약하고 주요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해외 의존율 높음

* 주요 부품소재장비 수입률 : 풍력 85%, 연료전지 91%, 에너지저장 44%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21,156	17,280	12,066	△5,214	△30.2
▪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산출근거)	11,916	10,310 <계속> 8개×503백만 =4,025백만원 <신규> 11개×857백만 x8/12=6,285백만원	7,368 (계속-기일치) 7개×783백만 x12/12=5,480백만 *(계속-종료) 4개×372백만 x12/12=1,486백만 (신규) 1건x535백만x9/12 =401백만	△2,942	△28.5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산출근거)	5,970	6,350 <계속> 9개×461백만 =4,150백만원 <신규> 3개×1,100백만 x8/12=2,200백만원	3,582 (계속-기일치) 3개×712백만 x12/12=2,135백만 *(계속-종료) 3개×350백만 x12/12=1,050백만 (신규) 1건x529백만x9/12 =397백만	△2,868	△43.6
▪ 녹색기술개발지원 (산출근거)	2,650	-	-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산출근거)	-	-	766 (계속)2건x460백만x10/12 =766백만	766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620	620	350	△270	△43.5
□ 비목(합계)	21,156	17,280	12,066	△5,214	△30.2
○ 연구개발출연금(360-05)	21,156	17,280	12,066	△5,214	△30.2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내역사업은 '17년부터 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으로부터 이관받음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화, 회수대상 확대 등이 필요한 주요 금속자원의 추출, 고순도화 및 원료화 기술개발을 통해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 에너지 및 자원 원단위 절감을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 재제조 기술개발 대상품목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에너지·자원 절감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

○ 그린에너지 Supply Chain 육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72.8	▪ 금속자원회수: 103.1억원 ▪ 재제조: 63.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6.2억원
'17	121	▪ 금속자원회수: 71.8억원 ▪ 재제조: 46.5억원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7.6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3.5억원
'18	250	▪ 금속자원회수: 140억원 ▪ 재제조: 10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0억원
'19	290	▪ 금속자원회수: 160억원 ▪ 재제조: 12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0억원
'20	320	▪ 금속자원회수: 170억원 ▪ 재제조: 14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의2, 제20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추진경위

- 2007. 1.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 보급사업” 착수
- 2008. 7. 산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이관
- 2009. 1. ‘자원순환 및 산업 에너지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2011. 1. ‘글로벌전문 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으로 사업명 변경
- 2012. 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개편에 따라 ‘녹색기술개발’ 지원 추진
- 2016.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208.4	210.8	211.6	172.8	120.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08.4 ( )	0 ( )	0 ( )	208.4 ( )	208.4 ( )	0 ( )	0 ( )
'14년	210.8 ( )	0 ( )	0 ( )	210.8 ( )	210.8 ( )	0 ( )	0 ( )
'15년	211.6 ( )	0 ( )	0 ( )	211.6 ( )	211.6 ( )	0 ( )	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녹색자원 전문위원회('13.6)

- (지적사항) "에너지·자원순환효율규제대응분야는 지원하는 대상기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내용은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에서 예산을 흡수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제안
- (조치사항) 녹색자원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로 예산을 흡수통합하여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저감·대체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지원

○ '15년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15.4)

	지적사항	조치사항
1	순환형 산업경제 구조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육성 목적은 명확하나 실제 수행되는 사업 내역은 글로벌 기업육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따라서 명칭 변경이나 사업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6년부터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2	'15년 신규과제가 없고 주관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기술개발 지원은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타당성 제시가 필요	핵심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개발 지속 지원 필요
3	금속자원회수 및 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사업은 중복성 방지와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과의 지속적인 부처협의 및 연계추진이 필요	신규과제 기획 시 사업 기획평가 전담기관 간 협력·협의 의무화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와 효율적 수행 실시 * 환경부-산업부 상호간 신규과제 검토 및 중복성 해소 논의('14.2.25), '14년 다부처 공동기획 사전회의('14.9.15) 등 폐자원 재활용 R&D 협의체 추진 중
4	기획의 투명성 높여 특정 사업업체와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와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관리 방안 필요	R&D기획전략 수립 공청회 및 학회/협회 등 협력채널 가동 및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방안 마련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 산업부 자체평가('15.3월) : 보통 (평가점수 : 77.2점)
- 산업부 상위평가('15.6월) : 보통 (평가점수 : 73.3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2000년에 순환형 사회경제 구축 이념과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한 「循環型 社會 形成 推進 基本法」을 제정, 국가차원의 순환정책 추진

- 경제산업성은 지난 '06년에는「전략적 광물자원정책」을 수립, "자원개발-비축-회수-재생" 등 자원관련 통합정책을 추진

< 일본의 광물자원 안정공급 대책 >

◈ 목표 : 비철금속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
◈ 정책분야
① 광산개발 : 자원확보를 위한 다각적, 종합적 대책마련
② 재활용 : 제품으로부터 비철금속 회수율 증대
③ 대체재 개발 : 사용량 저감기술, 신소재 개발
④ 희유금속 : 정부, 민간 협조체제하에 신속한 보유·매각(60일분 비축)
⑤ JOGMEC 사업 : 수급동향 관련 사항 조사, 통계작성
* JOGMEG : 일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금지 조치 이후, 각료회의에서 해외 희토류 개발권 확보 및 대체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희토류 종합대책」을 세우고 1,000억 엔의 예산 배정('10.10월)
  * 대체기술이나 사용량 저감기술개발 120억 엔, 리사이클 추진 및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420억 엔 책정

○ (영국)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등)에서 희소금속 회수 기술개발을 위해 20만 파운드 지원('12.3월)

○ (독일) 독일산업협회(BDI)가 주최하고 정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원회의(2차, '07.4월)에서 자원전략 수립

- Merkel 총리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원전략의 기본원칙을 천명

< 독일의 자원전략 기본원칙 >

① **자원수급을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 (시장을 교란시키는 대책마련 금지)
② 유관부처간 네트워크 구축 (외교, 내무, 기술연구, 무역통상, 산업, 환경, 농업 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
③ 순환자원 시장 활성화 (순환자원 유통의 저해요소 제거)
④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⑤ 자원수급과정 투명성 제고
⑥ 자원개발업체 세제지원
⑦ 자원가공업체 보조금 지원
⑧ 국제 자원시장 동향 모니터링 (자원수급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⑨ **자원생산성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희유금속 대체재개발지원)
⑩ 친환경소재 개발 지원
⑪ 재활용률 제고 (각종 규제 재검토·개정)
⑫ 국내자원 개발사업 지원
⑬ 지속가능한 자원경제 강화

○ (중국) 급격한 산업규모 확대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국내 자원(희토류)보호, 다소비형 생산·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 자원·에너지 다소비형 생산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경제촉진법」 제정하여 시행('09.1월)

(5) 사업추진절차

○ 지정공모 사업

- 단기과제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중장기과제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참고 내역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R&D)

□ 사업 내용

○ 사용 후 제품 및 공정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간주하여 '수집-해체-파쇄·분쇄-선별-제련·정련' 과정을 통해 함유 금속을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기술(도시광산)

□ 핵심 과제내용

○ 희소금속 등 주요 금속자원의 회수·사용량 저감·대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7,368백만원

* 계속: (기일치) 7개 × 783백만 = 5,480백만, (종료) 4개 × 372백만 =1,486백만원
* 신규: (다/상) 1개 × 535백만 x9/12개월= 401백만원

□ 기대효과·성과

○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또는 원제조-재제조기업간 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 가능

* 수집·해체·선별 등 노동집약적 분야는 중소기업이, 건식 용해로와 같은 자본집약적 분야는 대기업이 담당하여 상생 가능

○ (자원 및 에너지절감) 자원순환은 폐기단계의 제품을 회수하여 일정한 공정을 통해 재상품화 또는 원료화 하기 때문에 신품 생산 대비 자원 및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 천연광석에서 생산되는 금속보다 60~95%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 발생(알루미늄 95%, 구리 85%, 철강 74%, 아연 63%, 납 60%)

에너지자원 원단위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R&D)

□ 사업내용

○ 파쇄·융해 등 원료물질 상태로 되돌리지 않고, 사용 후 제품의 잔존가치를 다시 활용하여,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80%이상 저감할 수 있는 재제조 산업 관련기술 개발

* 재제조: 사용 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일련의 과정(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재상품화

□ 핵심 과제내용

○ 에너지·자원 원천 감축과 물가안정 달성 등을 위한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82백만원

* 계속: (기일치) 3개 × 712백만 = 2,135백만원, (종료) 3개 × 350백만 = 1,050백만원
* 신규: (다/상) 1개 × 529백만 x9/12개월= 397백만원

□ 기대효과·성과

○ (내수확대)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 또는 기능을 하는 제품과 원료를 생산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고객, 수요기업 등)의 선택폭이 넓어져 내수확대에 도움이 됨

○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또는 원제조-재제조기업간 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 가능

*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관리 등 상호협력이 가능하여 대기업은 A/S 비용 절감,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품질 확보 노하우를 전수받아 매출 확대와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판로 확보 등이 가능

○ (자원 및 에너지절감) 자원순환은 폐기단계의 제품을 회수하여 일정한 공정을 통해 재상품화 또는 원료화 하기 때문에 신품 생산 대비 자원 및 에너지 절감효과, 폐자원 매립비용 저감 기대

* 신품생산 시 투입되는 에너지와 원재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품생산에 비하여 자원 및 에너지 소모량 70~80% 절감 할 수 있음.

○ (일자리창출) 회수-분해-세척-보수-조립 등 주요 공정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제조업 대비 3배이상의 고용창출효과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R&D)

□ 사업내용

○ 에너지·자원순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광산·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개술개발 결과를 자원순환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보급 및 기반조성

□ 핵심 과제내용

○ 자원순환의 산업계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766백만원

* 계속: (종료) 2개 × 383백만 =766백만원

□ 기대효과·성과

○ 자원순환기술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견·중소 자원순환업계에 기술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국가R&D로드맵 수립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 재제조 및 도시광산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단지도 및 품질시험지원, 에너지·자원 다소비 업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지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재량, 신규/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	-	1,868	1,868	10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42 - 310

* 담당자 : 산업정책국장(원동진),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문양택, 044-203-0000), 사무관(정석,044-203-424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7년 ~ 계속
총사업비	18.68억원
사업규모	18.68억원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신기후체제(COP21) 출범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

* 파리 기후협정 체결('15.12) 및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30년 BAU 대비 37%를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

* '13년 배출 통계 : 국가 전체 배출량(7억톤) 중 산업 부분이 2.5억톤 차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의 사각지대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온실감축 지원 및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 **1,868백만원**

○ 산업단지 내 재자원화 기술 확보 및 보급 지원, 자원재활용 범용 기술 실증화 지원, 표준인증 및 해외 진출 지원

- 부산물 및 에너지 순환 네트워크 발굴(발생-처리-활용기업)

- 산업단지 규모 공정배열 및 부산물 재자원화 연계망 구축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파급효과가 큰 범용기술에 대한 실증화를 통하여 타 기업 또는 산업단지로 확대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검·인증 지원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 편입 추진, 기술·제품의 개도국 진출

○ 산출근거

- 재자원화 기술보급 및 실증화 지원 : 1,500백만원
  *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포함(10명, 400백만원)
- 제품 표준인증 및 해외 진출지원 : 200백만원
- 지원 과제 선정 및 점검을 위한 사업 운영비 : 16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EU, 일본 등은 향후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자원 효율성을 핵심테마로 선정,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 참여 필요

* EU회원국들의 효율적 자원이용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제시(2011)

○ 특히, 국제적 약속인 온실가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기반이 되는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보급·확산 시급

- 재자원 관련 기 확보된 기술 중, 에너지·자원효율성이 높은 범용성 기술에 대하여 실증화를 통한 보급·확산 등 실질적 성과 창출 필요

○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출권 인정을 받지 못함

- 자원순환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물을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지원 시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	-	**1,868**	**1,868**	**순증**
▪재자원화 기술보급 및 실증화 지원	-	-	1,500 · 자원화 기술 확보·보급 (5개×60백만) · 범용기술 실증화 (40개×20백만) · 전문인력 인건비 (5명×55백만원, 5명×25백만원)	**1,500**	**순증**
▪보급형 제품 표준인증 및 해외진출	-	-	200 (인증 10개×15백만) (해외 5개×10백만)	**200**	**순증**
▪지원 과제 선정 및 점검을 위한 운영비	-	-	168 (선정 : 10회×10백만) (점검 : 10회×6.8백만)	**168**	**순증**
□ **비목**(합계)	-	-	**1,868**	**1,868**	**순증**
○민간경상보조(320-01)	-	-	**1,868**	**1,868**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다수의 기업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감축량에 대한 검·인증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스템 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편입 추진, 기술·제품의 개도국 진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	▪ ▪
‘17	18.68	▪ 재자원화 기술보급 및 실증화 지원 : 15.0 ▪ 보급형 제품 표준인증 및 해외진출 : 2.0 ▪ 지원 과제 선정 및 점검을 위한 운영비 : 1.68
‘18	21.28	▪ 재자원화 기술보급 및 실증화 지원 : 17.0 ▪ 보급형 제품 표준인증 및 해외진출 : 2.0 ▪ 지원 과제 선정 및 점검을 위한 운영비 : 2.28
‘19	24.33	▪ 재자원화 기술보급 및 실증화 지원 : 19.0 ▪ 보급형 제품 표준인증 및 해외진출 : 3.0 ▪ 지원 과제 선정 및 점검을 위한 운영비 : 2.33
‘20	28.21	▪ 재자원화 기술보급 및 실증화 지원 : 23.0 ▪ 보급형 제품 표준인증 및 해외진출 : 3.0 ▪ 지원 과제 선정 및 점검을 위한 운영비 : 2.2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제12조(보조금 지원),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추진경위

- 2015.12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채택(’15.12,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 2016.05 자원순환기본법 공포 및 시행(‘18.1.1)
- 2016.12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사업 종료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00년에 순환형 사회경제 구축 이념과 기본적인 구조를 정한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순환정책 추진

○ **(독일)** 96년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환경과 조화하는 폐기물 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용 후 폐기하는 사회'→ '순환체계 사회'로 전환 중

○ **(중국)** 『순환형경제』 정책 추진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을 촉진

- 순환형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고 하는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순환이용을 중시하는 체제
- 사회 수준의 대순환, 지역 수준의 중순환, 제품 및 서비스 수준의 소순환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5) 사업추진절차

예산승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자금배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자금집행, 사업수행 (한국산업단지공단)	⇒	결산보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재자원화 관련 정부 발표대책 및 중장기 계획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1.9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6월)

*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을 지원하는 자원순환성 강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 자원순환산업 육성 강화 등과 연계

○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 및 구체적인 종합대책 수립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16.12)

·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종전) 정부 주도 Top-down → (전환) 민간 참여 Bottom-up 방식

· '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7%(BAU대비)를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산업 부문 감축 목표 : 56.4백만톤(11.7%)

지역경제정책관

세 입

□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B-A)	%
지역발전특별회계	49,606	53,927	56,747	2,820	5.2

관	항	목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B-A)	%
합 계			49,606	53,927	56,747	2,850	5.2
재산수입			10,847	10,590	10,376	△214	△2.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847	10,590	10,376	△214	△2.0
		▪ 기타재산수입	10,847	10,590	10,376	△214	△2.0
경상이전수입			38,759	43,337	46,371	3,034	7.0
	기타경상이전수입		38,759	43,337	46,371	3,034	7.0
		▪ 기타경상이전수입	38,759	43,337	46,371	3,034	7.0

기타재산수입(지특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기타재산수입	7,575	10,590	10,376	△214	△2.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사업비 예치 이자 수입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제45조

제35조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3,511	5,360	3,687	3,106	4,065	6,682	4,268	10,639	7,575	10,847	-	-
(전년대비증가율)	145.7	85.9	5.0	△42.1	10.2	115.1	5.0	59.2	77.5	2.0	21.2	19.3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10,590	○ 전년도 2년(‘14년, ’15년도) 결산(추정치) 평균×(‘11~’16 지특 예산 연평균 증가율) = (10,573 + 11,308)/2 ×0.968 = 10,590백만원
‘17년	10,376	○ 전년도 2년(‘15년, ’16년도) 결산(추정치) 평균×(‘11~’16 지특 예산 연평균 증가율) = (10,847 + 10,590)/2 ×0.968 = 10,376백만원
‘18년	10,483	○ 전년도 2년(‘16,년 ’17년) 결산(추정치) 평균
‘19년	10,430	○ 전년도 2년(‘17년, ’18년) 결산(추정치) 평균
‘20년	10,457	○ 전년도 2년(‘18년, ’19년) 결산(추정치) 평균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 본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사업비 예치 이자 수입으로, 정부는 예산의 시의적절한 배정을 통해 이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기타경상이전수입(지특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40,502	43,337	46,371	3,034	7.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제45조

제35조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8,061	25,121	8,464	39,868	18,181	38,591	19,090	43,359	40,502	38,739	-	-
(전년대비증가율)	7.8	123.5	5.0	58.7	114.9	△3.2	5.0	12.4	112.2	△4.3	49.7	11.5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43,337	○ 전년도 2년(‘14년, ’15년도) 결산(추정치) 평균×(‘11~’16 지특 예산 연평균 증가율) = (43,257 + 46,282)/2 ×0.968 = 43,337백만원
‘17년	46,371	○ 전년도 2년(‘15년, ’16년도) 결산(추정치) 평균×(‘11~’16 지특 예산 연평균 증가율) = (38,759 + 57,107)/2 ×0.968 = 46,371백만원
‘18년	41,536	○ 전년도 2년(‘16,년 ’17년) 결산(추정치) 평균
‘19년	40,635	○ 전년도 2년(‘17년, ’18년) 결산(추정치) 평균
‘20년	41,086	○ 전년도 2년(‘18년, ’19년) 결산(추정치) 평균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 본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정부는 예산 집행시 사업자의 사업비 소요의 정확한 파악 및 예산의 적절한 배정을 통해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여야 함

세 출

지역경제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42,946	79,252	91,175	11,923	15.0
○산업단지환경조성	37,500	70,000	68,500	△1,500	△2.1
○종합비즈니스센터	2,900	3,900	4,000	100	2.6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449	449	449	0	0.0
○지역발전위원회지원	2,097	2,553	2,396	△157	△6.1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	2,350	2,350	0	0.0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	-	0	13,480	13,480	순증
<지특회계>	745,866	774,366	777,520	3,154	0.4
○지역특화산업육성(R&D)	174,100	182,831	172,550	△10,281	△5.6
○지역특화산업육성	92,927	97,347	83,548	△13,799	△14.2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123,011	143,387	145,607	2,220	1.5
○경제협력권산업육성	45,668	45,668	41,859	△3,809	△8.3
○지역투자촉진	112,015	102,246	97,134	△5,112	△5.0
○개성공단입주기업투자촉진한시지원	0	0	15,000	15,000	순증
○지역투자촉진(세종)	8,000	18,807	22,000	3,193	17.0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23,000	24,000	16,975	△7,025	△29.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59,730	58,720	59,485	765	1.3
○지역특성화산업육성	94,741	87,295	81,830	△5,465	△6.3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200	150	200	50	33.3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340	355	637	282	79.4
○지역산업육성지원	9,064	10,490	9,886	△604	△5.8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3,070	3,070	2,809	△261	△8.5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	0	0	28,000	28,000	순증
총계	788,812	853,618	869,195	15,577	1.8

※ 16년 예산 :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

산업단지환경조성(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단지환경조성	37,500	70,000	68,500	△1,500	△2.14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4 - 3300 - 3333 - 305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박기영), 입지총괄과(김호성, 044-203-4430), 서기관(이중엽, 44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기타유가증권매입, 출연
사업시행주체	자산운용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경제거점인 노후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전환

*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에서 생산의 70.9%, 수출의 79.7%, 고용의 52.6%를 차지하며 전국 1,124개 단지에 7.9만개社, 216만명이 활동 중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혁신,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관련 민간투자를 촉진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 60,000백만원(출자)

- 산업단지 혁신에 필요한 유사업종 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편의시설 등 건립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정부자금으로 펀드조성

・산출내역 : 6개 단지 × 10,000백만원 = 60,000백만원

*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단지 수, 사업당 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②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구축 : 8,500백만원(출연)

-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기업 비즈니스 및 혁신 관련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기관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공간 구축

・산출내역 : 기존 5개* 7,500백만원 + 신규 1개** 1,000백만원

* 기존 센터 : 7,500백만원 = 5개 센터 × 1,500백만원(2, 3차년 사업비)
** 신규 센터 : 1,000백만원 = 1개 센터 × 1,000백만원(1차년 사업비)

・센터당 국비 40억원 정액(1차년 10억원, 2・3차년 15억원) 지원하고, 지방비·민간 매칭 50% 이상

□ 지원 필요성

○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노후화와 청년들의 기피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성 및 창의・혁신역량도 저조

○ 정부는 제3차 무투회의('13.9월), 산단 50주년 기념식('14.9월, VIP 참석)을 계기로 노후산단을 우수기업과 청년들이 모여드는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절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산업단지 환경조성	37,500	70,000	68,500	△1,500	△2.15
▪ 산단 환경개선펀드	27,000	60,000	60,000	-	-
▪ 산단 혁신지원센터	4,000	7,000	8,500	1,500	21.4
▪ 지하매설배관통합관리체계구축	-	3,000	-	△3,000	
▪ 산단 편의시설 확충	6,500	-	-	-	-
□ 비목	37,500	70,000	68,500	△1,500	△2.15
▪ 기타유가증권매입(470-08)	27,000	60,000	60,000	-	-
▪ 출연금(350-02)	10,500	10,000	8,500	△1,500	△1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사업 추진

- 산단환경개선펀드, 산단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강화 등의 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700	▪ (산단환경개선펀드) 600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70억원(신규1, 기존4) ▪ (산단지하매설배관통합관리체계구축) 30억원
'17	685	▪ (산단환경개선펀드) 600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85억원(신규1, 기존5)
'18	322.18	▪ (산단환경개선펀드) 282.18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40억원(신규1, 기존2)
'19	297.72	▪ (산단환경개선펀드) 267.72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30억원(기존2)
'20	272.64	▪ (산단환경개선펀드) 257.64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15억원(기존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45조의9, 제45조의13

○ 추진경위

- '09.4.29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보고(제12차 국경위)
  *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실시, 국가재정지원
- '10.10.27 :「QWL 밸리조성계획」보고(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주요내용: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으로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
- '13.9.25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제3차 무투회의)
- '14.9.17 :「산업단지 혁신 현황 및 과제」보고(산단 출범 50주년 기념식)
- 국정과제(Ⅱ-7-107-2) 해당 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산업단지환경조성	110	230	375	700	6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을 지자체의 사업 일정, 지방비 매칭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14년 예산)

○ 지적사항 조치결과

- ‘15년부터 사업 일정, 매칭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단환경개선펀드) 자산운용사 등 공모·선정 → 펀드자금 지원 →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시행 → 사업완료 후 투자비회수

○ (산단혁신지원센터) 출연금신청·사업계획 수립 → 출연금 교부 → 사업집행 → 실적보고 및 정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종합비즈니스센터(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종합비즈니스센터	2,900	3,900	4,000	100	2.6

* 사업코드 : 21 - 110 - 00 - 110 - 114 - 3300 - 3333 - 302
* 담 당 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입지총괄과장(김호성, 044-203-4430), 사무관(정광모, 044-203-445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17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지자체별 상이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지방비 매칭, 국비 40억 정액 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사업목적

○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 및 근로자 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을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익산비즈니스센터) 익산국가산업단지 내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1,700백만원

-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비

② (제주비즈니스센터) 제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내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2,300백만원

-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비

□ 지원 필요성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중으로 차질없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지원 필요

- 공사중인 센터(익산, 제주)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2,900	3,900	4,000	100	2.6
▪ 익산	100	500	1,700	1,200	240
▪ 울산	1,500	0	0	0	순감
▪ 제주	700	500	2,300	1,800	360
▪ 광주	600	2,900	0	0	순감
□ 비목	2,900	3,900	4,000	100	2.6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900	3,900	4,000	100	2.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사중인 익산, 제주센터의 사업 추진경과를 모니터링하여 사업관리 추진 및 원활한 보조금 집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39	▪ 익산(5), 제주(5), 광주(29)
'17	40	▪ 익산(17), 제주(23)
'18	-	
'19	-	
'20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 및 제47조(자금지원)

▣ 『산집법』 제2조 제19항
-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산집법』 제47조(자금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6년도 인천, 시흥, 대구지역 요구를 반영, '07년 예산 편성(국회)
- '07년도 구미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08년 예산 편성(국회)
- '08년도 청주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09년 예산 편성(국회)
- '09년에 청주지역의 '10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10년 예산 10억원을 군산으로 전환(국회)
- '11년도 청주, 김해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12년 예산 편성(국회)
- '12년도 울산, 익산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13년 예산 편성(국회)
- '13년도 제주, 광주, 양산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14년 예산편성(국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종합비즈니스센터	46.5	62	29	39	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도 불용 사유 : 양산시의 적정 사업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불용(5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6.5 ( )	0 (0)	0 (0)	46.5 ( )	46.5 (21.9)	0 ( )	0 ( )
’14년	62.0 ( )	0 (0)	0 (0)	62.0 ( )	57.0 (33.6)	0 ( )	5 ( )
’15년	29 ( )	0 ( )	0 ( )	29 ( )	29 (15)	0 ( )	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 익산·울산·김해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특히 지자체가 적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보조금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국고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 발생(’13년 산업위)

-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 부적절(’14년 예결위)

○ 감사원 지적

- 익산비즈니스센터 대상 부지를 익산KTX역사에서 산업단지 내로 재검토(’13년)

○ 지적사항 조치결과

- 익산시의 사업추진 계획을 사업취지에 맞게 보완(익산KTX역사 → 익산국가산단 내)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 추진하도록 함

-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및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

○ 평가결과 : ’16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업부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사업 추진 → 준공 → 정산보고 제출(지자체 → 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별도첨부

참고1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개요

□ 전국 주요 산단은 생산기능 위주의 단순 공업집적지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받기 어려움**

○ 사회 환경 변화로,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기능 확충 필요성**도 증대

□ 이에, 산단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 및 근로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을 지원**

○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1개 센터 당 최대 40억원**의 국비 지원

* 1:1 매칭으로 지방비 40억원 이상

○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취지에 맞게 **산단 안에 센터 건립**

□ '07년부터 지원을 시작, 총 **11개**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8개 센터 준공, 3개 센터는 공사중**

(단위 : 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지방비/민간)		'07~'11	'12	'13	'14	'15	'16	계	'17	비고
		185억	**43.5억**	**46.5억**	**57억**	**29억**	**39억**		**40억**	
인천	370(40/330/0)	40억	-	-	-	-		40억		준공
구미	87(40/47/0)	40억	-	-	-	-		40억		준공
시화	231(40/90/101)	40억	-	-	-	-		40억		준공
성서	196(40/49/107)	40억	-	-	-	-		40억		준공
군산	180(40/140/0)	25억	13.5억	1.5억	-	-		40억		준공
김해	313(40/273/0)	-	20억	20억	-	-		40억		준공
청주	125(40/40/45)	-	10억	5억	25억			40억		준공
울산	120(40/80/0)	-	-	10억	15억	15억		40억		준공
광주	80(40/40/0)	-	-	-	5억	6억	29억	40억		공사중
익산	175(40/40/95)	-	-	10억	7억	1억	5억	23억	**17억**	공사중
제주	100(40/40/20)	-	-	-	5억	7억	5억	17억	**23억**	공사중

참 고2 **종합비즈니스센터 표준모델 및 단면도 예시**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컨 벤 션	·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창업·R&D,교육·연수	· BI, 기업연구소, 유아보육시설, 근로자지원센터 등
	주 차 장	· 주차장
기업지원시설	공공서비스	·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중진공 등
	컨설팅 서비스	· 법무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S/W, 전자상거래, 광고 등
문화복지시설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체육문화	· 피트니스, 수영장, 공연장
상업시설	금융 등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투사
	근린시설	· 스카이라운지, 구내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

□ 단면도(예시)

층	면적	주요 유치시설	
5F	(1,340㎡)	법무사,세무사, 공증인,회계사,변리사, 노무사,관세사,변호사,부동산중개사,여행사,번역 등	
4F	(1,340㎡)	정보통신서비스,S/W, 전자상거래, 광고, 디자인, 인쇄출판	
3F	(1,340㎡)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우체국, 경제단체	체육문화
2F	(1,340㎡)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동시통역지원실, 강당, 연회장	
1F	(1,340㎡)	구내식당, 서점, 꽃집, 커피, 제과, 편의점, 은행, 증권사, 보험사	
B1	(1,340㎡)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범례: 편익시설 | 기업지원시설 | 문화·복지시설 | 공용·공공시설

참 고3 종합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사업현황

□ 인천 남동국가산단('07.7~'10.7, 완료)

- 사 업 비 : 370억원(국비40,지방비330)
- 면 적 : 부지 6,002㎡, 연면적 28,007㎡ (지하2층, 지상11층)
- 주요시설 : 어린이집, 디자인센터, 경영자총회, 근로자건강센터, 회의실, 업무시설 등

□ 대구 성서일반산단('07~'11.7, 완료)

- 사 업 비 : 196억원(국비40,지방비49,민자107)
- 면 적 : 부지 6,612㎡, 연면적 14,523㎡ (지하1층, 지상10층)
- 주요시설 : 전시실, 대회의실, 기업지원기관, 보건센터, 산단공 대구지사 등

□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07~'12.10, 완료)

- 사 업 비 : 231억원(국비40,지방비90,민자101)
- 면 적 : 부지3,966㎡, 연면적 15,837㎡ (지하2층, 지상13층)
- 주요시설 : 자동차부품연구원, 산기대, 산단공 시화지사, 방재센터 등

□ 경북 구미국가산단('08.5~'11.2, 완료)

- 사 업 비 : 87억원(국비40,지방비47)
- 면 적 : 부지 1,940㎡, 연면적 9,987㎡ (지하층, 지상5층)
- 주요시설 : 출입국관리사무소,중소기업협의회 등

□ 전북 군산국가산단('10.3~'14.6, 완료)

- 사 업 비 : 180(국비40,지방비140)
- 면 적 : 부지 6,600㎡, 연면적 7,493㎡(지상3층)
- 주요시설 : 컨벤션홀, 규제개혁 기업지원센터, 전북지식재산센터, 회의실 등

□ 경남 김해일반산단('11~'15.10, 완료)

- 사 업 비 : 313억원(국비40,지방비273)
- 면 적 : 부지 12,767㎡, 연면적 11,774㎡ (지하1층, 지상5층)
- 도입시설 : 어린이집, 국제회의장, 연구시설, 대·소연회장, 업무시설 등

□ 충북 청주일반산단('12.5~'14.12, 완료)

- 사 업 비 : 125억원(국비40,지방비40,민자45)
- 면 적 : 부지 4,799㎡, 연면적 5,554㎡ (지하1층, 지상6층)
- 도입시설 : 다목적 회의장, 기업지원시설, 의료시설 등

□ 울산 온산국가산단('13.1~'16.2 완료)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40,지방비80)
- 면 적 : 부지 9,708㎡, 연면적 4,945㎡ (지하1층, 지상5층)
- 도입시설 : 컨퍼런스홀, 회의실,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 광주 평동일반산단('14.1~'16.12, 완료 예정)

- 사 업 비 : 80억원(국비40,지방비40)
- 면 적 : 부지 5,266㎡, 연면적 5,370㎡ (지하1층, 지상4층)
- 도입시설 : 어린이집, 전시장, 대연회장, 업무시설 등

□ 전북 익산국가산단('13.5~'17, 공사중)

- 사 업 비 : 175억원(국비40,지방비40,민자95)
- 면 적 : 부지 6,000㎡, 연면적 9,570㎡ (지하2층, 지상6층)
- 도입시설 : R&D, 기업지원기관, 취업지원시설, 산단공 익산지사 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4.9~'17, 공사중)

- 사 업 비 : 102억원(국비40,지방비40,민자22)
- 면 적 : 부지 3,186㎡, 연면적 5,690㎡ (지하1층, 지상4층)
- 도입시설 : R&D, 스마트워크, 회의시설 등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449	449	449	0	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300 - 3333 - 303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입지총괄과장(김호성, 044-203-4430), 주무관(임근모, 044-203-44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공장설립 승인신청, 인·허가, 제증명서 발급 등 공장관련 제반업무를 처리·관리하는 정부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국 공장 민원을 온라인 업무처리로 기업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주요내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개발소프트웨어, 상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유지보수

- **개발 SW 유지보수 : 226백만원**(434백만원의 52%적용)
  · ‘09년 : 1,796백만원(구축비) × 10%(유지보수비율) = 179백만원
  · ‘10년 : 2,007백만원(구축비) × 10%(유지보수비율) = 200백만원
  · ‘11년 : 556백만원(구축비) × 10%(유지보수비율) = 55백만원

- **상용 SW 유지보수 : 84백만원**(162백만원의 52%적용)
  · ‘09년 ~ ‘11년 : 1,751백만원(도입비) × 9.25%(유지보수비율) = 162백만원

- **HW 유지보수 : 91백만원** (175백만원의 52% 적용)
  · ‘09년 ~ ‘11년 : 2,150백만원(도입비) × 8.15%(유지보수비율) = 175백만원

- **운영비(헬프데스크) : 48백만원** (93백만원의 52% 적용)
  · ‘17년 : 3명 X 31백만원 = 9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공장설립 승인절차 및 제증명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하여 기업활동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전국통합망)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 유지보수 예산 소요

○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민원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비용 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함

- 전국 지자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전국의 기업인(공장설립희망자)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승인 등 민원신청과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민원접수 및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DB를 근거로 추출된 공장현황자료는 대국민·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다양한 목적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제조업 동향파악, 정책기초자료, 산업단지 가동현황 파악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정보화)	**449**	**449**	**449**	**0**	**0**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산출근거)	449	·개발SW:226백만원 (434백만원×52%) ·상용SW:84백만원 (162백만원×52%) ·HW:91백만원 (175백만×52%) ·운영비(헬프데스크) : 48백만원 (93백만원×52%)	·개발SW:226백만원 (434백만원×52%) ·상용SW:84백만원 (162백만원×52%) ·HW:91백만원 (175백만×52%) ·운영비(헬프데스크) : 48백만원 (93백만원×52%)	**0**	**0**
□ 비목(합계)	**449**	**449**	**449**	**0**	**0**
○ 민간경상보조(320-01)	449	449	449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지속적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관리, Help-Desk 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함으로서 기업활동 편의 기여 및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 공장설립 승인·개별법 인허가 의제 등 민원업무를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 처리하고, 공장설립민원업무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49	▪ 개발SW (226백만원) + 상용SW (84백만원) + HW (91백만원) + 운영비 (48백만원)
‘17	4.49	▪ 개발SW (226백만원) + 상용SW (84백만원) + HW (91백만원) + 운영비 (48백만원)
‘18	4.49	▪ 개발SW (226백만원) + 상용SW (84백만원) + HW (91백만원) + 운영비 (48백만원)
‘19	4.49	▪ 개발SW (226백만원) + 상용SW (84백만원) + HW (91백만원) + 운영비 (48백만원)
‘20	4.49	▪ 개발SW (226백만원) + 상용SW (84백만원) + HW (91백만원) + 운영비 (48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7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제4항, 제11조의2 제3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구성·운영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시행령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8. 4 FEMIS 확대개편확정(국가경쟁력강화회의)
- '08.11 조달업무 재설계(BPR)/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행
- '09. 5 시범 구축사업 개시
- '10. 6 전국확산 사업 착수
- '11. 8 고도화 및 이중화 사업 착수
- '12. 1 구축 완료 및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4.97	4.70	4.49	4.49	4.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97 (4.97)	- (-)	- (-)	4.97 (4.97)	4.97 (4.97)	- (-)	- (-)
'14년	4.70 (4.70)	- (-)	- (-)	4.70 (4.70)	4.70 (4.70)	- (-)	- (-)
'15년	4.49 (4.49)	- (-)	- (-)	4.49 (4.49)	4.49 (4.49)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 2016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정상

○ <산업부> 201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온라인지원시스템(대한민국)

국가명	기 관 명	수 행 업 무
한국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행정업무 처리, 도면 검색, 용도지역 정책지원, 인터넷 토지포탈서비스 제공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신청 등록정보가 연계대상으로, 단일화된 행정업무 통합창구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	기업지원 포탈로써 기업의 시각에서 '하나의 정부'로 인식되도록 정부기관 간 협업과 조정으로 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종합적인 대기업 서비스 제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활용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행정업무(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와 주택행정업무(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의 전 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

○ 공장설립지원센터

국가명	기 관 명	수 행 업 무
일본	일본입지센터	전국의 입지정보를 제공, 입지선정에서의 지원(보조금 비교표 작성, 토지소유주와의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는 하고 있지 않으며, 인·허가 절차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미국	주정부·카운티 정부	현지 인력활용 정보 및 세제 지원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 주정부 기금을 사용,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 경제개발실(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과 버지니아 주정부 경제개발 파트너쉽(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등의 기관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독일	에이전시·컨설팅 회사	공장설립시 여러 관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므로 에이전시 및 컨설팅의 협력을 무료로 지원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한마인 비즈니스 센터(HMBC)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경영 지도 에이젼시이며, 유럽진출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건축, 네트워크, 국제무역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5) 사업추진절차

<예산교부 및 집행>

예산·지침 통보	⇒	보조금신청·사업계획서수립	⇒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	실적보고 및 정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부		산단공		산단공, 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첨부 참조

참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 현황

□ **(목적 및 배경)** 공장설립 민원접수·처리 및 통계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08년부터 공장설립민원의 온라인 접수처리·전국 공장등록 통계DB 관리를 위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을 구축하여 운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시스템 구축('08~'11년 / 93억원) 및 운영

<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시스템구축	4	25	42.3	21.5	-	-	-	-	-
유지보수	-	-	-	-	-	4.97	4.70	4.49	4.49

* '12년도는 개발완료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기간으로, 유지보수예산 미반영

□ **(통합망 운영)** 전국의 243개 지자체(시·군·구)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공장시스템을 실시간 활용하여 공장설립, 등록, 증명 등 제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기초로 통합 공장 DB 정보 구축

□ **(신속·편리한 민원처리)** 공장설립, 등록, 제·증명서 발급 등 한해 20만여건의 제조업 관련 민원*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편리하게 처리

* ('15년 기준) 공장설립·등록(86,148건), 제·증명서 및 기타(164,867건)

민원 및 정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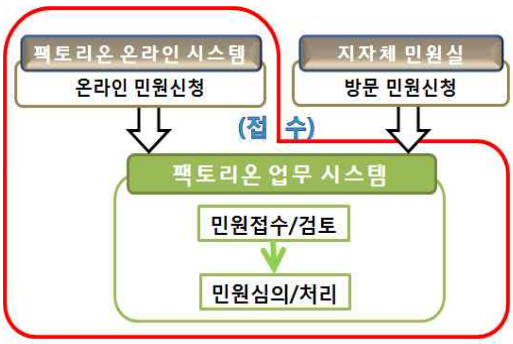

<공장설립 민원 2가지 유형 가능>

○ **온라인 민원서류 신청**
: 민원인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민원신청하고, 담당자가 업무시스템으로 접수하여 처리

○ **민원실 방문 민원서류 신청**
: 민원인이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담당자가 접수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

□ **(정보관리)** 전국 공장DB 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하여 대국민서비스 편의 제공 및 정부부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한 정책 기초자료, 산업단지 관리, 동향분석 등 각종 통계자료 제공

□ **(사업의 효과)**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공장의 제반민원 처리 간소화 및 기업활동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 유지보수 관리 필요

○ 실제 공장(제조업) 민원은 전국 시·군·구에서 한해 20만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민원을 동 시스템(전국 통합망)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에 따라 기업활동 편의 지원과 비용 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있음

- '15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동 시스템을 통해 공장설립, 등록, 제·증명서 발급 등 총 25만건*의 제조업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 공장설립·등록(86,148건), 제·증명서 및 기타(164,867건)

- 또한 축적된 공장등록 통계DB* 자료는 정부 관계기관**등에 주요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활용

  * 공장DB('15년말) : 177,909업체(산단 61,407 / 개별 116,502)
  ** 산업부, 시·군·구, 산업연구원, KDI, 통계청, 금융기관 등

지역발전위원회 지원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발전위원회 지원사업	2,097	2,553	2,396	△157	△6.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300 - 3334 - 301

* 담 당 자 : 정책총괄국장(최규종), 운영지원과장(이범천, 02-2110-1136), 주무관(김란하, 2110-11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지역발전위원회

2. 사업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균특법 제22조에 의거,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심의,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경직성)로 2,396백만원 요구

□ 지원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심의,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 지역정책의 개발, 지역과의 소통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협의회 개최, 기획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등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발전위원회	2,097	2,553	2,396	△157	△6.1
□ 비목(합계)	2,097	2,553	2,396	△157	△6.1
○ 인건비(110)	53	56	59	3	5.4
○ 운영비(210)	717	940	896	△45	△4.8
○ 여비(220)	201	189	189	-	-
○ 업무추진비(240)	195	207	195	△12	△5.8
○ 직무수행경비(250)	93	111	100	△11	△9.9
○ 연구용역비(260)	753	960	867	△93	△9.7
○ 민간이전(320)	0	20	20	-	-
○ 건설비(420)	18	0	0	-	-
○ 기타유형자산(430)	70	70	7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553	
'17	2,396	▪ 경상경비 6% 감소
'18	2,249	▪ 경상경비 6% 감소
'19	2,137	▪ 경상경비 5% 감소
'20	2,030	▪ 경상경비 5% 감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제 26조 등
- 법제22조①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 법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①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3년 이후 계속,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03.12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 '04.4.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5	23	24	26	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사업의 직급보조비로 48백만원 전용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으로 연구용역비 46백만원 이월
- 국내여비 부족분 7백만원을 국외여비에서 세목조정으로 충당
- 예산절감 요구에 따라 절감노력을 통해 808백만원 불용

○ 2014년

-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사업의 직급보조비로 26백만원 전용
- 사무실 이사에 따른 시설공사비(인테리어, 전기설비 공사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운영비, 여비에서 건설비로 161백만원 전용
-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절약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부 집행 잔액으로 인해 210백만원 불용

○ 2015년

- 창조경제 지역발전 순회 설명회 등 국내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9백만원을 국외여비에서 세목조정으로 충당
- 위원회 개최 감소 등에 따른 수당, 인쇄비 등의 예산 집행 감소와 운영비 특성상 연금지급금(직원퇴직시 집행),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 잔액으로 274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5** ( )	0 ( )	△0.48 ( )	25 ( )	**16** ( )	0.46 ( )	8 ( )
'14년	**23**	0.46	△0.26	24	**22**	0	2
'15년	**24** ( )	0 ( )	0 ( )	24 ( )	**21** ( )	0 ( )	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 연구는 1개월의 초 단기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용역 결과 제출된 최종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당초 계약서 상 과업내용인 '인구변화 예측을 통한 고령화 미래 전망', '농어촌 마을의 과소 고령화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고령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존 논의를 정리하는 데 그쳤음(15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 (조치사항)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	2,350	2,350	-	-

* 사업코드 : 3333 - 309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박기영), 입지총괄과(김호성, 044-203-4430), 사무관(박철오, 44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6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등의 증대에 기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 1,000백만원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200백만원
- 산업단지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200백만원
- 산업단지 현황 조사, 간행물, 전문자료 발간 600백만원

② 산업단지 입주 및 지원 서비스 제고 : 1,350백만원

- 산업단지 민원상담 전용 콜센터 운영 400백만원
-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300백만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포럼 및 간담회, 수출상담회, 채용박람회 6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대비 생산 44.7%, 수출 50.3%, 고용 30% 차지('14년 기준)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활동의 거점기능 수행

- 정부에서는 국가산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

○ 산업단지공단이 관리 위탁하는 국가산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5년까지 관련 예산 지원이 없어 산단공은 산단관리비** 확보에 애로

* 산단공 위탁 국가산단(개) : ('11) 24 → ('13) 26 → ('14) 29 → ('16) 31
** 산단공 산단관리비(억원) : ('11)347, ('12)343, ('13)360, ('14)372, ('15)404

- 산단공이 국가산단내 입주기업으로부터 받던 산단관리비 제도가 폐지('96.12월) 된 이후, 산단공은 자체시설 임대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

* 산단공 자산매각 : 최근 5년간('11~'15) 1,711억원

○ 이에 국가산단내 입주기업의 지원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산단공의 국가산단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23.5억원)를 계속 지원

* 산단공 '15년 국가산단 관리비는 404억원(직접비 59억, 경상비 83억, 인건비 262억) 소요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	2,350	2,350	-	-
▪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	1,218	1,000	△218	△17.8
▪ 산업단지 입주 및 지원 서비스 제고	-	1,132	1,350	218	19.2
□ 비목	-	2,350	2,350	-	-
▪ 민간경상보조(302-01)	-	2,350	2,35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산단공의 산단관리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 필요

- 동 사업을 통해 국가산단 위탁관리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단내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3.5	▪산단 발전기반 강화 12.2억원, ▪산단 입주·공설지원서비스 제고 11.3억
'17	23.5	▪산단 발전기반 강화 10.0억원, ▪산단 입주·공설지원서비스 제고 13.5억
'18	23.5	▪산단 발전기반 강화 10.0억원, ▪산단 입주·공설지원서비스 제고 13.5억
'19	23.5	▪산단 발전기반 강화 10.0억원, ▪산단 입주·공설지원서비스 제고 13.5억
'20	23.5	▪산단 발전기반 강화 10.0억원, ▪산단 입주·공설지원서비스 제고 13.5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 제30조 제1항 제1호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제30조 제1항 :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 제45조의9 제1항 :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동 법률 제51조에 따라 산단공은 국가산업단지 위탁 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8(출연 및 보조금)

> 제45조의18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64~'90 한국수출('64), 중부('71), 동남('74), 서부('77), 서남('90)공단 설립
- '97.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5개 권역별 관리공단 통합)
  산단내 입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관리비(분양금액의 2~7%) 폐지
- '14. 9 산업단지 50주년 행사(국가산단의 창조경제 거점화 역할 강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	-	-	23.5	2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15년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산업위('17년도 예산)

- (지적사항)

① 동 사업비 중 수출촉진·고용지원은 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② 상담건수 감소 등 콜센터 활용 부진에 대하여 개선 필요

- (조치사항) ① 산단공이 입주기업과의 최접점에서 산단별 특성에 맞는 수출 및 고용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② '16년 상담영역을 전국으로 확대(상담인원 12명) 하는 등 향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예산지침 통보	산업부	○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보조금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주기업의 Need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산업부	○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실행
⇩		
실적보고 및 정산	한국산업단지공단	○ 세부사업 실행에 대한 보고서 및 집행내역 정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별도 첨부

참고 **산업단지 관리업무 현황**

□ 산업단지 관리업무

○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맞게 기업체를 입주시켜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산단 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산집법 제2조 정의·영 제5조 및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등)

□ 관리업무 주요내용

구분	업무명	법적근거	주요내용
관리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운영	법 제33조	조성목적에 맞게 기업 유치, 공장배치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 수립·변경
입주관리	입주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법 제38조 ~제40조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 적용을 통한 적격업체 유치 및 용도에 적합하에 사용관리
공장설립 지원 및 등록관리	공장설립 지원	법 제6조의2, 제7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공장등록 관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대행지원을 위한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공장설립 등록 관리	법 제16조, 제38조	입주계약 사업계획서 및 건축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공장등록 및 증명관리
입주기업 지원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지원	법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기술, 인력, 판로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과 기업성장 지원 등
안전관리	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관리	법 제45조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지도활동, 정보공유, 환경개선 및 전문기관 협업 등
필요시설 설치운영	단지내 기반·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법 제2조, 제33조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등의 설치운영
구조고도화	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	영 제5조, 법 제45조의2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지의 경쟁력강화 추진
산업집적 촉진	임대전용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운영	법 38조의2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안정적 생산공간 지원을 위해 임대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입지공간 제공
산업단지 조사	산업단지 현황 조사	법 제48조	산업단지 일반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및 투자 관련 기본현황 조사 및 제공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			13,480	13,480	10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5 - 3500 - 3571 - 308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위협력팀장(백경동, 044-203-4418), 사무관(변재택, 44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7~'18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본보조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 45~75%)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차단체

2. 사업목적

○ 지방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의 업종전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위기 업종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업종전환 설비투자 보조금

-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유도를 위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산 출 근 거

□ (설비투자보조금) 13,480백만원

▪ 20개사 × 674백만원[10,219백만원('15년 보조금 수혜기업당 기계장비 평균구입비) × 10.15%*('15년 설비투자 평균 지원비율) × 65%(국비매칭비)]

* 설비투자에 대한 최대 지원비율은 14%이나 지자체의 예산사정(매칭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비율은 10.15%로 낮아짐('15년 수혜기업 86개를 대상)

□ 지원 필요성

○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지방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조선기자재 기업의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13,480**	**13,480**	**100**
▪ 사업다각화 설비투자 보조금			**13,480** 20(기업수) * 674백만원 [10,219백만원('15년 보조금 수혜기업당 기계장비 평균구입비) × 10.15%('15년 설비투자 평균 지원비율) × 65%(국비매칭비)]	13,480	100
□ 비목(합계)			**13,480**	**13,480**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3,480	13,480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을 도모

-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국내 복귀기업에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7	135	▪ 사업다각화 설비투자보조금 : 135
‘18	135	▪ 사업다각화 설비투자보조금 : 135
‘19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2016-180호, 2016.9.30)

○ 추진경위

- 글로벌 과잉에 따른 조선업종 침체로 관련 기자재업체들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한 사업 다각화 유도 등 정부의 지원 필요성 발생
-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고시 제정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한시지원				40(추경)	1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5년							
'16년	40			40	40 (2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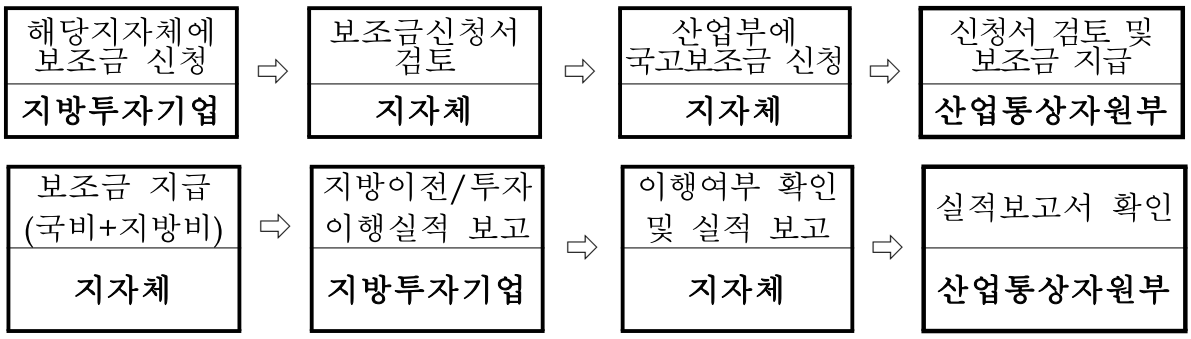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제도 개요

참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제도 개요

1 **(지원대상)** 지방에서 사업전환을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대기업 제외)

○ 사업전환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조선기자재업 외에 다른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경우를 의미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며, 최근 2년의 조선기자재업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업체

제9조(지원요건) ① 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것
3. 이 기준 제정일로부터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일 것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2 **(보조율)** 현행 고시의 설비투자 보조율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설비투자액은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이 적용 대상(건물·기계장비매입비용은 제외, 최대 60억원)

[별표] 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 1항 관련)

지역 구분	지원비율		국비 비율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11%이내	14%이내	65%
수도권 인접지역	8%이내	11%이내	45%
지원우대지역	19%이내	24%이내	75%

3 **(특례조항)** 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조선 기자재기업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몇가지 요건 완화

①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불요(현행고시 제10조 2항)

- 조선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 다각화하고자 하는 설비투자이므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유지의무는 배제

② 보조금 신청기간 제한(현행고시 제10조 2항)

-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18.9월)에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사업 (재량, 계속, 국정과제)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174,100	182,831	172,550	△10,281	△5.6

* 사업코드 : 110-114-4200-4231-309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산업과 사무관(이철한, 044-203-4423), 주무관(팽기득, 44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95 ~ 2019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과제당 2~5억원 지원
지원조건	지역기업(컨소시엄),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등 총 사업비의 50~100% 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시·도 단위 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역주력산업육성 : 시·도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시도별 지역 특화발전프로젝트, 위기업종 지원(118,469백만원)

- 주력산업기술개발 : 51,119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 37,180백만원
- 창의융합R&D : 25,170백만원
- 위기업종지원 : 5,000백만원

② 지역연고산업육성 : 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 포함) 단위 기술개발 등 연고전통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원(38,543백만원)

- 풀뿌리기업육성 : 27,717백만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 6,286백만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 4,540백만원

③ 공공기관연계육성 :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지원(7,382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지역 내 부가가치·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주력산업 지원 필요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 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 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밑줄친 주력산업은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 산업분야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시·도별 주력산업 선정·지원키로 결정('14.2월)

○ 산업부와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을 선정('14.3월)하였으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력산업 지원방안* 확정('14.5월)

* 시·도별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개편(재정비)(안)' 심의·의결

○ 시·도별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각 시도별 1개씩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선정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14.9월)

② 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 포함) 단위에서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연고(전통)산업 분야 특화품목 지원

○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고, 지역이 발굴한 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VIP 보고('14.3월)

- R&D 위주로 지원하되, 시험·인증, 공정개선, 특허, 창업, 마케팅·유통, 컨설팅,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종합 지원

③ 지역별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 핵심주체의 수요, 공급능력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유형 발굴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지역특화 산업육성(R&D)	174,100	182,831	172,550	△10,281	△5.6
▪ 지역주력 산업육성	주력산업: 47,860백만 (계속) 8개×201백만 =1,605 (신규) 217개×213백만 = 46,255	주력산업: **43,454백만** (계속) 123개×230백만 = 28,211 (신규) 102개×200백만×9/12 = 15,243	**51,119백만** (종료) 35개×230백만×12/12 +48개×200백만×12/12= 17,650 (다/상)123개×194백만×9/12 =17,949 (단/상)80개×194백만×12/12 =15,520	7,665	17.6
	특화발전: 29,582백만 (계속) 1개×170백만 = 170 (신규) 133개×221백만 = 29,412	특화발전: **37,180백만** (계속) 87개×230백만 = 20,065 (신규)114개×200백만×9/12=17,115	**37,180백만** (종료) 45개× 230백만×12/12 + 54개×200백만×12/12=21,150 (다/상)54개×194백만×9/12=7,857 (단/상)42개×194백만×12/12=8,173	-	-
	창의융합: 15,492백만 (신규) 88개×176백만 = 15,492	창의융합: **25,170백만** (계속) 27개 × 200백만 = 5,396 (신규)132개×200 백만×9/12 = 19,774	**25,170백만** (기일치) 40개×200백만 ×12/12= 8,000 (종료) 1개×200백만 ×12/12= 200 (다/상) 46개×194백만×9/12= 6,693 (단/상) 53개×194백만×12/12=10,277	-	-
	위기업종: -	위기업종: -	**5,000백만** (다/상) 25개×267백만×9/12 = 5,000	5,000	순증액
▪ 지역연고 산업육성	풀뿌리: 20,992백만 (계속) 20개×488백만 = 9,760 (신규) 20개×562백만 = 11,232	풀뿌리: **32,505백만** (계속) 40개 × 524백만 = 20,992 (신규) 22개 × 525백만 = 11,513	**27,717백만** (계속) 22개×524백만×10/12 = 9,607 (종료) 20개×524백만×12/12 = 10,480 (다/상) 20개×509백만×9/12 =7,630	△4,788	△14.7
	지역연고: 32,499백만 (계속) 61개×533백만 = 32,499	지역연고: **17,285백만** (계속) 33개× 524백만 = 17,285	**6,286백만** (종료) 12개×524백만 ×12/12 = 6,286	△10,999	△63.6
	혁신센터: 10,565백만 (계속) 22개×480백만 = 10,565	혁신센터: **7,257백만** (계속)16개× 454백만 = 7,257	**4,540백만** (계속) 3개×454백만x12/12 = 1,362 (종료) 7개×454백만x12/12 = 3,178	△2,717	△37.4
▪ 공공기관 연계육성	8,570백만 (계속) 14개×408백만 = 5,712 (신규) 7개×381백만 = 2,858	**11,440백만** (계속) 22개×381백만 = 8,382 (신규) 8개×381백만 = 3,058	**7,382백만** (종료) 8개×380백만×12/12 =3,040 (단/상) 12개×362백만×12/12 =4,342	△4,058	△35.5
▪ 기획평가 관 리 비	8,540	8,540	8,156	△384	△4.5
□ 비목(합계)	174,100	182,831	172,550	△10,281	△5.6
○연구활동비 (360-05)	174,100	182,831	172,550	△10,281	△5.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육성을 대표적으로 추진하되,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큰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전통)산업도 발굴·육성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육성도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828	▪ 지역주력산업육성 : 1,110억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 598억원 ▪ 공공기관연계육성 : 120억원
'17	1,828	▪ 지역주력산업육성 : 1,262억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 466억원 ▪ 공공기관연계육성 : 100억원
'18	1,828	▪ 지역주력산업육성 : 1,443억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 355억원 ▪ 공공기관연계육성 : 30억원
'19	1,828	▪ 지역주력산업육성 : 1,487억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 341억원
'20	1,807	▪ 지역주력산업육성 : 1,466억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 341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 추진경위

- ‘12. 12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 사업의 지원체계를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

- ‘13. 7 : 박근혜정부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

  * ①(공간) 광역권 →시도 경제협력권, ②(목표) 주민체감형 일자리 창출, ③(전략) 지역기반 제조업·서비스업, IT등 첨단기술 융·복합 등

- ‘14. 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제협력권 도입 등 新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 ‘14. 3 : 지역주도로 지역수요에 기반한 ‘시·도별 대표산업을 선정’(‘14.3월), ’지역산업 육성사업 재정비 계획‘ 수립 (’14.7월, 국무회의)

  * 시도 주도 63개 주력산업,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행복생활권 기반의 39개 지역연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14. 9 : 지역사업 개편에 기초하여 5년단위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14~‘18)’ 수립

  * (현행) 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 (변경) 5년단위 중장기계획 + 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 ‘14. 9 : 시도별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각 시도별 1개씩 지역특화 발전프로젝트 선정(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특화산업 육성(R&D)	1,303	1,674	1,741	1,828	1,7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이월 사유 :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사고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303 (1,303)	0 (0)	0 (0)	1,303 (1,303)	1,055 (1,055)	248 (248)	0 (0)
’14년	1,674 (1,674)	248 (248)	0 (0)	1,922 (1,922)	1,922 (1,922)	0 (0)	0 (0)
’15년	1,741 (1,741)	0 (0)	0 (0)	1,741 (1,741)	1,741 (1,741)	0 (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도 결산 상임위

시정·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ㅇ 14년 과제 협약이 하반기에 이뤄지는 등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됨. 적기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규과제 선정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시정 및 처리결과(조치완료)** ㅇ '15년은 연간 시행계획을 조기 수립(1월)함에 따라 협약체결을 6월에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을 개선함 -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1월)→1차 사업공고(2월) →1차 사업비지급(6월) ㅇ '16년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15년 12월에 확정하는 등 예산기간과 사업기간이 일치되도록 추진할 계획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15.4월)

시정·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선행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2015.4월) -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도 지정공모방식과 같이 선행기술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구수행기관이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기술(출원 중인 특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연구관리 전담기관에서 이를 확인 - 과제 규모(기간, 금액)에 따라 선행특허조사 실시	□ **시정 및 처리결과(조치완료)** ㅇ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과제지원에 대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연구수행기관이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기술(보유 특허) 등을 상세히 기술토록 개선 ('15.5월, 2차 신규공고 과제부터 적용)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자유공모과제 중 2년이상 지원과제에 대한 전수 선행특허조사 실시 ('15.5월, 2차 신규공고 과제부터 적용, 특허청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 연계)

○ 2015년도 국가 R&D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결과	평가의견 (요약)
보통	ㅇ 청년층 고용창출 비율(40.5%), 전문학사 이상 인력 비율(77.1%) 등이 우수 하고, 연구직 비율(48.1%), 고용유지율(86%), 정규직 비율(89.9%) 등 고용의 질적 성과 또한 우수

○ 2015년도 지역위 지역사업 평가결과

평가등급	평가의견(요약)
S (92점)	ㅇ 지역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에서의 성과가 우수함. 특히 지역의 청년층 고용과 여성인력 고용, 연구직 인력의 고용실적, 고용 유지율 등이 높아 고용 성과의 질적 우수성이 인정되며, 이는 동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 ㅇ '14년 미래부 상위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사업관리시스템(RITIS)를 고도화 하는 등 사업 개선 실적도 인정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주체는 지방정부

○ 중앙정부는 경제산업성(우리나라의 산업부)이 지역정책의 최상위 조직으로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산업정책 전반을 조율

- 8개의 경제산업성 산하조직인 지방지부국내 지역경제산업국이 광역단위의 본부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시에서 의사조정 역할 수행

○ 47개의 도도부현(광역지자체)과 시정촌(시·군·구)단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을 받아 기지역의 기업을 지원

< 일본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 구조 (출처 : 관동경제국, 2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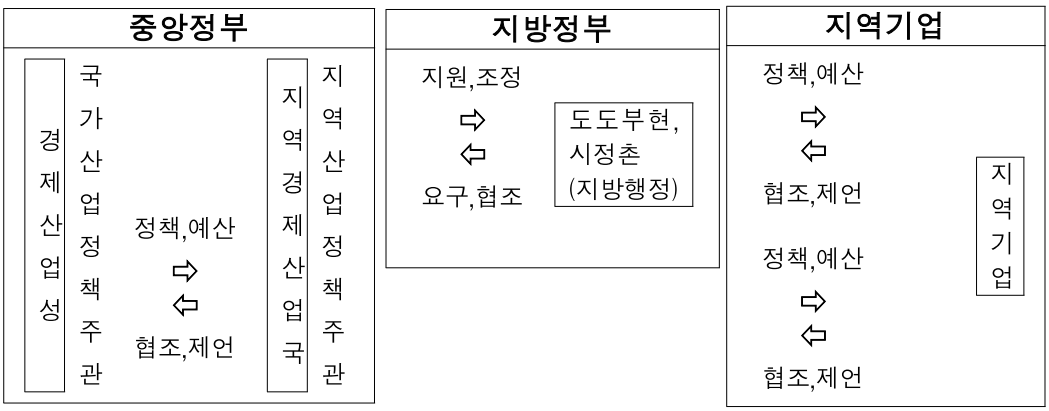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 사전기획 절차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산업부→ 14개 시·도)

-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개요 (대상사업의 범위, 예산지원방식 등)
- 종합계획 기획 추진체계의 구성·운영방식
-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체계
- 사업기간, 예산규모(안), 세부지침 등

⬇

2단계

지역별 자율적인
지역산업진흥계획 기획
(14개 시·도 → 산업부)
* 시·도 책임 하에 TP 주관 기획

- 지역의 여건변화 및 기업수요를 고려하되, 가이드라인, 기업특성조사 등에 기초 하여 종합기획
- 종합계획은 총괄사업계획과 개별사업계획으로 구성
- 지역특화산업 예산배분안은 지역 자율로 결정
-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산업부에 제출

⬇

3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검토·컨설팅 및 조정 (산업부·전담기관 → 시도·TP)	· 지역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종합기획안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검토, 컨설팅 및 조정 실시 (전담기관 : 진흥계획 컨설팅팀 구성·운영) · 세부과제의 추진근거 및 타당성, 재원확보 계획 등 집중 검토
⬇	
4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확정 및 협약 체결 (지역경제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차관)와 지자체(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사업추진 절차

지역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시·도 지자체 자율적 수립
⇩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지역실물경제 정책위원회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담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별 성과평가 및 지역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반영	시·도 지자체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에서 제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재량, 계속, 국정과제)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92,927	97,347	83,548	△13,799	△14

* 사업코드 : 110-114-4200-4231-319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산업과 사무관(이철한, 044-203-4423), 주무관(팽기득, 44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과제당 5~10억원 지원
지원조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산학연 컨소시엄 등 총 사업비의 50~100%를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지역기업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 도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시도 기업지원 : 70,775백만원

- (기업지원서비스) 50개 주력산업분야 기업(13개 특화프로젝트 제외) 등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32,400백만원)

- (특화발전서비스)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한 13개 주력산업 분야 해당 기업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26,000백만원)

- (사업화신속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지원(10,200백만원)

- (스마트공장지원)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2,175백만원)

② 시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 12,773백만원

- (정책기획) 시·도별 지역산업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지역산업 총괄업무 지원(5,384백만원)

- (기업지원플랫폼) 시·도별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중개, 네트워킹, 플랫폼 기능 강화 업무 지원(7,38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개 시도별* 특화산업(3~5개)분야 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 등을 지원 필요

* 현재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 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 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서도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 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 ('14.2월)

○ 산업부와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을 선정** 하였으며('14.3.31.),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력산업 지원방안* 확정('14.5.16.)

* 시·도별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개편(재정비)(안)' 심의·의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 (B)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 (순증액, +a)			%
□ **지역특화산업육성**	**92,927**		**97,347**	**4,500**	**83,548**	**△13,799**	**△14.2**
▪ 시도 기업지원 (산출근거)	주력산업	44,050 (51개산업×28.8개기업×30백만)	44,050 (50개산업×29개기업×30백만)	-	32,400 (50개산업×21.5개기업×30백만)	△11,650	△26.4
	특화발전	24,000 (12개산업×2,000백만)	26,000 (13개산업×2,000백만)	-	26,000 (13개산업×2,000백만)	-	-
	사업화 신속지원	7,800 (13개시도×600백만)	10,200 (17개시도×600백만)	4,500 (5개시도×900백만)	10,200 (17개시도×600백만)	-	-
	스마트공장	2,132 (43개기업×100백만×50%)	2,900 (58개기업×100백만×50%)	-	2,175 (62개기업×100백만×35%)	△725	△25.0
▪ 시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산출근거)	정책기획	6,300 (14개시도×900백만×50%)	5,985 (14개시도×855백만×50%)	-	5,384 (14개시도×770백만×50%)	△601	△10.0
	기업지원 플랫폼	8,645 (19개과제×910백만×50%)	8,212 (19개과제×864백만×50%)	-	7,389 (19개과제×778백만×50%)	△823	△10.0
□ **비목**(합계)	**92,927**		**97,347**	**4,500**	**83,548**	**△13,799**	**△14.2**
○ 출연(350-02)	92,927		97,347	4,500	83,548	△13,799	△14.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애로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집중지원 하고, 기구축 인프라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역기반 확충

* 지역내 부가가치·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14개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주력산업 선정('14.3.31.)

○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프로그램 중심으로 세부 과제들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018	▪ 기업지원서비스 876억원 ▪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 142억원
‘17	934	▪ 기업지원서비스 792억원 ▪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 142억원
‘18	910	▪ 기업지원서비스 768억원 ▪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 142억원
‘19	903	▪ 기업지원서비스 761억원 ▪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 142억원
‘20	867	▪ 기업지원서비스 725억원 ▪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 142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1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국가균형발전법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기술·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2. 12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 사업의 지원체계를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

- ‘13. 7 : 박근혜정부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

  * ①(공간) 광역권 →시도 경제협력권, ②(목표) 주민체감형 일자리 창출, ③(전략) 지역기반 제조업·서비스업, IT등 첨단기술 융·복합 등

- ‘14. 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제협력권 도입 등 新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 ‘14. 3 : 지역주도로 지역수요에 기반한 ‘시·도별 대표산업을 선정’(‘14.3월), ’지역산업 육성사업 재정비 계획‘ 수립 (’14.7월, 국무회의)

  * 시도 주도 63개 주력산업,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행복생활권 기반의 39개 지역연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14. 9 : 지역사업 개편에 기초하여 5년단위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14~‘18)’ 수립

  * (현행) 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 (변경) 5년단위 중장기계획 + 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 ‘14. 9 : 시도별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각 시도별 1개씩 지역특화 발전프로젝트 선정(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특화산업 육성	997	902	929	1,018	8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도 지역위 지역사업 평가결과

평가등급	평가의견(요약)
B (75점)	○ 사업내용과 성과지표가 잘 연계되어 있고, 사업추진체계, 성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지역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시·도 지자체 자율적 수립
↓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지역실물경제 정책위원회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담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별 성과평가 및 지역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반영	시·도 지자체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주관기관(수행기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국가재정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재량, 계속, 국정과제, 경제혁신, R&D)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123,011	143,387	145,607	2,220	1.5

* 사업코드 : 21 - 39 - 0 - 110 - 114 - 4200 - 4231 - 322

* 담당자 : 지역산업정책관(박기영), 지역산업과장(공석, 044-203-4420), 사무관(김지연, 044-203-4440)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 ~ '20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출연(지방비매칭, 국비:지방비=7:3)
사업시행주체	(사업수행) 지역기업, 대학, TP, 연구원 등 지역혁신기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2. 사업목적

○ 14개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 내 39개 협력산업별 유망 품목의 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 현황

○ 총 17개 경제협력권 내 시·도 기준 39개 협력산업으로 구성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비즈니스협력형(126,082백만원) 39개 협력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신규과제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수출·고용 확대

▪ **산출근거**

('16년) 173개 과제 × 718.2백만원 = 124,200백만원
⇨ ('17년 기일치) 21개 과제 × 715백만원 × 12/12 = 15,015백만원
('17년 종료) 140개 과제 × 709백만원 × 12/12 = 99,269백만원
('17년 신규/다상) 22개 과제 × 715백만원 × 9/12 = 11,798백만원

② 창의융합형(13,122백만원) 시도간 협력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지역의 창조경제거점화를 위해 '16년 수준 유지

▪ **산출내역**

('16년) 54개 과제 × 243백만원 = 13,122백만원
⇨ ('17년 종료) 36개 과제 × 200백만원 × 12/12 = 7,200백만원
('17년 신규/다상) 30개 과제 × 260.8백만원 × 9/12 ≒ 5,922백만원

③ 기평비(6,403백만원) :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13개 지역사업 평가단을 통한 계속 및 신규과제 밀착지원

□ 지원 필요성

[정책부합성 측면]

○ **현 정부의 'HOPE 프로젝트'에 따른 대표 사업으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핵심개혁과제에 반영**

* ① 'HOPE 프로젝트'에서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13.7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완료('14.1월)
② 「국정과제 107번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54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상사업으로 지원 필요
③ 지역발전5개년계획(균특법 제4조) : 'II.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비수도권의 투자, 고용창출 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협력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수도권의 GRDP 비중은 '12년이후 증가추세('12년 48.2, '13년 48.7, '14년 48.9)이고, GRDP 연평균증가율(2012~2014)은 전체 3.83%, 수도권 4.54%, 비수도권 3.17%로 격차 확대(자료출처 : 지역계정(통계청)

** (고용) '15년 490명 ⇨ '16년 748명(목표) ⇨ '17년 1,019명(예상)

- 최근 조선·해운, 철강업 등 국가 주력사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산업 구조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기반 확충 긴요

○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지역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

- R&D과제 신규 수요조사를 통한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연계 과제기획을 통한 지역기업 수출역량 강화 추진

* 16년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주관기업 173개 중 134개(77%)가 수출기업

○ **지역 맞춤형 R&D 혁신역량 강화** 및 **개방형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화**로 인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성과 확산 도모

* (창의융합형)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개발로 단기간내 연결

** (비즈니스협력형)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이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123,011	143,387	145,607	2,220	1.5
▪ 비즈니스 협 력 형	109,885 (신규) (153개 × 718백만)	124,200 (계속) 152개 × 718백만≒ 109,185백만원 (신규) 21개 × 715백만≒ 15,015백만원	126,082 (기일치) 21개 × 715백만 x12/12개월 ≒ 15,015백만원 (종료) 140개 ×709백만 x12/12개월 ≒ 99,269백만원 (다/상) 22개 ×715백만 x9/12개월 ≒ 11,798백만원	1,882	1.5
▪ 창의융합형	7,450 (신규) 43개 × 173백만	13,122 (계속) 11개 × 174백만 ≒ 1,910백만원 (신규) 43개 × 261백만 ≒ 11,212백만원	13,122 (종료) 36개 × 200백만 x12/12개월 ≒ 7,200백만원 (다/상) 30 × 261백만 x9/12개월 ≒ 5,922백만원	-	-
▪ 기평비	5,676 (4.6%)	6,065 (4.2%)	6,403 (4.4%)	338	5.6
□ 비목(합계)	123,011	143,387	145,607	2,220	1.5
○ 연구활동비(360-05)	123,011	143,387	145,607	2,220	1.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는 유망품목을 개발·사업화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출·시장점유율·부가가치·일자리 증가에 의한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R&D 과제 내 사업화전략 총괄지원기관을 통해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434	·(비즈니스협력형) 1,242억원 [계속] 152개 × 718백만 = 1,092억원 [신규] 21개 × 718백만 = 150억원 ·(창의융합형) 131억원 [계속] 11개 × 173백만 = 19억원 [신규] 43개 × 261백만 = 112억원 ·(기평비) 61억원(4.23%)
‘17	1,434	·(비즈니스협력형) 1,242억원 [계속] 173개 × 718백만 = 1,242억원 ·(창의융합형) 131억원 [계속] 36개 × 200백만 = 72억원 [신규] 30개 × 200백만 ≒ 59억원 ·(기평비) 61억원(4.23%)
‘18	1,434	·(비즈니스협력형) 1,242억원 [신규] 173개 × 718백만 = 1,242억원 ·(창의융합형) 131억원 [계속] 30개 × 200백만 = 60억원 [신규] 36개 × 200백만 ≒ 71억원 ·(기평비) 61억원(4.23%)
‘19	1,434	·(비즈니스협력형) 1,242억원 [계속] 173개 × 718백만 = 1,242억원 ·(창의융합형) 131억원 [계속] 30개 × 200백만 = 60억원 [신규] 36개 × 200백만 ≒ 71억원 ·(기평비) 61억원(4.23%)
‘20	1,417	·(비즈니스협력형) 1,225억원 [계속] 170개 × 718백만 = 1,225억원 ·(창의융합형) 131억원 [계속] 30개 × 200백만 = 60억원 [신규] 36개 × 200백만 ≒ 71억원 ·(기평비) 61억원(4.2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2. ...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
3. ...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
4. ...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② 공약 및 시책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14.5월)

※ 국정과제 '107-3번, 지역산업 재정비 및 지역투자 여건 개선' :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의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기존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지역주력산업육성(시·도 별), **협력산업육성(시·도 연계)**, 지역연고산업육성(시·군·구 또는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단계적 개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5)** 지역간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시·도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 ('14.2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14.3.) :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경제(산업)협력권사업 추진

○ 추진경위

- ‘13년 7월	:	박근혜 정부, ‘HOPE 프로젝트’에서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한 지역산업 육성키로 결정 - 2개 이상 시・도가 산업 협력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집행하는 ‘시・도 산업협력사업’ 계획
- ‘13년 10월	:	’HOPE 프로젝트‘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강화방안」 보고(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1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
- ‘14년 2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결정
- ‘14년 3월	:	협력산업권을 확정・발표하고, 산업부 - 시·도 간 ‘경제협력권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 ‘14년 5월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국정과제 107-3)
- ‘14년 5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방안」을 심의·의결(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7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재정비 계획(안)」 심의」 의결(제29차 국무회의)
- ‘14년 9월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거쳐 2014년도 하반기 예타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
- ‘14년 10월	:	예타 면제 국회 상임위(산업자원위) 보고
- ‘15년 9월	:	기재부(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완료 (검토결과 “적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234	1,434	1,456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본예산+추경)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기재부가 1,234억원 중 기평비 일부(4억원)를 제외한 1,230억원을 배정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15년	1,234 (1,230)	( )	( )	1,234 (1,230)	1,230 (1,230)	0 ( )	4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	
세부사업시행계획 공고	산업부/전담기관(KIAT)
↓	
사업계획서 접수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	
사업계획서 평가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참고1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협력으로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유형별 추진방식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R&D	비즈니스 협력형	산업생태계 조사,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5~10억원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5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방식) **지정공모**
	창의 융합형	시·도별 대표산업(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R&D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지역 중소·중견 기업 (지원방식) **자유공모**
비R&D	경제 협력형	협력산업 관련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8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2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기술·역량강화 (지원방식) **지정공모**
	사업화 신속지원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한 창의기업(가성기업 혁신모델 포함)에 대한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6억원 (지원기간) 과제당 1년 (수행기관) TP(기업지원단) (지원방식) **정책지정**

3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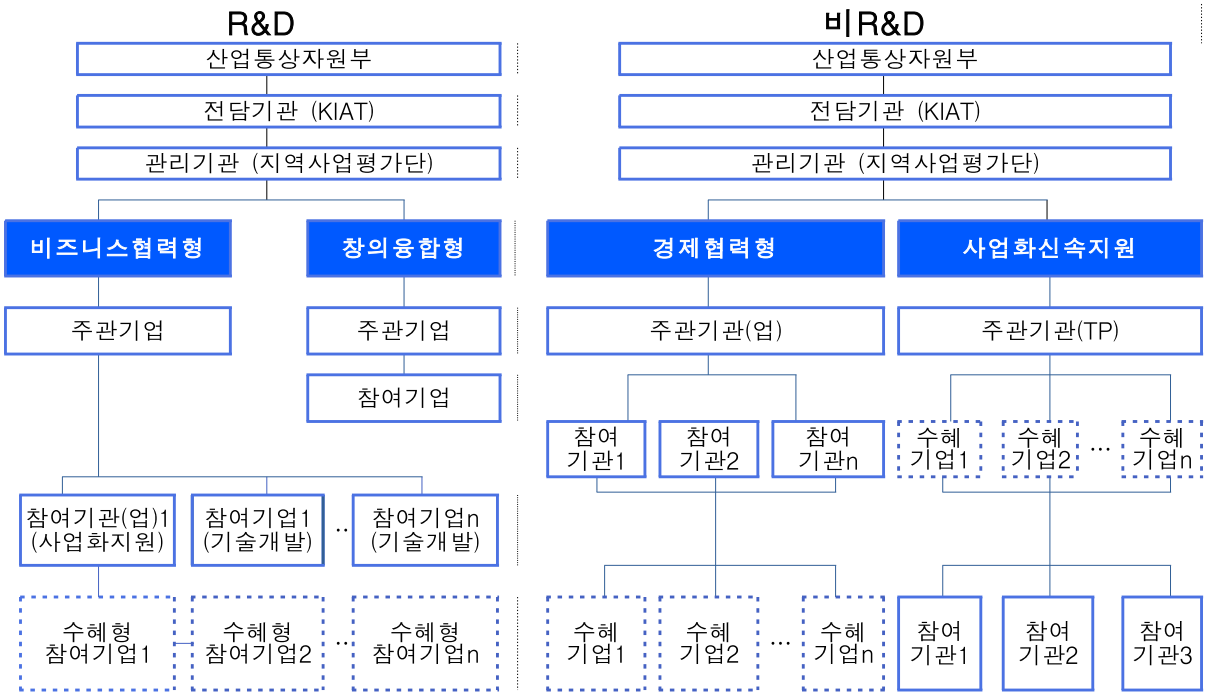

참고2 경제협력권산업 시도별 협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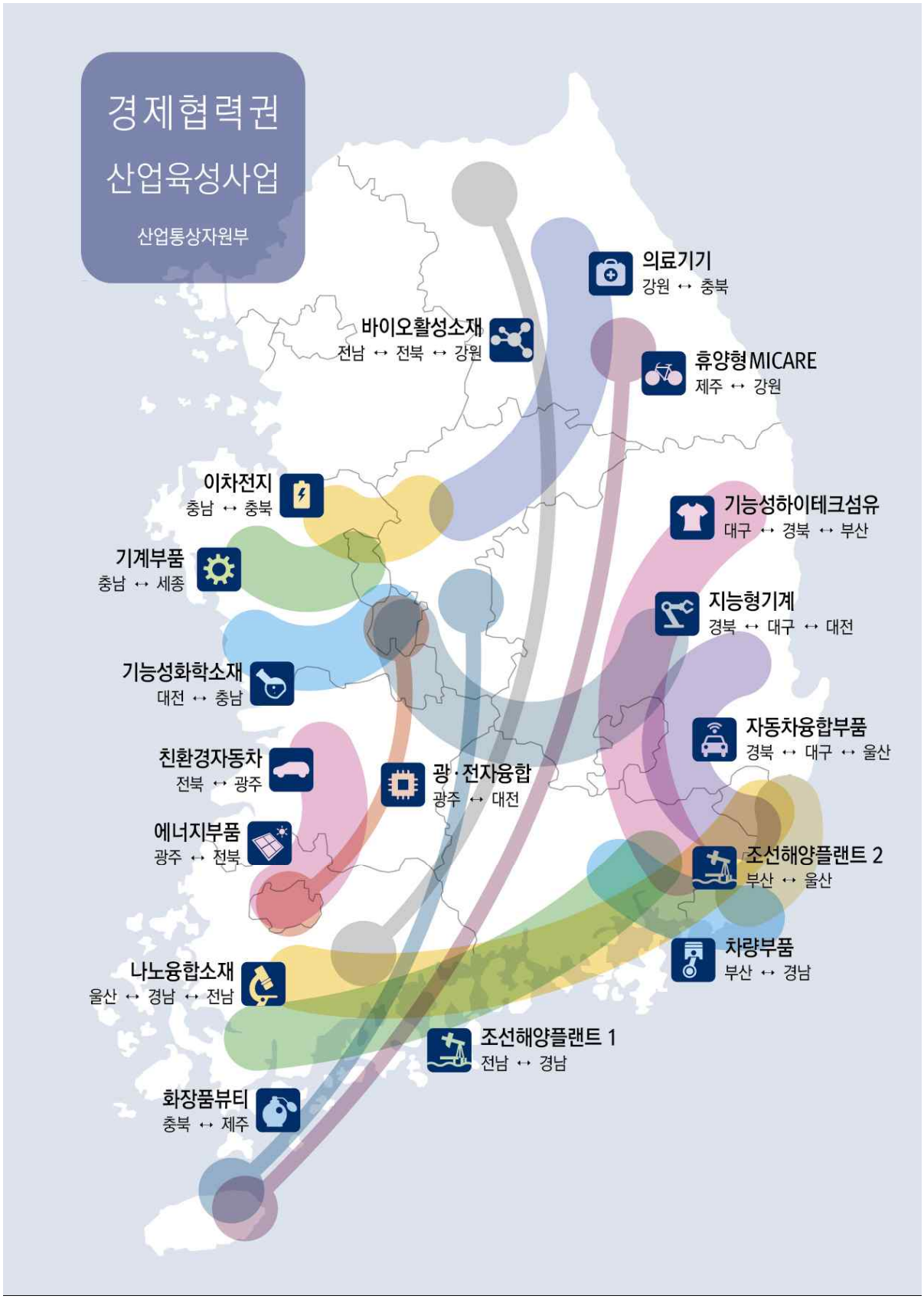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재량, 계속, 국정과제, 경제혁신)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45,668	47,668	41,859	5,809	12.2

* 사업코드 : 21 - 39 - 0 - 110 - 114 - 4200 - 4231 - 321

* 담당자 : 지역산업정책관(박기영), 지역산업과장(공석, 044-203-4420), 사무관(김지연, 044-203-4440)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 ~ '20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출연(지방비매칭, 국비:지방비=7:3)
사업시행주체	(사업수행) 지역기업, 대학, TP, 연구원 등 지역혁신기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2. 사업목적

○ 시·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협력권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기술지원등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경제협력권산업 현황

○ 총 17개 경제협력권 내 시·도 기준 39개 협력산업으로 구성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경제협력형(34,059백만원)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을 위해 협력권별 사업화, 마케팅 및 기술지원,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16년) 43개 계속과제 × 881백만원(평균단가) ≒ 37,868백만원

⇨ ('17년) 43개 계속과제 × 792백만원(평균단가) ≒ 34,059백만원

② 사업화신속지원(7,800백만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제품)를 신속히 사업화로 연결하는 수요기반형 원스톱지원서비스 추진

▪ 산출근거

('16년) 13개 시도(계속과제) × 600백만원 + 추경(4개시도 × 50백만원) = 9,800백만원

⇨ ('17년) 13개시도(계속과제) × 600백만원 = 7,8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정책부합성 측면]

○ **현 정부의 'HOPE 프로젝트'**에 따른 대표 사업으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핵심개혁과제에 반영**

* ① 'HOPE 프로젝트'에서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13.7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완료('14.1월)
② 「국정과제 107번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54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상사업으로 지원 필요
③ 지역발전5개년계획(균특법 제4조) : 'II.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비수도권의 투자, 고용창출 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협력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수도권의 GRDP 비중은 '12년이후 증가추세('12년 48.2, '13년 48.7, '14년 48.9)이고, GRDP 연평균증가율(2012~2014)은 전체 3.83%, 수도권 4.54%, 비수도권 3.17%로 격차 확대(자료출처 : 지역계정(통계청)

** (고용) '15년 490명 ⇨ '16년 748명(목표) ⇨ '17년 1,019명(예상)

- 최근 조선·해운, 철강업 등 국가 주력사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산업 구조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기반 확충 긴요

○ 시·도 자율로 구성된 **39개 협력산업 내** 산업별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시제품제작,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시회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업지원

* 협력권 산업에 종사하는 29,662개 기업(종사자 수 489,069명, '14년 기준)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매출 및 신규 고용 창출 확대** 기여 중

- 사업화 역량이 낮은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 이후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 **집중 지원**

* 기업성장과정上 생존율이 낮은 단계(개발기술의 사업화,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극복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45,668**	**47,668**	**41,859**	**△5,809**	**△12.2**
▪ 경제협력형 (산출근거)	37,868 (43개×881백만)	37,868 (43개×881백만)	34,059 (43개×792백만)	**△3,809**	**△10.1**
▪ 사업화신속지원 (산출근거)	7,800 (13개×600백만)	9,800 (13개×600백만+4개×50백만원)	7,800 (13개×600백만)	**△2,000**	**△20.4**
□ **비목**(합계)	**45,668**	**47,668**	**41,859**	**△5,809**	**△12.2**
○ 출연금(350-02)	45,668	47,668	41,859	△5,809	△12.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협력산업 내 유망품목의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산업생태계육성을 통한 매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타깃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 R&D 수행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 기업 매출, 고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IP-R&D지원, 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구매 계약 등 성과 중심 지원 중심 지원 확대

■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77	·경제협력형 (39개×1.1개×881백만) ·사업화신속지원 (13개시도×600백만원+4개시도×50백만원)
'17	438	·경제협력형 (39개×1개×881백만) ·사업화신속지원 (13개시도×600백만원)
'18	427	·경제협력형 (39개×1개×881백만) ·사업화신속지원 (13개시도×600백만원)
'19	424	·경제협력형 (39개×1개×881백만) ·사업화신속지원 (13개시도×600백만원)
'20	407	·경제협력형 (39개×1개×843백만) ·사업화신속지원 (13개시도×6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2. ...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
3. ...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
4. ...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② 공약 및 시책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14.5월)

※ **국정과제 '107-3번, 지역산업 재정비 및 지역투자 여건 개선'** :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의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기존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지역주력산업육성(시·도 별), **협력산업육성(시·도 연계)**, 지역연고산업육성(시·군·구 또는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단계적 개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5)** 지역간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시·도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 ('14.2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14.3.) :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경제(산업)협력권사업 추진

○ 추진경위

- '13년 7월	:	박근혜 정부, 'HOPE 프로젝트'에서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한 지역산업 육성키로 결정 - 2개 이상 시·도가 산업 협력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집행하는 '시·도 산업협력사업' 계획
- '13년 10월	:	'HOPE 프로젝트'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강화방안」 보고(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1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
- '14년 2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결정
- '14년 3월	:	협력산업권을 확정·발표하고, 산업부 - 시·도 간 '경제협력권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 '14년 5월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국정과제 107-3)
- '14년 5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방안」을 심의·의결(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7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재정비 계획(안)」 심의」 의결(제29차 국무회의)
- '14년 9월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거쳐 2014년도 하반기 예타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
- '14년 10월	:	예타 면제 국회 상임위(산업자원위) 보고
- '15년 9월	:	기재부(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완료 (검토결과 "적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457	477	419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본예산+추경)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15년	457 (457)	( )	( )	457 (457)	457 (457)	0 (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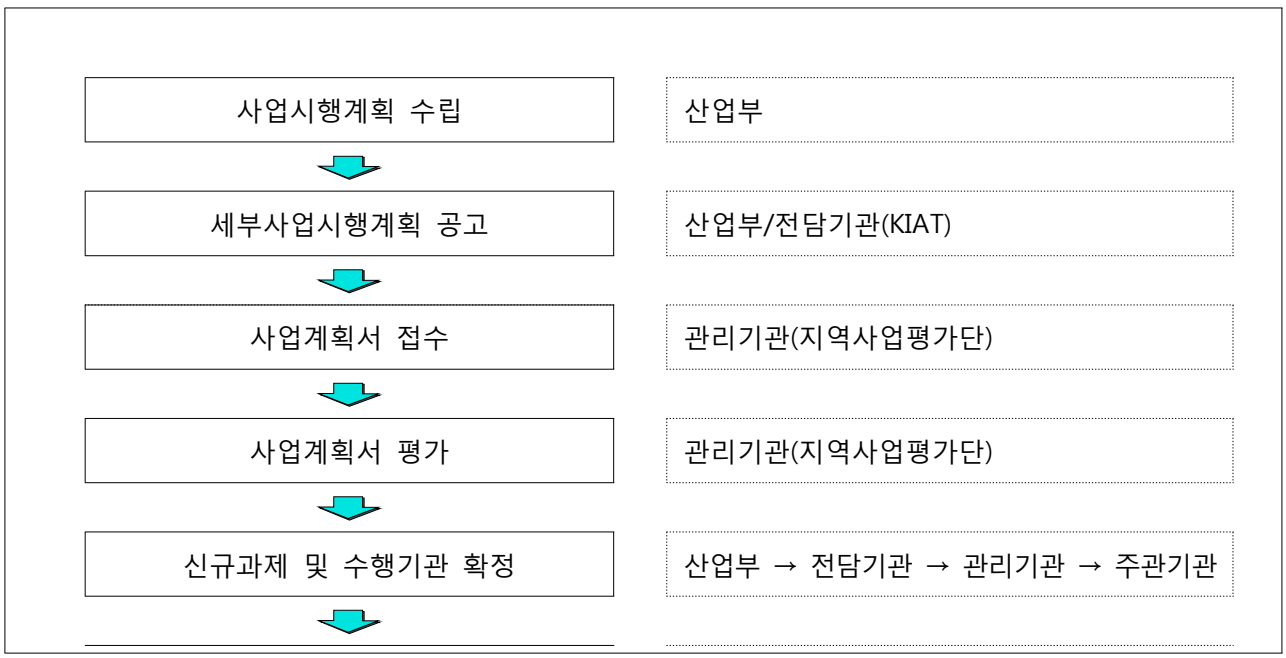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참고1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협력으로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유형별 추진방식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R&D	비즈니스 협력형	산업생태계 조사,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5~10억원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5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방식) **지정공모**
	창의 융합형	시·도별 대표산업(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R&D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지역 중소·중견 기업 (지원방식) **자유공모**
비R&D	경제 협력형	협력산업 관련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8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2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기술·역량강화 (지원방식) **지정공모**
	사업화 신속지원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한 창의기업(가성기업 혁신모델 포함)에 대한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6억원 (지원기간) 과제당 1년 (수행기관) TP(기업지원단) (지원방식) **정책지정**

3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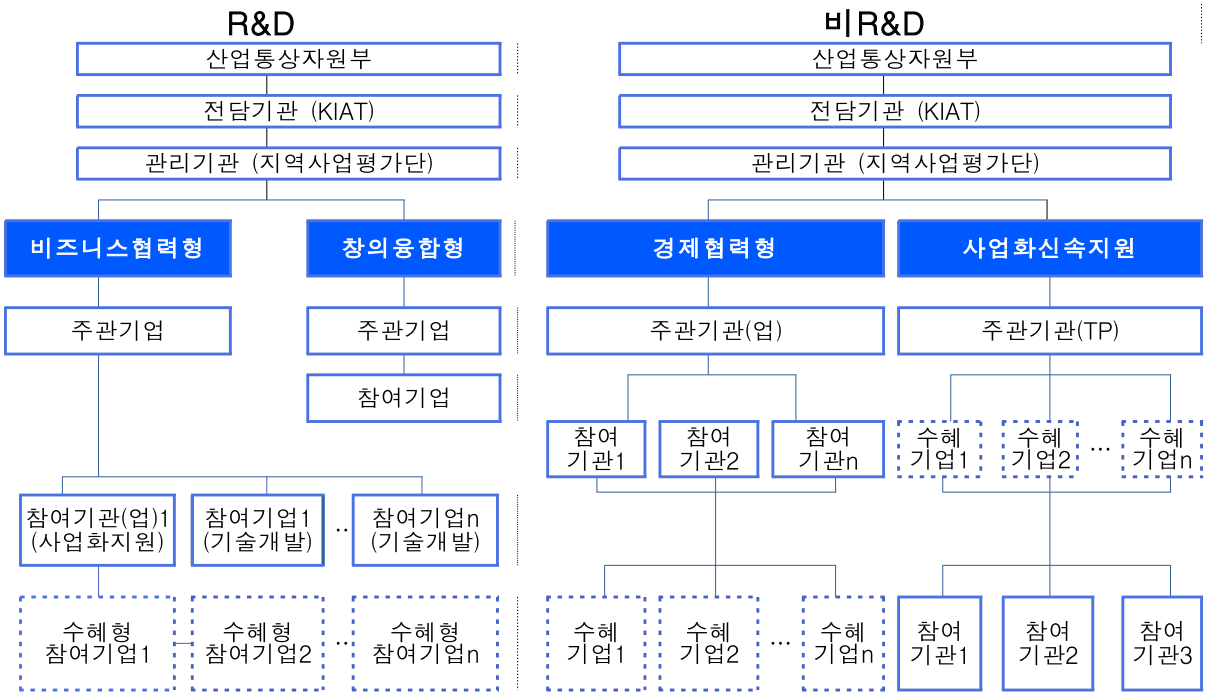

참고2 경제협력권산업 시도별 협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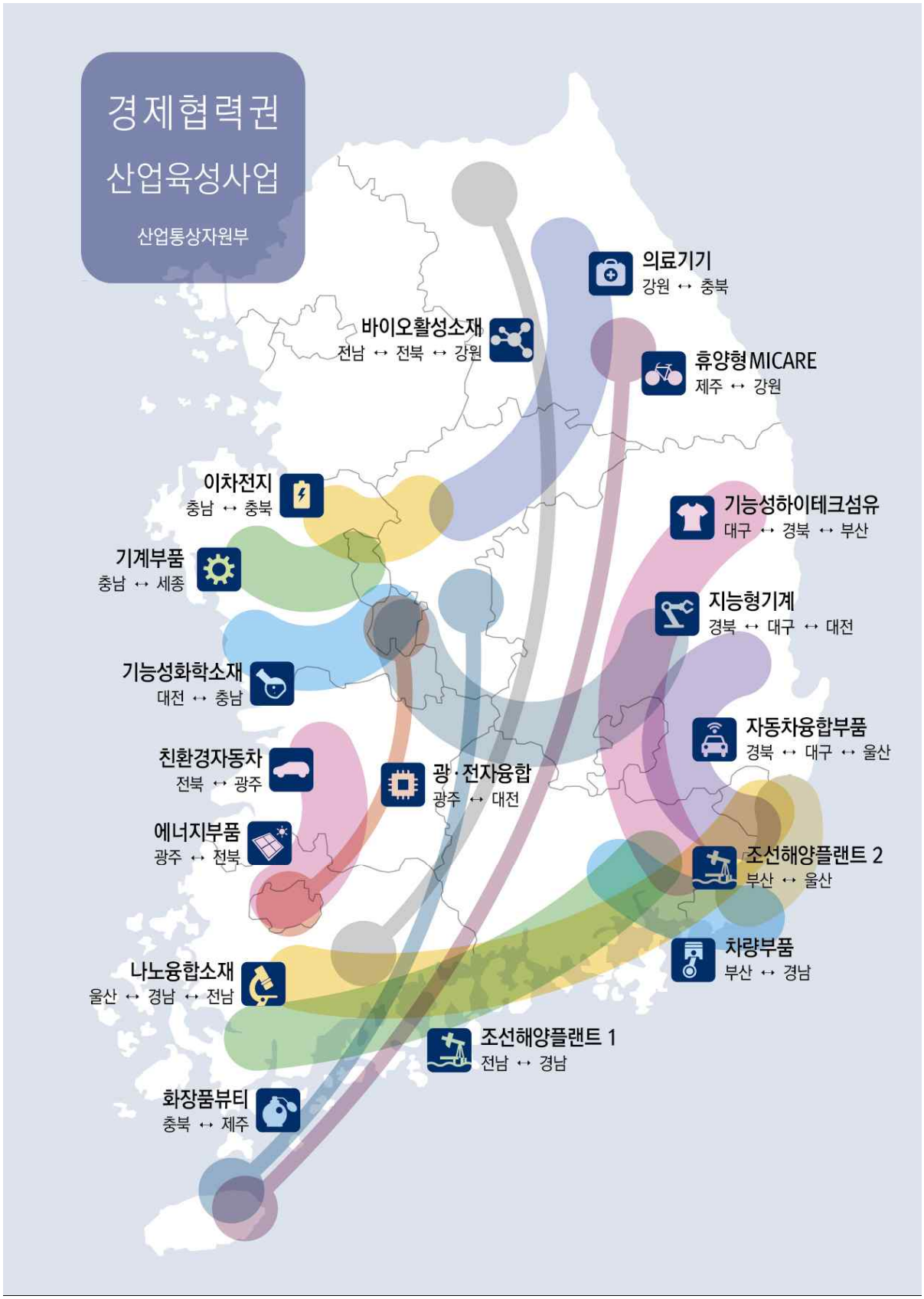

지역투자촉진(재량, 계속, 국정과제, 경제혁신)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투자촉진	117,765	102,246	97,134	△5,112	△5.0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5 - 4200 - 4232 - 306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위협력팀장(백경동, 044-203-4418), 사무관(변재택, 44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본보조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 45~75%), 민간보조 :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차단체(지자체자본보조), 한국산업단지공단(민간경상보조)

2. 사업목적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지방기업의 고용과 생산력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자체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액(입지·설비투자)의 일부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 입지보조율은 최대 30%, 설비보조율은 최대 14%(일반지역, 중소기업 기준)

산 출 근 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6,488백만원

▪ (이전 보조금) 6,615백만원
= 4.3개사 × 2,377백만원(평균지원액) × 65%(국비매칭비)

▪ (신·증설 보조금) 89,428백만원
= 74개사 × 13,296백만원(평균투자액) × 14%(평균보조율) × 65%(국비매칭비)

▪ (U턴기업 보조금) 445백만원
= 1개사 × 685백만원(평균지원액) × 65%(국비매칭비)

② 지방투자지원(민간경상보조)

-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아카데미 및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평가팀 운영 및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등

* 공동 상담회 및 아카데미 개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수요조사 등 보조금 현장실사, 타당성 평가 사전검토, 사후관리 등 보조금 심의·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산 출 근 거

□ (지방투자지원) 646백만원

▪ (투자지원 및 평가팀 운영) 타당성평가 준비 등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준비, 사후관리 지원,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연1회), 지방투자 아카데미(연1회) 개최 및 기업 지방이전·투자지원제도 홍보물 발간,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등

□ 지원 필요성

○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투자촉진	112,015	102,246	97,134	△5,112	△5.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0,815	101,600 · 이전 : 6,615 43(기업수)× 2,377(평균지원액)× 65%(국비매칭비) · 신증설 : 92,885 768(기업수)× 13,296(평균투자액)× 14%(평균보조율)× 65%(국비매칭비) · U턴 : 2,100 47(기업수)× 685(평균지원액)× 65%(국비매칭비)	96,488 · 이전 : 6,615 43(기업수)× 2,377(평균지원액)× 65%(국비매칭비) · 신증설 : 89,428 74(기업수)× 13,296(평균투자액)× 14%(평균보조율)× 65%(국비매칭비) · U턴 : 445 1(기업수)× 685(평균지원액)× 65%(국비매칭비)	△5,112	△5.0
▪ 지방투자지원	1,200	646 · 평가팀운영 600 · 시스템운영 46	646 · 평가팀운영 600 · 시스템운영 46	-	-
□ 비목(합계)	112,015	102,246	97,134	△5,112	△5.2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16,565	101,600	96,488	△5,112	△5.0
○ 민간경상보조(320-01)	1,200	646	64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02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016 ▪ 지방투자지원 : 6
‘17	943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937 ▪ 지방투자지원 : 6
‘18	92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914 ▪ 지방투자지원 : 6
‘19	913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907 ▪ 지방투자지원 : 6
‘20	87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871 ▪ 지방투자지원 : 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2016-19호, 2016. 2.4)

○ 추진경위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04년 제도 도입(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그간 이전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으로 운영하다 ‘11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통합하고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지방투자(이전, 신·증설, 유턴)를 지원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투자촉진	1,178	1,026	1,178	1,022	9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도 불용·이월 사유

- 불용 :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계획 연기 및 철회로 인해 발생
- 이월 :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이월

○ '15년도 불용 사유

- 불용 :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계획 연기 및 철회로 인해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026	483		1,509	1,048 (1,048)	399	62
'15년	1,178	399		1,577	1,120 (1,120)		457
'16년	**1,062**			1,062	**1,062 (74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16년 결산국회(산업위)

◈ (지적사항) 수도권 인접지역 보조금 편중해소 방안, 대기업 지원방안 강구

☞ (조치사항) '11년 신증설투자지원제도 도입이후 보조금 편중현상 사라짐, 대기업 추가지원 계획은 없음

◈ (지적사항)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무관한 집행

☞ (조치사항) '17년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삭제

◈ (지적사항) 지방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조율 상향 등 대책마련

☞ (조치사항) 보조율 상향은 예산부담의 측면 등 즉시 시행 곤란, 다만 투자기업 유치촉진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초에 외부용역 추진할 계획

○ 평가결과

- '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3년간 총 10% 감축(5%→3%→2%)

· 본 사업은 지역투자 촉진을 필요한 사업이나, ① 투자계획 대비 실투자 이행률, 신규고용이행률이 낮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점, ② 2013년-2014년 환수대상 총 금액이 12,672백만원이라는 점, ③ 2015년 미집행액이 399억원 이월되었다는 점, ④ 본 사업이 '04년 시작되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있어 상당한 실적을 달성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는 점, ⑤ '15년 평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감축을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실화 도모를 위해 정산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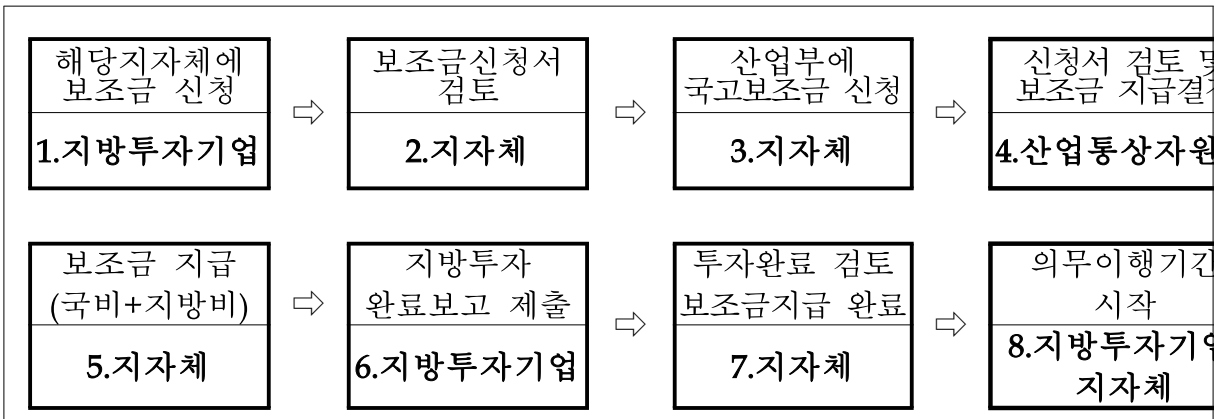

1. 지자체가 유치(MOU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일체)한 일정기준 이상의 지방투자기업(이전,신증설,유턴)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 대상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산업부로 신청해야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심의회등을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5.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근저당,보증보험 등)를 확보한 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지방투자기업에 지원(지원결정액 중 70%만 지급)하여야 함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기간(최장 3년)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을 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투자기업의 투자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정산(지원결정액 중 잔여 30% 지급)을 완료하여야 함
8.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할 수 있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참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1.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필요

* 추진근거: 균특법 제11조(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및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2. 주요내용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금액(입지,설비)의 일부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14년 1,026억원)

○ **(지원대상)**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 **(지원내용)**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차등 지원(최대 60억원, 대규모 투자 70억원)

*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설비 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지방비 65:35로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

* (위원장) 지역경제정책관, (위원) 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회계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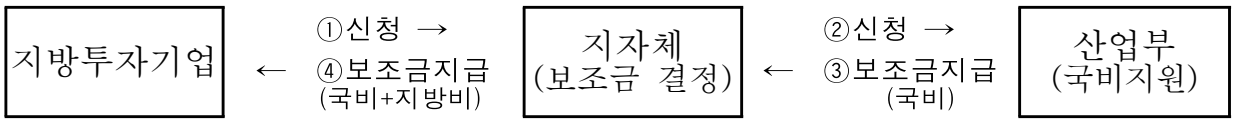

개성공단입주기업투자촉진한시지원(재량, 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개성공단입주기업투자촉진한시지원			15,000	15,000	100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5 - 4200 - 4232 - 307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위협력팀장(백경동, 044-203-4418), 사무관(변재택, 44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7~'18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본보조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 45~75%)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차단체

2. 사업목적

○ '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입주기업들의 대체투자 지원 필요성에 따라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시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18.2월까지 신청분 한)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개성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입지·설비투자)의 일부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산 출 근 거

□ (대체투자 보조금) 15,000백만원

▪ 34.3개사 × 4,548백만원(평균투자액) × 19.45%(평균보조율) × 49.5%(평균매칭비)

※ 기업 수(34.3개) = 투자의향 밝힌 기업 수(22개) + 돌발수요(12.3개)

* 정부합동 수요조사('16.3월)에서 '17년 투자계획을 밝힌 22개 기업과 사전에 투자계획 밝히지 않은 기업 12개(전체 입주기업 123개 중 10%)의 보조금 신청 예상

** '16년 보조금 지원 기업 9개 중 7개는 정부합동 수요조사에서 투자의향이 없다고 밝힌 기업

※ 평균투자액·보조율·매칭비는 22개 기업의 투자계획을 통해 도출

□ 지원 필요성

○ '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필요성 발생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한시지원			**15,000**	**15,000**	**100**
▪ 개성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15,000** 343(기업수)× 4,548(평균투자액)× 19.45%(평균보조율)× 49.5%(평균매칭비)	15,000	100
□ 비목(합계)			**15,000**	**15,000**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5,000	15,000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18년 2월까지 한시지원 제도이며, 전체 지원대상 123개사 중 설문조사시 투자의향을 표출한 기업과 실제 투자기업이 달라 돌발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책정할 필요

- '16년은 10개 기업에 대해 지역투자촉진사업비로 118억원을 지원하였고, '17년은 34개 기업에 150억원 지원을 예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7	15,000	▪ 개성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 15,000
'18	15,000	▪ 개성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 15,000
'19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2016-53호, 2016.3.21)

○ 추진경위

- '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필요성 발생
-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 논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고시 제정 추진

- 이에「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투자촉진					1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5년							
'16년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해당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신청서 검토	⇨	산업부에 국고보조금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기업		**지자체**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 지급 (국비+지방비)	⇨	지방이전/투자 이행실적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실적 보고	⇨	실적보고서 확인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요

참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 **(제도개요)** '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필요성 발생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정

○ **(지원대상)**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로 한정하고, 이들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

* 통합 수요조사(2.22~3.2, 중기청) 결과, 투자계획을 밝힌 24개 업체 중 17개 사가 수도권에 투자예정(투자규모는 총 787억원)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현행기준보다 입지 및 설비보조율을 10%p 상향조정

* 대기업은 현행수준, 입지보조의 경우 일반지역과 우대지역은 현행유지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현행	개성	현행	개성	현행	개성	
수도권 & 인접지역	입지	-	-	-	10%	9%	19%	45:55
	설비	6%	6%	8%	18%	11%	21%	
일반지역	입지	-	-	10%	20%	30%	30%	65:35
	설비	8%	8%	11%	21%	14%	24%	
우대지역	입지	-	-	20%	30%	40%	40%	75:25
	설비	11%	11%	19%	29%	24%	34%	

○ **(특례조항)** 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몇가지 요건 완화

- 자격요건 및 지자체 사전유치 불요, 신청기간 제한 및 입지보조금 한도 폐지, 담보제공의 유연성 등

지역투자촉진(세종)(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투자촉진(세종)	8,000	18,807	22,000	3,193	16.9

* 사업코드 : 21 - 39 - 3 - 110 - 115 - 4200 - 4232 - 307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위협력팀장(백경동, 044-203-4418), 사무관(변재택, 44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본보조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 75%)
사업시행주체	세종특별자치시

2. 사업목적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세종지역 기업의 신·증설투자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투자지원을 통한 세종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입지·설비투자)의 일부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산 출 근 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000백만원**

▪ (이전 보조금) 8,914백만원
= 5개사 × 2,377백만원(평균지원액) × 75%(국비매칭비)

▪ (신·증설 보조금) 13,086백만원
= 6.8개사 × 10,800백만원(평균투자액) × 24%(평균보조율) × 75%(국비매칭비)

□ 지원 필요성

○ 기업의 세종지역 투자확대 유도로 일자리 창출 등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투자촉진(세종)	**8,000**	**18,807**	**22,000**	**3,193**	**16.9**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000	**18,807** **· 이전 : 8,914** 5(기업수)× 2,377(평균지원액)× 75%(국비매칭비) **· 신증설 : 9,893** 5.1(기업수)× 10,800(평균투자액)× 24%(보조율)× 75%(국비매칭비)	**22,000** **· 이전 : 8,914** 5(기업수)× 2,377(평균지원액)× 75%(국비매칭비) **· 신증설 : 13,086** 6.8(기업수)× 10,800(평균투자액)× 24%(보조율)× 75%(국비매칭비)	3,193	16.9
□ 비목(합계)	**8,000**	**18,807**	**22,000**	**3,193**	**16.9**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8,000	18,807	22,000	3,193	16.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세종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88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88
‘17	22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220
‘18	146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46
‘19	145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45
‘20	139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3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2016-19호, 2016. 2.4)

○ 추진경위

- 기존 지역투자촉진 사업에서 ‘15년부터 계정분리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투자촉진			80	188	2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15년	80			80	80 (80)		
’16년	**188**			188	**188** **(13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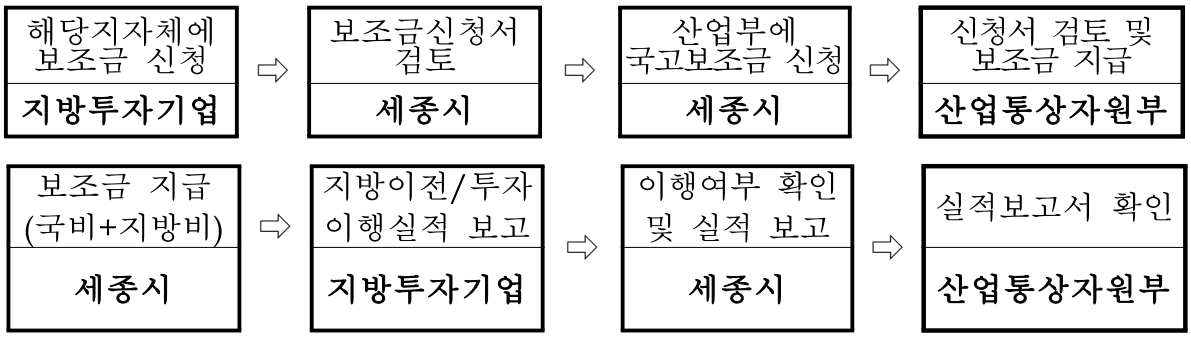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000	24,000	16,975	△7,025	△29.3

* 사업코드 : 4231-302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국장), 입지총괄과(김호성 과장, 044-203-4430), 권병삼 사무관(44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1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국비 50%, 민간 50%)
사업시행주체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비영리 산학연 컨소시엄(대학, 기업, 지자체, 연구소 등) (참여기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2. 사업목적

○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하고 산업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교육-R&D-취업이 선순환 되는 체계 구축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 9,975백만원

- 산학융합 기반시설: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기업연구소 입주)을 산업단지 내 구축
- 기 지정된 3개 산학융합지구(인천, 제주, 나주)의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 지원

(종료) 3개 지구×3,325백만원×12/12 = 9,975백만원

* 기반시설 조성에 지구당 연 3,000백만원씩 지원하여야 하나, '16년 미반영분 1,000백만원 중 975백만원(325백만원×3) 반영

② **산학융합촉진지원**: 7,000백만원

- 산학융합촉진 프로그램 : ①**(학생)** 선취업-후진학 등 일·학습병행사업,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프로젝트 Lab, R&D인턴십, 산학공동 R&D 정규교과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육·취업연계 ②**(근로자)** 근로자 특별전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③**(기업)** 중소기업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주도형 R&D지원, 공용장비센터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기 지정된 4개 산학융합지구*의 산학융합촉진 사업 지원

* 지정현황 : '13년 지정(충남당진), '14년 지정(경남창원), '15년 지정(부산, 전남여수)

(계속) 3개 지구×2,000백만원×10/12=5,000백만원

(종료) 1개 지구×2,000백만원×12/12=2,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혁신산단 정책핵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에 교육·연구 기능 강화

*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고도화하기 위한 범부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이에 산학융합지구는 '16년까지 13개 선정·지원

○ **(지역기술·연구인력 유출방지)** 혁신산단 내 융복합집적지에 융합지구를 조성하고 문화·복지시설을 집적*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정착 유도(부처 협업*, '14.3월 제5차 무투회의)

* 문화부(문화재생, 도서관), 고용부(직장공동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BEFORE>

<AFTER>

○ (**일·학습병행 확산**)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인력 양성 및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지원사업(기재부·고용부 등)의 지역확산 거점*

* 산학융합지구를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고, 기업연구관 입주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고용이 연계되어 선순환되는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 구축

○ (**지역 R&D·인력양성의 메카로 역할**) 기업연구관 우수기업유치, 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추진, 및 중소기업 공동 R&D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기술·연구인력 양성

* '16년 12월 현재 13개 산학융합지구 조성추진, 13개 대학 28개 학과에서 학생 5,804명 이전완료, 기업연구소 202개 입주완료(675명의 연구원이 상주하여 산학공동 R&D·프로젝트 LAB 등을 추진 中)

○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투입되어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 대비 50% 이상을 민간에서 매칭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23,000**	**24,000**	**16,975**	**△7,025**	**△29.3**
▪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 (산출근거)	9,000 (3개지구×3,000백만)	**14,000** (5개지구×2,800백만)	**9,975** (3개지구×3,325백만)	**△4,025**	**△28.8**
▪ 산학융합 촉진지원 (산출근거)	14,000 (7개지구×2,000백만)	**10,000** (5개지구×2,000백만)	**7,000** (3개지구×1,666백만 + 1개지구×2,000백만)	**△3,000**	**△30.0**
□ **비목**(합계)	**23,000**	**24,000**	**16,975**		
○ 출연금(350-01)	23,000				
○ 건축비(360-03)		14,000	9,975		
○ 연구활동비등(360-05)		10,000	7,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단지내에 산학융합 기반시설 구축과 산학융합 촉진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산학이 일체화된 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조성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1.11)

*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조성시 시설확보 기준 등 대학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 완화('11.2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산학협력 추진) 5개지구*는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

* 인프라 조성완료 지구 : 시화·군산·구미·대불·오송

○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 6개지구는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 기반시설을 '19년까지 준공목표*로 진행 중

* '17년 준공(울산·당진·창원), '18년 준공(부산·여수), '19년 준공(인천·제주·나주)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4,000	▪ 산학융합촉진 100억원(계속 5개 × 20억원) ▪ 기반시설조성 140억원(계속 2개 × 30억 + 신규 3개 × 26.6억원)
'17	169.75	▪ 산학융합촉진 70억원(계속 3개 × 16.66억원 + 종료 1개 × 20억원) ▪ 기반시설조성 99.75억원(계속 3개 × 33.25억)
'18	25,000	▪ 산학융합 촉진지원(계속 5개 × 22억원 + 종료 1개 × 20억원) ▪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신규 4개 × 30억)
'19	25,000	▪ 산학융합 촉진지원(계속 3개 × 20억원 + 종료 2개 × 20억원) ▪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신규 1개 × 30억 + 계속 4개 × 30억)
'20	24,710	▪ 산학융합 촉진지원(계속 4개 × 24.3억원 + 종료 3개 × 20억원) ▪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신규 2개 × 30억 + 계속 1개 × 30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0조의2, 제22조)

  <제19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0. 1월 지경부 2010년 업무계획(산학융합단지)
- ’10.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추진과제(산학융합단지)
- ’10. 6월 국가고용전략회의 TF회의(산학융합클러스터 조성)
- ’10.10월 국민경제대책회의(QWL 밸리 조성계획)
- ’11.3~6월 ’11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1. 5월 국민경제대책회의(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 ’12.3~5월 ’12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3.5~12월 ’13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3.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 ’14.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 ’14. 9월 산업단지 혁신현황 및 과제발표(산단출범 50주년 기념식)
- ’14.9~12월 ’14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5.4~8월 ’15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6.8월, 12월 ’16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04.45	21,444	23,000	24,000	16,9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04.45 (304.45)	( )	( )	304.45 (304.45)	304.45 (304.45)	( )	( )
’14년	214.44 (214.44)	( )	( )	214.44 (214.44)	214.44 (214.44)	( )	( )
’15년	23,000 (23,000)	( )	( )	23,000 (23,000)	23,000 (23,0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 산학융합지구 사업대상 선정시 노후산단(혁신산단) 중심으로 추진 필요('15.국회 상임위) : '16년도 신규 산학융합지구 공모시(정부합동 공모) 혁신산단 대상으로 공고 실시(산업부 공고 제2015-631호, '15.12.4)

○ 산학융합지구 사업기간과 회계기간 불일치('15.국회 상임위) : '16년도 신규지구부터 사업기간을 정부회계기간에 맞추도록 일부 조정 (매년 7월~다음해 6월 → 매년 3월~다음해 2월)

* 동 사업은 산업단지내로 이전한 대학의 학사일정(3월 시작)과 연계되는 내용이 많아 대학지원사업과 같이 사업기간을 매년 3월~다음해 2월로 조정

○ 산학융합지구 고시 필요('15.국회 상임위) : '15.10.20일 고시 완료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사업평가 결과('16.6월) : '보통' 등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핀란드)** 대학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 도마다 1개의 공과대학을 세우고,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건설

*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업들도 테크노폴리스 내로 입주, 각종 연구소에 연구개발 재정을 지원하면서 산학협동 공동연구개발

- 대학을 연구개발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어 기업 경쟁력 강화

○ **(미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이 일체화된 Research Triangle Park(RTP)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기반이 취약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州 상무부와 13개 카운티가 RTP 지역 파트너십(RTRP)을 설립

- 듀크 대학 등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보통신 분야의 다국적 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소 집적

* 대학 : 듀크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기업 : IBM, 시스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SAS, 레드햇, 엘리릴리 등
연구소 :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환경청 등

- 지역 대학의 우수 인력이 지역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

○ **(대만)** 생산, R&D와 교육이 상호 연계되고 집적된 신주(新竹) 과학산업단지 조성

- 신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아오퉁대학, 칭화대학, ITRI(국가출연연구소), 전기전자 기업이 집적

- 교수가 기업체의 부사장이 되고, 연구원이 대학에 출강하는 등 개방형 연구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와 생산을 연계

* 대학원생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ITRI는 기업, 대학, 출연연간 공동 연구 및 벤처 창업의 중심역할 수행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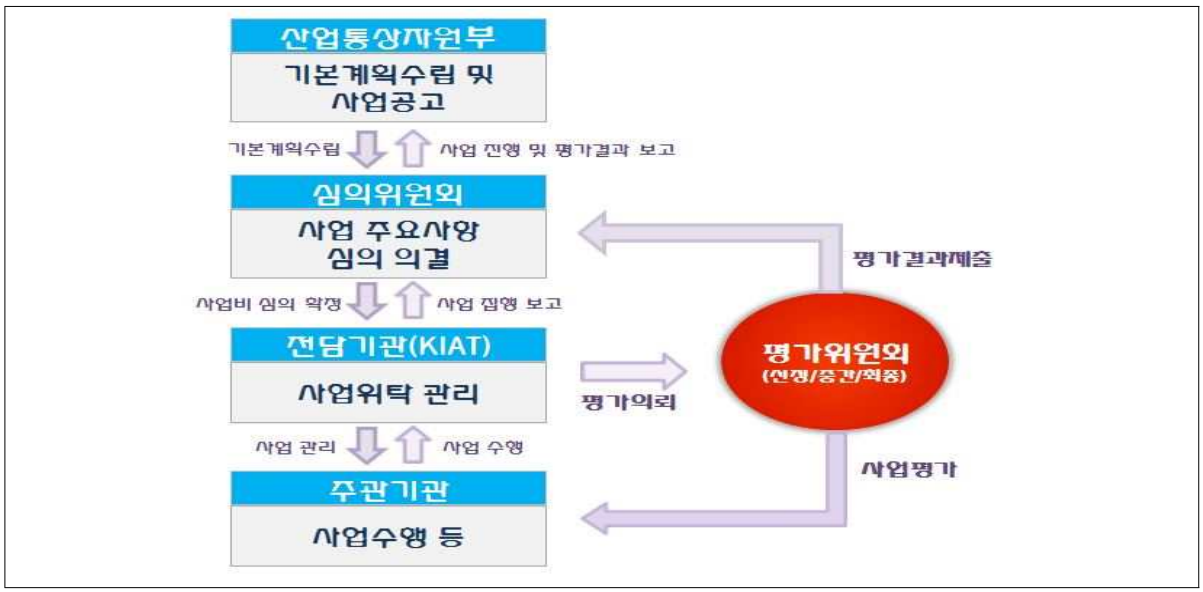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노후 산업단지 혁신, 산학융합지구 확대('13년 6개 → '18년 25개)

*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지원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

◈ '17년까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기반·문화·보육시설 등 확충
(※ 이에 따라 **'18년까지 25개 산학융합지구 조성**추진)

○ 정부부처 패키지 지원
- (교 육) **산학융합지구조성(산업부)**, 산단 캠퍼스(교육부) 등
- (산 업) 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산업부) 등
- (주 거) 기숙사(산업부), 미니복합타운(국토부) 등
- (문 화) 문화재생, 도서관(문화부) 등
- (보 육) 어린이집(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 (복 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고용부) 등
- (교 통) 통근버스(국토부), 공용주차장(산업부) 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 관계부처 합동)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일·학습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 필요**

- 산업단지 내 대학(산학융합지구)에 진학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산필요(56. 청년고용활성화부문)

-「**공과대학 혁신 방안**」('14.4, 관계부처 합동)

* 산학융합지구 확대('14년 7개→'17년 17개), 인력양성-R&D-맞춤형 고용 유도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및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 혁신모델 발굴·확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14.4, 관계부처 합동)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산업단지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산업단지 혁신현황 및 과제**」('14.9, 산단출범 50주년 기념식)

* 대학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유치로 연구인력의 공급 확대('14년 7개 → '17년 17개)

참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11~'15)

□ 사업 내용

○ **(개념)**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력양성-R&D-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기반시설 조성)** 산업단지에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공동으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대학 및 기업연구소 입주

- **(산학융합 촉진)** 현장에서 융합인재 양성, 기업연구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와 산학공동 R&D 등 창업·사업화 지원

○ **(지원현황)** '16년까지 13개의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27개 대학 63개 학과에서 9,200여명의 학생 이전 예정

* 13개 산학융합지구 : 시화·군산·구미·대불·오송·울산·당진·창원·부산·여수·인천·제주·나주

□ 주요 성과

○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 5개 지구*에 13개대학, 28개학과 5,804명 이전 완료하였으며, 202개의 기업연구소 입주 완료

* 시화, 군산, 구미, 오송, 대불

○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고교생 직무교육 6,800여명, 산학공동 엔지니어 및 고급연구인력 양성 3,818명, 후진학 지원 11,000여명

○ **(기업지원)** 산학융합 R&D 217건 및 기업애로 901건 해결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74건 및 창업 26건

○ **(고용성과)**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자는 '14년 270명에서 '15년 371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17년까지 1,800여개 일자리 창출 추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계속, R&D)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59,730	58,720	59,485	765	1.3

* 사업코드 : 39 - 21 - 2 - 110 - 114 - 4200 - 4231 - 308

* 담당자 : 지역국장(박기영), 입지총괄과과장(김호성, 044-203-4430), 사무관(박철오, 44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정부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산학연 R&D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역량을 강화, 제조 중심의 산단을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로 변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9,130백만원)

・ 산단별 특화된 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과제 기획 토론, 기술세미나 및 교류회, 공동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지원(산학연협력 R&D의 기초 강화)

* MC추진계획('13.9월 무투회의) : ('14)71개→('15)78개→('16)85개→**('17)92개**→('18)100개

· MC운영 계속 : 85개 산학연협의체 운영×120백만원×10/12개월 = 8,500백만원
MC운영 신규 : 7개 산학연협의체 운영×120백만원×9/12개월 = 630백만원

- 산학연 공동 R&D 지원(44,355백만원)

· 산학연협의체 및 참여기업 증가에 따른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에서 도출되는 R&BD 과제(270여개) 지원

· 다년도 계속과제 : 17개 R&BD과제×250백만원×9/12개월 ≒ 3,177.5백만원
다년도 신규과제 : 17개 R&BD과제×250백만원×9/12개월 ≒ 3,177.5백만원
신규 단년도 과제(상반기) : 140개 R&BD과제×200백만원×12/12개월 = 28,000백만원
신규 단년도 과제(하반기) : 100개 R&BD과제×200백만원×6/12개월 = 10,000백만원

②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6,000백만원)

- 산업단지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밀착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R&D 등 기술 애로사항을 진단,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 7개 센터* × 857백만원 = 6,000백만원

* 반월시화, 구미, 광주, 창원, 천안, 원주, 서울·판교

□ 지원 필요성

○ 산업단지는 요소투입형 성장시대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여전히 우리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함

- 산업단지를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단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와 수요기반의 고부가가치 R&D 지원 필요

* ('16년 말 기준) 국내 산업단지 총 1,137개 / 입주기업 85,789개사

○ 단순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혁신역량 공유를 통해 공동R&D 등 협업체계를 활성화하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 및 지원*이 필수적임(제6차('14~'18년) 산업기술혁신계획)

* ('16.12월 기준) 전국 산단 내 85개 기술·업종별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13.9월, 제3차 무역투자회의)

* 산학연협의체를 '18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pre-R&D 기획 및 post R&D 사업화까지 기술력 향상 기반을 확대

- 산학연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산업클러스터 확산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사업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근간 강화

- 사업 참여기업의 지속적 증가, 대상 산단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예산 증액 필요

* 사업 참여기업(개사) : ('14년) 5,784 → ('15년) 6,285 → ('16년) 6,769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59,730	58,720	59,485	765	1.3
▪ R&BD 네트워크 운영	46,230	52,720 <MC운영> (계속) 78개 × 130백만 x12/12 = 10,140백만원 (신규)7개× 130백만 = 910 백만원 <R&D과제지원> (계속)17개×246.9백만 x12/12 =4,197백만원 (신규)200개×187백만 x12/12 =37,473백만원	53,485 <MC운영> (계속) 85개×120백만 x10/12개월= 8,500백만원 (신규) 7개×120백만x9/12개월=630 백만원 <R&D과제지원> (단/상) 140개×200백만 x12/12개월=28,000백만원 (단/하) 100개×200백만 x6/12개월= 10,000백만원 (다년도-계속) 17개×250백만 x9/12개월 ≒3,177.5백만원 (다/상) 17개×250백만x9/12 개월 ≒ 3,177.5백만원	765	1.45
▪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6,000	6,000 (기일치)7개×857백만 x12/12 =6,000백만원	6,000 (기일치)7개×857백만 x12/12 =6,000백만원	-	-
▪ 테마클러스터 운영	7,500	-	-	-	-
□ 비목	59,730	58,720	59,485	765	1.3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59,730	58,720	59,485	765	1.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으로써 산학연간 협력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단지 성장발전 촉진

- 집적산업의 전·후방 연계 및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여 산학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 조성

- 성공적인 R&BD 수행에 필요한 과제기획, 수행, 사후관리 등 R&D 전후방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현장밀착형 상시 과제지원시스템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87.20	▪ R&BD 네트워크 운영(527.20) ▪ 기업성장지원센터(60)
'17	594.85	▪ R&BD 네트워크 운영(534.85) ▪ 기업성장지원센터(60)
'18	609.10	▪ R&BD 네트워크 운영(549.10) ▪ 기업성장지원센터(60)
'19	609.10	▪ R&BD 네트워크 운영(549.10) ▪ 기업성장지원센터(60)
'20	602.35	▪ R&BD 네트워크 운영(542.35) ▪ 기업성장지원센터(6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1항의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5호

○ 추진경위

- ‘04. 1. 신국토구상 선포식(대통령 보고)에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을 신 국토 구상 7대과제로 선정
- ‘04.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보고(제45회 국정과제 보고)
  * 혁신클러스터 추진방안 확정 및 7개 시범단지 지정(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05. 1.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혁신클러스터사업 실행계획” 수립
- ‘05. 4. 혁신클러스터사업 본격 착수
- ‘06. 1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성과 대통령 보고
- ‘07. 1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전략” 대통령보고
  * 시범단지 추가 지정 : 인천 남동, 부산 녹산, 전남 대불, 대구 성서, 충북 오창
- ‘08. 2. 클러스터 추가 5개 대상단지 사업 추진계획 확정
- ‘09. 4.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를 통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방안 개선안” 대통령 보고
  * 산업단지 클러스터 광역화,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클러스터에 맞는 사업개편 및 자생운영방안 등
- ‘10. 2.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세부실행계획” 고시
  * 사업대상단지 : 193개 산업단지(거점 25개단지, 연계단지 168개단지)
- ‘12. 1. 전국 경쟁방식 기업주도의 테마클러스터 시범도입(지경부 고시)
  * 기업의 가치사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의체 구성
- ‘13. 9. ’산업단지 경쟁력제고 방안‘ 대통령 보고 (제3차 무투회의)
  *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산단 혁신역량강화 위해 ‘18년까지 산학연협의체 100개로 확대
- ‘14. 9. 산업단지 50주년 창조경제 거점화 연설
- ‘15. 1. 전국 산업단지로 사업범위 확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R&D)	544.0	577.3	597.3	587.2	594.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44.0 (544.0)	( )	( )	544.0 (544.0)	544.0 (544.0)	( )	( )
'14년	577.3 (577.3)	( )	( )	577.3 (577.3)	577.3 (577.3)	( )	( )
'15년	597.3 (597.3)	( )	( )	597.3 (597.3)	597.3 (597.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결위('17년도 예산)

- (지적사항) 마케팅 지원은 비 R&D 사업으로 R&D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 및 예산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조치사항) '17년 마케팅 지원을 최소화하고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지적재산권 등 R&D성 수요로 대체 지원

○ 산업위('15년도 예산)

- (지적사항) 기업성장지원센터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 4개 센터에서 전국 시도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조치사항) 성과확산을 위해 '15년 판교, 천안, 원주 3개 센터 신규 개소

○ 재정사업 평가

평가년도	'15년		'16년	
총점 및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93.4	우수	92.7	우수

* ('15) 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16개부처 92개 사업중 상위 8개 선정(우수8, 보통70, 미흡14)

** ('16) 지역발전사업자체평가 12개 사업 중 2위(우수2, 보통7, 미흡3), 7개 R&D 사업 중 1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 국)** '첨단지역혁신 클러스터 태스크포스' 구성('10), 'COMPETES 재승인법'에 따라지역혁신 지원 프로그램 수립·시행('10)

○ **(유 럽)** EU의 '성공적인 혁신촉진 9가지 전략'의 하나로 클러스터 확장정책 강조,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EUREKA' 추진

○ **(독 일)** EU에서 클러스터 가장 활발, 경제에너지부의 'go cluster'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

○ **(일 본)** 경제산업성 주도의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와 문부과학성 주도의 '지식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추진

○ **(기 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미국), TAMA(Technology Advanced Metropolitan Area, 일본), 신죽과학공업원구(대만), 소프트웨어파크(인도)

(5) 사업추진절차

사업 운영계획 수립	·산업부,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부↔전담기관(전담기관↔지역본부)
⇩	
클러스터 사업수행	·산업단지공단 8개 지역본부
⇩	
중간점검	·전담기관 및 중앙평가위원회
⇩	
사업결과 평가	·중앙평가위원회(외부 산학연 전문가)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산업부, 정산(외부 회계법인)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별도 첨부

참고1 R&BD 네트워크 운영

산업단지 중심의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여 도출되는 기술개발·사업화·시장화 등의 **협업수요를 R&BD과제로 지원**

□ 사업개요

○ (참여범위) 산단내 입주기업, 지역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지자체 등

○ (주요활동) 산업단지별 집적된 산업·업종·제품별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전문가와 기술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의 네트워킹 활동 추진

○ (지원범위) 산학연협의체 당 1.2억원, 과제(R&BD)당 2억원 이내

□ 운영현황

○ '16년 11월 현재, 전국 85개 산학연협의체에 8,566명의 회원이 참여, 6,785회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935건의 공동협력과제 지원

* MC구성(회원구성) 기업 6,789, 대학 785, 연구소 269, 지원기관 743
* (네트워킹) 과제회의 2,657, 정기회의 1,138, 세미나 756, 교류회 554, 사업설명회 400, 지원기관협의회 146, 평가위원회 55, 기타 1,079
* (과제유형) R&D 193, 공동마케팅 220, 기관연계 150, 산재권 212

○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협의체는 지원 중단하고, 수요에 따라 신규 구성, 분화, 통폐합하여 선순환 구조 정착

□ 향후계획

○ 산단내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융·복합 확산에 대응하는 산학연협의체를 신규 선정

○ 지원 대상을 전국 소규모 산업집적지까지 확대하고 여러 외부기관도 산학연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

참고2 기업성장지원센터

산업단지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밀착하여 수요자 중심의 **R&D 과제 발굴·수행·관리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육성시스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연구개발(R&D) 주도형 중견기업으로 육성

○ (주요활동) 현장 중심 산학연 연계와 사업화 R&D 활성화를 위해 수요조사·기술기획의 pre-R&D, 사업화·시장화에 이르는 Post-R&D 수행

○ (지원범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육성지원(중장기), 생산현장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애로지원(단기)

○ (운영체계) 7개 센터별*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R&D, 기술경영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 70여명을 산업단지 현장에 상시 배치

*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 판교, 천안, 원주

○ (사업특징) 기술주도형 성장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문을 벗어나 기업진단 → 과제해결(자체/연계) → 사후관리 과정을 중장기간 수행

□ 운영현황('16년말 기준)

○ 7개 센터 84개사의 중점육성기업을 선정하여 381건의 중장기 육성지원 프로그램 수행

○ 기업애로지원 1,783건(1,411개사), 기업역량강화교육 293회(5,249명)

□ 향후계획

○ 현재 7개 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기업육성 성과를 더욱 확산

지역특성화산업육성(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94,741	87,295	81,830	△5,465	△6.3

* 사업코드 : 39 - 21 - 1 - 110 - 114 - 3300 - 3361 - 301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장(박기영), 지역경제총괄과장(천영길, 044-203-4410), 서기관/주무관(김상곤/윤성환, 4414/441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2. 사업목적

○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특성화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적 산업발전 기반 구축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내역사업명	'17년 예산	산출근거
< 합 계 >	81,830	
(부산)	9,690	
▪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500	- ICT융합공정개선 : 850, 기술지원 : 50, 연구과제추진비 : 50, 간접비 : 50
▪ 정밀지능기계부품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250	- 기업지원비 : 400, 연구활동비 : 16, 연구과제추진비 : 14, 운영비 : 70

▪ 수출주력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250	- 글로벌 수출인증 지원 4개사 : 150 - 수요연계형 기술역량 강화 6개사 : 100
▪ 자동차·기계 부품 해외마케팅 지원	150	- 해외전시회 3회 : 68.5 - 무역사절단 3회 : 81.5
▪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200	- 장소임대 60, 부스장치 80, 바이어 유치 60, 부대행사 140, 행사홍보 40, 행사운영 20
▪ 프레타포르테 부산	175	- 패션쇼 장치 : 100, 바이어 유치 : 100, 모델비 : 50, 행사홍보 : 60, 행사운영 : 40
▪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130	- 인큐베이팅지원 : 137, 컨설팅지원 : 12, 마케팅지원 : 46, 운영비 등 간접비 : 65
▪ 섬유패션산업기술개발 사업	50	-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지원비 - 지원금 40×2개 업체 : 80 - 섬유패션R&D경영자과정 14, 사업 관리운영 6
▪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40	-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지원 : 25 - 개별전시회 참가(3개사) : 33 - 온라인시장정보 등 운영비 : 20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클러스터 조성사업	250	- 엔지니어링기업 집적화 지원 8천㎡×6,600원×12월×50%=316.8 - 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및 시니어창업 지원 등 50개사 : 183.2
▪ 해양레저용 고속보트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200	- 고속보트 제품화 기술지원 2개사 : 250 - 장비 공동활용 지원 20개사 : 100 - 생산기술 자문 20개사 : 50
▪ 2017 드론쇼 코리아 개최	300	- 사업규모 : 국내외 50개사 250부스 - 컨퍼런스 : 300, 전시회 : 300
▪ 미래성장동력육성을 위한 드론 실증사업	100	- 사업규모 : 드론 경진대회 참여인원 50명, 연구개발 참여대학 10개 이상 - 드론 실증화 사업 150, 기술지도 등 인건비 50
▪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150	-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120명, 산업현장기반 인력양성 120명, 산업체 취업연계지원, 내·외부전문가, 강사운영비, 실습재료비 등
▪ 해양플랜트기자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150	-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10건 : 100 - 시제품 제작지원 10건 : 100 - 벤더등록 및 코드교육 10건 : 100
▪ 그린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기업지원	200	- 해외규격 인증지원 100, 방폭인증 기업지원 100, 선급 형식승인 지원 150, 마케팅 지원 50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30	- 조선·해양플핸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교육, 용접사·특수용접사 자격증 취득 및 산업체 취업지원 30명, 내·외부전문가 강사운영비, 실습재료비 등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력 고도화 사업	150	- 교육훈련비 : 80, 강사료 : 80, 교육과정 운영 : 60, 교재 개발비 : 30, 사업운영비 : 50 등
▪ 부산 정보수집장치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	100	- 교육센터 기반 구축, 설계/제작 전문인력 양성 25명, 정비/운용 전문인력양성 25명, 내·외부전문가 강사운영비, 실습재료비 등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785	- 사절단 380, 전시회 600, 상담회 206, 인력양성 90, 시스템운영 30, China Biz 스쿨 40, 수출인력 양성 70, 통번역지원 60, 인터넷무역 등 150, 수출기업화 500, 대형유통망 300, 규격인증 80, 브랜드네이밍 50, 글로벌마케터 50, 해외광고 50, 행사운영비 등 129

▪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500	- 기업지원 60×15개 과제 900, 사업추진비 100
▪ 지역특화기술 개발·확산 개방 연구실 운영	1,000	- 시장지향 연구 운영(Lab to Market) 1,500 - 융합 연구실 운영(Lab to Convergence) 1,000
▪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기술 근접지원 사업	150	- 인건비 83, 연구장비 및 재료비 160, 연구활동비 37, 연구수당 등 20
▪ 하이테크부품소재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사업	150	- 인건비 110, 연구장비 및 재료비 140, 연구활동비 39, 연구수당 등 11
▪ CENTAP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550	- 인건비 80, 임대료 674, 관리비 56, 엑셀러레이터양성 250, 운영비 40
▪ 부산형 SW인재사관학교 운영 지원	250	- 강사례 166, 교육활동비 및 재료비 126, 사업운영비 64, 시설장비 임차료 144
▪ ITU 유스포럼 개최	150	- 행사장 임차 등 현장운영 98, 연출·네트워킹행사비 등 82, 초청경비 및 홍보비 120
▪ 의료관광사업 마케팅지원	780	- 홍보마케팅 800, 공항안내서비스 80, 특별전 200, 국제컨벤션개최 230, 관계자팸투어 30, 크루즈의료관광지원 120, UN참전용사상품 개발 20, 한중비즈니스인증플랫폼인증 50, 중국노령기금회건강검진 유치지원 30
(대구)	12,19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3,770	-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 170 -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 : 2,400 -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 1,100 -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지원 : 100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	620	-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육성 : 270 - 차세대 임베디드시스템 산업육성 : 350
▪ 공동브랜드육성 지원사업	300	- 브랜드 홍보, 제품개발지원, 마케팅 지원 등 : 300
▪ 국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650	- 대구패션페어개최 : 350 - 해외 패션의류 전시회 지원 : 200 -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개최 : 100
▪ 섬유산업국내판로개척	350	- 마케팅지원, 정보제공 등 : 350
▪ 우수기업성장 동력화사업	3,400	-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 2,200 - 중기업 육성사업 : 1,200
▪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900	- 디자인개발지원(제품디자인/브랜드/토털/상품개발) : 35개 기업 -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 150개 기업 - 마케팅지원(국내외전시참가지원 등) : 35건
▪ 이업종 융합비즈니스 기반조성	500	- 융합형 창조기업 교류협력 - 창조기술 Level Up - 융합형 창조제품 브랜드홍보
▪ 창업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 지원	100	- 5개기업×20 = 100
▪ 로봇산업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강화 사업	1,600	- 지원기업수 : 80개기업 - 사업물량 : 135건(Robotic 스마트화 제작지원 등) - 직접고용 : 30명, 간접고용 : 70명, 직접매출 : 50억원, 간접매출 : 150억원
(인천)	1,5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650	- 해외박람회 지원 : 311 - 해외시장개척 지원 : 100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15 - 수출지원단 지원 : 30 - 자동차부품 수출특화 : 100 - 한중 FTA시범도시 경제협력 : 94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900	- 디자인 개발지원비 : 950 - 시제품 개발지원비 : 291 - 디자인 교육지원비 : 45, 운영비 : 114
(광주)	5,057	
▪ MICE산업 중심도시육성	305	- 국제회의 홍보 : 45, 국제회의 유치 : 50, 국제회의 육성 : 210
▪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	900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400 -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 400 - 홍보 및 조사지원 등 : 100
▪ 하늘바람땅에너지전	162	- 국제기술교류회 개최 : 100 - 전시장장치공사 등 : 62
▪ 빛고을로봇박람회경진대회	200	- 빛고을 로봇박람회 개최 : 100 - 빛고을 로봇경진대회 개최 : 100
▪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700	- 기획, 개발, 마케팅 프로모션 : 700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300	- 본전시, 특별전, 학술행사 등 : 1,300
▪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	500	- 해외마케팅거점운영 50, 해외무역사절단파견 지원 150, 해외전시회참가지원 100, 해외수출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200
▪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117	- 참가업체,바이어유치 60, 전시장 설치비 50, 박람회홍보(국내외) 7
▪ 광주국제식품산업전시전	135	- 해외바이어 유치 80, 참가업체 인센티브 40, 식품전 운영·홍보비 15
▪ 우수농산물국내외마케팅지원	198	- 해외박람회 참가 60, 국내박람회 참가 70, 김치, 떡 등 마케팅 68
▪ 광주김치산업화육성	110	- 수출용 포장재 개발 및 보급 : 60 -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 50
▪ 광주국제뿌리산업전시회	230	- 전시장·부스 조성공사 69, 국내외 바이어 유치 46, 행사 홍보비 등 135
▪ 국제그린카전시회	200	- 행사운영비(KOTRA) 100, 전시장·부스 조성공사 40, 행사 홍보비 : 40, 기타 운영비 : 20
(대전)	7,475	
▪ 기술장벽대응 맞춤형 기술유통 및 보호지원사업	250	- 기술이전(23개社) 233, 이전기술사업화(10개社) 203,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지원(11개社) 59, IP분쟁컨설팅(6개社) 129, 글로벌 기술유통 역량강화(1개社) 22, 네트워크협력사업(2회) 7, 신규사업기획(1건) 4 - 사업운영비 : 17, 간접비 : 40, 인건비 : 86
▪ 중소기업 성장 혁신전략 컨설팅사업	375	- 선행기술조사 : 20, 기업혁신로드맵구축 : 500, 맞춤형프로그램 : 108 - 간접비 : 35, 기관공통경비 : 37, 인건비 : 50
▪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	2,300	- 창업지원기반조성(31개社) : 1,110, 사업화 종합지원(50개社) : 1,400, 시장창조지원(30개社) : 930, 교류회 개최(2회) : 12 - 사업운영비 : 201, 간접비 : 460, 인건비 : 499
▪ 뿌리산업활성화 지원사업	500	- 공정개선지원(11개社) 440, 애로기술지원(6개社) 120, 마케팅지원(13개社) 91, 인프라 활용지원(5개社) 25, 사업계획지도 및 전문가 활용(10회) 5, 뿌리산업육성 전략수립(1식) 20, 세미나 및 교류회 개최(2회) 10 - 사업운영비 : 39, 간접비 : 100, 인건비 : 150
▪ 기업성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250	- 해외토탈맞춤형지원(20개社) : 250, 수출

		상담회개최(100개社) : 90, WTA하이테크 페어 참가지원(20개社) : 91 - 사업운영비 : 32, 간접비 : 50, 인건비 : 43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1,000	- 기업당 1~2개 사업 70백만원 이내 선택 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사업	500	- 직접사업비 : 1,000 × 1식 (교육, 미국U T기업평가(검증), 진단보고서, 현지수요처발굴, 협상지원 등)
▪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1,000	- 기술개발과제(80 × 8개사) : 640 - 기술사업화지원과제(80 × 11개사) : 880 - 공정개선지원과제(5 × 8개사) : 40 - 제품 경쟁력강화(20 × 8개사) : 16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600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85, 해외박람회 단체 170, 해외박람회 개별 100,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55, 강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위한 Open Hous개최 70, 인도-중동 기술 비즈니스 상담회 30,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상담회 25, 수출보험료 지원 68, 인터넷 무역거래 사이트 운영 5, 통상 아카데미 운영 2,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40, 해외마케팅 통번역 지원 10, 해외지사화 10, 해외마케팅 사후출장 10,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대상 감사연하장 발송 20
▪ 2017APCS 비즈니스페어	700	- 임차비 20, 식음료 166.5, 마켓플레이스 59, 등록 운영 25.5, 초청경비 75, 홍보비 105, 수송 및 관광운영 33, 인건비 등 기타 : 216
(울산)	1,0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000	- 해외시장개척지원(355개사) : 1,485 - 수출 중소기업 역량강화(10개사) : 240 - 수출마케팅 지원(169개사) : 470 - 무역환경 변화대응 역량강화(58개사) : 305
(경기)	751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203	- 4,060천원×100개사×50%
▪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지원	443	- 1,582천원×560개사×50%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05	- 실무교육, 인턴십지원 등 77, 사업운영 28
(강원)	1,6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6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1식) : 750 · 무역사절단운영(6회) = 100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9회) = 200 · 수출경쟁력 강화사업(11개사업) = 450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1식) : 900 · 박람회장 조성(대형텐트) : 210×2동 = 420 · 바이어 유치 : 1.6×300명 = 480
(충북)	3,500	
▪ 2017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900	- 일반경비 : 900, 전시/시설비 : 2,100, 학술심포지움 : 100, 공모전 및 특별전 : 900, 부대행사 : 1,100, 홍보 : 6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900	-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 1,500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등 : 400
▪ 수요자중심해외마케팅사업(농식품)	300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0×8회=160

		- 해외 홍보·판촉전 25×4회=100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0×2회=40
▪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	400	- 한방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제품화 : 100 - 한방바이오산업 홍보 및 기업경쟁력 강화 : 105 - 한방바이오산업 국내외 마케팅 강화 : 125 - 한방바이오기업 맞춤형 수출화 지원 : 20 - 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 50
(충남)	3,254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904	-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240,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140, 개별전시회 참가 128, 바이어 초청상담회 40, 해외지사화사업 40,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16, 국내개최국제전시회 20, 온라인마케팅지원 40, 초보수출기업역량 강화사업 80, 수출중견기업육성 36, 수출 보험보증료지원 40
▪ 해외시장개척사업	160	- 해외 인삼소비시장 마케팅 32×5회 : 160
▪ 금산인삼대도시순회 특별전	150	- 대도시순회 특별전 개최 75×2회 : 150
▪ 국제인삼교역전	150	- 국제인삼교역전 개최 150×1회 : 150
▪ 보령머드고도화	1,500	- 머드비누공장 신축 및 생산자동화 설비 1식
▪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390	- 광저우 충남상품전 개최 200, 충남 관광 산업전 80, 대산항 취항 기념행사 40, 유라시아 카라반 환송행사 40,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 120
(전북)	20,283	
▪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900	-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구축 7.2㎞, 정읍
▪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	2,260	- 100개사, 2,260 ·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R&D 지원 50개사 : 1,450 · 수요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30건 : 230 · 기업성장동력 컨설팅지원 및 브랜드 구축 플랫폼 지원 : 250 · 신사업고도화 지원 10건 : 60 · 경영혁신 네트워크 및 성과관리 : 270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2,000	- 6,670천원 × 300명 (등록금, 실험실습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등)
▪ 산업현장 중심 기업수요 맞춤형 이공계열 전문인력양성	1,260	- 2,250천원 × 40명 × 14개 과정 · 기업 맞춤형 교과목 편성·운영 · 현장실습 및 장학금 지원 등
▪ U턴기업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100	- 2,000천원 × 50명 × 1개 과정 · 기업 맞춤형 교과목 편성·운영 · 현장실습 및 장학금 지원 등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350	- 무역사절단 파견 200, 박람회 참가지원 300, 다문화가족 해외시장개척 30, 토탈마케팅 지원 80, FTA활용마케팅지원 170, 수출 보험가입비 지원 100,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80, 수출초보기업육성 30,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 등 10, 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 운영 150
▪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500	- 글로벌 우수기업 선정(13개 업체) · 기회분석보고서 제공 및 지정서 수여 · 최종 지원대상 기업 8개사 선정을 통해

		맞춤형미국 현지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200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사업 4개과제 지원(8개사, 200)
▪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650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26×5개 기관)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56×45개 기관)
▪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	1,500	- 멘토링 기획/기술로드맵(30개사) : 50 -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험분석(50개사) : 50 - 지역특화 소기업 경쟁력 강화(15개사) : 50 - R&D역량강화 기술개발(15개사) : 350 - 생산기반 공정개선(15개사) : 175 - R&D사업화 지원(35개사) : 175 - 디자인/마케팅 개발(40개사) : 275
▪ 전주형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150	- R&D 시제품 제작지원 30,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20,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35, 기업경영 비즈니스 지원 15
▪ R&D연계 기술애로 해소지원사업	700	- 시제품, 시작금형, 공정개선 지원(40개사) : 530 - 찾아가는 방문형 지원(10개사) : 100
▪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	500	-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지원 : 4개사×100=400 - 기업맞춤형성장지원 : 15개사×200=300 - SW기업 환경개선지원 : 2개사×30=60
▪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	100	- 온라인 토탈 허브시스템 운영
▪ 자동차용 경량 복합재 방탄판 개발	100	- 복합재 경량 방탄판개발 : 40, 방탄판 시험평가 : 20, 방탄판 및 실차량 제작 : 120, 방탄판 실차량 조립 : 20
▪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600	-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해외 우수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
▪ 탄소융합산업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기반구축	300	- 탄소산업 주요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수행, 탄소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탄소융복합제품 수요 확대 지원	80	- 4백만원/대×20대 = 80
▪ 탄소산업 활성화 T2B지원 사업	300	- 수요연계시스템구축 : 185, 사업화촉진 : 200, 거래활성화 지원 : 95, 기술제품 우수사례발굴 등 : 120
▪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290	- 중소기업 생산 탄소제품 공공구매지원 : 14개시군×20.7=290
▪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	250	- 유망제품 개발지원 : 10건×40=400 - 탄소브랜드 개발 : 10건×30=300 - 전북 탄소랜드마크 개발계획 수립 : 200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50 - 탄소홍보 홈페이지 개발 : 50
▪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	250	- 경영기술지도 : 2×12개기업=24 - 시제품제작지원 : 60×2개기업=120, 24×7개기업=168 - 마케팅지원 : 5.54×17건=94.2, 기타 : 93.8
▪ 탄소기업 R&D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	- 탄소기업 분석·공정·기술관련 R&D 지원 : 100
▪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418	- 상용화 시제품 개발지원 : 30x5건=150 - 생산현장 체질강화 지원 : 25x5건=125 - R&D사전기획 지원 : 3x5건=15

▪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800	- 경재력 강화지원 등 : 15×10건=150 - 애로기술해소지원 등 : 10×14건=140 - 해외 마케팅지원 등 : 3.8×25건=95 -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150명) : 75 - 클러스터 강화지원 등(30회) : 40 - 뿌리산업육성R&D : 150×1건=150
▪ 뿌리 · 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페어	75	-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 페어(100개사) : 50 - 현장 채용박람회(300명) : 25
▪ 지역의료관광산업마케팅지원	100	- 네트워크 구축 : 10, 전문인력양성 : 15 - 홍보인프라구축 : 25, 해외 마케팅지원 : 50
▪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	1,000	- 전시판매센터, 전시관, 홍보관 등 (A=51,718㎡, 연면적 446.05㎡)
▪ 활성탄소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500	- 활성탄소제품 기업 생태계 강화 시제품 공동개발, 활성탄소제품 제품개발 및 인증획득지원, 활성탄소제품 기업 기술역량 강화 지원
▪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	200	- 재활용 탄소섬유 Cutting 장비 개발, 건식 탄소섬유 매트 제조 설비구축, 성형기술 개발
▪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750	- 지상 3층 증축 900㎡(1,666천원/㎡×900㎡)
(전남)	8,550	
▪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2,500	- 제품경쟁력강화지원 : 2,000 - 분석 인프라구축 : 500
▪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1,600	- 30개 과제 지원, 1,6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700	- 수출상품 해외경쟁력 강화(15개사업) - 농수산물해외마케팅 활동지원(4개사업)
▪ 지역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300	- 기술개발 5건 : 730, 사업화지원 45건 : 1,370, 기술지원 25건 : 600
▪ 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	1,350	- 약 90개 업체(상가) 디자인개발 지원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900	- 교과목 편성·운영 45, 현장실습 및 장학금 지원 360, 교육프로그램 운영 135, 취업능력강화 45, 산학네트워크 135, 사업단 운영비 90, 간접비 90
▪ 선취업 후진학 과정	200	- 교육프로그램 운영 80, 후진학과정 지원 40, 운영비 20, 인건비 40, 간접비 20
(경북)	2,3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600	- 무역사절단(20회), 전시무역박람회(35회), 해외전시회개별참가(80개사),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80건), 해외시장조사활동대행(150건),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3회), 해외세일즈출장(30건), 수출기업해외규격인증지원(30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지원(300개사), 수출보험료지원(100개사), 우수기업 카탈로그제작(300개사), 해외바이어레드카펫(20건)
▪ 전략산업선도기업육성사업	450	- 지역전략산업선도기업선정및육성 : 450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300	- 경북타포린산업경쟁력강화사업 : 300
(경남)	4,53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330	-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 : 180 -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사업 : 500

		- 국내전시회 : 450 - 중국농공수산물 마케팅 : 100 -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 : 100
▪ 양방향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1,000	- 보상 : 5, 설계 : 300, 건축 : 1,500, 감리비 등 : 195
▪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2,200	- 증축공사 18,639㎡, 총사업비 : 49,000 (지특 24,500, 지방비 24,500)

□ 지원 필요성

○ 지역 특성화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역량 강화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 특성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94,741**	**87,295**	**81,830**	**△5,465**	**△6.3**
▪ 지역산업마케팅 등 지역산업 육성	65,001	63,845	75,380	11,535	18.1
▪ 지역산업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29,740	23,450	6,450	△17,000	△72.5
□ 비목(합계)	**94,741**	**87,295**	**81,830**	**△5,465**	**△6.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5,001	63,845	75,380	11,535	18.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9,740	23,450	6,450	△17,000	△72.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사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체제 실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872.95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72.95
‘17	869.95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69.95
‘18	869.95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69.95
‘19	869.95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69.95
‘20	835.15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35.1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동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 및 전 부처에서 회계 내 200여개의 개별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10)하고, 200여개 개별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합

  * 산업부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개별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

- ‘15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신설되어 세종시 사업을 분리

  * 지특회계는 경제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 이 중 생활기반계정과 제주 및 세종(일부)에 포괄보조금 도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지역특성화산업육성	593.37	534.86	870.91	872.95	818.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한 불용
○ ‘14년도 :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한 이월,
민간사업자 사업포기 및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한 불용
○ ‘15년도 :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한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93.37 ( )	115 ( )	- ( )	708.37 (683.37)	683.37 (683.37)	- ( )	25 ( )
’14년	534.86 ( )	- ( )	- ( )	534.86 (445.56)	452.36 (445.56)	77.5 ( )	5 ( )
’15년	870.91 ( )	77.5 ( )	- ( )	948.41 (682.89)	947.41 (682.89)	- ( )	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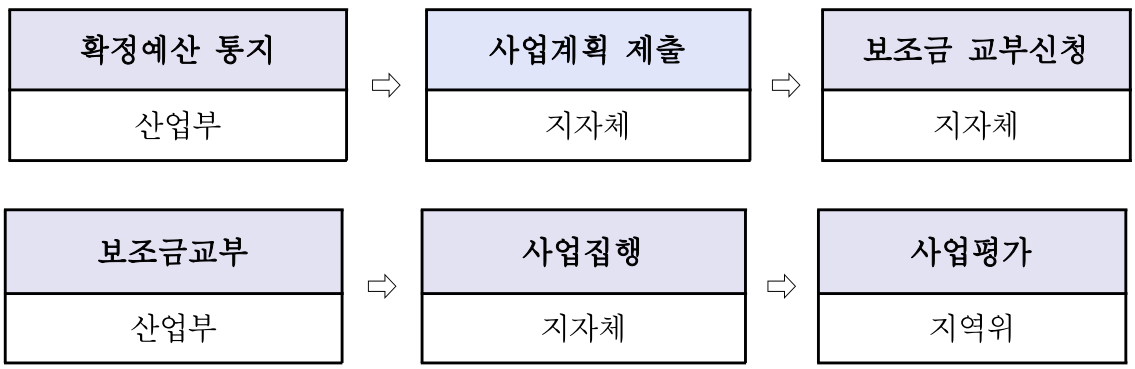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200	150	200	50	33.3

* 사업코드 : 39 - 21 - 1 - 110 - 114 - 3300 - 3361 - 304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장(박기영), 지역경제총괄과장(천영길, 044-203-4410), 서기관/주무관(김상곤/윤성환, 4414/441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시행주체	세종특별자치시

2. 사업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 투자유치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 무역사절단 운영(30) : 10백만원 × 3회
-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10) : 10백만원 × 1회
- 해외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72) : 8백만원 × 9개사
-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11) : 11백만원 × 1회
- 해외마케팅 사후출장비 지원(5) : 1백만원 × 5개사
- 수출초보기업육성사업(42) : 6백만원 × 7개사
- 해외지사화 사업(6) : 2백만원 × 3개사

-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10) : 2백만원 × 5개사
- 수출 통번역 지원(4) : 1백만원 × 4개사
- 수출 물류비 지원(10) : 2백만원 × 5개사

□ 지원 필요성

○ 지역 특성화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기술지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촉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200	150	200	50	33.3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200	150	200	50	33.3
□ 비목(합계)	200	150	200	50	33.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00	150	200	50	33.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5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5
'17	1.5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5
'18	1.5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5
'19	1.5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5
'20	1.4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4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동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14.1월)에 따라 '15 회계연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신설에 따라 경제발전계정(舊광역발전계정)으로 지원하던 세종시의 자율편성사업을 이관하여 '15 회계연도부터 본 사업 신규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세종)	-	-	2	1.5	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	- ( )	- ( )
'15년	**2** ( )	- ( )	- ( )	2 (1.7)	**2 (1.7)**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340	355	637	282	79.4

* 사업코드 : 39 - 21 - 1 - 110 - 114 - 3300 - 3361 - 303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장(박기영), 지역경제총괄과장(천영길, 044-203-4410), 서기관/주무관(김상곤/윤성환, 4414/441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목적

○ 지역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역량 강화 및 수출증대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337백만원)
- 해외전시회 : 5회, 187백만원
- 무역사절단 : 3회, 100백만원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1회, 50백만원

②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마케팅 지원(300백만원)
- 제주전통시장 크루즈관광객 유치 : 6회, 150백만원
- 지역산업과 지역상권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 1식, 50백만원

- 크루즈 취업박람회 개최 : 1회, 50백만원
- 크루즈 연계산업 해외전시회 : 2회,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으로 수출역량 함양 및 수출증대 도모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국가를 다변화 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제주산업발전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340**	**355**	**637**	**282**	**79.4**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40	355	337	△18	△5.1
▪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마케팅 지원	-	-	300	300	신규
□ 비목(합계)	**340**	**355**	**637**	**282**	**79.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40	355	637	282	79.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함양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국가를 다변화 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3.55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55
'17	3.55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55
'18	3.55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55
'19	3.55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55
'20	3.41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4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 대외무역법 제4조

○ 추진경위

- 지역산업 수출마케팅 강화대책 수립(산업자원부, '04.2월)
- 수출유관기관 제주 유치 등 사업지원 체계 구축
- 균특회계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수행지침 시달(지식경제부, '08년)
- 통상진흥 추진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 매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제주)	2.7	3.8	3.4	3.55	6.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7 ( )	- ( )	- ( )	2.7 (2.7)	2.7 (2.7)	- ( )	- ( )
'14년	3.8 ( )	- ( )	- ( )	3.8 (3.8)	3.8 (3.8)	- ( )	- ( )
'15년	3.4 ( )	- ( )	- ( )	3.4 (2.67)	3.4 (2.67)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지역산업육성지원(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산업육성지원	9,064	10,490	9,886	△604	△5.8

* 사업코드 : 39 - 21 - 2 - 110 - 114 - 4200 - 4231 - 305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장(박기영), 지역경제총괄과장(천영길, 044-203-4410), 주무관(윤성환, 044-203-441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지역정책수립, 지역발전정책 교육·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성과 공유, 지역사업 평가 및 환류 등 지역산업발전 기반 강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예산	산출근거
□ 지역산업육성지원	9,886	
○ 지역발전정책 교육 및 홍보	897	- 지역발전정책 교육 및 홍보 (산업부 297, 지역위 600)
○ 지역희망박람회	1,635	- 개막식 : 160, 전시회 : 680 - 컨퍼런스 : 330 - 지식콘서트 : 55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180 - 일자리박람회 : 230

○ 지역발전계획수립지원	190	-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보고서 : 95 - 지역발전 시행계획 수립 : 95
○ 지역사업 조사·분석·평가	2,300	-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 : 1,200 - 지역발전사업 심층평가 : 350 - 지역발전사업 조사·분석 : 40 - 복합시설/지자체 연계추진사업 평가 : 50 - 지자체 부진사업 컨설팅 : 150 -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110 - 우수사례집 발간・확산 : 180 - 평가자문단 연구회 운영 : 70 - 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 50 - 평가·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 50 - 지역발전사업 평가백서 : 50
○ 지역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확산	1,600	- REDIS시스템 고도화 : 400 - 지역발전사업 통합DB구축: 100 - 지역통계 DB 구축・운영 : 150 - 지원기관 DB 구축・운영 : 50 - 지역현황판정보 구축・운영 : 100 - 행복생활권 자료 관리시스템 : 20 - 평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180 - 지역정책 콘텐츠 구축 및 운영 : 150 - 지역발전온라인아카데미구축 : 30 - 지역발전사업 편람제작 : 50 - 지역발전 공감특강 : 20 - 홍보/SNS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 130 - 지역유관기관 정보협력체계 구축 : 50 - 서버 및 기자재구축 : 170
○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2,000	- 지역 우수기업 탐방 : 1,400 - 고교기술인재 : 600
○ 지역행복생활권지원	1,264	- 지역생활권협의체 컨설팅 등 : 1,264

□ 지원 필요성

○ 지역발전정책 교육 및 홍보

- 매년 개선·보완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외 홍보, 관계자 교육, 지역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지역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지역희망박람회

- '13년부터 지역희망박람회는 정부의 지역정책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교육·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범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04년 이후 VIP께서 해마다 참여하고 있는 행사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지역발전계획수립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 제7조, 제21조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의무를 규정

- 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의 뒷받침 필요

○ **지역사업 조사·분석·평가**

- 지역발전사업 추진현황 조사·분석·평가를 통하여 지역발전사업의 투자방향 결정, 국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확산**

- 지역발전사업 평가업무의 체계적 시스템化를 통해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평가절차의 효율성 증대

- 지역발전정책과 사업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정보제공으로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 지역 청년인재들에게 지역 우수기업 탐방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긍적적 인식제고 및 취업관심 유도

- 지역별 취업동아리 및 인사담당자 멘토제 등을 운영하고, 맞춤형 탐방을 실시하여 실제 지역취업 성과창출 노력

- 지역기업에게 우수한 현장 기능인력 지원 및 홍보제고를 위해 특성화·마이스터고교생 대상 장비실습 및 현장 직무교육 실시

○ **지역행복생활권지원**

-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역간 경쟁 유도, 주민소통강화 등을 위해 지원

*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전국에 63개 생활권이 구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산업육성지원**	**9,064**	**10,490**	**9,886**	△604	△5.8
▪ 지역발전정책 교육 및 홍보	797	897 (지방투자아카데미, 공장설립 과정 등 12개과제×75백만)	897 (지방투자아카데미, 공장설립 과정 등 12개과제×75백만)	-	-
▪ 지역희망박람회	1,635	1,635 (개막식, 전시회 등 8개행사×205백만)	1,635 (개막식, 전시회 등 8개행사×205백만)	-	-
▪ 지역발전계획수립지원	230	190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등 2개과제×95백만)	190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등 2개과제×95백만)	-	-
▪ 지역사업 조사·분석·평가	2,000	2,300 (1,680개사업×1.37백만)	2,300 (1,680개사업×1.37백만)	-	-
▪ 지역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 확산	1,600	1,600 (지역발전DB 등 14개과제×114백만)	1,600 (지역발전DB 등 14개과제×114백만)	-	-
▪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1,404	2,604 (일반탐방 11,560명×0.14백만 + 맞춤형 탐방 3,000명×0.14백만 +고교기술인재 1,765명×0.34백만)	2,000 (일반탐방 7,000명×0.14백만 + 맞춤형 탐방 3,000명×0.14백만 +고교기술인재 1,765명×0.34백만)	△604	△23.2
▪ 고교기술인재지원	600	-	-	-	-
▪ 지역행복생활권지원	798	1,264 (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12개과제×106백만)	1,264 (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12개과제×106백만)	-	-
□ **비목**(합계)	**9,064**	**10,490**	**9,886**	△604	△5.8
○ 사업출연금(350-02)	9,064	10,490	9,886	△604	△5.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발전계획수립 및 지역별로 특화된 시책개발, 매년 개선·보완된 지역발전 정책 교육·홍보, 성과공유, 지역사업평가 및 환류 등 지역산업발전 지원기반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04.9	▪ 교육·홍보: 8.97, 희망박람회: 16.35, 지역발전계획: 1.9, 지역사업평가: 23, 지역발전정보협력: 16,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26.04, 지역행복생활권: 12.64
'17	98.68	▪ 교육·홍보: 8.47, 희망박람회: 16.35, 지역발전계획: 1.9, 지역사업평가: 22, 지역발전정보협력: 16,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24.04, 지역행복생활권: 9.92
'18	97.16	▪ 교육·홍보: 8.47, 희망박람회: 16.35, 지역발전계획: 1.9, 지역사업평가: 22, 지역발전정보협력: 16,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24.04, 지역행복생활권: 8.4
'19	97.16	▪ 교육·홍보: 8.47, 희망박람회: 16.35, 지역발전계획: 1.9, 지역사업평가: 22, 지역발전정보협력: 16,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24.04, 지역행복생활권: 8.4
'20	93.09	▪ 교육·홍보: 8.1, 희망박람회: 16.35, 지역발전계획: 1.9, 지역사업평가: 21, 지역발전정보협력: 16,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21.64, 지역행복생활권: 8.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방경제 혁신)과 7대과제(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추진) 중 하나로 선정('03.6)
- '03. 6 : 자립형지방화의 핵심과제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 '07. 2 :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명칭 변경
- '09. 1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 '13. 1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5. 1 : '지역행복생활권지원' 내역사업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산업육성지원	98.29	84.9	91.64	104.9	98.8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1억원 불용 : '15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사업 조사·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1억원 감액(불용)

* 당초 사업비 21억원에서 간접비 3억원 중 1억원이 감액되어 20억원으로 변경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98.29** **(98.29)**	- ( )	- ( )	98.29 (98.29)	**98.29** **(98.29)**	- ( )	- ( )
'14년	**84.9** **(84.9)**	- ( )	- ( )	84.9 (84.9)	**84.9** **(84.9)**	- ( )	- ( )
'15년	**91.64** **(90.64)**	- ( )	- ( )	91.64 (90.64)	**90.64** **(90.64)**	- ( )	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 (지적사항) **지역발전포털 관리 철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담당하는 '지역발전포털'의 '지역사업정보' 자료 등이 적기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자료 링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지역발전포털의 적기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수용) 그동안은 지역사업정보 등 개별 부처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 등은 사업 추진실적 평가 후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나, 향후에는 지역사업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 체제로 변경하겠으며, 주기적으로 포털시스템의 운용상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
⇩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에 맞게 사업 수행
⇩	
사업 추진실적 보고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을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정산보고는 2개월 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3,070	3,070	2,809	△261	△8.5

* 사업코드 : 21 - 39 - 4 - 110 - 115 - 4200 - 4233 - 301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박기영), 지역위협력팀장(백경동, 044-203-4418), 사무관(변재택, 44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경상보조 : 국비(100%)
사업시행주체	전국 지자체

2. 사업목적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기존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도별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한 시·도 상생발전 도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인건비 : 계약직 연구원·사무원 인건비 1,534백만원

- 산출내역 : 8개 특별·광역시*[(연구원 1명*42백만원) + (사무원 1명*26백만원)]
  9개 도*[(연구원 2명*42백만원) + (사무원 1명*26백만원)]

  * 특별광역시 보다 도의 산하 시·군·구가 많아 지역행복생활권이 더 많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광역시와 도를 차별화

② 운영경비 : 17개 시도 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595백만원

- 산출내역 : 17개 시·도 * 35백만원

③ 연구개발비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80백만원

- 산출내역 : 17시・도 *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통해 지역상생발전 체계 구축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생활권발전 협의체지원	**3,070**	**3,070**	**2,809**	**△261**	**△8.5**
▪ 인건비		1,534 (8개 광역시×68백만원+ 9개 도× 990백만원)	1,534 (8개 광역시×68백만원+ 9개 도×990백만원)	-	-
▪ 운영비		856 (17개 시도×50백만원)	595 (17개 시도×35백만원)	△261	△8.5
▪ 연구개발비		680 (17개 시도×40백만원)	680 (17개 시도×40백만원)	-	-
□ 비목(합계)	**3,070**	**3,070**	**2,809**	**△261**	**△8.5**
○자치단체경상 보조(330-01)	3,070	3,070	2,809	△261	△8.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균특법에서 정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지역위에서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의 기획・조정・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서는 예산관련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30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30
‘17	28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8
‘18	27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7
‘19	26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6
‘20	25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균특법 제29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 추진경위

- ‘13. 7.18.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 프로젝트’ 발표(지역위)
  * 지역행복생활권 등 6대분야 17개 실천과제 제시
- ‘13.11. 1.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지역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추진
- ‘13.12.2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 지역행복생활권 반영,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근거 마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32	30	30	2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32			32	32 (26)		
'15년	30			30	30 (28)		
'16년	30			30	30 (2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참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개 요

○ 現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 '5+2 광역경제권'을 '행복생활권'으로 전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폐지**

○ 시·도 내 복수 시·군·구가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함에 따른 시·도의 기능강화를 위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 2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 시·도지사
- (위 원) 위원장이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 시·도 발전계획 주요내용 및 행복생활권 관련 전문가를 위촉

○ (실무지원) 17개 시·도 내 '시·도 생활권발전기획단' 설치,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 (생활권발전기획단장) 기획관리실장 겸임, (생활권총괄팀장) 기획관 겸임, (생활권연구센터) 시·도발전연구원에 설치

□ 주요기능

○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심의
○ 시·군·구의 행복생활권 관련 지원
○ 시·도 발전 및 행복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지표관리
○ 시·도 발전 및 행복생활권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소통
○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 대외 업무협의
○ 기타 시·도 발전 및 행복생활권 관련 제반사항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 (재량, 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	-	-	28,000	28,000	순증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114- 4200 - 4231 - 303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장(박기영), 지역경제총괄과장(천영길, 02-203-441), 서기관(김상곤, 441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7
총사업비	1,375억(국비 280억원, 1,095억원)
사업규모	부지 43천㎡, 건축 34천㎡(전시장 8, 회의실 2.5, 기타 23.5 지상3층, 지하1층)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 건축비 30% 이내
사업시행주체	울산광역시

2. 사업목적

○ 조선산업의 위기극복,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체들에게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선해양전문 전시컨벤션 건립을 통해 조선업 구조고도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산업부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체 국고지원규모는 건축비(설계포함)의 30%로 산정

- 산출근거 : 건축비(설계 포함) 933억원 × 30.% = 280억원(국비 280억원, 시비 653억원)

  * 부지매입비: 전액 지자체 부담

  * 산업부 예타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 9조(훈령): 건축 신규소요 / 국비 30%이내

□ 지원 필요성

○ 대규모 고용과 연관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기업지원서비스가 필요

○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외마케팅, 글로벌 기술동향 조사, 조선해양 전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선업 경쟁력강화 지원기반(전시컨벤션) 구축이 필수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	**-**	**-**	**28,000**	**28,000**	**순증**
▪ 울산 조선업경쟁력강화 지원센터	-	-	28,000 (건축비 93,300백만×30%)	28,000	순증
□ 비목(합계)			**28,000**	**28,000**	**순증**
○ 지자체자본보조(330-03)	-	-	28,000	28,0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조선업 침체에 따른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조선업경쟁력강화 지원센터를 조기에 건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2017년 1회 지원)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7	280	▪ 조선업경쟁력강화 지원센터 : 건축비(설계 포함) 933억원 × 3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34조

○ 추진경위

- 추진배경 : 대규모 고용과 연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 산업의 위기 극복과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기업지원서비스가 필요

- 추진상황 : 건립계획 타당성 승인(산자부, '13. 7월),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자부, '15. 10월)
  '16. 02. 설계공모공고
  '16. 03. 부지매입 매매계약서 체결 (총 442억원)
  '16. 07. 설계용역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	-	-	-	-	28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별첨

참고 조선해양산업활성화 기반조성
(울산 조선업경쟁력강화 지원센터)

□ 필 요 성

○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외마케팅, 글로벌 기술동향 조사, 조선해양 전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센터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KTX울산역 역세권(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683-1번지)
○ 규　　모 : 부지 43천㎡, 건축 34천㎡(전시장 8, 회의실 2.5, 기타 23.5)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간)
○ 사 업 비 : 1,375억원(국비 280, 시비 1,095)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예산(안)	2018년	비 고
계	1,375	442	700	233	-
국　비	280	-	280	-	
지방비	1,095	442	420	233	-

* 부지매입비 442억원, ** '17년 지방비 42억원은 설계로 기투자
※ 총사업비 1,375억원, 부지매입비 442억원, 공사비 933억원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13. 7월 : 산업부 건립계획 타당성 사전협의(승인)

○ '15.10월 :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 '16. 7. ~ '16.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 2 ~ '18. 12 :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31,270	40,473	28,539	△11,934	△29.5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72,016	74,499	63,928	△10,571	△14.2
○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07,928	98,559	93,263	△5,296	△5.4
○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7,174	29,031	23,386	△5,645	△19.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1,011	31,028	24,997	△6,031	△19.4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9,727	75,176	82,557	7,381	9.8
○ 산업기술국제협력(R&D)	62,630	61,925	55,732	6,193	△10
○ R&D관리기관지원	12,729	12,776	13,336	560	4.4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42,185	45,667	45,000	△667	△1.4
○ 국가전략프로젝트	-	-	7,200	7,200	(순증)
○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2,857	2,000	1,412	△588	△29.4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및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운영	494	470	497	27	5.7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1,108	1,556	1,255	△301	△19.3
○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사업	1,328	1,169	1,000	△169	△14.5
소계	442,457	474,329	442,102	△32,227	△6.8
<에특회계>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8,350	9,380	10,516	1,136	12.1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사업	1,200	1,400	1,300	△100	△7.1
○ 에너지기술정책수립(R&D)	982	933	914	△19	△2.0
○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6,881	14,464	15,605	1,141	7.9
소계	27,413	26,177	28,335	2,158	8.2
총계	469,870	500,506	470,437	△30,069	△6.0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31,270	40,473	28,539	△11,934	△29.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100 - 3171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4510), 사무관(박두강, 4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 ~ '18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매칭 여부 및 비율은 과제별로 상이)
사업시행주체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2. 사업목적

○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제고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융합기반구축(28,539백만원)

- 산업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 산출내역 >

- '17년 계속과제(26개) : 26,067백만원

(계속) 17개×1,540백만 x10/12개월= 21,811백만원

(종료) 9개 × 473백만 x12/12개월= 4,256백만원

- '17년 신규과제(2개) : 2개 × 1,240백만 x9/12개월= 1,860백만원
  * '제9차 무투회의'('16.2)에서 제기된 융합신산업(헬스케어, 생활편의, 안전)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용자 기반 실증랩 구축 관련 2개 과제
- 평가관리비 : 61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업고도화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마련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인프라를 대학·연구기관 등에 구축하여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R&D로 개발된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애로기술 지원, 시제품 생산, 시험·평가지원, 표준 제시 및 인증 등)를 종합적으로 지원중임. 이를 통해 개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이외에도 여기에 소요되는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중인 28개 과제는 사업기간이 3~5년인 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이 필요

○ ICT융합분야 관련 연관성

- 중소제조업 분야에 3D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에서부터 유지보수 단계에까지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3D 혼합현실 생산지원 서비스 지원

-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5대 강국인 자동차 산업에 IC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V2X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WAVE 시스템 인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교통공학 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한 C-ITS 구축 기반 사업

* 시스템부문 중소제조업을 위한 3D혼합현실기반의 생산지원 및 제품관리 기반구축 등

○ 바이오헬스분야 관련 연관성

- 향장 및 화학산업 기업들에게 동물대체시험을 이용한 시험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OECD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시험법을 구축하고 신개발 해외동물대체시험법을 도입, 기업에의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 국내 중소/중견 제약 및 의약관련 산업체에서 세계적인 천연물 의약·소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허가 취득 서비스 지원 등 신사업창출

*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등

○ 에너지신산업분야 관련 연관성

-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분야 중점 투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내 중소 LED조명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진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현지 조명환경 최적화, 수요자 연계 시험·분석 및 실·인증 기반구축과 컨소시엄/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수요자 연계형 LED조명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

○ 신소재·부품분야 관련 연관성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 기업들이 고강도·경량화의 탄소섬유 복합재 등 신소재 개발 기술 등 신소재 개발에 따른 스포츠 용품의 시험·평가가 가능한 인프라 기반 및 표준화 시험법 개발 지원
- 경량화 자동차 부품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비철소재 설계·제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부품업체에게 개발제품의 시제작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비철부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사업 등

○ 고급소비재 분야 관련 연관성

- 항노화 소재 및 기능성 화장품 고부가가치화 기술지원을 통해 항노화 신제품 도출과 기존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신성장동력 고급 천연물 소비재 분야의 핵심적 역할 수행

* iHTS 시스템 기반 천연물 의약/산업 바이오 소재 기술 지원센터 구축 등

○ 주력산업 및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관성

- 전자·반도체, 철강·금속, 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wet-laid 섬유소재 개발을 통해 주력산업분야 부품소재의 산업화 전개 및 기술력향상, 첨단 부품소재 기술 분야의 선진화 도모

- 국내 산업기반이 강한 주력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대상 중 친환경·지능형 선박 등 선정하여 국내 중소형 선박엔진 기자재 업체의 기술 상업화 지원을 위한 공적 시험기반 구축하고 여러 요소기술이 포함된 선박엔진의 성능 및 품질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제공인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 습식(Wet-laid)공법의 복합부직포 기반구축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융합기반구축	31,270	40,473	28,539	△11,934	△29.5
▪ 산업융합기반구축	29,512	34,672 (계속) 17개 × 1,451백만 = 24,672백만원 (신규) 11개 × 909백만 = 10,000백만원 *평가관리비 673백만원 포함	28,539 (계속) 17개 × 1,583백만 × 10/12개월 = 22,423백만원 (종료) 9개 × 473백만 × 12/12개월 = 4,256백만원 (신규) 2개 × 1,240백만 × 9/12개월 = 1,860백만원 *평가관리비 612백만원 포함		
▪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	1,000 (신규) 1개 × 1,000백만 = 1,000백만원 *평가관리비 25백만원 포함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內 과제화		
▪ 한국적 생산혁신 방법개발	333	487 (계속) 1개 × 487백만 = 487백만원 *평가관리비 12백만원 포함	-		
▪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1,425	1,314 (계속) 1개 × 1,314백만 = 1,314백만원 *평가관리비 33백만원 포함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으로 이관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기반 조성	-	3,000 (계속) 1개 × 3,000백만 = 3,000백만원 *평가관리비 75백만원 포함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으로 이관		
□ 비목(합계)	31,270	40,473	28,539	△11,934	△29.5
○ 출연(360-04)	31,270	39,986	28,539	△11,447	△28.6
○ 출연(360-05)	-	487	-	△487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계속과제는 유형별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사업은 심화 사전기획을 통해 우수과제 도출 및 지원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 및 신규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 차년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 투자적정성 등을 신규사업 기획평가에서 사전 검증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05	▪ 산업융합기반구축(346.72) ▪ 한국적 생산혁신 방법개발(4.9) ▪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10)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기반조성(30) ▪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13.1)
'17	285	▪ 산업융합기반구축 - 계속과제 : 266 - 신규과제 : 19
'18	360	▪ 산업융합기반구축 - 계속과제 : 340 - 신규과제 : 20
'19	360	▪ 산업융합기반구축 - 계속과제 : 340 - 신규과제 : 20
'20	356	▪ 산업융합기반구축 - 계속과제 : 336 - 신규과제 :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15.5) 2016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을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1개)'과 '산업별 기술개발기반구축(창의, 시스템, 소재 3개)'으로 세부사업 재편

* 산업부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자체 사업 성과평가와 연계

⇒ ◆ 산업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한 구조
◆ 사업별 산업분야가 명확한 사업구조로 사업성과와 예산연계 실현

- ('16.5) 2017년부터 세부사업명 변경 및 내역사업 일부 이관

* "(세부)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 "(세부)산업융합기반구축"으로 세부사업명 변경
*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內 과제화(내역사업→과제)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기반조성' : "(세부)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으로 이관
*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세부)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으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융합기반구축	477	422	313	405	2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기재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보통)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미래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OECD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산된 대형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 증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 중

○ 일본의 경우도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중기청이 연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및 첨단기기공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첨단연구장비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부터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시설 및 장비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

-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첨단연구장비 및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기술관련 서비스, 성과육성지원 서비스, 실시훈련 서비스, 인재육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팩키지를 지원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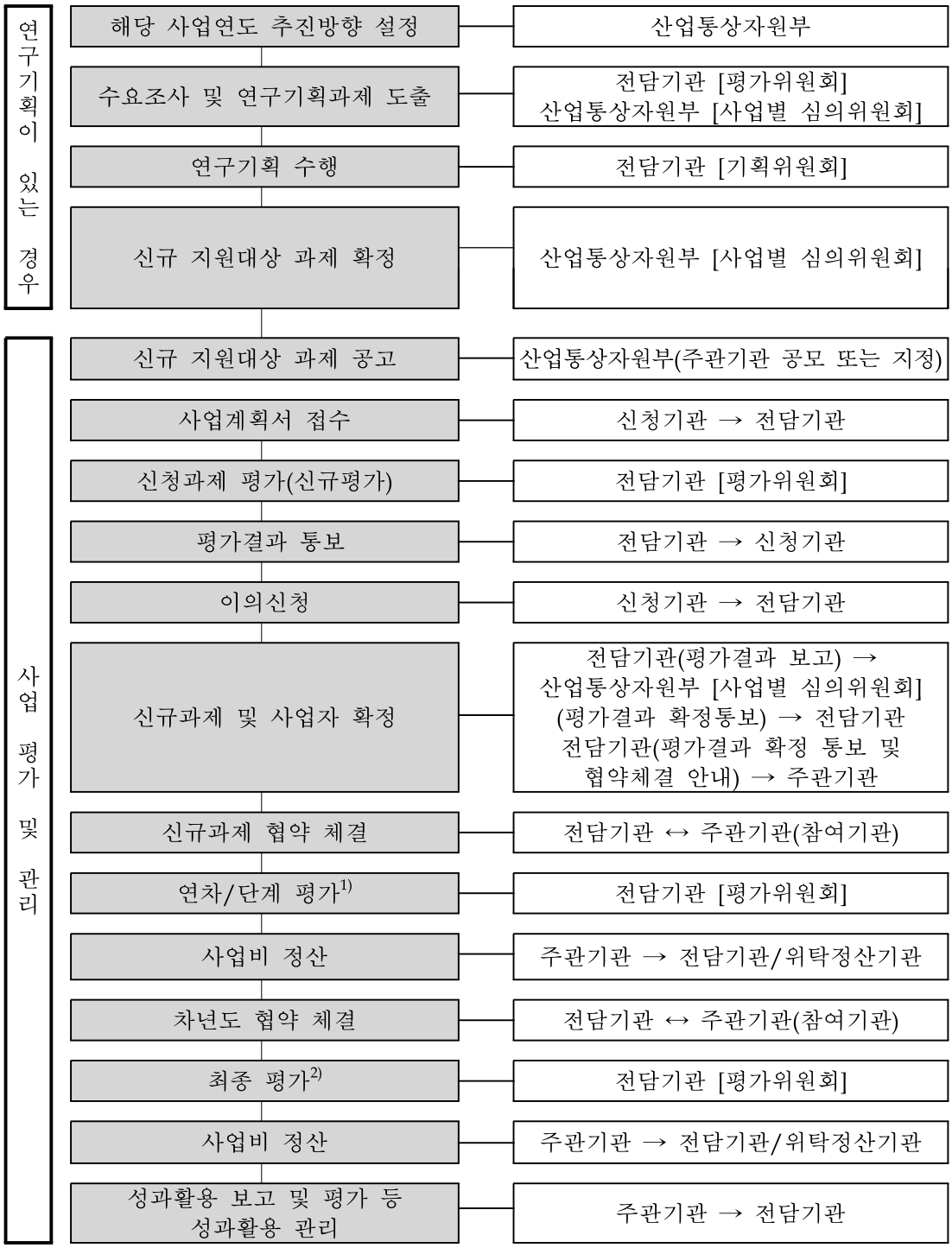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72,016	74,499	63,928	△10,571	△14.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71 - 303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4510), 사무관(박두강, 4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 ~ '18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주체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연구기관, 기업, 대학, 협회 등

2. 사업목적

○ 소재부품(철강화학, 전자부품, 섬유세라믹 등)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41,303백만원)

-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기반을 지원하여 글로벌 소재부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달성

< 산출내역 >

- (계속) 14개 ×1,742백만 x10/12개월= 20,323백만원

- (종료) 59개 ×290백만 x10/12개월 = 14,260백만원
- (신규) 31개 × 290백만 x9/12개월 = 6,720백만원

② 국민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2,000백만원)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첨단 방범·방재·보안 등 안전융합산업 종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능평가 및 기술연구기반과 실대형 시험인증 기반의 구축 및 운영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2,400백만 x10/12개월= 2,000백만원

③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8,452백만원)

-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인프라 확보를 통한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산출내역 >

- (계속) 5개 × 2,028.5백만 x10/12개월= 8,452백만원

④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2,095백만원)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플렉서블 전자소재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연계확산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2,514백만 x10/12개월= 2,095백만원

⑤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1,333백만원)

- 탄소복합체, 타이타늄 등 첨단산업용 극한성능 비철 소재·부품 인증 및 시제품 생산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1,600백만 x10/12개월= 1,333백만원

⑥ 북미거점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 구축(1,200백만원)

- 세계 3대 금형 수입국인 멕시코와 미주지역의 금형 수출을 촉진

하고 한국 금형기업의 신뢰성 확대를 위한 해외 현지 북미 거점 지역 내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 기반 구축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1,440백만 x10/12개월= 1,200백만원

⑦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775백만원)

- 신발의 기능·품질·안전성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내신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930백만 x10/12개월= 775백만원

⑧ 첨단 융합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2,299백만원)

- 첨단 융합세라믹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 산업 전단계에 걸쳐 Full-Cycle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세라믹산업 육성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2,759백만 x10/12개월= 2,299백만원

⑨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2,178백만원)

- 레포츠 섬유소재 R&D지원/시제품지원/시험평가/인증지원/기업지원까지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레포츠 섬유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2,613.6백만 x10/12개월= 2,178백만원

⑩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1,134백만원)

- 바이오세라믹 융합 소재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통합평가 지원체계 마련, 제품 신뢰성 제고 및 관련 분야 산업화 촉진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1,361백만 x 10/12개월= 1,134백만원

⑪ 기능성점토광물사업육성(1,159백만원)

- 점토광물을 활용한 GMP급 테라피 산업원료 생산 공정 설계/테스트베드 건설, 점토 원료 양산 모델 확립을 통한 테라피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1390.8백만 x10/12개월= 1,159백만원

□ 지원 필요성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 국내에서 개발·생산되는 소재부품의 명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신뢰성(Reliability) 확보가 반드시 필요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성과분석 결과, 과제수행前 대비 수행後 지원품목의 평균 마진율은 6.6%(12.1% → 18.7%)로 증가

◈ 최근, 수요기업의 신뢰성 요구 수준이 높아져 소재부품기업의 신뢰성평가센터 활용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24%이상)

* '09년(3,699건) → '10년(4,642건) → '11년(4,794건) → '12년(6,722건) → '13년(9,097건) → '14년(11,162건)

○ 소재산업은 日, 美 등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장기간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소재개발 인프라(물성정보 등)는 매우 부족한 상황

* 물성정보 : NIMS(日) 200만건, NIST(美) 160만건, 소재정보은행(韓) 80만건

- 또한,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소비 트랜드가 증대되면서, '감성'은 고부가 소재부품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全無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M&A 등이 중요하나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단독 추진에 애로

- 특히, 글로벌 M&A는 해외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관련 경험·노하우는 거의 없는 상황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

○ 선진국일수록 방범·안전 요구는 국민의 기본적 요구이며, 방범·안전 시스템의 사회기반시설 적용은 사회적 당면과제

- 국내 안전산업 제품시장은 해외의 높은 기술 의존도와 연구개발 장비 인프라 부족으로 관련기업의 투자위축, 경영난 등 존재

○ 안전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집적화된 국내 인프라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 통한 제품개발의 선순환구조가 전무함

- 안전 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정확한 평가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적화된 평가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소재부품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과 원천기술 확보 추진 필요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

○ 화학소재는 타 산업의 주요 원·부자재로서 관련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부가가치 제고 및 신제품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소재

○ 범용소재(석유화학 세계5위)는 생산규모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기능성 신소재 부문은 경쟁력이 취약(선진국의 70% 수준 : 4~7년 격차)

○ 주요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개발은 수요기업 나아가 학·연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제품기업(수요업체)과 소재업체(공급업체)를 한 곳에 집적화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측면 지원

  * 독일의 Chemsite, 네덜란드·벨기에의 Flanders-NL 클러스터, 미국의 텍사스-휴스턴 클러스터 등

- 단순히 기업체의 집적화에 그치지 않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로 하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운영 필요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 스마트 모바일기기를 필두로 플렉서블 전자소재의 수요는 급증하지만, 대부분의 전자소재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및 시설 부족임

- 플렉서블 전자소재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
- 전자소재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시제품개발, 인증, 신뢰성평가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수출을 위해 기술 및 시설 집약된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전자소재의 자체의 성능과 제품화를 위한 소자/패널의 정합성 및 성능 평가, 인증 등이 필요
- 기업들은 소재·부품 설계, 시제품 제작 및 평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싶어 하며, 출연연구소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 부터 기술지원 받기를 원함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 국내 금속소재의 신뢰성 기반은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미래산업의 기초소재인 극한성능 비철소재 신뢰성 평가와 이용기술 인프라 전무

* 기존 금속소재 신뢰성 평가 인프라는 자동차, 건축/토목 등 철강소재 위주
* 극한환경에서 사용되는 첨단 비철소재는 피로, 부식 등 사용환경 고려 특수 시험 인프라 및 운용 기술 필요

○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은 비철 분말소재 기반 첨삭가공기술 등 신소재와 신제조기술을 결합한 항공, 의료 첨단부품 제조 인프라 운용

* 미국은 국립첨삭가공혁신연구소(NAMII)를 통해 항공 및 의료산업용 신소재 및 신제조 공정의 조기사업화 지원(예: 항공 터빈브레이드, 의료용 임플란트)

○ 항공 및 국방산업 분야는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제품테스트, 결과 공유 및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소재 신뢰성을 축적해야 하는 고난이도 시장임

* 항공산업에서 시험, 평가 및 인증은 항공용 소재부품산업의 90% 차지
* 기존 인프라의 항공용 규격 미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항공산업 진출 장애
* 항공용 소재·부품 국내 시험평가기관 부재로 해외기관 의존(예: Applus)

<북미거점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구축>

o 전통적 강세인 금형산업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성장여건 악화 및 세계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선진국 중심의 新경쟁력 확보로 판로 다변화를 통한 지원 확대 시급

- 국내 대기업 등 해외 이전, 내수시장 한계, 중국 저가공세(中기업 급속한 기술력 상승), 일본 엔저현상(日기업 세계시장 진출 확대), FTA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금형산업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수출 금형 대응 지원 신속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확보

o 금형산업 및 금형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1985년부터(금형공업 육성 지원방안) 이루어져 현재 생산 5위, 수출 2위국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지속 성장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2012)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

○ 한국의 강점인 기능성 신발 개발로 지속적 시장 확대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신발성능 표준 수립 및 인증체계 구축 필요

- 기능성 신발 신제품 마케팅 시 기능평가 결과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적극 활용

- 최근 신발 브랜드(트렉스타, 르까프, 비트로, 코오롱스포츠, 헤드, 밀레, 라푸마 등)에서 신제품 출시에 앞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능평가가 결합된 신제품 개발 요구 증대
  * 최근 신발 브랜드 신제품 개발 성능평가 투자액(자체용역) : 코오롱스포츠(4억원), 라푸마(2.7억원), 밀레(1.7억원), 헤드(1.5억원), 화승(5.4천만원), 휠라(3.3천만원) 등

- 글로벌 신발 브랜드(나이키, 아디다스 등)는 1980년대부터 완제품 기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제품 개발 시 필수적으로 활용 및 투자확대(선진국 대비 60~70% 수준)

○ 소비자의 기대치에 따른 신발기업의 신제품 기능에 대한 성능 검증/인증 요구 증가

- 소비자: 기능성 신발의 성능/기능에 대한 기대치 증가 및 실제적인 효과 기대

- 기업 : 개발 기능성 신발의 기능 구현 검증 및 과학적 마케팅 요구 증가

○ 국내 제품의 우수한 성능·품질에도 불구하고 성능·품질에 대한 국가 규격이 전무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 선호도 저하 및 성장의 한계

○ 국내에 품질성능을 비교·표시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 다수 발생으로, 신규 출시 기능성 신발에 대한 기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비 및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첨단 융합 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 (융복합 R&D 인프라 구축 시급) 소재의 다양화・다기능화, 개발주기의 단축에 필요한 첨단 융합소재 R&D인프라 구축 시급

- 첨단 융합세라믹소재 개발에 요구되는 단결정・고온반응, 미세구조 제어, 초정밀・초고온 R&D 지원 장비 및 최적화 시뮬레이션 인프라 필요

○ (시험분석평가 장비 필요) 융합화·나노화에 대응 가능한 초정밀・고분해능 국내 시험분석평가 인프라 요구 (예 : (분해능) 수 nm → 0.1 nm 이하)

- 초정밀・고기능성 분석은 외국 전문회사에 의존하는 실정

  * S사 반도체 소자 극미량원소분석 : 日도레이사(비용손실 5,000만원/월, 기간손실 3주)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세라믹기술원 이전지역인 동남권에 전방 수요산업(항공, 기계, 우주, 화학 등)이 발달하여 이와 연계한 인프라 지원 필요

- 동남권의 첨단 융합세라믹소재 전방 수요업체 1,000여개 분포

* 화학융합소재 : 500개 이상, 지능형기계부품 : 300개 이상, 항공 100개 이상 등

<레포츠섬유발전기반구축>

○ 전세계적인 레저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레포츠 섬유 제품의 폭발적 수요 예상

* 아웃도어 패션시장 규모 : '09년 2조 4,300억원 → '13년 6조 3,975억원, 연평균 27.4% 증가

* 레포츠용품산업의 부가가치 규모 : '05년 20조원 → '12년 39조원, 연평균 10.1% 증가

○ 편의성, 안전성, 기능성이 향상된 레포츠 섬유 소재 요구되고 있으나 고성능 레포츠 섬유의 경우 수입에 의존, 융합소재산업 육성이 시급

○ 레포츠 섬유는 미래성장산업인 레포츠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미국, 유럽, 중국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레저산업 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레포츠 섬유소재 및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 필요

* 레포츠용 섬유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품화 전주기에 걸친 생산설비, 성능평가 및 인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의 복합적인 지원 필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

○ (바이오세라믹소재에 전문화된 평가인프라구축 시급) 바이오세라믹에 대한 지속적 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과 고기능성 바이오세라믹 제품의 실용화를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전문화된 성능평가에 대한 기반 구축 필요

- 바이오세라믹과 고분자/약물/단백질과의 융합화를 통한 고기능성 바이오세라믹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통합평가 방법 및 솔루션 부재

- 바이오세라믹소재 안전성 및 유효성 성능평가를 위한 전문화된 인력 및 통합형 평가 시스템 미흡

○ (바이오세라믹 기업 지원 강화 시급) 선진국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해당 기업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열세 극복 시급

- 세계 바이오세라믹 시장의 약 80%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집중되어있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 기준으로 인해 선진국 시장 진출 어려움 (선진국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중은 1% 미만)
- 소재/제품의 개발부터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인증에 이르는 통합솔루션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바이오세라믹소재/제품 부작용 발생) 바이오세라믹의 고분자/레진, 약물/단백질 등 융합화를 통해 개발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급증 및 시장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발생

-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바이오세라믹 소재인 탈크에서 석면 검출
- 목디스크 환자에 이식한 골이식재 파손
- 조영제 유해반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 바이오세라믹소재/제품의 신뢰성 및 우수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세라믹소재에 대해 전문화된 성능평가 필요

<기능성점토광물사업육성>

○ 기능성 점토 원료 소재 수요 확대

- 기능성 점토광물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국내 고부가 산업분야에서 활성성분, 부형제, 흡착제, 식품첨가제, 기능성 전달체 등으로 활용 중

○ 국내 점토 자원의 고부가산업 원자재 개발 필요

- 국내 기능성 점토광물은 영세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 대부분이 저가의 재래 산업 원자재(토목, 주물, 철강, 제지, 농업 등)로 사용
  · 벤토나이트 원광 3-5만원/톤 → 재래 산업재 20-40만원/톤
- 국내 점토광물을 화장품, 의약품, 식품 산업에 활용시 기존 산업재 한계를 넘는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수입되는 고부가 산업재 500-10,000만원/톤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성장산업의 선도적 대응

- 국제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산업 분야에서 점토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 규제 강화가 진행 中
- 국내 점토의 품질향상과 고부가 산업화를 통해 국제 원자재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

- 국내 고부가 점토 원자재 양산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관련 중소기업 육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72,016**	**74,499**	**63,928**	**△10,571**	**△14.2**
▪ 소재부품기술기반 혁신	55,100	52,138 (계속)70개 × 517.9백만= 36,250백만원 (신규)53개 × 299.8백만= 15,888백만원 * 평가관리비 1,838백만원 포함	41,303 (계속) 14개 ×1,742백만 x10/12개월= 20,323백만원 (종료) 59개 ×290백만 x10/12개월= 14,260백만원 (신규) 31개 × 290백만 x9/12개월= 6,720백만원 * 평가관리비 1,460백만원 포함	△10,835	**△20.8**
▪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 산업 글로벌화 기반 구축	6,000	1,260 (계속) 1개×1,260백만=1,260백만원 * 평가관리비 31백만원 포함	2,000 (계속) 1개×2,400백만x10/12개월= 2,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0백만원 포함	740	**58.7**
▪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구축	2,500	5,600 (계속) 5개×1,120백만=1,120백만원 * 평가관리비 140백만원 포함	8,452 (계속) 5개×2,028.5백만x10/12개월= 8,452백만원 * 평가관리비 2,11백만원 포함	2,852	**50.9**
▪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1,000	3,500 (계속) 1개×3,500백만=3,500백만원 * 평가관리비 88백만원 포함	2,095 (계속) 1개×2,514백만x10/12개월= 2,095백만원 * 평가관리비 52백만원 포함	△1,405	**△40.1**
▪ 첨단산업 전략소재 부품시험인증 기반 구축	1,000	2,500 (계속) 1개×2,500백만=2,500백만원 * 평가관리비 63백만원 포함	1,333 (계속) 1개×1,600백만x10/12개월= 1,333백만원 * 평가관리비 33백만원 포함	△1,167	**△46.7**
▪ 북미거점 금형기술 종합 지원센터구축	-	300 (계속) 1개×300백만=300백만원 * 평가관리비 3백만원 포함	1,200 (계속) 1개×1,440백만x10/12개월= 1,200백만원 * 평가관리비 30백만원 포함	900	**300**
▪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	2,000	1,753 (계속) 1개×1,753백만=1,753백만원 * 평가관리비 44백만원 포함	775 (계속) 1개×930백만x10/12개월= 775백만원 * 평가관리비 19백만원 포함	△978	**△55.8**

▪ 첨단 융합세라믹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2,000	3,840 (계속) 1개×3,840백만=3,840백만원 * 평가관리비 96백만원 포함	2,299 (계속) 1개×2,759백만x10/12개월=2,299백만원 * 평가관리비 57백만원 포함	△1,541	**△40.1**
▪ 레포츠섬유발전 기반구축	1,000	1,500 (계속) 1개×1,500백만=1,500백만원 * 평가관리비 38백만원 포함	2,178 (계속) 1개×2614백만x10/12개월=678백만원 * 평가관리비 54백만원 포함	678	**45.2**
▪ 대량맞춤 주문형 의류 제조 기반구축	1,416	808 (종료) 1개×808백만=808백만원 * 평가관리비 20백만원 포함	-	△808	**-**
▪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	-	1,000 (신규) 1개×1,000백만=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5백만원 포함	1,134 (계속) 1개×1,361백만x10/12개월=1,134백만원 * 평가관리비 28백만원 포함	134	**13.4**
▪ 가능성점토광물사업 육성	-	300 (신규) 1개×300백만=300백만원 * 평가관리비 7백만원 포함	1,159 (계속) 1개×1,391백만x10/12개월=159백만원 * 평가관리비 29백만원 포함	859	**286**
□ **비목**(합계)	**72,016**	**74,499**	**63,928**	**△10,571**	**△14.2**
○ 출연(360-04)	72,016	68,599	61,428	△7,171	△10.5
○ 출연(360-05)	-	5,900	2,500	△3,400	△57.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계속과제는 유형별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사업은 심화 사전기획을 통해 우수과제 도출 및 지원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 및 신규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 차년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 투자적정성 등을 신규사업 기획평가에서 사전 검증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745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521) ▪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13) ▪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56) ▪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35) ▪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25) ▪ 북미거점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구축(3) ▪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18) ▪ 첨단 융합 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구축(38) ▪ 레포츠섬유발전기반구축(15) ▪ 대량맞춤 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8) ▪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10) ▪ 기능성점토광물사업육성(3)
'17	639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413) ▪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20) ▪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84) ▪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21) ▪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13) ▪ 북미거점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구축(12) ▪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8) ▪ 첨단 융합 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구축(23) ▪ 레포츠섬유발전기반구축(22) ▪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11) ▪ 기능성점토광물사업육성(12)
'18	689	▪ 계속사업 : 659 ▪ 신규사업 : 30
'19	689	▪ 계속사업 : 659 ▪ 신규사업 : 30
'20	681	▪ 계속사업 : 651 ▪ 신규사업 : 30

5. 고려사항

○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6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15.5) 2016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을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1개)'과 '산업별 기술개발기반구축(창의, 시스템, 소재 3개)'으로 세부사업 재편

* 산업부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자체 사업 성과평가와 연계

⇒ ◆ 산업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한 구조
◆ 사업별 산업분야가 명확한 사업구조로 사업성과와 예산연계 실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574	568	720	745	63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기재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보통)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미래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

○ (신뢰성향상)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소재부품의 신뢰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상황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재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 중

☞ 독일은 신소재 개발기간과 소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컴퓨터 시뮬레이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상 신소재 개발' 지원책을 시행('06.2, 연방교육연구부(BMBF))

* 총 2,000만 유로 투입, 산학협력 통해 새로운 시뮬레이션 방법을 신속하게 산업생산으로 실현 유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첨단 제조업 지원 및 미국경제 강화를 위한 혁신적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자 발표('11.6, MGI(Material Genome Initiative)

* 소재 연구그룹간 협력 확대, 시뮬레이션 이론, 도구 개발 및 확산 노력 및 소재정보 DB 구축 등을 통한 소재개발 비용 및 시간을 50%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

☞ 차세대 기간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소재분야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을 통한 소재개발 지원('12.5, 산업경쟁력간담회*)

* 산관학 정책 자문 기관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나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

○ (기술기반성장지원) 전통적 R&D 외의 새로운 기술획득 수단(Open Innovation)으로써 M&A 중요성*이 부각되며, 中·日 등 경쟁국은 글로벌 M&A를 적극 지원

* (美 Cisco社) 지난 20년간 벤처기업 111개를 인수, 신기술 획득 등 기업성장 촉진

* (日 Hitachi社) 최근 3년간 20여개 이상의 기업 인수, 기술획득 및 사업다각화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 (미국) 인간의 편의성, 안전성 등에 역점을 둔 기술개발 보편화 및 감성공학 분야 선도적 기술력 확보

  * 정부차원에서 인간공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산하에 The Committee on Human Factors를 설치

  * CMTEL : 소재샘플을 수집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소재와 가공기술의 관점에서 접근, 디자이너를 위한 소재와 가공방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EU) 국가간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감성개념을 도입·보편화

  * ESPRIT(컴퓨터 관련 감성공학 연구), PROMETHEUS(자동차 관련 감성공학 연구) 등 국가 간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감성공학/인간공학 연구를 추진

- (일본) 통산성 주도로 인간감각계측 응용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인간행동 적합형 생활환경 창출시스템 기술 등을 개발

  * '91년 대형국책과제로 '인간감각계측 및 응용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88개 기업, 25개 기업연구소,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 OECD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산된 대형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 증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 중

○ 일본의 경우도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중기청이 연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및 첨단기기공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첨단연구장비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부터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시설 및 장비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

-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첨단연구장비 및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기술관련 서비스, 성과육성지원 서비스, 실시훈련 서비스, 인재육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팩키지를 지원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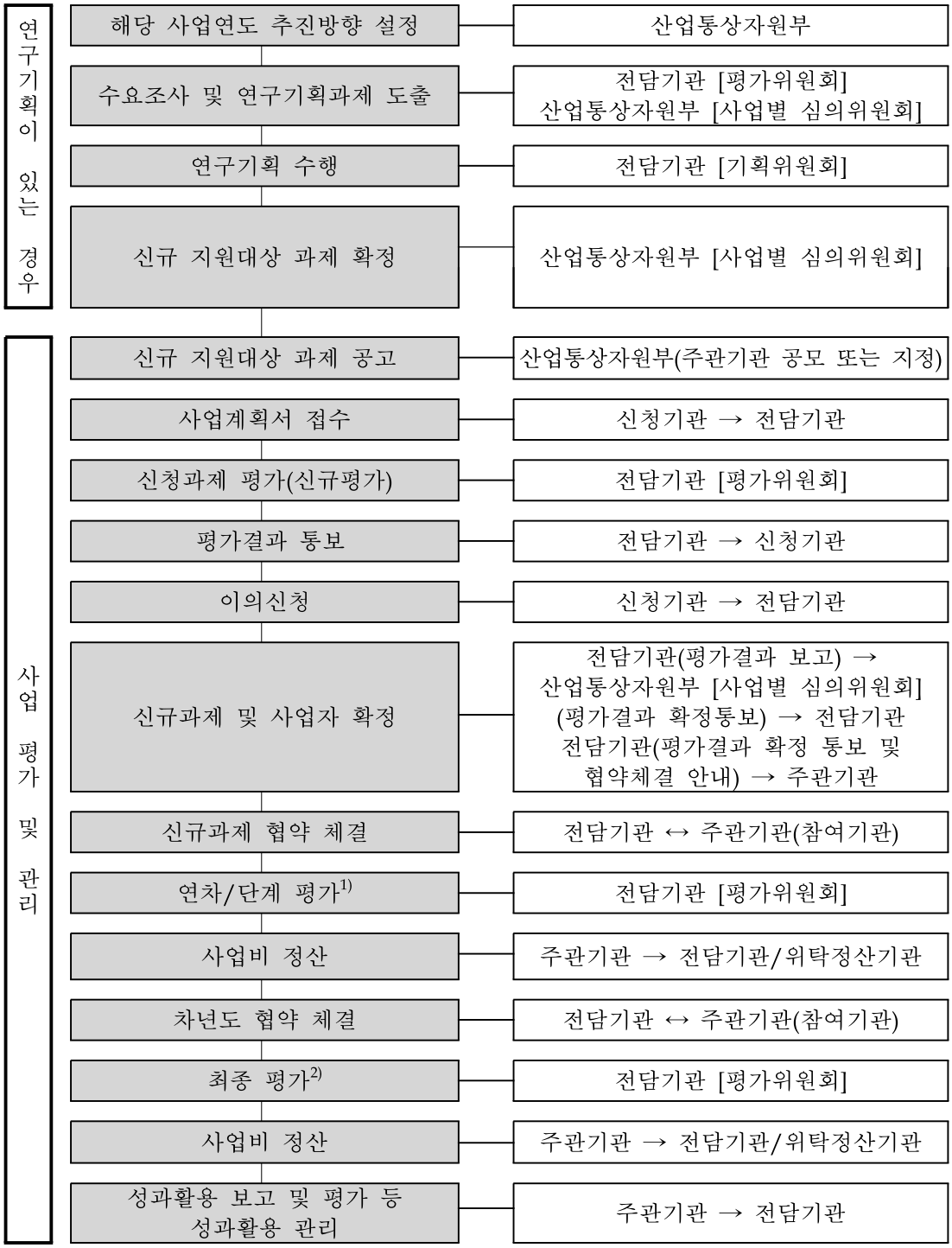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경과

- 現 정부 지역 대선공약「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2012.12)
- 국정과제 (창조경제 전략의「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2013.2)
  * 각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 산업부「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반영 (부품소재발전위원회, 2013.11)
- 예비 타당성 조사(2014.4～2015.9)
  * 조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조사결과: (B/C) 1.04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증감
R&D		사업화핵심기술개발(13개) : 800억원	사업화핵심기술개발(4개) : 209억원	△591
기반 구축	건축비	센터 설계 및 건축비 : 230억원	센터 설계 및 건축비 : 194억원	△36
	장비비	R&D 및 실증화 지원 장비(17종) : 220억원	R&D 및 실증화 지원 장비(16종) : 162.6억원	△57.4
	운영비	클러스터 운영 및 기업지원 : 60억원	클러스터 운영 및 기업지원 : 36.4억원	△23.6
총사업비		**1,310억원**	**602억원**	**△708**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07,928	98,559	93,263	△5,296	△5.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71 - 304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4510), 사무관(박두강, 4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 ~ '17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주체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2. 사업목적

○ 기계로봇, 자동차항공, 조선해양플랜트, 전자전기 등 시스템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 2,879백만원

- 마이크로의료로봇 전문인력과 구축된 장비 및 특수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내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업육성 및 시장창출

<산출내역>

· (계속) 1개 × 3,455백만 x 10/12개월 = 1,879백만원

* 평가관리비 70백만원 포함

②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 934백만원

-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장비 구축 등 중소 로봇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1,121백만 x 10/12개월 = 934백만원

* 평가관리비 23백만원 포함

③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 4,811백만원

- 고령자 헬스케어와 관련한 로봇제품과 기술의 실증테스트 및 인증, 인허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5,773백만 x 10/12개월= 4,811백만원

* 평가관리비 117백만원 포함

④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 : 9,000백만원

- 수도권 지역의 금형 시험생산(Try-out), 기술개발(R&D), 인력양성, 수출 및 통합정보망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를 조성하여 국내 금형산업 육성

<산출내역>

· (종료) 1개 × 9,000백만 x 12/12개월 = 9,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20백만원 포함

⑤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 2,239백만원

- 첨단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이 국내 기술로 양산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개발과 연계한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산출내역>

· (계속) 1개 × 2,687백만 x 10/12개월 = 2,239백만원

* 평가관리비 55백만원 포함

⑥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4,500백만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차량융합부품 4대분야 글로벌 품질 인증/평가 연구기반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5,400백만 x 10/12개월 = 4,500백만원

* 평가관리비 110백만원 포함

⑦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 6,000백만원

- 전기구동 운송수단 핵심부품 및 차량단위 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기술선도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산출내역>

· (계속) 1개 × 7,200백만 x 10/12개월 = 6,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146백만원 포함

⑧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기반구축 : 1,598백만원

- 자동차 사고예방과 피해경감이 가능하고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안전관련 8대 핵심부품 설정과 국제적인 인증 능력을 보유한 인증기반 인프라를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1,917백만 x 10/12개월 = 1,598백만원

* 평가관리비 39백만원 포함

⑨ 조선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 구축 : 3,874백만원

- 선박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강화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자재 성능고도화를 위한 기업 공동활용 시험인증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4,649백만 x 10/12개월 = 3,874백만원

* 평가관리비 94백만원 포함

⑩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 3,198백만원

- 해양플랜트 케이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 기반확보 및 시험평가 비용 절감

<산출내역>

· (계속) 1개 × 3,838백만 x 10/12개월 = 3,198백만원

* 평가관리비 78백만원 포함

⑪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 16,025백만원

- 해양플랜트 관련 EPCI(M) 전주기 핵심원천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주기 시장 진출에 의한 해양플랜트산업 수출 증대

<산출내역>

· (계속) 1개 × 19,230백만 x 10/12개월 = 16,025백만원

* 평가관리비 390백만원 포함

⑫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 6,914백만원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을 통한 신뢰성 인증 및 노후기자재 수명진단으로 장수명 인증 지원체계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8,297백만 x10/12개월 = 6,914백만원

* 평가관리비 169백만원 포함

⑬ 부산항 선용품 생태계 조성 : 798백만원

- 선용품 시장의 고품질 기술개발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종합정보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용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958백만 x 10/12개월 = 798백만원

* 평가관리비 19백만원 포함

⑭ 가스(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 2,739백만원

- LNG등 가스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중대형 선박의 가스연료추진시스템(가스연료탱크, 고/저압 가스연료공급장치)에 장착되는 각종 기자재 및 모듈의 성능/신뢰성 평가,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3,287백만 x 10/12개월 = 2,739백만원

* 평가관리비 67백만원 포함

⑮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 : **2,339백만원**

-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가치 영역인 운영·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O&M) 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산출내역>

·(계속) 1개 × 2,806백만 x 10/12개월 = 2,339백만원

* 평가관리비 57백만원 포함

⑯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 2,007백만원

- 레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기기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레이저 응용기기 산업을 지역/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산출내역>

·(계속) 1개 × 2,408백만 x 10/12개월 = 2,077백만원

* 평가관리비 49백만원 포함

⑰ 차세대 DC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구축 : 1,000백만원

- DC 전기전자 기기의 개발, 시험평가, 분석을 위한 공동활용 장비 및 기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DC 전기전자 산업 활성화

<산출내역>

·(계속) 1개 × 1,200백만 x 10/12개월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4백만원 포함

⑱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 2,135백만원

- 국내 OLED 조명산업 조기 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점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

<산출내역>

·(계속) 1개 × 2,562백만 x 10/12개월 = 2,135백만원

* 평가관리비 53백만원 포함

⑲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 2,606백만원

-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3,127백만 x 10/12개월= 2,606백만원

* 평가관리비 64백만원 포함

⑳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 3,415백만원

- 철도차량 핵심부품의 기술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평가장비 및 전문지원센터를 구축

<산출내역>

· (계속) 1개 × 4,098백만 x 10/12개월= 3,415백만원

* 평가관리비 83백만원 포함

㉑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 1,252백만원

-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다각화 및 비 의료기기 기업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구축 및 보급, 확산

<산출내역>

· (계속) 1개 × 1,502백만 x 10/12개월 = 1,252백만원

* 평가관리비 31백만원 포함

㉒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 13,000백만원

-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자동차산업 육성 및 견인

<산출내역>

· (계속) 1개 × 15,600백만 x 10/12개월 = 13,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317백만원 포함

□ 지원 필요성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는 신성장동력 바이오헬스분야의 핵심부분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당한 다른 대형 의료로봇과 달리 기 확보된 우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선점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가 가능함

○ 고령화·복지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로봇 수요 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개발 지원 특수시설의 집적화 필요

○ 센터 공간은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의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필수 장비 구축 필요

○ 구축된 특수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원천기술 및 시장선점 필요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 로봇산업 고도화를 위한 로봇부품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및 기반 조성

○ 로봇부품은 전용화, 시리즈화, 공용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요구받는 특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저전력, 소형, 고출력, 저가, 고신뢰성, 박형 등

○ 로봇부품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총124개 중 매출액 20억 미만이 95%)으로 부품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인 신뢰성 평가 장비를 구축하여 제품화 지원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간병/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헬스케어로봇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추진방향과도 부합

○ ‘15년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되는 헬스케어 로봇 기술 및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이 필요함

○ 헬스케어로봇은 사용목적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일반 의료기기 평가방법의 적용이 어렵고, 안전성 확보에 취약함.

○ 헬스케어로봇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능평가 및 임상시험, 인증 및 인허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 필요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

○ 금형산업은 제품의 성질과 성능을 좌우하고 완제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중대를 위한 지원 필요

- 금형산업은 우리나라 일반기계 전체 수출액의 6.2%*이상을 점유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연계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기반산업

  * ’15년 일반기계 전체 수출액 468억불 중 금형 29억불 차지(‘15. 산업부 MTI 기준)

  * 독일, 일본, 미국 등 금형 선진국과도 경쟁이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

○ 정부 차원의 금형 공동 인프라 조성을 통해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인 금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금형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개별 업체 수준에서는 초정밀·고사양 장비 구축, 고부가가치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이 불가능

- 특히, 시험생산 장비 등 기본 인프라 부재에 따른 기업 활동의 어려움 가중

- 수도권 지역은 금형산업의 최대 집적지*이지만, 그간 정부 지원이 全無하여 본격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

  * 전국 금형업체(11,120사)의 60.1%(6,678사), 금형 종사자 수(70,341명)의 54.7%(38,454명)가 수도권에 위치(’14 통계청)

○ 특히, 수도권 금형산업은 자동차·IT·전자·전기 등 융복합·다품종·초정밀 금형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출 대응을 위해서는 설계·제작·품질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규격 만족 및 첨단 기술수준을 요구받고 있음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 친환경 규제, 고연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부품과 제품의 경량화, 내구성, 가공성을 생존전략으로 추진

- 경량화 부품·제품에 탄소섬유복합재, 티타늄 등 첨단소재 적용이 급격히 증가

○ 항공 및 자동차 산업에서 첨단소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기술로는 가공이 어려워 새로운 가공기술에 대한 요구 증대

- 첨단소재의 활용이 적은 경우 특수장비로 시장수요 대응 가능하지만, 제품영역이 확대 되면서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첨단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핵심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첨단소재 부품 및 제품개발 단계부터 양산라인 구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지원 및 첨단소재 부품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원 운영이 요구되며, 국내 개발된 첨단장비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지원이 요구됨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자동차산업은 친환경화(고효율, 저공해), 지능화(고편의, 고안전), 글로벌화(FTA, 일본지진 등으로 수출환경 급속 변화) 추세로, 친환경, 지능화의 기반이 되는 차량융합부품의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여 자동차부품의 글로벌화를 지원

○ 자동차-ICT 협력 확대로 자동차산업의 공급자 범주가 확장되는 한편 부품 시장의 주도 경쟁이 IT업계까지 확산

○ 기후변화에 따른 범세계적 자동차 연비규제 도입 및 안전규제 강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국가의 자동차 산업 부양을 위한 정부개입 확대

○ SW/HW/감성/소재분야의 융복합제품개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전분야 기술확보가 어려움으로 종합적인 융복합 기술지원이 필요

- 철강, 전자통신, 차량부품, 기계 분야가 활성화된 대경권에 글로벌 차량 융합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 대도시화, 고령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신개념 전기구동 운송수단 수요 증가

* '25년 전세계 인구의 60%(45억명)가 도시로 집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동거리별로 최적화된 多種 교통수단의 복합적 활용이 예상됨

- 全세계 시장규모(대수)는 '25년까지 연평균 10.7% 성장이 예상

* 연평균증가율('13~'25) : 직립형 이동수단 51.2%, 전기휠체어 6.3%, 전기자전거 10.1%, 전기이륜차 10.9%, 전기구동 UTV 12.4%, Micro-모빌리티 38.5% 등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기구동 운송수단 산업은 평가기반이 매우 취약, 특히 실증환경 평가기반은 전무한 실정임

- (중소기업 지원 공백) 엔진기반 자동차(4~5인승 전기차, 상용차 포함) 중심의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구축→소수 대기업 대상 지원만 가능

* 전북자동차기술원 : 상용차 전용 평가기반,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 ITS 기반 승용차 평가 및 실증기반, 자동차안전연구원 : 승용차 평가 및 실증기반

- (특화된 인프라 부재) 전기구동 운송수단의 경우 다양한 주행환경 下 평가 목적의 도심형 주행환경 등 차별화된 기반*이 절실

* 등판로(복합) 또는 경사조절 시험로, 다양한 교차로, 연석 및 홈 답파로, 램프 시험로, 자갈길로, 블록로(인도), 이륜차로, 침수로, 저마찰로 등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 자동차의 안전, 성능, 편의 제공하기 위한 급속한 전장화와 장치간 통합제어기능 증가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 문제 대두

- 부품의 성능평가 및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적기 지원을 통해 부품의 안전성을 선진 수준으로 향상

○ 새로운 개념의 융합기술 적용 제품들에 대한 탑승자 안전성 부품의 평가 및 인증을 하기 위한 국내의 전문 시험 기관의 대응 역량에 한계

- 고가의 인증 시험 장비 및 지원시스템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초래

○ 차량 시스템의 지능화에 따른 IT·SW 융합기술과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전문 인원은 선진국 대비 열악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

- 한국 기술수준은 유럽(독일 등) 대비 83.8%(기술격차 1.4년)의 수준차이

<조선기자재성능 고도화 기반구축>

○ 국제 규제 및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조선해양기자재에 대한 다양한 특수 복합 성능을 요구하는 선박의 수요가 증가

* UN산하 국제해사기구는 극지운항선박 요건 강제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중방사소음 규제 강제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규정 발의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 진행

○ 조선 산업 불황에 따른 국내 해양플랜트 생산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조선기자재의 물량감소 및 고용불안 등의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제 대응 고부가가치 기자재 개발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이 필수적

* 국내 조선3사 매출의 70%가 해양플랜트, 전세계 점유율 35%,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율 20% 내외

○ 유럽 해운선사, 기자재업체, 인증기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신속한 국제 표준화 진행으로 국제규제 대응 기자재 시장 선도

○ 국내 중소기업 등은 국제규제 대응을 통한 기자재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기자재 성능고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여 시험인증장비 구축 등에 대한 투자여력 부족

* 국외시험기관(SGS, SAVIAC 등)에 지불 국내 중소기업 비용 : 년간 80억원 ('13.4. 수요조사)
* 기반구축 완료 후 국내 시험기관 이용 시 평균 시험기간 55% 단축 및 시험 비용 60% 이상 절감 효과로 중소기업의 원가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해양유전 평균 수심이 계속 깊어짐 → URF 시장 급속한 성장 전망

* 석유생산 평균 수심 : ('90) 400m → ('00) 1,000m → ('11) 2,300m 이상
* URF 세계시장 규모 : '10년, 479억$ →'30년, 1,500억$

○ 해양플랜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술은 매우 부족

- 현재 국내에서 해양 케이블과 기자재 특허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향후 해양플랜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subsea system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더불어 시장진입에 요구되는 시험인증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경쟁 국가들의 자국 산업보호육성정책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확보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정책지원이 필요함

-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중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비중은 6%에 불과

○ 해양플랜트 케이블 및 관련 기자재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소재·구조안전성 인증시험 평가기반 구축 필요

- 엄비리컬 케이블 인증시험 → 라이저, 강종 로프, 앵커 체인 등의 인증 시험과 매우 유사 → 해양기자재업체 활용 수요 매우 많음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

○ 생애주기 또는 가치사슬의 전영역 중에서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은 건조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설계 경험 및 기술역량 부족으로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실현은 물론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조선산업과는 상이한 해양플랜트산업의 구조를 고려하여, 가치사슬의 상류 영역(Upstream)인 해양석유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개발단계와 초기설계(기본 및 상세)단계로의 진입이 최우선으로 시도되어야 함

- 해양플랜트는 오일메이저와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해 초기 설계가 수행되어지나, 국내 업체는 설계기술 역량부족으로 주도적 참여가 불가하여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이 국내 조선사에 전가되는 실정임.

- 해양플랜트 초기설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고 독자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서 설계 자립화 달성 가능

- 초기설계에서 기자재 사양과 업체를 결정하게 되므로 국내 업체 개발 제품의 시장진입 기회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

○ 조선해양기자재의 노화에 의한 결함은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

- 최근 5년간 노후 기자재 결함으로 인한 국내·외 해양 사고는 4,136척으로 1,167명의 인명피해와 1조 715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자재 안전·신뢰성 규제강화에 부합하는 시험 및 기술은 초기단계며, 특히 수명분야의 평가는 전무한 실정

○ 조선산업 선진화 변화(친환경→안전)에 적극 대응하여 조선해양산업 회생을 위한 최적의 시기(Golden Time)

<부산항 선용품 생태계 지원>

○ 최근 항만의 발전 패러다임은 화물량 증대와 항만시설 확충이라는 양적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2011년 세계 선용품 시장의 추정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됨
* 세계 최대 선용품 공급항은 싱가포르이며, 부산항은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홍콩, 카오슝과 함께 세계 5대 선용품 공급항으로 알려져 있음

○ 선용품 산업은 선박에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뿐 아니라 선박의 개조·보수·정비 등을 수행하는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임

○ 부산항의 경우, 선용품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로 국내기업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나 경쟁항인 싱가폴항만의 선용품 구매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

* 국내 선용품 시장은 고품질 기술력, 브랜드 파워 및 정보시스템, 물류체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선순환적 산업 성장을 위한 종합적 지원 필요

○ 선용품 기획-생산-유통-소비에 이루는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선용품 시장 확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육성노력이 요구됨

<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 IMO의 배출가스 규제와 GHG 규제 본격화로 인해 가스연료추진선박 시장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LNG 연료추진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다수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가스연료추진선 관련 기자재 및 모듈에 대한 성능/신뢰성 평가 필요성, 제3자 검증 원칙을 통한 상품화 등을 고려할 때, 공공연구기관에서 핵심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

○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건조 부문 기술경쟁력은 세계 1위이나 건조 이후 단계인 O&M 서비스 부문 진출은 거의 전무한 수준임

○ 국내 유정 부재로 O&M 분야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어려우며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임

* 현재까지의 시행된 기반구축 사업은 기자재의 시험평가 설비 구축 중심임.

○ 해양플랜트 O&M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분야 전문인력 및 전문 기업 수요 증대

* 2020년 해양플랜트 O&M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500억 달러(전체 시장의 50%), 소요 운영인력은 약 96만명으로 추정됨(출처 : Douglas-Westwood, 2013)

○ 해양플랜트 고부가가치 영역인 O&M 산업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이 필요함

○ 해양플랜트 산업과 ICT 기술 융합의 창조경제 성공모델 실현 및 고부가가치 창조

* 해양플랜트 산업 + ICT(클라우드 기반 가상시스템) 융합 ⇨ 해양플랜트 신시장 창출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 세계 의료용 레이저 시장(Global Market for Medical Laser System)의 경우 2011년 47.7억 달러로 2017년까지 81억 달러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지역(Asia-Pacific)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곳으로 연평균 11.7% 성장률이 예상됨 (2017년 약 4.3억 달러 예상)

※ 전 세계 Medical Laser System 시장은 2009-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8.6% 성장

○ 소재가공용 레이저 시장은 매크로 가공분야(절단, 용접, 마킹 등)과 마이크로 가공분야(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PCB, 태양전지 등)로 구성되며 2011년 매크로 가공 분야 약 70억 달러, 마이크로 가공분야 시장규모는 30억 달러 수준임

○ 레이저 기반 기기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레이저 기기 산업은 경쟁력을 매우 취약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의료분야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의 경우 2012년 230억원 전량 수입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 가정 내 전력량 지속적 증가 추세로 전자기기의 DC전원사용 확대 및 DC화 배전체계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필요

- 세탁기, 에어콘 등 모터를 이용하는 기기 및 TV, PC 등의 디지털기기는 내부 DC 전원 이용

○ 선진 각국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DC전원에 대한 기술 및 설비기준 제정 등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 IEC, ITU 등 국제표준 위원회에서 DC 배전 및 DC 전기 전자 기기에 대한 규격 및 표준 제정 중
- (국내) 직류전원 사용관련 표준 및 기준 제정

* "LVDC(DC 1,500V이하) 전기적 안전성 표준" 제정('13.1),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기준" 개정 ('13.3)

○ 정부의 에너지수급 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높음

-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과 직접 연관됨
-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2010.01)'에 2020년 DC 배전 기술개발 완료 및 저압 DC 보급 명기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 OLED 조명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조명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선제적 지원 필요

○ OLED 광원은 유기발광소재, 부품 및 공정장비 등 국내 풍부한 전후방 연계산업과 우수한 기반기술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며, 단기간에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아이템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집중 육성으로 신산업인 OLED 조명산업을 단기간에 활성화하고 세계시장 선점 선도하는 전략 필요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 광 제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융·복합제품의 기술주기는 도입기에 불과하여 경쟁력만 확보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 국내 광 관련 기업의 52 %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광기반 융·복합산업 분야의 기술집약형 강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수요 맞춤형 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반구축사업이 필요함

-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 및 R&D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융합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경우 선진국과 기술격차 확대 및 중국의 추격이 우려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 국내 철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북철도와 TSR, TCR 등 아시아 횡단철도 연결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 철도차량부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이 부재함

* TSR : Trans Siberian Railway, TCR : Trans Chinese Railway

○ 각국의 도시화, 에너지 위기,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 상승으로, 세계 철도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경쟁 심화되고 있음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의 고속철도 사업 경쟁 심화 추세
* 중국은 세계 80개국에 철도차량 수출, 최근 건설사업도 확대 추세

○ 다분야의 기술이 복합된 종합기술 지향 등 신뢰성 기반의 융합기술화 추세에 따라 핵심기술을 기 보유한 북미·유럽 기업들은 차량과 신호제어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세계 4번째 고속철도 운행국가지만 KTX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30%에 불과하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년의 격차가 있음

* 철도교통분야 기술수준 : 선진국(독일) 대비 79.9% ('13년 기준)
* 철도차량분야 기술수준 : 선진국(독일) 대비 78.5% ('13년 기준)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플랫폼 표준화 필요

○ 기존 상용 OS와 IT 기반 부품의 제품 주기는 단기이고,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제품 주기가 길며 IT기반의 부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상용 OS의 단종과 부품 공급의 단종 등의 문제 봉착 가능성

○ 개발인력의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

- 기업들을 중심으로 H/W, S/W 공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자체적으로 플랫폼 구축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

○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분야 중 고용, 생산, 수출 1위 산업이면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이며,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산업

- 직·간접 고용 177만명으로 국내 총 고용의 7.3% 차지

○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의 안정화가 필요

-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국내 자동차산업 기반 약화

* (국내생산) ('09) 351만대 → ('12) 456만대, (해외생산) ('09) 190만대 → ('12) 363만대

○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동아시아 자동차시장 공략을 위한 서해안 자동차 벨트 구축 필요

- 중국 및 동아시아 자동차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서해안권 자동차 생산 허브도시 조성 필요

*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 성장률 3~6%씩 확대(신흥시장 규모 7,30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70%, '09년)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 경쟁력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자동차산업 투자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와 부합됨

○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과 자율주행 자동차로 진화 중임. 본 사업은 자동차 시장 및 기술동향에 부합된 4대 특화차종 및 전략 기술개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자동차산업 발전 동향과 부합됨

* 4대 특화 차종 : EV/FCEV, SUV, 특수목적자동차

** 4대 전략 기술개발 : (H)EV/FCEV 파워트레인 기술개발, 친환경 차량 경량화 및 부품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 차량 고효율화 전동부품 및 광응용 전장 기술개발, 융합형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자동차 기술개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07,928	98,559	93,263	△5,296	△5.4
■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구축	6,171 ,(계속) 1개 × 6,171백만 =6,171백만원	7,069 (계속) 1개 x 7,069백만 = 7,069백만원 * 평가관리비 176백만원 포함	2,879 (계속) 1개 x 3,455백만 x 10/12개월 = 1,879백만원 * 평가관리비 70백만원 포함	△4,190	△59.3
■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1,500 (계속) 1개 × 1,500백만 = 1,500백만원	2,140 (계속) 1개 x 2,140백만 = 2,140백만원 * 평가관리비 54백만원 포함	934 (계속) 1개 x 1,121백만 x 10/12개월 = 434백만원 * 평가관리비 23백만원 포함	△1,206	△56.4
■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구축	1,000 (신규) 1개 × 1,000백만 = 1,000백만원	2,900 (계속) 1개 x 2,900백만 = 2,900백만원 * 평가관리비 72백만원 포함	4,811 (계속) 1개 x 5,773백만 x 10/12개월 = 4,811백만원 * 평가관리비 117백만원 포함	1,911	65.9
■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	8,500 (계속) 1개 × 8,500백만 = 8,500백만원	8,500 (계속) 1개 x 8,500백만 = 8,5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12백만원 포함	9,000 (종료) 1개 x 9,000백만 x 12/12개월 = 9,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20백만원 포함	500	5.9
■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	1,000 (신규) 1개 x 1,000백만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5백만원 포함	2,239 (계속) 1개 x 2,687백만 x 10/12개월 = 2,239백만원 * 평가관리비 55백만원 포함	1,239	123.9
■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5,000 (계속) 1개 × 5,000백만 = 5,000만원	5,000 (계속) 1개 x 5,000백만 = 5,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125백만원 포함	4,500 (계속) 1개 x 5,400백만 x 10/12개월 = 4,500백만원 * 평가관리비 110백만원 포함	△500	△10.0
■ 전기구동 운송 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1,000 (신규) 1개 × 1,000백만 = 1,000백만원	3,800 (계속) 1개 x 3,800백만 = 3,800백만원 * 평가관리비 95백만원 포함	6,000 (계속) 1개 x 7,200백만 x 10/12개월 = 6,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146백만원 포함	2,200	57.9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	1,000 (신규) 1개 x 1,000백만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5백만원 포함	1,598 (계속) 1개 x 1,917백만 x 10/12개월=1,598백만원 * 평가관리비 39백만원 포함	598	59.8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조선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 구축	6,171 (계속) 1개 × 2,500백만 = 2,500백만원	5,576 (계속) 1개 x 5,576백만 = 5,576백만원 * 평가관리비 139백만원 포함	3,874 (계속) 1개 x 4,649백만 x 10/12개월 =3,874백만원 * 평가관리비 94백만원 포함	△1,702	△30.5
■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6,171 (계속) 1개 × 3,500백만 = 3,500백만원	4,335 (계속) 1개 x 4,335백만 = 4,335백만원 * 평가관리비 108백만원 포함	3,198 (계속) 1개 x 3,838백만 x 10/12개월=3,198백만원 * 평가관리비 78백만원 포함	△1,137	△26.2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6,171 (신규) 1개 × 2,000백만 = 2,000백만원	8,000 (계속) 1개 x 8,000백만 = 8,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00백만원 포함	16,025 (계속) 1개 x 19,230백만 x 10/12개월 = 16,025백만원 * 평가관리비 390백만원 포함	8,025	100.3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 지원센터 구축	1,000 (신규) 1개 × 1,000백만 = 1,000백만원	5,234 (계속) 1개 x 5,234백만 = 5,234백만원 * 평가관리비 130백만원 포함	6,914 (계속) 1개 x 8,297백만x 10/12개월 = 3,578백만원 * 평가관리비 169백만원 포함	1,016	17.2
■ 부산항 선용품 생태계 조성	200 (신규) 1개 × 200백만 = 200백만원	200 (계속) 1개 x 200백만 = 2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백만원 포함	798 (계속) 1개 x 958백만 x 10/12개월 = 798백만원 * 평가관리비 19백만원 포함	598	299.0
■ 가스(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	1,000 (신규) 1개 x 1,000백만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5백만원 포함	2,739 (계속) 1개 x 3,287백만 x 10/12개월 = 2,739백만원 * 평가관리비 67백만원 포함	1,739	173.9
■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	-	2,000 (신규) 1개 x 2,000백만 = 2,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0백만원 포함	2,339 (계속) 1개 x 2,806백만 x 10/12개월=2,339백만원 * 평가관리비 57백만원 포함	339	17.0
■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6,171 (계속) 1개 × 5,000백만 = 5,000백만원	5,439 (계속) 1개 x 5,439백만 = 5,439백만원 * 평가관리비 135백만원 포함	2,007 (계속) 1개 x 2,408백만 x 10/12개월=977백만원 * 평가관리비 49백만원 포함	△3,432	△63.1
■ 차세대 DC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6,171 (계속) 1개 × 3,000백만 = 3,000백만원	4,039 (계속) 1개 x 4,039백만 = 4,039백만원 * 평가관리비 100백만원 포함	1,000 (계속) 1개 x 1,200백만 x 10/12개월=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4백만원 포함	△3,039	△75.2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6,171 (계속) 1개 × 2,000백만 = 2,000백만원	3,510 (계속) 1개 x 3,510백만 = 3,510백만원 * 평가관리비 88백만원 포함	2,135 (계속) 1개 x 2,562백만 x 10/12개월=2,135백만원 * 평가관리비 53백만원 포함	△1,375	△39.2
■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	1,000 (신규) 1개 x 1,000백만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25백만원 포함	2,606 (계속) 1개 x 3,127백만 x 10/12개월=2,606백만원 * 평가관리비 64백만원 포함	1,606	160.6
■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	2,000 (신규) 1개 x 2,000백만 = 2,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0백만원 포함	3,415 (계속) 1개 x 4,098백만 x 10/12개월=3,415백만원 * 평가관리비 83백만원 포함	1,415	70.8
■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	3,000 (신규) 1개 x 3,000백만 = 3,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75백만원 포함	1,252 (계속) 1개 x 1,502백만 x 10/12개월=1,252백만원 * 평가관리비 31백만원 포함	△1,748	△58.3
■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	- (신규) '산업기술 공동기반구축'으로 지원	13,000 (계속) 1개 ×15,600백만 x10/12개월 = 13,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317백만원 포함	-	-
■ High Tech Mold 허브구축	5,775 (계속) 1개 × 5,775백만 = 5,775백만원	8,665 (계속) 1개 × 8,665백만 = 8,665백만원	(종료)	△8,665	△100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기반구축	3,796 (계속) 1개 × 3,796백만 = 3,796백만원	3,375 (계속) 1개 × 3,375백만 = 3,375백만원	(종료)	△3,375	△100
■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2,500 (계속) 1개 × 2,500백만 = 2,500백만원	4,000 (계속) 1개 × 4,000백만 = 4,000백만원	(종료)	△4,000	△100
■ LED 융합산업 허브구축	2,880 (계속) 1개 × 2,880백만 = 2,880백만원	5,113 (계속) 1개 × 5,113백만 = 5,113백만원	(종료)	△5,113	△100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10,521 (계속) 1개 × 10,521백만 = 10,521백만원	(종료)		–	–
■ 그린카 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기반구축	7,450 (계속) 1개 × 7,450백만 = 7,450백만원	(종료)		–	–
■ 심해해양 공학수조 기반구축	15,841 (계속) 1개 × 15,841백만 = 15,841백만원	(종료)		–	–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핵심기술개발 기반구축	1,190 (계속) 1개 × 1,190백만 = 1,190백만원	(종료)		–	–
■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5,177 (계속) 1개 × 5,177백만 = 5,177백만원	(종료)		–	–
■ LED 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	3,152 (계속) 1개 × 3,152백만 = 3,152백만원	(종료)		–	–
■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7,275 (계속) 1개 × 7,275백만 = 7,275백만원	(종료)		–	–
□ **비목**(합계)	**107,928**	**98,559**	**93,263**	**△5,296**	**△5.4**
○ 출연(360-04)	107,928	98,559	93,263	△5,296	△5.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계속과제는 유형별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사업은 심화 사전기획을 통해 우수과제 도출 및 지원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 및 신규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 차년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 투자적정성 등을 신규사업 기획평가에서 사전 검증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986	▪ High-Tech Mold 허브구축(87) ▪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71) ▪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21) ▪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29) ▪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85) ▪ 첨단소재 부품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10) ▪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50) ▪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38)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기반구축(10)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기반구축(34) ▪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40) ▪ 조선 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56) ▪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43)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80)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구축(59) ▪ 부산항선용품 생태계 지원(2) ▪ 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10) ▪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20) ▪ LED융합산업 허브구축(51) ▪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55) ▪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40) ▪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35) ▪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기반구축(10) ▪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20) ▪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30)
'17	933	▪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29) ▪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9) ▪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48) ▪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90)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 첨단소재 부품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22) ▪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45) ▪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60)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기반구축(16) ▪ 조선 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39) ▪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32)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160)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69) ▪ 부산항선용품 생태계 지원(8) ▪ 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27) ▪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23) ▪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20) ▪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10) ▪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21) ▪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기반구축(26) ▪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34) ▪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13)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30)
‘18	879	▪ 계속사업 : 829 ▪ 신규사업 : 50
‘19	879	▪ 계속사업 : 829 ▪ 신규사업 : 50
‘20	869	▪ 계속사업 : 829 ▪ 신규사업 : 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15.5) 2016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을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1개)'과 '산업별 기술개발기반구축(창의, 시스템, 소재 3개)'으로 세부사업 재편

* 산업부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자체 사업 성과평가와 연계

⇒ ◆ 산업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한 구조
◆ 사업별 산업분야가 명확한 사업구조로 사업성과와 예산연계 실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88	939	1,079	986	93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기재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보통)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미래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OECD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산된 대형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 증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 중

○ 일본의 경우도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중기청이 연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및 첨단기기공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첨단연구장비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부터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시설 및 장비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

-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첨단연구장비 및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기술관련 서비스, 성과육성지원 서비스, 실시훈련 서비스, 인재육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팩키지를 지원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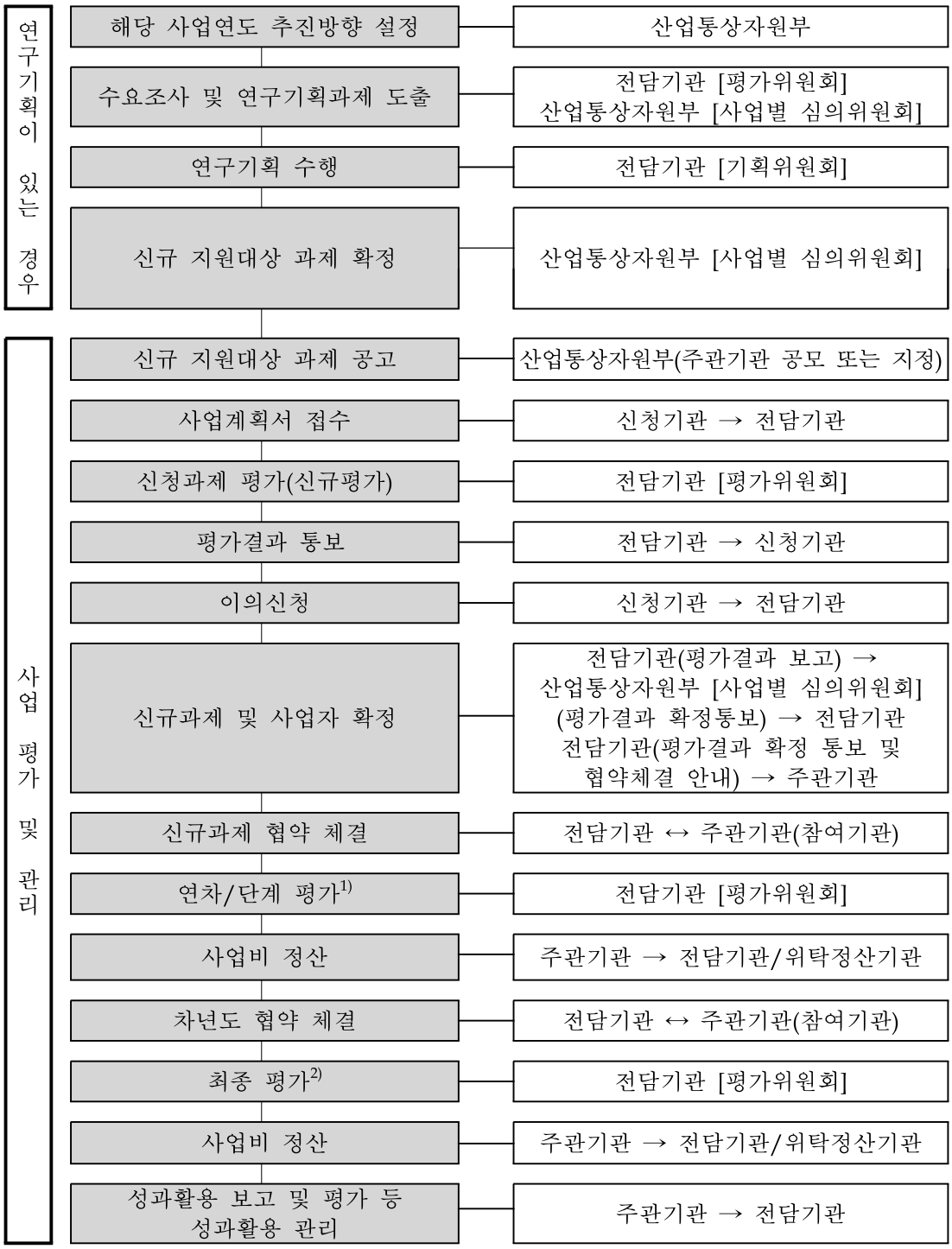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추진경과

- 심해수조 건설 협약서 체결(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2012.7)
- 예산 타당성 조사(~2013.4)
- 타당성 재조사(2013.4월~11월) : 2차에 걸친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재부 타당성 조사사업 통과
  * 조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결과: (B/C) 0.94
- 부지선정(해수부, 산업부, 부산시, 당 연구원의 다자간 협의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 생곡지구로 최종결정, 2013.6)
- 사업계획서(타당성 재조사 결과 반영) 제출 (2013.12.5)
- KIAT 선정평가 발표(2013.12.9)
- 선정평가 결과 보고서 송부(2013.12.10)
- 과제착수(2013.12.1~)

○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세부내역

<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 사업비 증감현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서(예산 타당성 조사 반영)	타당성 재조사(1차)	예타 대비 (증감)	타당성 재조사(2차)	예타 대비 (증감)
심해공학수조 (본체, 대형사각수조,PIT)	A. 설계비 (기본 및 실시)	① 건축/토목 설계비 : 1,488백만원 - 30,588 x 4.866%(요율)	① 건축/토목 설계비 : 1,371백만원 - 2,5827 x 4.827%(요율)	-117	① 건축/토목 설계비 : 1,371백만원 - 2,5827 x 4.827%(요율)	-117
		② 수조시험설비 설계비 : 1,000백만원 - 견적가 반영	② 수조시험설비 설계비 : 929백만원 -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적용 - 23,032 x 4.034%	-71	② 수조시험설비 설계비 : 929백만원 -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적용 - 23,032 x 4.034%	-71
		소계 : 2,488백만원	소계 : 2,300백만원	-188	소계 : 2,300백만원	-188
	B. 실험동 공사비	① 본체 건축공사비 : 11,258백만원 - 155m x 70m = 10,850m^2	① 본체 건축공사비 : 9,698백만원 -10,850m^2 x 893,750원/m^2	-1,560 -481	① 본체 건축공사비 : 9,698백만원 -10,850m^2 x 893,750원/m^2	-1,560 -481
		③ 심해 Pit 공사비 : 2,900백만원 - 락볼트+쇼크리트공법, 개략견적	③ 심해 Pit 공사비 : 2,763백만원 -미진동굴착 +락볼트 공법	-137	③ 심해 Pit 공사비 : 2,763백만원 -미진동굴착 +락볼트 공법	-137
		소계 : 30,588백만원	소계 : 28,410백만원	-2,178	소계 : 28,410백만원	-2,178
	C. 감리비	① 감리비 : 310백만원 - 30,588백만원 x 1.014%(요율)	① 감리비 : 1,656백만원 - 28,410백만원 x 5.829%(요율)	1,346	① 감리비 : 1,656백만원 - 28,410백만원 x 5.829%(요율)	1,346
		소계 : 310백만원	소계 : 1,656백만원	1,346	소계 : 1,656백만원	1,346
	D. 시 설 부대비	① 전력인입분담금 : 960백만원 ② 실험실기본시설비 : 300백만원 ③ 기타용역비 : 152백만원 ④ 부대경비 : 170백만원	① 시설부대비 : 284백만원 -28,410백만원 x 1.%(요율)	-1,298	① 시설부대비 : 284백만원 -28,410백만원 x 1.%(요율)	-1,298
		소계 : 1,582백만원	소계 : 284백만원	-1,298	소계 : 284백만원	-1,298
	총공사비	합계 : 34,968백만원	합계 : 32,650백만원	-2,318	합계 : 32,650백만원	-2,318
시 험 설비비	시 험 설비비	① 시험설비비 : 23,032백만원 -견적가	① 시험설비비 : 23,032백만원 -견적가	-	① 시험설비비 : 23,032백만원 -견적가	-
용 지 보상비	부 지 매입비	① 지자체 매입비 : 10,941백만원	① 지자체 매입비 : 10,941백만원 - m^2 당분양가 x 사업면적	-	① 지자체 매입비 : 10,900백만원 - m^2 당분양가 x 사업면적	-41
예비비	10%	①미반영	①10% 반영 : 5,568백만원 -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	5,568	①미반영	0
총 사 업 비		68,941백만원	72,191백만원	3,250	66,582백만원	-2,359

○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경과

- 예비 타당성 조사(~2016.7) 통과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결과 : (B/C) 1.10
- 전담기관(KIAT) 사업계획 검토위원회 개최(2016.10.20)
  * 사업비 민간부담금 비율,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검토 등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7,174	29,031	23,386	△5,645	△19.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71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4510), 사무관(박두강, 4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 ~ '17 * 디자인기반구축,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사업은 '18년 일몰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주체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2. 사업목적

○ 바이오,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창의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디자인기반구축(3,076백만원)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디자인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디자인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디자인 혁신기반을 확충

< 산출내역 >

- (계속) 4개 × 923백만 x10/12개월 = 3,076백만원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5,450백만원)

- 엔지니어링*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 엔지니어링 SW 개발·활용을 통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제조·건설·플랜트 사업의 연구·기획, 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설계,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산출내역 >

- (계속) 3개×2,180백만×10/12개월 = 5,450백만원

③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3,000백만원)

-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등에 대한 평가장비 구축 및 인증지원을 통한 신속한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1개 x 3,600백만 x 10/12개월 = 3,000백만원

④ ICT임상지원센터(1,000백만원)

- 임상시험의 효율 극대화 및 국내 임상시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합 임상시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출내역 >

- (계속) 1개 x 1,200백만 x 10/12개월 = 1,000백만원

⑤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1,169백만원)

- 바이오테라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 뷰티 헬스케어 장비 등을 구축하여 종합 지원체계 확립

< 산출내역 >

- (계속) 1개 x 1,403백만 x 10/12개월 = 1,169백만원

⑥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1,920백만원)

- 의료용 고부가 가치를 지닌 유용단백질 자원 및 핵심 요소기술을 집약한 기업기술지원 서비스 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 산출내역 >

- (계속) 1개 x 2,304백만 x 10/12개월 = 1,920백만원

⑦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2,500백만원)

- 고에너지, 고비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롤 스탬프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나노패턴 원통금형, 공정, 측정검사 및 응용제품 개발기술 확보

< 산출내역 >

- (계속) 1개 x 3,000백만 x 10/12개월 = 2,500백만원

⑧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2,000백만원)

- 메디컬 스마트 디바이스의 S/W 검증 및 OECD GLP 시험인증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1개 x 2,400백만 x 10/12개월=2,000백만원

⑨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3,271백만원)

-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백신임상시료제조 인프라 구축

< 산출내역 >

- (다/상) 1개 x 4,361백만 x 9/12개월 = 3,271백만원

□ 지원 필요성

<디자인기반구축>

○ 디자인 산업은 저비용·고효율의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조·서비스업 등 타 산업 및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여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으나, 인식·투자 미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바, 지속지원이 필요

<엔지니어링기술진흥>

○ 엔지니어링은 플랜트·주력산업 등에 기술과 지식을 접목,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으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전문인력 부족, 시공중심의 저수익 사업구조, 기업영세, 성장지원 인프라 미흡 등으로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속지원이 필요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 스마트헬스 의료기기는 국제규격에 따라 통신 프로토콜 검증,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상호운영 평가 등 적합성평가 시험결과 및 운용실적 제시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시험기준, 적합성평가 체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지원이 필요

<ICT임상지원센터>

○ 임상시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 등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임상시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임상시험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구축>

○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제품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천연자원 소재의 신성장 동력산업화 지원 및 뷰티헬스테인먼트 기술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화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지원이 필요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

○ 바이오산업에서 의료용 단백질의 수요와 신규 단백질 발굴 및 제품 개발의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의 단백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백질 발굴, 제품화 및 품질 고도화에 필요한 자원, 기술, 인력이 총 집약된 기업서비스 기반 구축이 필요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 상용화된 폭 300㎜에 머물러 있는 나노원통금형 롤기반 공정을 1200㎜급으로 대형화화여 관련 대면적 소자 및 기능성 필름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나노패턴 원통금형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및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지원이 필요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제조기업의 전문성, 기술인력 부족과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시험검사기관의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시험인증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지원이 필요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 백신은 보건·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안전성 차원에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대비를 위해 필수적임. 백신 산업계의 공통수요와 애로점을 반영해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7,174	29,031	23,386	△5,645	△19.4
▪ 디자인기반구축	5,329	3,692 (계속) 4개×923백만 =3,692백만원	3,076 (계속) 4개×923백만 x 10/12개월=3,076백만원	△616	△16.7
▪ 엔지니어링기술진흥	4,170	7,180 (계속) 1개 x 2,500백만 = 2,500백만원 (신규) 2개×2,340백만 =4,680백만원	5,450 (계속) 3개 x 2,180백만 x 10/12개월=5,450백만원	△1,730	△24.1
▪ 스마트헬스케어종합지원센터 구축	1,000	3,000 (계속) 1개 x 3,000백만 = 3,000백만원	3,000 (계속) 1개 x 3,600백만 x 10/12개월=3,000백만원	0	0
▪ ICT임상지원센터	2,000	4,000 (계속) 1개 x 2,000백만 =2,000백만원 (신규) 1개 x 2,000백만 =2,000백만원	1,000 (계속) 1개 x 1,200백만 x 10/12개월=1,000백만원	△3,000	△75.0
▪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	500	1,000 (계속) 1개 x 1,000백만 =1,000백만원	1,169 (계속) 1개 x 1,403백만 x 10/12개월=1,169백만원	169	16.9
▪ 의료용유용단백질핵심기술지원센터	-	2,000 (신규) 1개 x 2,000백만 =2,000백만원	1,920 (계속) 1개 x 2,304백만 x 10/12개월=1,920백만원	△80	△4.0
▪ 나노금형기반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	4,000 (신규) 1개 x 4,000백만 =4,000백만원	2,500 (계속) 1개 x 3,000백만 x 10/12개월=2,500백만원	△1,500	△37.5
▪ 디지털헬스케어소프트웨어시험평가센터구축	-	2,000 (신규) 1개 x 2,000백만 =2,000백만원	2,000 (계속) 1개 x 2,400백만 x 10/12개월=2,000백만원	0	0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	-	**3,271** (다/상) 1개 x 4,361백만 x 9/12개월=3,271백만원	3,271	순증
▪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구축	**1,975**	**2,159** (계속) 1개 x 2,159백만 =2,159백만원	-	△2,159	순감
▪ 암진단핵심기술상용화기술	**2,200**	-	-	-	-
□ **비목**(합계)	**17,174**	**29,031**	**23,386**	**△5,645**	**△19.4**
○ 출연(360-04)	17,174	22,821	18,685	△4,136	△18.1
○ 출연(360-05)		6,210	4,701	△1,509	△24.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계속과제는 유형별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 사업은 심화 사전기획을 통해 우수과제 도출 및 지원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 및 신규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 차년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 투자적정성 등을 신규 사업 기획평가에서 사전 검증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90.31	• 디자인기반구축(36.92) • 엔지니어링기술진흥(71.80) •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30)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21.59) • ICT임상지원센터(40) •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구축(10) •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20) •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40) •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구축(20)
'17	233.86	• 디자인기반구축(30.76) • 엔지니어링기술진흥(54.5) •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30) • ICT임상지원센터(10) •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구축(11.69) •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19.2) •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25) •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구축(20)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32.71)
'18	372.61	▪ 계속사업 : 342.61 ▪ 신규사업 : 30
'19	372.61	▪ 계속사업 : 342.61 ▪ 신규사업 : 30
'20	370.53	▪ 계속사업 : 340.53 ▪ 신규사업 : 3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디자인기반구축)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제1항4호(바이오의료기기)
- 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 추진경위

- ('15.5) 2016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을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1개)'과 '산업별 기술개발기반구축(창의, 시스템, 소재 3개)'으로 세부사업 재편

  * 산업부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자체 사업 성과평가와 연계

  ⇒ ◆ 산업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한 구조
  ◆ 사업별 산업분야가 명확한 사업구조로 사업성과와 예산연계 실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92	111.99	171.74	290.31	233.8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기재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보통)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미래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OECD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산된 대형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 증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 중

○ 일본의 경우도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중기청이 연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및 첨단기기공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첨단연구장비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부터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시설 및 장비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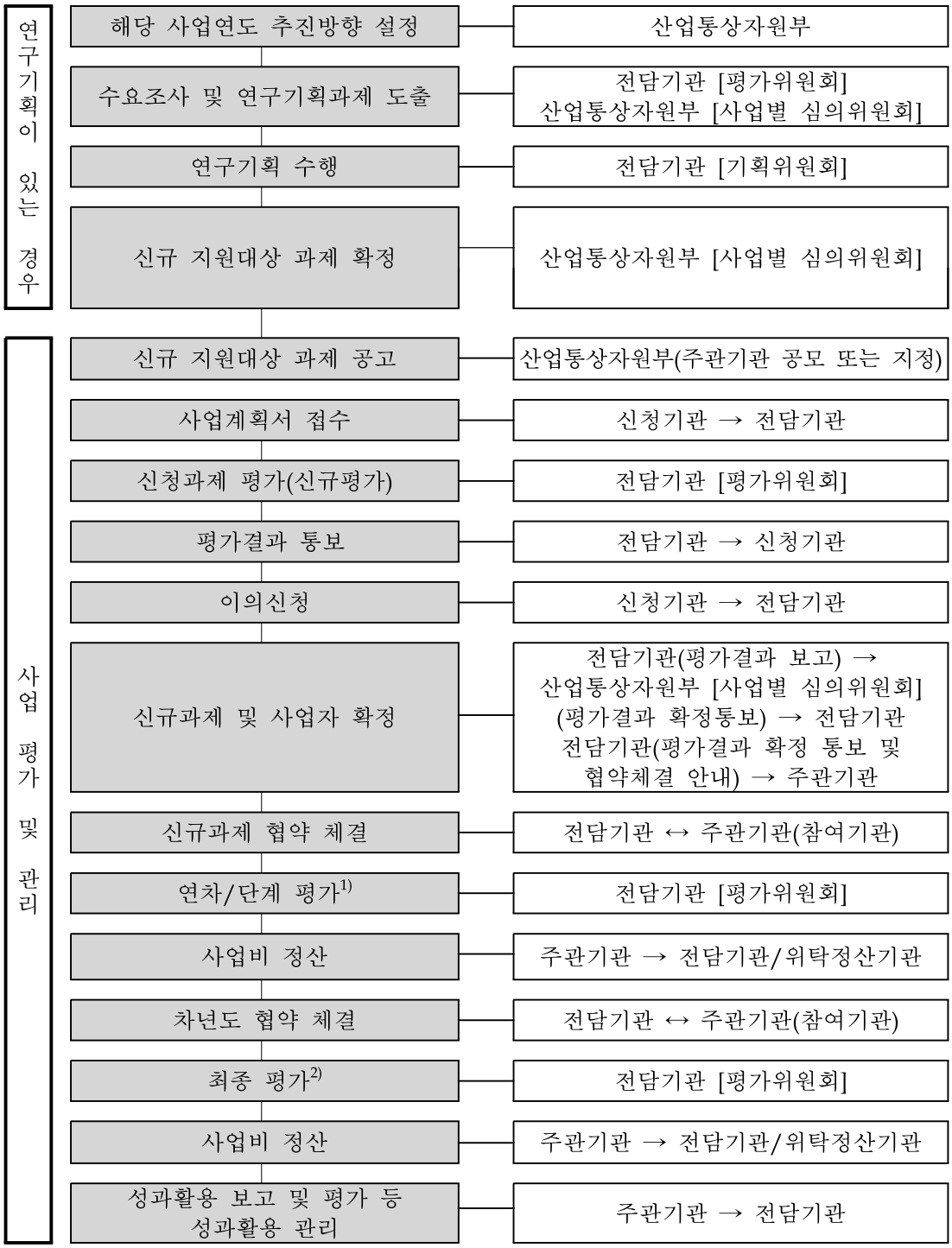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 완료시기	○ '15.11(나노금형기반맞춤형융합제품상용화지원센터), ○ '15.12(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17년 신규)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조사완료
○ 평가결과	○ 나노금형기반맞춤형융합제품상용화지원센터 - B/C ratio : 0.99 / AHP : 0.732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 B/C ratio : 0.98 / AHP : 0.703
○ 평가결과 반영현황	○ 나노금형기반맞춤형융합제품상용화지원센터 - 예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사업내용 및 규모 협의를 거쳐 지정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절차 진행 중('16.12월 내 협약 완료 예정)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신규) - 예타보고서를 바탕으로 '17년 신규예산 반영 완료(3,271백만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1,011	31,028	24,997	△6,031	△19.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200 - 3274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장현, 044-203-4510), 사무관(박두강, 4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15년까지 기투자액 1,206.59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15) 13,946백만원 → ('16 예산) 12,420백만원

- (사업내용)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 中企파견을 통해 공공硏의 기술 노하우 전수 및 공공硏-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
- (지원인원) '17년 공공연 연구인력 190명 파견 지원(정규직35명, 기업지원연구직 155명)

< 산출내역 > 파견지원 10,879백만원

- 파견수당 및 관리비 (190명×57백만원)

※ 217명 × 57백만원(2016년) → 190명 × 57백만원(2017년)

②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 ('16) 12,481백만원 → ('17 예산) 8,390백만원

- (사업내용) 신진 석박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 (지원인원) '17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420명) 지원

< 산출내역 > 채용지원 8,390백만원

- 계속지원(2차년 240명X21백만원, 3차년 69명×14.5백만원) +신규지원(111명×21백만원)

※ 계속지원(신진석박사 170명×14.5백만원+이공계대졸자 270명×12백만원) +신규지원(신진석박사 320명×21백만원) (2016년)

→ 계속지원(신진 석박사 2차년 240명×21백만+3차년 69명x14.5백만원)+신규지원(111명×21백만원) (2017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16) 5,977백만원 → ('17예산) 5,528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연·대학·대기업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지원인원) '17년 고경력 연구인력 166여명 채용지원

* 경력연구인력(9명) 및 퇴직과학기술자(32명) 등 총 166여명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

< 산출내역 > 채용지원 5,528백만원

- 계속지원(고경력114명×37백만원+퇴직과학기술자32명×17백만원+경력9명×37백만원)+신규지원(경력11명×37백만원)

※ 계속지원(경력30명×37백만원+퇴직과학기술인(50명×17백만원)+신규지원(고경력연구인력103명×37백만원)+고경력센터 운영비(150백만원) (2016)

→ 계속지원(고경력114명×37백만원+퇴직과학기술자32명×17백만원+경력9명×37백만원)+신규지원(고경력11명×37백만원) (2017년)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자금부족 및 고급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 : 자금부족 28.6%, 인력확보 16.8%,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어려움 16.2% ('15년도 중소기업기업통계조사)

○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 R&D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비중: ('11년) 48.9% → ('14년) 56.0% (중소기업연구원, '16년)

*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평균 연구원 수: ('00년) 8.4명 → ('15년) 5.2명으로 지속적 감소 (중소기업연구원, '16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1,011	31,028	24,997	△6,031	△19.4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3,946 (245명×56.9백만)	12,420 (217명×57.6백만)	10,879 (190명×57.6백만)	△1,541	△12.4
▪ 연구인력 채용지원	6,565 ○ 신진석박사 석사(315명×13.5백만) 박사(63명×16.5백만) ○ 고경력 석사(16명×33백만) 박사(14명×42백만)	18,458 ○ 신진석박사 계속지원(170명×14.5백만+이공계대졸자(270명×12백만) 신규지원(320명×21백만) ○ 고경력 계속지원(경력30명×37백만+퇴직과학기술자(50명×17백만) 신규지원(103명×37백만) 고경력센터운영비(150백만원	13,918 ○ 신진석박사 계속지원(2차년240명×21백만+3차년169명×14.5백만) 신규지원(111명×21백만) ○ 고경력 계속지원(고경력114명×37백만+퇴직과학기술자32명×17백만) 신규지원(11명×37백만)	△4,540	△24.6
▪ 연구인력 R&D 역량강화	500 (20명×25.0백만)	-	-	-	-
□ 비목(합계)	21,011	31,028	24,997		
○ 출연금(350)	21,011	31,028	24,99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출연연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 및 출연연-기업간 협력채널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촉진을 통한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310.28	▪ 파견지원사업(124.20) : 연구기관 연구인력(217명) ▪ 채용지원사업(184.58) : 석박사(760명), 고경력(165명)
'17	301.78	▪ 파견지원사업(110.00) : 연구기관 연구인력(217명) ▪ 채용지원사업(191.78) : 석박사(670명), 고경력(140명)
'18	301.78	▪ 파견지원사업(85.00) : 연구기관 연구인력(147명) ▪ 채용지원사업(216.78) : 석·박사(765명), 고경력(150명)
'19	301.78	▪ 파견지원사업(45.00) : 연구기관 연구인력(78명) ▪ 채용지원사업(256.78) : 석·박사(770명), 경력(170명)
'20	298.30	▪ 파견지원사업(45.00) : 연구기관 연구인력(78명) ▪ 채용지원사업(253.30) : 석·박사(764명), 경력(170명)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재원 확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09년 경제수석 보고 후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09년, ’10년)를 통해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시행 (’10년 시작)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03년 노무현 정부 대선공약으로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규 기획 및 운영 (’04년 시작)
  * 공약명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 공약명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139.46	233.46	210.11	310.28	249.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구 분	평가점수	등급	보완사항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	보통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프로세스	수행주체 (운영지원 주체)	내용
↓		
전담-주관 협약체결	KIAT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간 협약 체결
↓		
사업 공고	산업부(KIAT)	사업 공고 추진
↓		
신청 접수	중소·중견기업	공고기간 내 기업의 신청
↓		
지원기업 선정	주관기관 (국과연, 산기협)	지원과제에 대한 선정 평가 추진
↓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주관기관	세부 과제별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		
성과평가	KIAT	최종 성과평가 실시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산업부	사업 결과 산업부 보고 및 활용 현황 점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타당성 인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69,727	75,176	82,557	7,381	9.8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프로그램코드 - 단위사업코드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산업기술개발과장(김홍주, 044-203-4520), 사무관(장민재, 452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5년까지 기투자액 6,087억원)
사업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사업기간 5년 이내
지원조건	지원형태(출연, 사업비의 50%(중견기업), 65%(중소기업) 이내), 지원조건(민간 Matching)
사업시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16) 75,176백만원 → ('17) 82,557백만원**

- 세계일류의 기술력 및 상품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Advanced Technology Center)로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 ('17년) 신규 과제 28,683백만원, 계속 과제 51,23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업부는 국정과제 「1-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중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사업

  * 산업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 ('12) 29.4% → ('17) 50% 수준

-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03년부터 100% 자유공모형으로 운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9,727	75,176	82,557	7,381	9.8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9,727	75,176	82,557 - 신규 28,683백만원 - 계속 51,237백만원	7,381	9.8
□ 비목(합계)	69,727	75,176	82,557	7,381	9.8
○ 출연(350-01)	69,727	75,176	82,557	7,381	9.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전략적 육성 지원

○ 기존 제조분야에 국한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엄선하여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75,176백만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75,176백만원
'17	75,176백만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75,176백만원
'18	75,176백만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75,176백만원
'19	75,176백만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75,176백만원
'20	74,309백만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74,30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
7. 디자인·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13. (중략)

-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

- **(창조경제실현계획)**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와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과 연계

'창조경제실현방안' 내용

[전략 2]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과제 2-1)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과제 2-2)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전략 3]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3-1) 과학기술과 ICT융합으로 기존산업 신성장 활력 창출
(3-4)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 **('16년도 R&D 투자방향)** 경제혁신 선도를 위한 주력산업 체질 개선 및 미래성장동력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역동성 견인과 방향이 일치

○ 추진경위

- ‘03년 제조기술연구센터(NMRC)로 사업 시작
- ‘04년~’11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 ’12년~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14년 글로벌 융합 ATC 트랙 신설
- ‘16년 산업부 R&D사업 체계개편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 신산업)으로부터 우수기술역량강화로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588	664	697	752	8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8,760 ( )	( )	( )	( )	58,760 ( )	( )	( )
’14년	66,383 ( )	( )	( )	( )	66,383 ( )	( )	( )
’15년	69,727 ( )	( )	( )	( )	69,727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산업분야별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기술 R&D 투자를 집중

* 미국(STAR, ETV, SSP, NNI, TIP), EU(ETP 2020 Vision, 7차 Framework(‘07～’13), 산디자인기술프로그램), 일본(신산업창조전략, Innovation25전략), 중국(제12차 5개년계획(‘11～’15), 국가중점연구개발 973계획), 인도(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사업추진절차

○ 순수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참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ATC 개발 제품(28개, '15년 12월 기준)

순번	기업명	품목명	ATC사업 지원 과제명
1	(주)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커	레이저 응용 웨이퍼 절단 및 천공 공정 기술 및 시스템 개발
2	대양전기공업(주)	선박용 형광등 기구	박막형 고정밀 소자 및 센서 개발
3	주성엔지니어링(주)	쎄미배치식 원자층 증착기	LCD 6세대용 PECVD장치개발
4	엘엠에스	프리즘시트	디스플레이용 광기능성 필름개발
5	(주)이노와이어리스	LTE용 계측기	차세대 휴대 이동멀티미디어 최적화 장비 및 계측기 개발
6	썬텍(주)	자동차 사이드 미러용 히터	ECM(Eletrochromic Mirror) 및 기능성 Mirror Module화 기술 개발
7	(주)동화엔텍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항공가스터빈용 열교환기 제작기술개발
8	한미반도체(주)	쏘잉앤플레이스먼트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 제조용 Sawing & Placement System 개발
9	일진제강(주)수원	운반용 건설기계 다단 실린더용 강관	難 성형부품의 소성가공기술 개발
10	(주)아모텍	칩 바리스터	초일류 ESD/EMI 방지용 복합소자 개발
11	(주)미래컴퍼니	FPD 절단면 연마장치	LCD 휘점 리페어 시스템 개발
12	피에스케이(주)	감광액 제거기	40나노급 이하 및 450mm 반도체 공정용 차세대 애셔 개발
13	(주)고영테크놀러지	3차원 납도포 검사기	고속 3차원 표면실장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
14	(주)종근당바이오	데메클로사이클린 염산염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면역억제제 라파마이신의 개발.
15	(주)인트로메딕	비디오 연성 식도경	진보된 인체통신기술 기반의 고 에너지 효율 비디오 캡슐 내시경 시스템 개발
16	주식회사 기가레인	엘이디피에스에스 식각장비	항공/우주/국방용 50GHz 초광대역 고성능/고신뢰 Microwave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 개발

순번	기업명	품목명	ATC사업 지원 과제명
17	일진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이차전지 음극집전체용 일렉포일	연속 전해전착법을 이용한 고기능성 전해동박 개발
18	참엔지니어링(주)	Laser를 이용한 LCD검사 장비	차세대 대면적 Laser Repair 장비 개발
19	(주)대창솔루션	선박중대형 디젤엔진용 메인베어링서포트	해양플랜트용 대형 주강부품 국산화 개발
20	(주)상아프론테크	엘씨디 카세트	컬러 레이저 프린터용 전사벨트 개발
21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이동체용 위성방송수신 안테나시스템	이동형 위성 통신 안테나 시스템 개발
22	기산전자(주)	지폐 분류 정사기	융합된 광·자기·초음파 특성 지폐 모형에 기반한 지폐 및 위·변조 고속 판별모듈 개발
23	(주)마크애니	인터넷증명서 발급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의 OTT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시간 포렌식마크 융합형 Trackable DRM 시스템 개발
24	디티알(주)	기어커팅호브	기어가공용 산업공구 ATC 구축을 통한 DIN AAA급 초정밀 호브 및 브로치 제조기술 개발
25	(주)에치케이씨	전동 액츄에이터	선박 및 산업플랜트 분야의 대용량 유체 제어위한 초대형 23만 Nm급 Actuator 국산화 기술 개발
26	네오피델리티(주)	풀디지털 오디오앰프 IC	자동차용 완전 디지털 오디오 앰프 기술 개발
27	바디텍메드(주)	감염증진단용 C-반응 단백질 형광면역진단기기	OTC(일반의약품)용 고재현성 헬스케어 면역진단기의 개발
28	(주)탑엔지니어링	LCD액정 주입장치	살균정화용 심자외선 발광소자 에피성장 장비기술 개발

산업기술국제협력(R&D)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국제협력(R&D)	62,630	61,925	55,732	6,193	△1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4800 - 4804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개발과장(김홍주, 044-203-4520), 사무관(장민재, 044-203-452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비	51,200	51,198	57,134	58,852	62,630

지원조건	출연(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 등의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지원,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 기술 도입 촉진 및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세계시장진출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공동기술개발** :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동R&D 지원을 위한 51,057백만원 예산 편성

-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내 기관의 개방형 혁신 촉진이 필요하며, 고위급 순방 성과의 성공적인 이행과 정부간 협정·합의에 따라 양국이 상호 합의한 신규 재원 조달 필요

- **(양자 펀딩형)** 해외주요국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자펀딩형 R&D 추진을 위한 21,412백만원 예산 편성

- **(다자 펀딩형)** EU등 43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 채널로 회원국 자격 유지 및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참여 규모 달성을 위한 13,112백만원 예산 편성

- **(양자 기타형)** 국내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국내기관과 해외 기관간 기술격차가 큰 과제를 지원하는 양자기타형 유형의 계속과제 지원을 위한 14,411백만원 예산 편성

② **국제협력기반구축**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연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해외 파트너 발굴 지원 등 2,175백만원 예산 편성

- **(해외기술협력거점)** 해외기술협력거점 운영을 통해 해외 R&D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기술동향 및 R&D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기관과 국내 기관간 협력기회 마련을 위한 1,550백만원 예산 편성

- **(기술협력플랫폼)** 국내 기관의 해외 기술 정보, 파트너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 운영 625백만원

③ **전략국가기술협력** : 베트남 등 신흥국과 기술교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공동기술개발)** 자국의 부족한 기술 보완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다국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필요

- 주요국과 정부간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확대, 상용화 중심의 EU R&D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저변 확대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중 우리나라 국제협력(0.2)이 OECD평균(0.42)에 못미치며, 기업간 혁신 협력 중 국제협력 비중도 3.1%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 **(국제협력기반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수요 발굴, 파트너 탐색, 계약 및 IP 협상 등 추진 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기반 확충 필요

○ **(전략국가기술협력)**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 국가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기술이전-인력양성-정책컨설팅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기술국제협력	62,629	61,925	55,732	6,193	△10
▪ 국제공동기술개발	53,990	56,195	51,057 · (계속) 17,535백만원 · (종료) 20,535백만원 · (신규) 10,867백만원	5,138	△9.1
▪ 국제협력기반구축	5,199	2,490	2,175 · (해외기술협력거점) 1,550백만원 · (기술협력플랫폼) 625백만원	315	△12.7
▪ 전략국가기술협력	3,440	3,240	2,500 · (계속) 2,200백만원(2개) · (신규) 300백만원(1개)	740	△22.8
□ 비목(합계)	62,630	61,925	55,732	6,193	△10
○출연금(320-01)	62,545	61,851	55,664	6,187	△10
○국외업무여비(220-02)	84	74	68	6	△8.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주요국 정부간 합의에 근거하여 양국 혹은 다국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펀딩형 R&D를 확대

- 정부간 공동펀딩형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① 예산의 효율적 활용, ② 해외 협력 기관의 책임성 확보, ③ 상호 Win-Win형 협력이 가능

○ 국내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수요 발굴 등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기반구축형 네트워크 지원 확대

-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교류 활동 등을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619.25	· 국제공동기술개발 : 561.95 · 국제협력기반구축 : 24.90 · 전략국가기술협력 : 32.40
'17	557.32	· 국제공동기술개발 : 510.57 · 국제협력기반구축 : 21.75 · 전략국가기술협력 : 25.00
'18	621.25	· 국제공동기술개발 : 571.35 · 국제협력기반구축 : 24.90 · 전략국가기술협력 : 25.00
'19	621.25	· 국제공동기술개발 : 571.35 · 국제협력기반구축 : 24.90 · 전략국가기술협력 : 25.00
'20	614.08	· 국제공동기술개발 : 564.18 · 국제협력기반구축 : 24.90 · 전략국가기술협력 : 25.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 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장(국제산업기술협력)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활성화), 제30조(해외우수기술인력의활용촉진), 제31조(해외우수연구개발센터유치 촉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

○ 추진 경위

- '90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작
- '94년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근거로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시작
- '00년 한·이스라엘 국가간 공동기술개발협약 체결

- ‘04년「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근거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해 외국 R&D센터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시작

- ‘06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및 해외R&D센터유치기반구축사업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 ‘08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5월),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 지침(12월) 제정 및 한미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 신규 지원

- ‘09년 정부조직개편(‘08. 2)에 따라 舊.정보통신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승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협정서 서명(’09.6)

- ‘11년 한-베트남 원전건설 및 포괄적 산업・에너지・자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11.5)

- ‘12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 협정서 1차 갱신(’12.6)

- ‘13년 한-중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협력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3.6). 중소기업 혁신형 R&D프로그램 유로스타2 회원국 가입 협정서 서명(’13.11)

- ‘14년 한-스위스 기술혁신파트너쉽 체결(’14.1). 한-프랑스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DOI) 체결(’14.1). 한-독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MOU) 및 한-독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DOI) 체결(’14.3). 한-이탈리아 기술혁신파트너쉽 양해각서(MOU) 체결(‘14.10)

- ‘15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 협정서 2차 갱신(‘15.5).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15.10). 한-미 제조기술혁신을 위한 협력 및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 체결(’15.10). 한-체코 기술혁신파트너쉽(MOU) 및 한-체코 산업기술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MOU) 체결(‘15.12)

- ‘16년 한-네덜란드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16.1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기술국제협력	571.34	588.52	626.3	619.25	557.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세수 감소로 인한 강제불용에 따라 여비 (20백만원) 절감

○ ‘15년, 환율변동에 따른 여비 소액 (1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71 (570)	- ( )	- ( )	571 (570)	571 (570)	- ( )	0.2 (0.2)
’14년	589 (589)	- ( )	- ( )	589 (589)	589 (589)	- ( )	- ( )
’15년	626 (626)	- ( )	- ( )	626 (626)	626 (626)	- ( )	0.01 (0.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구분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4	예결위	· 「해외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이 중소기업청 신규 사업인 「해외고급기술인력개발인력활용사업」과 중복되어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운용을 권고	·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하여 ‘14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일본, 미국, EU 등지의 해외전문가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 ‘15년 국무총리실 중기지원 유사중복과제 조정 결과, 중기청 추진사업(중소기업컨설팅 지원 內 해외전문가컨설팅)도 동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지속 추진 결정
2014	산업위	·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과 「해외고급기술인력개발인력활용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추진하거나 사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2014	결산	· 현행, 국제공동연구에 해외참여기관의 연구성과(국외 특허출원 등) 분석 및 활용이 어려워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해외 시장진출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연구 비중 상향 필요	· (제도 개선) 국제공동R&D계약 표준 양식(해외참여기관 성과보고, IP소유 및 실시 조항 명시) 마련, 연구성과 점검(과제 평가시) · (해외진출 강화) 과제 수행기업에 대한 IP전략및 특허맵 수립 지원,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연도	구분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5	예정처	・정부가 해외기관의 연구비를 전액부담하는 방식의 일반형R&D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양자형R&D는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성과 확인 후 순차적으로 예산 확대	・'16년부터 일반형R&D 신규사업 폐지 ・양자형R&D는 해외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 공동 연구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별 연구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수행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과 중복편성된 한-카자흐 기술지도사업 예산 삭감	・한-카자흐기술지도사업 중복예산 2억원 삭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 분야별 유관 부서와 기구들이 자율적인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첨단 융합산업 육성, 기간산업기술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수행

-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 첨단 기술 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지원을 목적으로 산-학 협력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

* Civil infra, Manufacturing, Energy, Healthcare, Water 개선 등을 주요 협력 영역으로 선정

- 에너지부는 북미지역, 개도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에너지 관련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 Clean Energy Initiative : 개도국과의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

* NAEWG(North America Enery Working Group) 북미 3개국간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기술 협력 프로그램

* NARSTO(North American Research Strategy for Tropopheric Ozone and Aerosols) 북미 3개국간의 오존, 대기환경 관리 프로그램

- 과학재단(NSF)은 국제협력실(Office of International Science & Engineering)을 중심으로 국제기술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 융합 소재 및 소프트웨어, 화학, 수리 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협력

② EU

○ Horizon 2020을 통해 첨단 융합기술, 기간 산업 기술, 중소기업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사회적 이슈 대응 등을 강조

- 산업 리더쉽(Industrial Leadership) 차원에서 ICT, 첨단 소재, 바이오, 첨단 제조, 우주 등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의 리더십 강화에 역점

- 특히, 기술개발 및 국제화 역량을 보유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

- 사회적 과제(Societal Challenges) 차원에서 효과적인 질병 해결, 안전한 식량문제 대응, 효율적인 에너지, 안전한 사회 등을 중점 추진

- EU는 ICT 국제 협력 보고서를 통해 첨단 융합산업의 육성 및 이동통신 등 기간산업의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를 구현하는데 정책에 중점

(5) 사업추진절차

1)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사업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R&D관리기관지원(계속,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R&D관리기관지원	12,729	12,776	13,336	560	4.4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100 - 3171 - 305

* 담당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산업기술개발과(김홍주, 4520), 사무관(김덕기, 4521)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산업기술개발과(김홍주, 4520), 서기관(최정식, 45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4510), 사무관(김정운, 451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하는 산업기술R&D 기획·평가·관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관출연

○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이 수행하는 산업기술 R&D 예산의 투자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 제시,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및 전략수립, 대형 R&D과제 발굴 및 기획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관출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관련 정책개발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관출연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구 분	’16예산	’17요구
□ R&D관리기관지원	**12,776백만원**	**13,366백만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66백만원** 인건비 : 809백만원 경상운영비 : 1,998백만원 연구사업비 : 1,122백만원 RCMS운영 : 1,610백만원 지방이전비 : 527백만원	**6,082백만원** 인건비 : 809백만원 경상운영비 : 2,014백만원 연구사업비 : 1,122백만원 RCMS운영 : 1,610백만원 지방이전비 : 527백만원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백만원** 인건비 : 3,025백만원 경상운영비 : 280백만원	**4,096백만원** 인건비 : 3,543백만원 경상운영비 : 553백만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백만원** 인건비 : 1,826백만원 경상운영비 : 1,579백만원	**3,158백만원** 인건비 : 1,826백만원 경상운영비 : 1,332백만원

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인건비 : 809백만원** (’11년 이후부터 전년동)

  · 산업기술 R&D 사업 정책기획, 제도혁신, 성과활용평가 및 자체평가 등 전담인력 인건비 809백만원

- **경상운영비 : 2,014백만원** (’16년 대비 16백만원↑)

  · 기관부담 법정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운영비의 일부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기관부담 법정보험료	- 산재보험료 : 10,667천원(322명) X 12개월 = 128,000천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 57,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 250천원	185
제세공과금	- 사업소세 : (대구)6,000천원X12개월 + (대전)2,000천원X12개월= 96,000천원 - 재산세 : 25,000천원, 주민세 및 차량보험료 : 6,000천원	127
사옥유지 관리비	- 대구건물관리비(시설관리, 경비, 미화관리 등) · 건물관리 58,333천원 X 12개월 = 700,000천원 - 대전임대관리비 83,500천원 X 12개월 = 1,002,000천원	1,702
	합 계	2,014

- **RCMS 운영 : 1,610백만원** (전년동)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RCMS 시스템 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DB서버 증설 및 자금관리시스템 고도화

* '10년 구축이후 적용 예산 **2.97배**, 이용기관 **2.35배**로 **대폭 증가**하였고, **연간 4.36조원(일평균176억원)**의 연구비 집행, **연간 1,984천건(일 8천건)의** 이체를 처리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RCMS 장비확충	- WAS서버 : 600,000천원 · CPU(2P/18C), MEM(256G) : 123,000천원 * 2식 = 246,000천원 · WebtoB Enterprise : 30,000천원 * 2식 = 60,000천원 · Jeus Enterprise : 104,700천원 * 2식 = 209,400천원 · Secuve TOS Agent : 20,000천원 * 2식 = 40,000천원 · SysmanagerOne Agent : 2,300천원 * 2식 = 4,600천원 · APM License : 20,000천원 * 2식 = 40,000천원 - EDMS스토리지 : 110,000천원 · Storage BOX(40TB) : 110,000천원 * 1식 =110,000천원 - 백업시스템 : 100,000천원 · 디스크백업 : 80,000천원 * 1식 = 80,000천원 · 테이프백업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810
집행정보 관리 및 기능 고도화	- RCMS 집행 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R&D 관리정책과 부정사용 추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행정보 관리 및 기능 고도화	800
	합 계	1,610

- **연구사업비 : 1,122백만원** ('14년 이후부터 전년동)

· R&D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기획조사분석사업(산업기술 R&D 정책 기획 및 제도 혁신)
국내 기술동향 및 기획평가관리 세미나 개최(산업부・KEIT T-Map세미나)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대응한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
산업기술 R&D 성과활용 현황조사·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등

· R&D교육센터 운영

R&D 수행기관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등 연구자에게 실무 중심의 R&D 교육 제공
* 연도별 교육실적(교육생) : ('14) 1,595명, ('15) 1,660명, ('16 목표) 2,120명
* '15년부터 연구책임자 과정을 신설, ('15년 362명)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R&D 정책 기획 및 성과 분석	용역비	- 산업기술정책 용역비 60,000천원 - 성과분석 100,000천원	160
	출장비	- 전담인력 출장비 150천원×4회×10인×12개월=72,000천원 - 성과평가위원 출장비 : 200천원X8명×15회=24,000천원	96
	위원 수당	- R&D혁신 전문가검토 회의 : 250천원×8명×15회=30,000천원 - 성과평가위원회: 250천원×5명×3분과×5회 = 18,750천원 - 현장실태조사 : 250천원×5명×3분과×15회 = 56,250천원 - 총괄위원회 : 250천원×8명×3회 = 6,000천원	111
	원고료 및 강사료	- 원고료 : 25천원×6명×3분과×50page=22,500천원 - T-Map 세미나 강사료 : 300천원×15회=4,500천원	27
	회의비	- T-Map 세미나 등 30천원×15회×20명=9,000천원 - 전문가회의 : 30천원×10인×20회=6,000천원 - 성과총괄위원회 : 30천원×15명×1회 = 450천원 - 성과평가위원회 : 30천원×10인×5회 = 1,500천원	16
	인쇄비	- 기획보고서 인쇄비 30,0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 10,000천원 - R&D혁신 등 발표자료 발간 50,000천원 - 우수 성과 사례집 발간 : 20,000천원	110
	워크샵 개최비	- 산업기술 R&D 제도혁신(공청회 등) 세미나비 50,000천원 - 국내기술동향 및 기술평가 등 T-Map 세미나비 26,500천원 - 현장중심 R&D 협력간담회 개최 12,500천원 - 산업기술 R&D 성과 우수사례 세미나개최 10,000천원	99
	소 계		619
R&D 교육 센터 운영	용역비	- R&D교육과정 및 교재·교안개발 : 30,000천원 - 이러닝콘텐츠 개발 : 2개과목(0.5H)×30,000천원=60,000천원	90
	출장비	- 교육강사 및 전담인력 출장비(서울↔대구↔광주, KTX기준) · 실무과정 교육강사 : 150천원×10과목×20회=30,000천원 · 전문과정 교육강사 : 150천원×10과목×20회=30,000천원 · 연구책임자과정 교육강사 : 150천원×10과목×20회=30,000천원 · 교육운영인력 : 150천원×2명×17회=5,000천원	95
	위원 수당	- 교육과정개선 자문회의 위원수당 · 자문수당 5명×400천원×2회=4,000천원	4
	원고료 및 강사료	- 외부 전문가 강의수당(사업비 관리/기술보호/연구윤리) · R&D실무과정 : 1,000천원(7시간/주)×20회=20,000천원 · R&D전문과정 : 700천원(5시간/주)×15회=10,500천원 - 연구책임자과정 : 300천원(1시간)×60회=18,000천원	48
	회의비	- 교재개발·수정 및 교육과정개선회의 · 자문회의 10명×34천원×5회 = 1,700천원 - 교육과정 진행(교육생 식대 등 지원) = 8,300천원	10
	인쇄비	- 교육교재 인쇄비 · R&D교육 : 2,500명×20천원 = 50,000천원	50
	워크샵 개최비	- R&D교육 개선 세미나 개최 : 7,000천원	7
	재료비 등	- 사무용품 및 재료비(토너 등), 우편료 등 8,200천원	8
	교육 장비	- 교육장 PC 및 프린터 설치 및 교체 등 33,000천원	33
	교육진행 인건비	- 교육기획 및 운영인력 인건비 · 책임급 2인×7,000천원×12개월×65% = 110,000천원 · 파견직원 2인×2,000천원×12개월 = 48,000천원	158
	소 계		503
합계			1,122

- **지방이전 차입 이자 : 527백만원** (전년동)

· 공공기관 지방이전(대구신서혁신도시, '14.9월)으로 발생된 은행 차입금 이자 527백만원

건축 차입금 현황			이자율 ('16년 기준)	이자비용
총 집행액	총 상환액	차입금 잔액		
363.3억원	128.4억원	234.9억원	2.489%	5.85억원

②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 **인건비 : 3,543백만원** ('16년 대비 518백만원↑)

· 산업혁신 R&D 전략기획단(단장, MD, 팀장 이하 민간전문위원, 파견직원 인건비) 인건비

(단위 : 백만원)

산출내역	금액
○ 단장 : 기본급(142) + 성과급 및 4대 보험, 퇴직충당금(242.5) = **384.5백만원** * 전략기획단 기능 강화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근 단장 선임 * 2기 비상근(현 무급) → **3기 상근* 전환**에 따른 인건비('16년 근무 성과급 및 퇴직충당금 등) 반영 **242.5백만원** ○ MD : 275.5백만원 * 4명(1명 증원) = **1,102백만원** * 3개 업종별 MD*와 별도로 산업부 R&D 투자방향 설정 및 ICT 융복합대형과제 도출 기능 강화를 위해 **ICT융합MD 신설** 인건비 반영(MD 정원 : 3 → 4명) **275.5백만원** * 현재 MD(Managing Director)는 주력산업·신산업·에너지산업 3명으로 구성 ○ 전문위원 : 22인×78.86백만원 = **1,734.9백만원** (수당, 성과급, 연차보상비,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포함) ○ 행정직원 : 3인×27백만원 = **82.8백만원** (수당, 성과급, 연차보상비,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포함) ○ 기사, 임시직원 : 5인×39.6백만원 = **198백만원** ○ 파견수당 : 산업부1명(0.7/월) + 전담기관9명(0.3/월) = **40.8백만원**	3,543

- **경상운영비** : 553**백만원** ('16년 대비 273백만원↑)

· 교육훈련비, 차량시설이용료, 건물관리비, 건강위생비, 통신망 사용비 등 전략기획단 경상운영비

· 사무공간(한국기술센터) 유상 임대차 전환('16.1)에 따른 임차료 증액 등 반영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사무실임차료	- 전략기획단 사무실 공간(1,259.85㎡) 21,878천원 x 12개월 = 262,536천원	262.5
사무실관리비	- 사무실 관리비 : 11,916천원 x 12개월 = 142,992천원	143.0
제세공과금	- 사업소세 및 주민세(재산세) 등 : 12,200천원	12.2
기타통신비	-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사용료, 보안장비 등 4,117천원 x 12개월 = 49,404천원	49.4
기타유지비	- 차량리스료 5,026천원(7대) x 12월 = 60,312천원 * 단장(1), MD(4), 공용차량(2)	60.3
건강위생비	- 건강검진비 200천원×34명 = 6,800천원	6.8
특근매식비	- 특근매식 7천원×10명×20일×12월 = 16,800천원	16.8
국내교육훈련비	- 공통교육 및 직무, 외국어 교육 훈련 등 지원비 80천원×25명 = 2,000천원	2.0
	합 계	553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건비 : 1,826백만원 (전년동)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장, 본부장, 공통 지원부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 경상운영비 : 1,332백만원 ('16년 대비 247백만원↓)

· 법정공과금, 사무실관리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 소요 비용 일부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제세공과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24,000천원 - 제세금(국세, 지방세 등 납부) 7,833천원×12개월 = 94,000천원	118
사무실관리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무실 공간(11개 층, 11,105㎡) 112,500천원×9개월 =1,012,500천원	1,013
사무실보안비	- 한국기술센터 사무실 보안비 2,500천원×12개월 = 30,000천원	30
교육훈련비	- 공통교육(법정/정부권장), 계층교육(리더십), 직무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520천원×329명 = 171,080천원	171
	합 계	1,332

□ 지원 필요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도혁신 및 성과확산 추진 필요

- 산업기술 R&D의 효과적 지원 및 연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R&D 정책·제도의 혁신 및 R&D 성과의 콘텐츠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에 대한 전달력 강화

- R&D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게 실무중심의 산업기술R&D 무상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지원 서비스를 강화

- 연구비 유용 방지 시스템(R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비증설 및 자금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R&D 체계 강화를 위해 활동 지원 필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등 지원 필요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기술 R&D를 전주기적으로 관리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R&D관리기관지원	12,729	12,776	13,366	560	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19	6,066	6,082	16	0.3
- 인건비	809	809	809	-	-
- 경상운영비	1,998	1,998	2,014	16	0.8
- 연구사업비	1,122	1,122	1,122	-	-
- RCMS운영	-	1,610	1,610	-	-
- 지방이전비	480	527	527	-	-
- 대전분원이전비	1,610	-	-	-	-
▪ 산업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	3,305	3,305	4,096	791	23.9
- 인건비	3,025	3,025	3,543	518	17.1
- 경상운영비	280	280	553	273	97.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3,405	3,158	△247	△7.3
- 인건비	1,826	1,826	1,826	-	-
- 경상운영비	1,579	1,579	1,332	△247	△15.6
□ 비목(합계)	12,729	12,776	13,336	560	4.4
○ 비목(360-05)	12,729	12,776	13,336	560	4.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 등을 통한 연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 및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

○ 산업부 R&D 과제의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유도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강화를 통한 R&D현장 전문가를 지속적 육성

○ 국가 R&D 연구비의 투명하고 편리한 사용관리를 위해 RCMS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체계적 자금관리 실현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 (산업기술 R&D 정책·전략발굴 및 제시) 산업기술관련 R&D 정책 어젠더 발굴, 산업기술 R&D의 미래 방향 제시, 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협상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 수립

○ (산업기술 핵심 대형과제 발굴 및 기획)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에너지분야 주력 먹거리 품목 및 핵심기술 발굴·기획(7~10년 후 세계시장 선점)

○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포트폴리오 제시) 차기년도 산업기술 R&D 투자를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투자방향에 따른 예산배분 등 산업별 투자 방안 제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요자 니즈 중심의 산업기술정책 과제 발굴, 제도 개선 및 성과 중심의 과제 운영·관리 추진

○ 산업기술R&D의 전주기적 사업관리 지원체계 정착 및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27.7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66 - 인건비(8.09), 경상비(19.98) 연구사업비(11.22), RCMS운영(16.10), 지방이전비(5.27)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 인건비 30.25,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 인건비 18.26, 경상비 15.79
‘17	127.7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66 - 인건비(8.09), 경상비(19.98) 연구사업비(11.22), RCMS운영(16.10), 지방이전비(5.27)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 인건비 30.25,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 인건비 18.26, 경상비 15.79
‘18	127.7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66 - 인건비(8.09), 경상비(19.98) 연구사업비(11.22), RCMS운영(16.10), 지방이전비(5.27)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 인건비 30.25,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 인건비 18.26, 경상비 15.79
‘19	127.7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66 - 인건비(8.09), 경상비(19.98) 연구사업비(11.22), RCMS운영(16.10), 지방이전비(5.27)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 인건비 30.25,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 인건비 18.26, 경상비 15.79
‘20	126.2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17 - 인건비(8.09), 경상비(19.49) 연구사업비(11.22), RCMS운영(16.10), 지방이전비(5.27)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2.56 - 인건비 29.76,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3.56 - 인건비 18.26, 경상비 15.3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산업통상R&D전략기획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3** :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99. 3.2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기술평가원 설립
- 2006.10.29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설립근거 변경
- 2008. 8.26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분야 R&D지원기관 개편·재편 추진(지식경제부)
- 2009. 1.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2009. 5. 4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설립
- 2010.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장관 고시)’에 전략기획단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
- 2010. 6. 1 민간 단장(황창규) 주도하에 5대 산업분야 MD 및 10명의 비상근위원을 선임하고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출범

- 2011.11.2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1.5월)으로 전략기획단 및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등 설치근거 마련
- 2014. 5. 2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 통보(산업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R&D관리기관 지원	73.15	139.67	127.29	127.76	133.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73.15 (73.15)	- (-)	- (-)	73.15 (73.15)	73.15 (73.15)	( )	( )
'14년	139.67 (139.67)	- (-)	- (-)	139.67 (139.67)	139.67 (139.67)	( )	( )
'15년	127.29 (127.29)	( )	( )	127.29 (127.29)	127.29 (127.29)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전년도 12월)	➡	집행계획수립 (1월)	➡	출연금교부 (월별)	➡	출연금집행	➡	사업결과보고 (차년도 2월)
이사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사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전략기획단				전략기획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42,185	45,667	45,000	△667	△1.4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4800 - 4823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시장과장(이재근, 044-203-4530), 사무관(한진영, 45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 ~ '20
총사업비	-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총사업비의 67% 이내 정부매칭)
사업시행주체	-

2. 사업목적

○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7년 추진 기본방향>

▸ '17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미래부)'에 의거,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집중지원 추진

▸ 투자적격성(산업부, '16.4)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내역사업 일부 개편 추진

* 투자유도형·BM기획형 등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모두 매우 양호

변경 前('16)	변경 後('17)	비 고
투자유도형	민간투자연계형	유형 통합
BM기획형		
BI연계형	BI연계형	유지
기관연계형	-	종료
아이디어팩토리	아이디어팩토리	중기청 이관

▸ 민간중심의 시장성 검증강화 및 기술사업화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VC·은행 등 민간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집중지원 예정

① 민간투자연계형(38,660백만원) : 비즈니스모델(BM) 기획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전략수립 및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개발 지원

- 민간투자유치연계 및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으로 구성된 BD(Business Director)와의 협업을 통해 BM수립 및 사업화개발 목적의 중대형과제 사업화지원(추가기술·제품화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 민간투자기관(투자심사기관 회원사) 으로부터 신청정부출연금 대비 일정비율(55%)이상 투자유치(보통주, 우선주)가 필수('16년 기준)

- 산출내역 : 신규과제(다/상, 40개×800백만원×9/12개월) 24,000백만원, 계속과제(20개×733백만원×12/12개월) 14,660백만원

② BI연계형(5,000백만원) :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BI) 발굴 및 사업화지원

- 개인·기업 등이 제안한 우수BI(Business Idea) 발굴 및 사업화개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 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BI추천기관이 추천한 우수BI에 대하여 제품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지원

- 산출내역 : 신규과제(단/상, 24개×212백만원×12/12개월) 5,000백만원

③ 기획평가관리비 : 1,3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연관성)'창조경제 실현계획'(13.5),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6 예정), '신성장산업 육성'(16.2) 및'제5차 기촉계획'(14.3) 등 주요정책과 부합**

- **(창조경제)** 「전략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되는 생태계 조성」

* (추진과제 1-1)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추진과제 1-4)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 촉매기능 활성화

- **(서비스경제)** 新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서비스 R&D' 대상사업으로 분류, '17년 예산 확대 필요 사업

* '서비스 R&D 예산확대 및 서비스 R&D 확성화 인프라 구축'(미래부 등)

- **(신성장산업)** 민간투자와 연계한 조기사업화, 신성장산업 육성방식과 일치

* '민간이 투자 확대 중인 신성장산업 등에 선제적 집중투자'(16.2.4. 산업부)

* '16년 중점 추진방향 1.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16.1.18. 산업부 '16년 연두보고)

- **(제5차 기촉계획)**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에 우수한 BM 및 BI의 지원을 위해 추진과제(3-1)로 旣반영

* 시장성·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공급 확대를 위해 '先비즈니스모델 後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 신설

*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상용화를 위해 우수BI에 대한 R&D지원제 신설

○ **(고용창출)** 본 사업은 **국정과제 고용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 (국정과제 추진과제 1-6-3)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속적 성과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성과지표로 반영('15년~)

성과지표	실적치(명)			목표치(명)			'16 목표치				
	'13	'14	'15	'16	'17	'18	설정사유	측정방법	측정시기	초과달성기준	지표종류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고용 인원	572	858	1,004	1,316	1,255	1,400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 1억원당 신규고용 및 연도별 직접과제 지원예산을 고려	최근 3년('13~'15)평균 정부지원 1억원당 신규 고용 인원(1.05명) × 직접과제 지원예산 ('16년 1,253.6억원)	'17.1월	목표치 기준 110% 이상	결과

* 최근 5년간 직접과제 지원과제 종료 後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발생한 누적 고용창출 실적(각 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KIAT)

○ **(투자 타당성)** '17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미래부)'에 따라 주요 제도 적용 및 사업체계 개편 추진

- 신산업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R&D바우처 적용 등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		<사업內 적용현황>
중장기 투자전략 적용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투자확대분야에 집중지원 (민간투자연계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중소기업 R&D바우처 확산	→	R&D바우처제도 적용 (BI연계형)
자유공모방식 확대		100% 자유공모
정부R&D 투자 효율화-사전기획 강화		특허선행조사 旣실시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강화		대학內 사업화기반 지속구축 (아이디어팩토리)

○ **(민간투자 유인)**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해 **VC, 은행 등의 민간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사업화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조기 성과창출을 유도

- 유망기술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민간중심의 시장성 및 사업성 검증을 실시하여 사업화 지원성과 극대화 도모

- VC, 은행 등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와의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화 소요자금(설비투자, 운전자금, 마케팅 등)을 확보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 정부출연금(512억원) 대비 민간투자유치금액(658억) 1.3배('11~'15년)

○ (기대효과) **R&D와 사업화간에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기반** 및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

-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 및 성과 가치 제고 가능
- 대규모 산업적 파급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우수기술에 대해 집중화된 사업화지원으로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아이템(Business Model)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

<참고 : 사업화R&D 특징>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제품화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영역 집중지원을 통한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 우수BM(Business Model) 및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기획과 사업화개발의 종합지원을 통한 Time to Market(신제품컨셉부터 시장출시까지의 기간) 단축과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 VC・은행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를 통해 사업화 소요자금(설비투자, 운전자금, 마케팅 등)을 확보하고 시장요구를 반영하여 성공가능성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2,185	45,667	45,000	△667	△1.4
▪ 민간투자연계형	-	-	38,660 (계속) 20개 × 733백만 x12/12=14,660백만원 (다/상) 40개 × 800백만 x9/12= 24,000백만원		
▪ 투자유도형	11,012	13,014 (계속) 5개 × 809백만 (신규) 11개 × 800백만	민간투자 연계형으로 통합		
▪ BM기획형	10,923	12,205 (계속) 9개 × 575백만 (신규) 9개 × 800백만			
▪ BI연계형	11,000	11,550 (신규) 47개 × 247백만	5,000 (신규) 24개 ×212백만 x12/12= 5,000백만원		
▪ 기관연계형	5,000	4,551 (계속) 15개 × 303백만	종료		
▪ 아이디어팩토리	3,000	3,000 (계속) 10개 × 300백만	중기청 이관		
▪ 기획평가관리비	1,250	1,347 (신규) 1개 × 1,347백만	1,340 (신규) 1개 × 1,340백만		
□ 비목(합계)	42,185	45,667	45,000		
○ 출연금(350-01)	42,185	45,667	45,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선도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5.667	• 투자유도형:13,014백만원 - 신규: 8,969백만원= 15개× 597백만원 - 계속: 4,045백만원= 10개× 405백만원 • BM기획형:12,205백만원 - 신규: 7,023.7백만원= 14개× 443백만원 - 계속: 5,181.3백만원= 9개× 576백만원 • BI연계형:11,550백만원 - 신규: 11,550백만원= 39개× 296백만원 • 기관연계형:4,551백만원 - 신규: 4,551백만원= 15개× 303백만원 • 아이디어팩토리:3,000백만원 - 계속: 3,000백만원= 10개× 300백만원 • 기획평가비:1,347백만원
'17	45.000	• 민간투자연계형:38,660백만원 - 신규: 24,000백만원= 40개× 800백만원× 9/12 - 계속: 14,660백만원= 20개× 733백만원× 12/12 • BI연계형:5,000백만원 - 신규: 5,000백만원= 24개× 212백만원× 12/12 • 기획평가비:1,340백만원
'18	43.267	• 민간투자연계형:38,660백만원 - 신규: 24,000백만원= 40개× 800백만원× 9/12 - 계속: 14,660백만원= 20개× 733백만원× 12/12 • BI연계형:3,267백만원 - 신규: 3,267백만원= 15개× 212백만원× 12/12 • 기획평가비:1,340백만원

'19	43.267	• 민간투자연계형:38,660백만원 - 신규: 24,000백만원= 40개× 800백만원× 9/12 - 계속: 14,660백만원= 20개× 733백만원× 12/12 • BI연계형:3,267백만원 - 신규: 3,267백만원= 15개× 212백만원× 12/12 • 기획평가비:1,340백만원
'20	42.768	• 민간투자연계형:38,660백만원 - 신규: 24,000백만원= 40개× 800백만원× 9/12 - 계속: 14,660백만원= 20개× 733백만원× 12/12 • BI연계형:2,768백만원 - 신규: 2,768백만원= 13개× 212백만원× 12/12 • 기획평가비:1,34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추진),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 추진경위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中 추진과제 1-6-3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해당 ('13.5)
-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3-1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 마련'에 해당 ('14.3, 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R&D, 제품개발형R&D 과제에 대해 '先BM 後R&D' 방식의 지원制 도입
  *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업종별 BI 지원기관(오프라인)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BI를 발굴하여 BM 기획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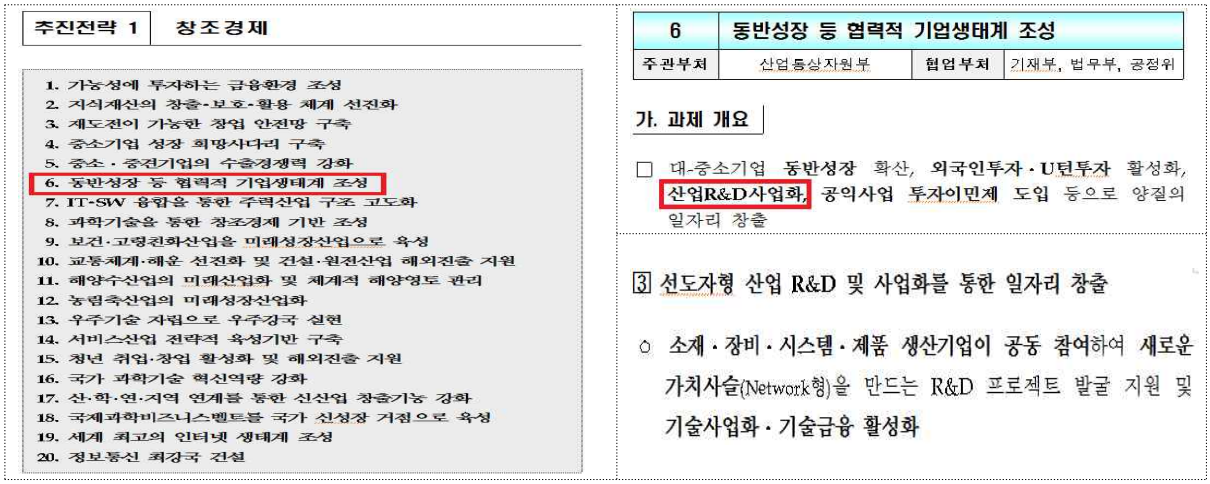

- 민간투자 확대분야인 신성장산업 등에 선제적 집중투자(산업부, '16.2)
- '16년 중점 추진방향 1.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산업부, '16.1)
- '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13.7)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추진 ('05년 사업화기획과제 접수, '06년이후 사업화 개발과제 선정 및 지원)
-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안)"에서 기술개발사업화프로그램 도입 제안('0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291.6	384.5	421.85	456.67	4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91.6 (291.6)	- (-)	- (-)	291.6 (291.6)	**291.6** **(291.6)**	- (-)	- (-)
'14년	384.5 (384.5)	- (-)	- (-)	384.5 (384.5)	**384.5** **(379.7)**	- (-)	- (4.8)
'15년	421.8 (421.8)	- (-)	- (-)	421.8 (421.8)	**421.8** **(416.2)**	- (-)	- (5.6)

* 15년 BM기획형 선정과제(1개) 협약포기로 인한 실집행 불용액 발생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분	주요 프로그램
사업화 R&D	· [美] (**사업화R&D**) R&D자금의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에 할당하는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연구프로그램(STTR)' 추진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R&D 예산의 2.5%를 중소기업(단독) 사업화 개발(R&BD)에 할당('82년~) *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 R&D 예산의 0.3%를 산·학·연 (공동) 사업화개발(R&BD)에 할당('94년~)
	· [EU] (**고위험 R&D 지원**) 민간과 공공기관의 고위험 R&D 프로젝트에 융자제공을 위해 신규 리스크 분담 재정기구 설립(Risk-sharing finance facility : RSFF)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 [美] (**기술개발-이전 연계**) 연구결과 사업화, 산학협력 교류증진, 우수기술기업 성장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 CONNECT 프로그램 :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기술 및 생명공학 금융포럼, 우수혁신신상품 시상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 [EU] (**기술이전코디네이터**) 에너지부(DOE)의 2011년 기술이전 혁신정책의 주요내용 * 기타 내용 : 민관 파트너십 강화, 제도개선, Technology Transfer Working Group 활용 등

(5)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	
평가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2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주관기관↔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제27조(협약의 체결)
⇩	
사업비지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0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1조(전담기관)
⇩	
사업종료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등
⇩	
사후관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등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붙임 참조

붙임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사업성과

□ 매출 성과

○ **(매출 발생)** 과제 관련 매출액은 총 **4,392원**으로, 지원금액 대비 과제 매출은 약 6.7배, 지원전·후 과제매출은 **약 11.2배** 증가

'14년 성과분석	'15년 성과분석
√ 지원금액 대비 **6.3배** 과제매출 √ 지원전·후 과제매출 **11배** 향상	√ 지원금액 대비 **6.7배** 과제매출 √ 지원전·후 과제매출 **11.2배** 향상

* '14년 성과분석 : '07년 ~ '11년 지원 과제, '15년 성과분석 : '08년 ~ '12년 지원 과제

○ **(매출발생율)** '15년 성과활용조사대상 기업('08~'12년 지원과제)에 대한 전체 매출발생율은 81.9%

□ 민간투자유치 성과

○ **(민간투자 유발)** '11~ '15년 총 30개 과제에 민간 투자기관과 연계 지원

- **정부출연금(512억원) 대비 민간투자유치금액(658억) 1.3배**로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양산·시설자금 추가 확보

□ 일자리 창출 성과

○ **(신규 고용 창출)** '15년도 성과분석결과 정부지원금 1억원 당 신규 고용인원은 1.02명이며, 과제당 9.38명 고용 효과 발생

구분		'13년	'14년	'15년
신규 고용	신규고용 발생 건수	572명	858명	1,004명
	직접지원 과제당 신규고용	9.23명	11.59명	9.38명
	정부지원금 1억원당 신규고용	1.19명	1.46명	1.02명

* 성과분석 대상 : '08~'12년 직접 지원과제

□ 타 사업 대비 성과창출의 우수성

구 분	정부출연금 1억원당 매출액	정부출연금 1억원당 지재권	정부출연금 1억원당 신규고용	관련근거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48억원**	**0.25건**	**1.02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2014)**
산업기술혁신사업	2.47억원	0.18건	0.46명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2014)

붙임2 우수 지원 사례(BM기획형, 투자유도형 등)

과제명	○ 차세대 인체통신기술 및 나노융합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캡슐내시경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인트로메딕	개발기간	'07. 12 ~ '09. 11
참여기관	-	정부출연금	10억원
유형	BM기획형	매출액(~'14)	443억원(직접)
참여 배경	○ **세계 3번째**로 개발한 **소장진단용 캡슐내시경 원천기술을 활용, 대장 진단용 캡슐내시경 시스템 개발**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사업 참여		
주요 성과	○ 대장 내시경 시술을 위한 캡슐 내시경 시스템에 **고속 (초당 12장) 영상촬영 기술** 및 **캡슐 동작 제어 기술 확보** ○ 내시경 **판독 소프트웨어 개발**로 대장암 외 **소화기계 암 조기 진단 관련 기술 확보** 가능 * 국내특허 9건 등록, 해외 특허 4건 출원('15) ○ **오백만불 수출탑** 수상('11), **코스닥 상장**('13), **미국 현지 법인** 설립('15)		

과제명	○ 초소형 전자펜을 위한 직경 8mm이내에 실장 가능한 부품 및 통합 사용 환경 제반 시스템의 개발		
주관기관	네오랩컨버전스	개발기간	'13. 11 ~ '15. 10
참여기관	○(연구) KETI, 서울대 ○(투자) KTBN파트너스	정부출연금/ 민간투자금	○(출연금) 27.02억원 ○(투자금) 15억원
유형	투자유도형	매출액(~'15)	30억원 (직접)
참여 배경	○ 글로벌 차원의 **스마트펜 기술 표준화 시작단계**에서, **신속한 추가기술개발**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참여 * 아노토(스웨덴)과 네오랩컨버전스(韓)가 글로벌 스마트펜 디지털화 기술·시장 양분		
주요 성과	○ 경쟁社 대비 4mm 얇은 8mm 전자펜 개발. **국산화율 97%, 특허출원 26건**(등록 11건) 등 ○ **누적 매출 30억원**(~'15), **신규고용 25명** * 중국 1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징동금융'에서 106만6843위 안(약1억9,560만원) 펀딩('16.1.18) → 목표액 10만위안(1,833만원) 대비 1,066% 초과달성		

국가전략프로젝트(산업부)(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국가전략프로젝트	-	-	7,200	7,200	(순증)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500 - 3571 - 309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산업기술개발과장(김홍주, 4530), 사무관(서성민, 452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7 ~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3년~10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총 7개 부처 참여, 9개 프로젝트
지원조건	출연(민간 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 사업목적

○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미래 국가발전 및 경쟁력 확충과 직결되고,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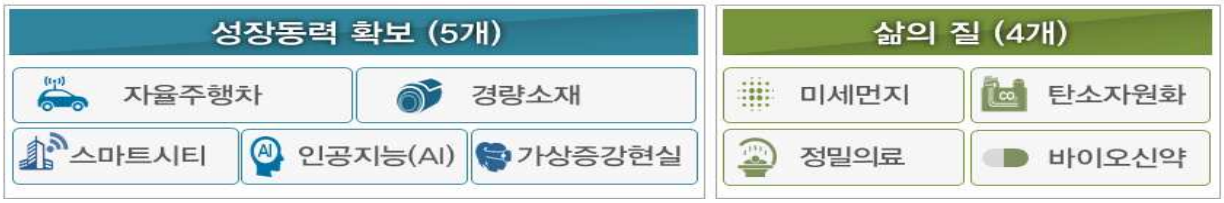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인공지능) 200백만원

- 헬스케어, 맞춤형 대화 등 노령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보미 로봇' 개발을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2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200백만원

② (스마트 시티) 100백만원

- 빌딩관리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도시에너지 통합 플랫폼 및 시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00백만원

③ (정밀의료) 100백만원

- 정밀의료 코호트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정밀의료 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00백만원

④ (자율주행차) 200백만원

- 자동차-ICT-ITS 융합으로 자율주행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 및 핵심 부품 소자 국산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2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200백만원

⑤ (경량소재) 2,800백만원

- 미래차, 항공기 등 첨단수요산업의 급성장과 글로벌 수요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추세에 따른 미래 주력산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와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경량소재 개발 사업비 2,8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기획평가관리비 300백만원, 기술개발비 2,500백만원

⑥ (탄소자원화) 1,800백만원

- CO2 활용 고부가화합물 동시생산 격상기술 개발 및 실증플랜트 건설을 위한 사업비 1,8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기획평가관리비 100백만원, 기술개발비 1,700백만원

⑦ (가상증강) 2,000백만원

- 高시야각·高해상도 지원 저중량·무선 VR/AR 디바이스·핵심부품 등 가상증강현실 H/W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백만원
  - 산출내역 : ('17) 기획평가관리비 120백만원, 연구개발비 1,8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 뉴노멀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동력 발굴 및 집중지원 필요

-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AI 기술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글로벌 AI 시장선점 필요

- (스마트시티)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발 경험과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실증도시 구축 및 글로벌시장 선점 필요

- (정밀의료) 고령화 시대 진입 및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예방 및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핵심기술 확보 및 신시장 선점 필요

- (자율주행차)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차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ICT-인프라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 (경량소재) 미래차 등 수요산업의 급성장과 글로벌 수요기업 공급선 다변화 추세에 따라, 경량소재 관련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 (탄소자원화) 파리 기후협정 체결 및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가상·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본격적인 개화에 맞춰 글로벌 신시장·플랫폼 선점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국가전략프로젝트(산업부)			7,200	+7,200	-
▪ 인공지능(AI) (산출근거)	-	-	200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개×200백만×100%)	+200	(순증)
▪ 스마트시티 (산출근거)	-	-	100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개×100백만×100%)	+100	(순증)
▪ 정밀의료 (산출근거)	-	-	100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개×100백만×100%)	+100	(순증)
▪ 자율주행차 (산출근거)	-	-	200 (세부 시행계획 수립비: 10개×20백만×100%)	+200	(순증)
▪ 경량소재 (산출근거)	-	-	2,800 (4개×1,250백만×50%) (기획평가관리비=300)	+2,800	(순증)
▪ 탄소자원화 (산출근거)	-	-	1,800 (1개×3,400백만×50%) (기획평가관리비=100)	+1,800	(순증)
▪ 가상증강 (산출근거)	-	-	2,000 (1개×3,760백만×50%) (기획평가관리비=120)	+2,000	(순증)
□ 비목(합계)			7,200	+7,20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7,200	+7,2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해당사항 없음('17년 신규사업으로 중기재정 소요 미산출)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6.5)

- 국가전략프로젝트 상세기획('16.6)

-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16.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국가전략프로젝트(산업부)	-	-	-	-	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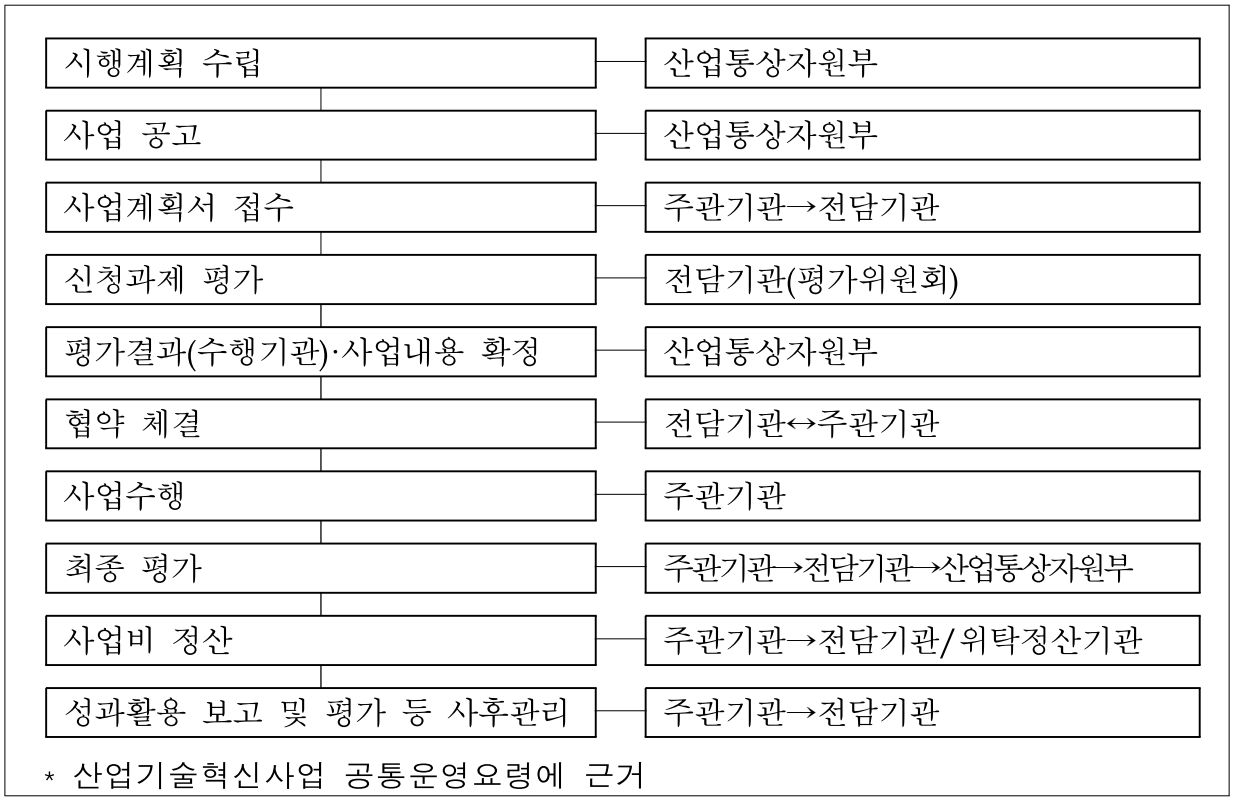

*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단 추진체계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자율주행차 >

○ 자율주행차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 조사기관 : KISTEP
- 수행기간 : '16.8.10~현재 진행중

< 경량소재 >

○ 경량소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완료

- 조사기관 : KISTEP
- 수행기간 : '16.8.12~12.1
- 대안의 예산 규모 : 510억원, B/C : 0.823, AHP : 0.673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2,857	2,000	1,412	△588	△29.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100 - 3161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044-203-4510), 사무관(김정운, 044-203-451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년~'17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학교운영수익 총액의 2.8%(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지원조건	출연(국비 50%)
사업시행주체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2.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법정 최소 경비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정부가 출연·설립한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지원금 1,412백만원

- 학교운영수익 100,864백만원x대학설립운영규정 요율 2.8%x50%

□ 지원 필요성

○ 교육부의 정부출연 사립대 운영요건 중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요건 충족(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과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지원

○ 정부지원을 통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 모델로서 타 대학과 기업에 확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2,857	2,000	1,412	△588	△29.4
▪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산출근거)	2,857	2,000 (학교운영수익 102,049백만×2.8%×70%)	1,412 (학교운영수익 100,864백만×2.8%×50%)	△588	△29.4
□ 비목(합계)	2,857	2,000	1,412	△588	△29.4
○ 기관운영출연금(350-01)	2,857	2,000	1,412	△588	△29.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 출연 사립대의 재정자립화를 유도하기 위해 '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최소 운영비(학교운영수익의 2.8%)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0	▪ 학교운영수익 1,020.5억원 x 2.8% x 70%
'17	14.12	▪ 학교운영수익 1,008.6억원 x 2.8% x 50%
'18	-	
'19	-	
'20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3

*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

*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일 것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운법상의 공공기관 포함)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추진경위

- ‘91.7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설립 결정
- ‘95.12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 인가
- ‘98.3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개교
- ‘99.3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개교
- ‘12.3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산기대를 ’산업대→일반사립대‘로 전환
- ‘15년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정부 출연 사립대에 재정지원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	-	34.58	20	14.12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본예산+추경)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 사유: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15.7.16)에 따라 학교회계 운영수익 산정 시 국고보조금이 제외되어 기준금액이 129,548백만원 → 102,049백만원으로 감소하여 601백만원 불용액 발생

* 정부지원금 2,857백만원 = {운영수익총계 129,548백만원 - (전입금·기부금 6,062백만원 + 국고보조금 21,437백만원)} x 2.8%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15년	**34.58** ( )	( )	( )	34.58 ( )	**28.57** **(28.57)**	( )	6.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대학 설립 유형별 법인 및 출연 현황('15년 기준)

구분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립대학)	성균관대학교 (사립대)
학교 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산업부)	한국기술교육대학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교육부)	기업(삼성)
지원금	34.5억원	828억원	4,373억원	1,202억원(재단)
근거 법령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산업인력공단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 정부 설립 사립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개임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운영지원비를 한국산업기술대학(법인)에 출연하고 법인은 소속대학(산업기술대, 경기과기대)에 운영경비를 전출하여 사업 수행

-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비신청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집행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산업부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한국산업기술대학 지원 필요성

□ 제조업 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도모할 우수기술인재 양성·공급이 필요

○ 27,154개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음에도 R&D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술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5%로 대기업 0.5%에 비해 7배 높음

○ 산업기술혁신은 기업중심(특히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고급 R&D인력*은 대부분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

* 국내 박사학위자 중 21%(18,621명)만이 기업체에 종사, 대학에 62%(54,705명), 연구기관에 16%(14,316명) 재직(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대학설립준칙주의('96) 등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급속도로 이루어진 반면,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은 계속 증가

* 대학진학률(%): ('90) 33.2 → ('95) 51.4 → ('05) 82.1 → ('11) 72.5 → ('13) 70.7
* 대학교육 경제사회요구 부합도 46위, 자격 갖춘 엔지니어 공급수준 48위('13, IMD)

□ 중소기업 인력수급 어려움 해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지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산기대는 정부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임에도 불구, 설립 이후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기반이 취약

* 산기대 법인은 학교 지원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법정 기본재산의 19%만 확보('14)

○ 최근 대학평가시 법인 재정역량이 강조되고 있어 '산학협력 우수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평가받는 모순에 직면

○ 또한, 최근 대학개혁 추진, 반값등록금 시책 등 대학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구책 마련 및 정부 지원이 시급

□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 처분*시 인근 산업단지의 중소·중견기업 인력공급에 차질 발생 우려

* 산기대 입학정원 10% 감축시 편제정원 552명 감소(취업자 약 100여명 감소)

참고2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현황

□ 설립 연혁

○ '94. 7.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설립 결정

○ '95.12.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인가

○ '98. 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개교('99.3. 경기공업대학교 개교)
* 12.2월 '경기공업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 '12. 3. 산기대를 교육부 정책에 따라 '산업대→사립대'로 전환

□ 학교법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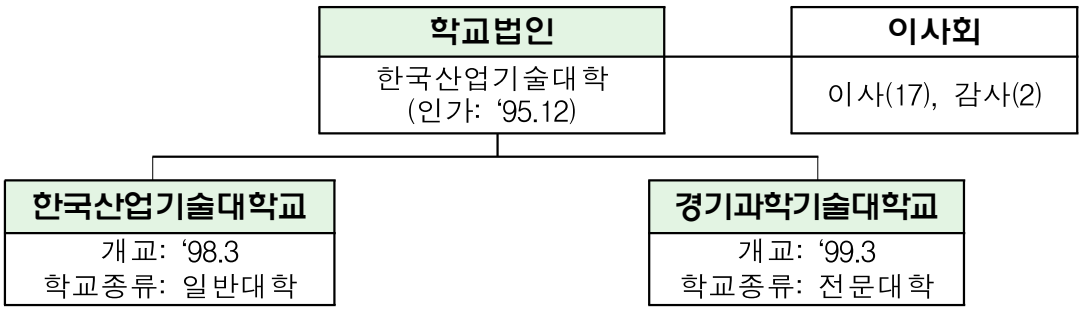

□ 학교 현황

○ (산기대: 총장 이재훈)

- 행정조직 : 대학본부(7처 22팀), 12개 부속기관, 1개 산학협력단

구분	교 원				직 원					합계
	전임	겸임	기타	소계	일반직	기술직	학과직	기타	소계	
인원	244	125	29	398	57	12	13	60	142	540

- 학사조직 : 3개 대학원 13개 학·부과(5,680명)

○ (경기과기대: 총장 김필구)

- 행정조직 : 대학본부(4처 13팀), 7개 부속기관, 1개 산학협력단

구분	교 원				직 원				합계
	전임	겸임	기타	소계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	소계	
인원	115	83	11	209	37	8	16	61	270

- 학사조직 : 4개 학부 18개 학과(3,602명)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494	470	497	27	5.7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4 - 3600 - 3688 - 303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정책과장(정창현, 044-203-4310), 사무관(정상봉, 044-203-450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사업목적

○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주요성과를 국민들이 친숙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아이디어 사업화 상담회, 융합 신제품 품평회를 추진함으로써 산업융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융합 문화기반 조성

○ 산업융합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의 애로를 접수·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융합관련 애로해결·제도개선 견인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산업융합 지원 정책 설명회, 사업화 상담 및 융합 신제품 인식제고를 위한 소비자 품평회 등을 통해 산업융합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200백만원)

  ▪ 산업융합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위주로 개선하여 산업융합 활성화 기반을 마련('16년 220백만원→'17년 200백만원)

  * 찾아가는 산업융합 정책설명회,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상담회, 융합 신제품 품평회 운영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적극적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통해 산업융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융합 사업화 촉진(297백만원)

  ▪ 옴부즈만실의 전문인력(법, 인증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사업화 애로 및 규제개선활동 지원('16년 250백만원→'17년 297백만원)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융합 신제품·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의 사업화 애로(多부처 관계 시장출시 애로 등)를 접수·조사하여,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 융합 규제·애로 실태조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발굴, 덩어리 규제 발굴 워크샵, 규제해소 전략 수립 전문가 세미나, 규제개선 성공사례 컨텐츠 제작 및 상담시스템 운영

□ 지원 필요성

○ **(인식 부족)**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확산 및 활성화 활동은 부족한 상황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및 13년부터 년도별 산업융합 실행계획 수립

  - 산업융합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인적자본·시장정보 등이 부족하여 융합이 산업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데 한계

< 산업융합 관련 인식현황(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6. 2月) >

▸ **(지원 정책 인식수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77.5%, 모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78.3%, 모름)

▸ **(산업융합 중요성)** 주요 산업분야 종사자의 약 80%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

▸ **(전문지식·기술 부족)** 중소·중견기업들은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24.1%), 전문인력 부족(14.7%), 기술개발 및 인프라 부족(14.6%),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6.8%) 등이 산업융합 추진 시 애로사항이라고 대답

▸ **(정부지원 필요)**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R&D지원(68.4%), 전문인력 지원(42.9%), 금융 및 보험 지원(25.4%), 시장진입 및 판로확보 지원(23.5%) 순으로 정부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494**	**470**	**497**	**27**	**5.7**
▪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244	220	200	△20	9.1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250	250	297	47	18.8
□ **비목**(합계)					
○ 민간보조(320-02)	494	470	497	27	5.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융합 지원 정책 설명회, 사업화 상담 및 융합 신제품 인식제고를 위한 소비자 품평회 등을 통해 융합 사업화 촉진하고, 적극적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통해 산업융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융합 활성화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70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2.2) - 홍보설명회(0.6), 만남의장(1.6)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2.5) - 옴부즈만 운영(1.75), 전문가세미나(0.15), 애로현장발굴(0.1), 전문연구(0.3), 상담시스템(0.2)
'17	560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2.2) - 정책설명회(0.6), 아이디어상담(1), 신제품품평회(0.4)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3.6) - 옴부즈만 운영(2.5), 옴부즈만 활동(1.1)
'18	585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2) - 정책설명회(0.7), 아이디어상담(1), 신제품품평회(0.3)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3.85) - 옴부즈만 운영(270), 옴부즈만 활동(115)
'19	583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2) - 정책설명회(0.7), 아이디어상담(1), 신제품품평회(0.3)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3.83) - 옴부즈만 운영(2.7), 옴부즈만 활동(1.13)
'20	583	▪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2) - 정책설명회(0.7), 아이디어상담(1), 신제품품평회(0.3)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3.83) - 옴부즈만 운영(2.7), 옴부즈만 활동(1.1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산업융합촉진법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조성)

○ 추진경위

- ‘10.7 산업융합촉진전략(위기관리대책회의, 비공개 보고)
- ‘11.4 산업융합촉진법 공포
- ‘11.5 산업융합촉진전략발표(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 지경부 장관)
- ‘11.1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 ‘11.12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 ‘12.2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지정
- ‘12.8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 ‘13.4 40대 핵심 국정과제(국정-7)
- ‘13.7 제2차 무역투자 진흥회의(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 ‘15.1 ’역동적인 혁신경제‘中 “미래성장동력 창출”
- ‘15.3 제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 ‘15.5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창의적 융합제품 신속시장 진입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811	520	494	470	4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8.11 (8.11)	( )	( )	8.11 (8.11)	8.11 (8.11)	( )	( )
'14년	5.2 (5.2)	( )	( )	5.2 (5.2)	5.2 (5.2)	( )	( )
'15년	4.94 (4.94)	( )	( )	4.94 (4.94)	4.94 (4.9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 국회 산업위 '16년도 예산 검토보고서

-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방안 재검토 및 홈페이지의 실효적 운영 필요
- (후속조치) 옴부즈만 운영체계 변경 및 홈페이지 사용편의성, 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운영효율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他 옴부즈만 제도 사례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설립년도	2012.1	2009. 7.	1999.10
위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직원수	1명	24명 (자체인력 및 파견)	15명 (자체인력 및 KOTRA지원)
인건비 지출	전원 예산범위내 지출	전문위원 인건비는 예산 확보, 파견인력은 소속기관에서 부담	전원 예산범위내 지출
예산 (재원)	2.5억원 (국고 : 산업통상자원부)	13.9억원 (국고 : 중소기업청)	19억원 (국고 : 19억원)
사무실공간 (구입/임대)	26㎡(8평) (KITECH 무료지원)	약 350㎡ 임대(월세)	약 83㎡(25평) (KOTRA 무료지원)
특이사항	-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여 업무 진행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타에서 업무 일부 지원	- 독립적인 옴부즈만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만지원단을 중소기업청 직제에 반영 - 명예옴부즈만(157명) 및 자문위원(56명)이 규제발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 - 산업부에 보고만하는 독립된 운영 실시 - KOTRA의 공간 무료 제공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

○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정책

- [미국]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인간 수행능력 향상과 IT기술 기반의 융합을 통해 국가적·사회적 혁신을 이루는 정책 시행중

  * 인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전략(NBIC, 2002)
  * 지식, 기술 및 사회의 융합(CKTS, 2013)
  * 국가 혁신전략과 연계한 IT융합 관련 정책
    - '국가혁신(2004)', '신뉴딜정책(2008)', '국가혁신전략(2009, 2011)'

- [EU] 유럽의 융합정책은 융합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산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에 초점

  * 기술간 융합정책
    -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기술발전계획(CTEKS, 2004)
    - 유럽 연구개발정책 프레임워크 통합 정책(Horizon 2020)
  * IT 융합정책
    - 유럽의 디지털 경제 논의서('i2010', 'Europe 2020)

- [일본] 일본은 경제산업성에서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내각부와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기술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융합정책을 추진

  * 기술간 융합정책
    - 'Focus21(2002)', '신산업창조전략(2004)', '이노베이션25(2007)',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2013)'
  * IT 융합정책
    - 'IT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2011)', 'IT데이터활용에 의한 신산업 창출(2013)', 'IT신개혁전략(2006)', 'i-Japan 전략 2015(2009)', '스마트 Japan ICT 전략(2014)'

- [중국]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기술간 융합과 IT융합 활성화를 추진중

  * 기술간 융합정책
    - '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2012)'
  * IT 융합정책
    - '12차 5개년 개획(2011)'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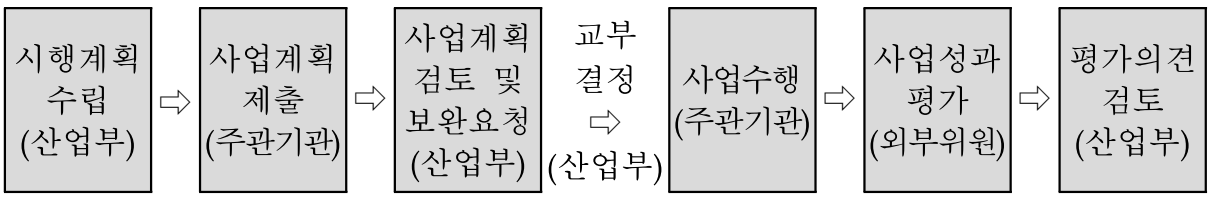

참고 사업의 법적 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3. 산업융합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사업 (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1,108	1,556	1,255	△301	△19.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200 - 3237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시장과장(이재근, 044-203-4530), 사무관(홍경태, 044-203-45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 사업목적

○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등 정부의 산업기술보호정책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1,255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

① 정책추진기구 운영 : 20백만원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개최(20백만원) : 15회 × 10명 × 0.13백만원

②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 10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85백만원) : 150개 × 0.6백만원
* 해외진출기업 현장점검(15백만원) : 5회 × 3백만원

③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 : 1,135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역량강화 : 329백만원

: 기술보호교육 등을 통한 보안역량 제고 강화, 중소기업CEO 등 산업전반 기술보호 교육 및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보안담당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교육(70백만원) : 7회 × 10백만원
* CEO 대상 기술보호교육(180백만원) : 12회 × 15백만원
* 업종별·규모별·분야별(R&D 등) 산업보안세미나(79백만원) : 5회 × 15.8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인식확산 : 131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주간(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국제세미나, 산업보안 취업박람회, 산업보안체험관 등) 운영(60백만원) : 2일 × 30백만원
* 산업기술보호종합지원포탈 운영(31백만원) : 시스템유지보수 31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법·제도 등 정책연구(40백만원) : 2회 × 20백만원

- 산업보안특성화대학 육성 : 400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근거한 산업보안학과(학사·석사 과정) 개설·운영 지원

* 학사·석사과정 운영 지원(400백만원) : 4개학과 × 10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 : 22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 해제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80백만원) : 3개 × 27백만원
* 국가핵심기술보호 관련 가이드·매뉴얼 개발·발간(40백만원) : 2건 × 2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 보안닥터 운영(100백만원) : 5개 × 20백만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지원·운영 및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 : 55백만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10백만원) 운영 : 조정위원회·조정부 운영(1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확인제도 도입·운영(45백만원) : 기술확인·지원(30백만원) + 제도홍보(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해외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발표에 따르면, ‘14년 불법적 해외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63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고, 그 중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이 64%를 차지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10.6%가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하였고, 그 중 3.2%는 2회 이상 경험(산업기술보호협회, ‘15년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 기술유출 범죄 검거 및 적발현황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검거실적(건)	46	40	84	140	97	111
해외적발(건)	43	42	46	30	49	63

* 출처 : 검거(경찰청), 해외(국가정보원)

○ 이처럼 기술유출 위험 및 유출빈도는 증가하는 반면, 우리기업들의 보안역량은 여전히 취약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이 절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45.6점으로 취약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51.1%는 취약, 위험 수준(중기청, ‘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역시 61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기술유출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45.7%)인 것으로 나타남(산업부, ‘15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기반구축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1,108	1,556	1,255	△301	△19.3
- 정책추진기구 운영	20	1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 : 10회×10명×0.1	2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 : 15회×10명×0.13		
-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	99	100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 : 100개×0.8 ·해외진출기업 현장점검 : 5회×4	100 ·국가핵심기술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85) : 150개×0.6 ·해외진출기업 현장점검(15) : 5회×3		
- 산업기술보호 기반 구축	989	1,446	1,135		
▪ 산업기술보호역량강화	150	550 ·보안 인식제고 위한 수요 맞춤형교육 : 60=12회×5 ·보안 역량강화 위한 보안전문가양성교육 : 70=7회×10 ·산업기술 보유기관 보안관리체계 인증 : 20=4개×5 ·중소기업 CEO과정 교육 : 200=13회×15 ·국가 R&D 과제책임자 과정 교육 : 200=40회×5	329 ·업종·규모·분야별(R&D등) 산업보안세미나(79) : 5회×15.8 ·보안담당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교육(70) : 7회×10 ·CEO 대상 기술보호교육(180) : 12회×15		
▪ 산업기술보호인식확산	150	131 ·산업기술보호 주간 운영 : 40=1회×40 ·해피콜상담센터 운영 : 40(연간) ·산업기술보호 종합지원포탈 구축·운영 : 51(연간)	131 ·산업기술보호의날 주간 운영 (60) : 2일 × 30 ·산업기술보호종합지원포탈 운영(31) : 시스템유지보수(31) ·산업기술보호 법·제도 개선 등 정책연구(40) : 2회×20		
▪ 산업기술보호 정책개발	289				
▪ 대중소기업보안역량 동반성장 확산	200				
▪ 산업보안특성화대학육성	200	400 ·산업보안특성화대학 선정, 지원 : 400=4개×100	400 ·산업보안특성화대학 선정, 지원 : 400=4개×100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국가핵심기술관리 및 보호	-	220 ·국가핵심기술 기술동향조사 및 관리지원 : 100=20건×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닥터운영 : 120=6개×20	220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동향조사·발굴(80) : 16개×5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 보안닥터 운영(100) : 5개×20백만원 ·국가핵심기술 관련 홍보, 가이드 매뉴얼 개발(40) : 2건×20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지원·운영 및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	-	145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 운영(75) : 위원회/조정부운영 25=5회×5 : 분쟁조정 상담 30=30회x1 : 분쟁조정제도 홍보 20=2회x10 ·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70)	55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10) : 조정위원회·사무국 운영(10) ·산업기술 등 확인제도 운영(45)		
□ **비목**(합계)	1,108	1,556	1,255		
○ 출연금(350-01)	-	-	-		
○ 일반수용비(210-01)	24	20	20		
○ 국외경비(220-02)	15	12	15		
○ 민간경상보조(320-01)	1,069	1,524	1,22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기술 강국 및 창조경제 실현

○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보안역량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기술보호 협력활동 확대를 통한 기술보호 선진화 달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5.56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15.56) - 정책주친기구(0.1),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1),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14.46)
'17	28.34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28.34) - 정책추진기구(0.2),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1),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27.14)
'18	15.22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15.22) - 정책추진기구(0.2),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1.2),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13.82)
'19	17.75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17.75) - 정책추진기구(0.2),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1.4),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16.15)
'20	16.38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16.38) - 정책추진기구(0.2),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1.4),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14.7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8조(국제협력),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등

○ 추진경위

- '07.4.28「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 '07.8.21「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총리)」개최
  * 기본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등

- '10.4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 수립(지경부장관)

- '11.7.2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공포
  * 산업기술의 정의, 종합계획 수립,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수·합병 신고 규정 등

- '12.11.26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등 기술보호강화 시행

- '12.1.26「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 '13.2.21「제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총리)」개최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13~'15) 심의, 승인
  *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 (8개분야 55개 기술)

- '15.4.2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 산업기술보호협회의 국가핵심기술 체계적 지원지원 근거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신설 등

- '15.10.22「제1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개최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16~'18) 심의, 승인

- '16.3.2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
  * 산업기술분쟁 업무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보호협회 내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 국내·해외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 '16.4.6.「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개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종합대책」심의, 승인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의식제고 교육 확대 등을 확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9.64	8.68	11.09	15.56	12.55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본예산+추경)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산업기술 유출 신고자 포상금 등 직접경비 일부가 불용되었으며, 민간보조금은 전액 집행

-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 국가핵심기술 해외실태조사 여비 및 산업기술 유출 신고자 포상금* 등 42백만원 불용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기술유출신고자 신원공개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신고실적 부진으로 인한 잔액이며, '14년부터 경찰청 포상금 제도로 편입하여 운영

- ('14) 국가핵심기술 해외실태조사 국외여비 4백만원 불용

  * 해외진출기업 대상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가 예정되었으나, 대상기관의 현지 사정과 일정상의 문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 ('15) 국가핵심기술 해외실태조사 국외여비 집행잔액 0.6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9.64 (8.86)	0 ( )	0 ( )	9.64 (8.86)	9.22 (8.86)	0 (0)	0.42 (0)
'14년	8.68 (8.32)	0 ( )	0 ( )	8.68 (8.32)	8.64 (8.32)	0 (0)	0.04 (0)
'15년	11.09 (10.69)	0 ( )	0 ( )	11.09 (10.69)	11.08 (10.69)	0 (0)	0.01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 산업위)

○ (지적사항)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산업기술보호 교육 강화 필요

○ (조치결과)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 제정 및 조정위원 위촉, 제1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13.12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법률 개정(’16.2월)

-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보급 및 CEO, CSO, 방문교육 확대(매년 100회 이상 교육 실시)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 산업위)

○ (지적사항)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 보안역량 진단사업’과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은 중기청 유사사업과 통합조정 필요

○ (조치결과)

- ‘1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부의 유사중복 지적 대상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국내외 중소기업 보안진단부문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 5.0억원)

□ ’1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 산업위)

○ (지적사항)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의 유출 증가 및 산업현장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500백만원 예산증액이 필요

□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 미흡(‘16.3)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첨단기술의 국외유출에 대한 연방정부 관리·통제 확대

○ 경제스파이법(EEA),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등 시행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첨단 산업기술 보호 강화

* 벌금(50만달러 → 500만달러 이하), 징역(15년 → 20년이하) 등 처벌조항 강화(EEA, 2013), 첨단소재, 화학·생물, 정보통신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서 통제관리(FINSA, 2008)

○ 대통령실 산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IPEC)에서는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 (2013.2)

* ① 영업기밀의 해외유출 예방 외교적 노력 집중, ② 영업기밀 보호 대응 산업계 스스로의 노력 촉진, ③ 국내 법규의 집행·구속력 강화, ④ 국내 법제도 개선, ⑤ 대중의 인식 및 이해관계자 지원 강화 (IPEC, Office of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 (일본) 경제안보 측면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정보보호 강화

○ 201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 제시

○ 2013년 7월 해외안보자문위원회(OSAC)를 창설, 첨단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제언하고 참여 기업들에게 해외 관련정보를 제공

* OSAC는 총리 직속기구인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 주축이 되어 경제산업성・재무성・법무성・외무성 등 관련 부처 및 산업계 (30개 이상의 기업과 정보관리 보안업체 등) 등이 기술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만든 협의체

○ 최근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제도 개정

* 경제산업성은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산업현장 기술정보에 대한 합리적 보호·관리 수준 제시(2015.1)

* 2015년 7월 의결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개인 1천만엔 → 2천만엔(해외유출시 3천만엔), 법인 3억엔 → 5억엔(해외유출 시 10억엔) 등으로 양형 기준 강화

□ (중국) 첨단기술 확보 및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의 통제·관리 강화

○ 자국의 기술발전을 위해 해외 첨단기술의 투자유치 활동과 주요 핵심기술의 보호를 동반 추진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정부차원의 선진 첨단기술 확보를 추진('14.11)하면서, 동시에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여 첨단 제조산업 강국 건설을 대내외 천명('15.5)

○ 상무부·과학기술부의 「기술수출입관리조례」를 통해 수출자유・수출제한・수출금지 기술을 구분, 지정하여 해당기술의 수출통제

* 33건의 주요 기술을 수출금지기술로, 117건의 기술을 수출제한기술로 지정하여 정부가 통제관리 ('08.12, 상무부·과학기술부)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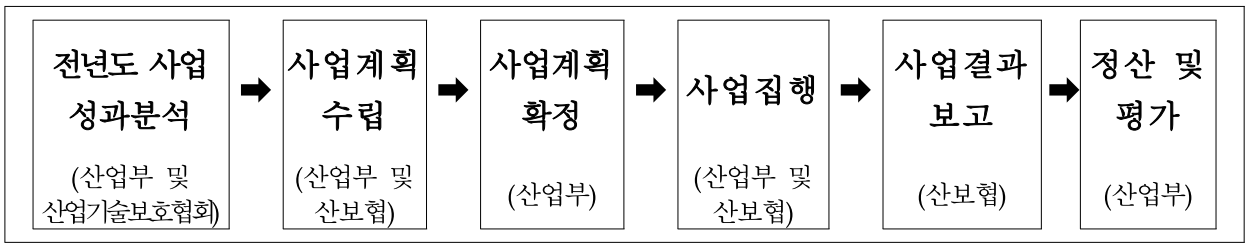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사업	1,328	1,169	1,000	△169	

* 사업코드 : 21 - 1 - 11 - 0 - 110 - 114 - 3200 - 3271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산업기술시장과장(이재근, 044-203-4530), 주무관(배승희, 044-203-45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정액)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8개부처* 공동으로 인증제도 운영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녹색인증제도 기반구축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인증 적합성 기준 개정, 사무국 운영, 인증 유지관리 및 성과분석 등

②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

-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등

□ 지원 필요성

○ 파리기후변화협약('15.12월) 체결로 온실가스감축,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됨에 따라 인증제 지속 지원 필요성 증가**

-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저감 기술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산업 육성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인증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액증가, 초기판로 지원** 등의 성과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파급효과 확대 기대

- 녹색인증 획득 기업이 창업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부지원의 필요조건, 우대 및 가점에 활용

* 인증 신청 건수 ('10) 637건 → ('13) 1,192건 → ('14) 1,175건 → ('15) 1,414건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1,328**	**1,169**	**1,000**	**△169**	**△14.4**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산출근거)	1,142 (심의위원회 80백만) (적합성 기준 개정 100백만) (사무국운영 603백만) (인증평가비 지원 180백만) (녹색인증 및 인증기업 홍보등 109백만) (성과분석 60백만) (사후관리 제도 마련 10백만)	1,114 (심의위원회 80백만) (적합성 기준 개정 90백만) (사무국운영 567백만) (인증평가비 지원 160백만) (녹색인증 및 인증기업 홍보등 132백만) (성과분석 65백만) (녹색인증마크 활용 및 적합성 유지점검 등 20백만원)	920 (심의위원회 80백만) (적합성 기준 개정 70백만) (사무국운영 470백만) (인증평가비 지원 160백만) (녹색인증 및 인증기업 홍보등 40백만) (성과분석 60백만) (녹색인증마크 활용 및 적합성 유지점검 등 40백만원)	△194	△17.4
▪ 녹색인증정보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186 (시스템개선, 유지보수 186백만)	55 (Query, Script 개선, 유지보수 55백만)	80 (ActiveX 제거 및 유지보수 80백만)	25	45.4
□ 비목(합계)	**1,328**	**1,169**	**1,000**	**△169**	**△14.4**
○출연금(350)	1,328	1,169	1,000	169	△14.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녹색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산업생태환경에 맞춰 新성장 녹색기술 및 사업의 인증기준을 발굴·개정·평가하여,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사업(기업)을 인증

○ 녹색인증제도 개선(녹색기술제품확인 기준 정비, 적합성 기준 개정, 사후관리 등) 및 기업지원(인증평가비 지원, 성능시험검사비 지원) 등을 통한 녹색인증 기업 만족도 제고

○ 녹색인증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녹색인증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1.69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0.5, 녹색인증사후관리 0.8,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0.39
'17	21.29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20.29, 녹색인증사후관리 0.8,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0.2
'18	11.43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0.63, 녹색인증사후관리 0.6,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0.2
'19	13.34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1.74, 녹색인증사후관리 0.6,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1
'20	12.32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0.72, 녹색인증사후관리 0.6,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정부는 녹색기술・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기준・절차・방법,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추진경위

- ‘09. 7.6, 녹색인증 도입 및 기본방향 발표(녹색위)
- ‘09. 9.30, 녹색인증 도입방안 확정(위기관리대책회의)
- ’10. 1.1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공포
- ‘10. 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부처합동)고시 및 녹색인증제 시행(4.14)
- ‘10. 8.11, 4대 분야 25개 과제 지원혜택 발표(위기관리대책회의)
- ‘11. 5.17,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정기개정(고시개정)
- ‘12.12.27,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시행(시행령 및 고시개정)
- ‘13. 3.01, 조달시장 다수공급자 녹색인증센티브개선(조달청고시)
- ‘13. 6.01,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에 녹색기술제품포함(중기청고시)
- ‘13. 7. 9,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수행지침 정기개정(고시개정)
- ‘14. 2. 7,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수시개정(고시개정)
- ‘14. 6.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시행(국무회의)
- ‘14.12.12,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수행지침 정기개정(고시개정)
- ‘15. 8.31,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정기개정(고시개정)
- ‘15.11.2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개정(조달청고시)

  * 녹색인증은 고도기술로 일반, 녹색기술 대비 점수 차이 2배로 확대(‘16.1.1 적용)
- ‘16. 1.1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비율 의무화 (중기청고시)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 달성 의무)
- ‘16. 6.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 ‘16. 7.21,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수행지침 개정(고시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녹색기술인증 활성화기반구축	15	13.5	13.28	11.69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5 (15)	( )	( )	15 (15)	15 (15)	( )	( )
'14년	13.5 (13.5)	( )	( )	13.5 (13.5)	13.5 (13.5)	( )	( )
'15년	13.28 (13.28)	( )	( )	13.28 (13.28)	13.28 (13.2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 해외생산제품 확인에 대한 제도개선('14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조치) 해외생산제품 확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수행지침 개정('14.12월)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시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제21차 UN 기후변화 협약「파리협정」체결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증대('15.12월)

○ **(네덜란드)** 정부가 녹색프로젝트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추진

▪ 새로운 환경기술의 상용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

○ **(베트남)** 지역청정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베트남 기후혁신센터'를 개설하고 청정기술 기업에 자금지원·상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기업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추진

○ **(영국)**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Green Inverstment Bank를 설립하고,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및 민간부문 투자장벽 완화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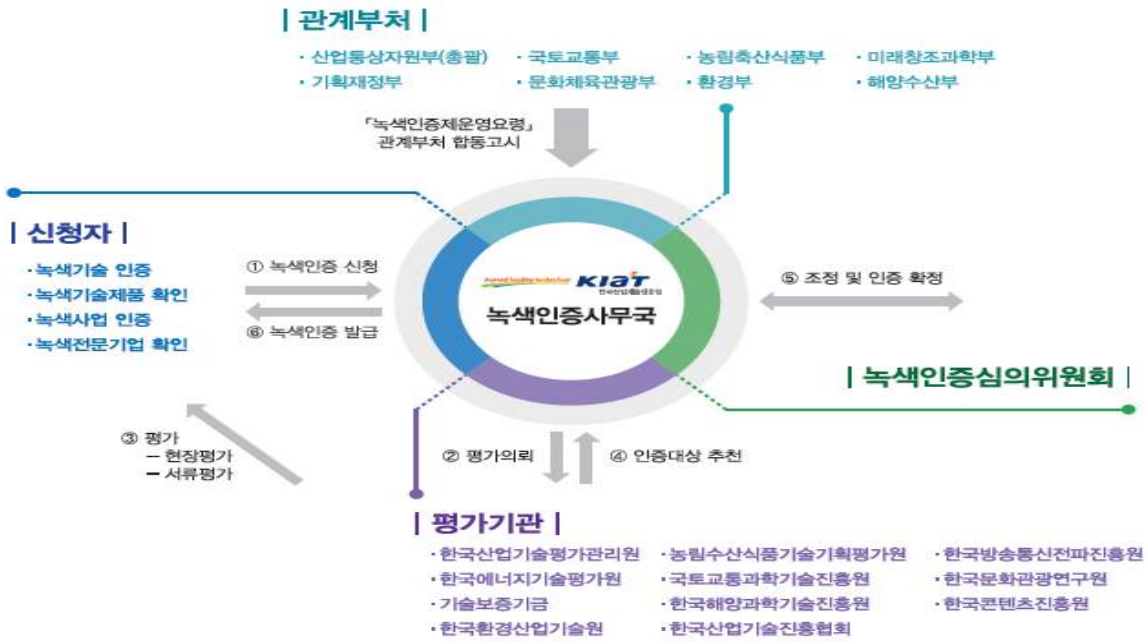

○ 8개 부처가 합동고시하고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11개 평가기관이 협력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각 부처 소관별로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평가 수행

▪ 녹색인증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인증서 신청접수/발급 창구 운영, 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역할

- 녹색인증 사무국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각종 민원 대응, 행정 업무 담당

▪ 녹색인증 평가기관

- 정부부처 별로 전문성(녹색기술 중분류 단위로 평가위원 35인 이상 확보)을 갖춘 공공기관 11개, 인증 평가업무(현장평가, 서류평가) 수행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소관 부처별 추천 산·학·연 전문가 및 평가기관 등의 업무 유관자로 구성되며, 녹색인증에 대한 심의 및 인증 확정, 정책제안 및 자문역할

▪ 인증서 발급

- (접수·평가기간) 수시 접수,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 단, 영업일 기준이며, 추가자료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

- (발급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명의 발급

- (유효기간) 인증·확인일로부터 3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수수료)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

* 기술과 동시 신청 시 총 120만원, 전문기업 확인은 무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참고2. 녹색인증 대상

참고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14.6.3,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 「**2차 계획**」은 향후 5년(`14~`18) 동안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130개)들을 포함

○ 녹색창조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의 인증 확대로 공공구매와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참고2 녹색인증 대상

□ 녹색인증 대상

① 녹색기술인증

○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10대분야: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수산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준)** 기술우수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구분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지표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 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 억제 등
기타	- 공표된 기술의 적합성 수준 충족 필요 - 신청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② 녹색기술제품확인

○ **(확인대상)**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확인기준)**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의 4개 항목을 평가하여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지표	- 녹색기술인증서 - 녹색기술제품(모델) - 신청모델별 제품 보유유무	- 신청제품의 지속 생산 가능성 - 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은 증빙서류 대체)	- 신청제품의 지속생산 품질경영관리체계 - ISO 등 품질경영 관련 인증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 관련 증빙 서류 확인	- 제품성능이 녹색기술인증의 기술수준 만족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 인증 증빙 등

③ 녹색전문기업확인

○ **(확인기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 관련 직전년도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매출인정 기준	-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 -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 합
기타	- 녹색기술 인증 필수(동시신청 가능)

④ 녹색사업인증

○ **(인증대상)** 녹색산업설비,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인증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70점 만점에 50점 이상)

구분	녹색기술활용성(30점)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
지표	-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여부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긍정적 영향분석(A) · 에너지절감, CO2저감, 오염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분석(B) · 산림습지, 태공간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A>=B"여부	- 사업목표의 구체성/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8,350	9,380	10,516	1,136	12.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1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에너지기술과장(나성화, 044-203-4540), 사무관(김지윤, 044-203-454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1년 ~ 2020년(일몰)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연구수행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해 국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선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선진기술획득) 미국, 캐나다 등 기술선도국의 원천기술 확보 및 한국-협력국간 기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업비 5,867백만원
- (계속) 10개과제 5,620백만원
- (신규) 1개과제 247백만원

② (해외시장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위주 현지 실증형 공동연구 지원 사업비 3,250백만원

- (계속) 5개과제 2,750백만원
- (신규) 1개과제 500백만원

③ (글로벌기술협력교류) 정부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미션이노베이션 참여 등을 통해 양자·다자간 국제기술협력교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1,009백만원

④ (기획평가관리비) 기획, 평가, 관리 비용 39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선진기술획득) 원천기술 확보 및 양국간 기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선진 우수 기술·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펀딩 과제 확대

○ (해외시장진출) 정부간(G2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도국 대상의 실증형 공동연구 지원
- 국내 기술과 개도국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해 공동기획·공동펀딩(개도국 현물지원) 과제 지원 확대

○ (글로벌기술협력교류) 양자·다자간 국제기술협력을 기반으로 선진기술획득형 및 해외시장진출형 국제공동 R&D 확대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공도연구(에특)	8,350	9,380	10,516	1,136	12.1
▪ 선진기술획득 (산출근거)	6,230	6,735 (계속)8개×678백만=5,420백만 (신규)4개×329백만=1,315백만	5,867 (계속)4개×600백만=2,400백만 6개×536.7백만=3,220백만 (신규)1개×329백만x9/12=247백만	△868	△12.9
▪ 해외시장진출 (산출근거)	1,870	2,315 (계속)2개×480백만=960백만 (신규)4개×339백만=1,355백만	3,250 (계속)4개×550백만=2,200백만 1개×550백만=550백만 (신규)1개×666백만x9/12=500백만	935	40.4
▪ 글로벌기술협력교류 (산출근거)	0	0	1,009 (신규)1개x1,009백만=1,009백만	순증	-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250	330	390	60	18.2
□ 비목(합계)	8,350	9,380	10,516	1,136	12.1
○ 연구개발출연금(360-05)	8,350	9,380	10,516	1,136	12.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 간 또는 해외 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기반, 선진국의 에너지기술·정책 동향 반영 등 국제공동 R&D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해외 선진기술 획득과 해외시장 진출형 지원체계 강화

- (선진기술획득) 에너지기술 선진국과 공동기획 및 평가를 통한 공동펀딩과제 점진적 확대 추진

- (해외시장진출) 선진기술획득형에 비해 구성 비중이 낮아 점진적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지원과제의 수출성과 점검과 환류를 지속

  * 개도국 현지 수요조건에 부합하는 실증형 공동 R&D 및 성과지향형 과제 추진

- (글로벌기술협력교류) 국제에너지기구, 미션이노베이션 등 양자·다자간 기술협력교류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94	▪ 선진기술획득(67) ▪ 해외시장진출(23) ▪ 기획평가관리비(4)
‘17	115	▪ 선진기술획득(64) ▪ 해외시장진출(30) ▪ 글로벌기술협력교류사업(17) ▪ 기획평가관리비(4)
‘18	132	▪ 선진기술획득원(70) ▪ 해외시장진출(38) ▪ 글로벌기술협력교류사업(19) ▪ 기획평가관리비(5)
‘19	152	▪ 선진기술획득(76) ▪ 해외시장진출(49) ▪ 글로벌기술협력교류사업(22) ▪ 기획평가관리비(5)
‘20	171	▪ 선진기술획득원(80) ▪ 해외시장진출(61) ▪ 글로벌기술협력교류사업(24) ▪ 기획평가관리비(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추진경위

- ‘11년 일반R&D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별도 분리
- ‘11.6월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수립
- ’11.11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4년 에특의 신재생 내역사업을 기금의 신재생 내역사업에 통합
- ‘14.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14.12월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4.12월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121	76	84	94	1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21 (121)	- (-)	- (-)	121 (121)	121 (121)	- (-)	- (-)
'14년	76 (76)	- (-)	- (-)	76 (76)	76 (76)	- (-)	- (-)
'15년	84 (84)	- (-)	- (-)	84 (84)	84 (8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14 결산 예결위) 예산 집행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므로,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여 공모 시기 조정 필요
- ('14 결산보고서) 에너지 국제협력 사업을 별도 분리하여 투명성 제고 필요
- ('16 예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일방향펀딩 위주의 과제에서 공동펀딩 과제로 전환 필요
- ('15 결산보고서) 국제에너지기구 기술분과 분담금을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사업으로 이관 필요, 성과활용현황조사 및 성과활용평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조치내역

- ('14 결산 예결위) '15년부터 사전수요발굴 및 기획을 통해 상반기 공모 시행중
- ('14 결산보고서) '17년부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추진

- ('16 예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16년부터 해외 공동펀딩을 원칙으로 과제 지원
- ('15 결산보고서) '17년부터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사업으로 이관 조치 추진 중, '15년부터 성과활용현황조사 및 성과활용평가 실시 중이며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구분	평가점수	등급	보완사항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81.4	우수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DOE) ARPA-E Project : 2007년 설립되어 2009년 1차 FOA(Funding of Announcement, 자금 지원 발표안)를 시작으로 1억 8천만 달러('11), 2억 8천만 달러('12)를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간(2~4년)의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 대상으로 함

- 2009년 'OPEN 2009'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기준 16개 프로그램(ADEPT, AMPED,BEEST, BEETIT, Electofuels, GENI, GRIDS, HEATS, IMPACCT, MOVE, OPEN 2009, OPEN 2012,PETRO, REACT, SBIR/STTR 2012, Solar ADEPT)아래에 28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② (일본 NEDO) : 신(新)에너지 및 산업기술개발기구(NEDO)는 산업기술과 에너지 분야 R&D 촉진 및 평가기관으로 민간 기업이 수행하기 곤란한 중장기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주관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에너지절약 기술, 연료전지, 재활용 기술, 지구 온난화 대책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위해 연료전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③ (EU FP) : 1984년 시작된 Framework Programme(FP)는 EU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간의 공동연구 증진과 유럽지역 연구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EU의 대표적 R&D 프로그램. 연구개발 중복성 최소화,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순수기초연구부터 응용개발연구, 기술이전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 FP7 에너지 분야 연구 목적 : 현재의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원천의 포트폴리오 개발, 유럽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달성, 기후 변화·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기술을 개발

④ (COP21)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COP21에서는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지어야 함. 2015년 현재 UN은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40여개국에 대해 '포스트-2020 기후변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인 8억 5060만톤 CO_2 대비 37%를 감축을 결정

(5) 사업추진절차

○ 단기과제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5.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단기과제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5.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사업	1,200	1,400	1,300	△100	△7.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4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에너지기술과장(나성화, 044-203-4540), 사무관(윤종성, 044-203-45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정부지원 100%)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및 R&D 관리역량 제고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경상경비(관리기관사옥임차료) : 1,200백만원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기관운영(기관 사옥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② 연구활동비(에너지기술R&D교육) : 100백만원

- 연구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 지원 필요성

○ (경상경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운영비 중 경상경비(사옥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기관 운영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

- '14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사옥임차료 지원 현실화를 위해 '15년 예산부터 증액하여 지원

  * '10년 국회 상임위(지경위) '11년 예산 검토보고서, '11년 국회 상임위(지경위) '12년 예산 검토보고서, '14년 국회 상임위(예결위) '15년 예산 지적사항

○ (연구활동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인력의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지원

- 연구비 부정사용, 사업화 제고 등 변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실제 연구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1,200**	**1,400**	**1,300**	**△100**	**△7.1**
▪ 경상경비(사옥임차료)	1,200	**1,200** (1개×1,200백만=1,200백만원)	**1,200** (1개×1,200백만=1,200백만원)	**-**	**-**
▪ 연구활동비(에너지기술R&D교육)	-	**200** (1개×200백만원= 200백만원)	**100** (1개×100백만원= 100백만원)	**△100**	**△50**
□ 비목(합계)	**1,200**	**1,400**	**1,300**	**△100**	**△7.1**
○ 연구개발출연금(360-02)	1,200	1,200	1,200	-	-
○ 연구개발출연금(360-05)	-	200	100	△100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및 R&D 관리 역량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4	▪ 경상경비 (12억원), 연구활동비 등 (2억원)
'17	14	▪ 경상경비 (12억원), 연구활동비 등 (2억원)
'18	14	▪ 경상경비 (12억원), 연구활동비 등 (2억원)
'19	14	▪ 경상경비 (12억원), 연구활동비 등 (2억원)
'20	13.43	▪ 경상경비 (12억원), 연구활동비 등 (1.4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 추진경위

- '08.8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4개 에너지 R&D 전담조직 통합)
- '09.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 마련
- '09.5 에너지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범
- '10.1 준정부기관 지정
- '14~ 정부예산지원(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	-	7	12	14	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	- ( )	- ( )
'14년	7 (7)	- (-)	- (-)	7 (-)	7 (7)	- (-)	- (-)
'15년	12 (12)	- (-)	- (-)	- (-)	12 (1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15년 결산 지적사항

- 에너지 분야 R&D전담기관의 운영비는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 '14년 국회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년 예산 지적사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옥 임차료 상승 및 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라 증액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계획 수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출연금 교부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	
분기별 출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집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집행 결과보고	산업통상자원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내역사업별 세부산출 자료)

참고 내역사업별 세부산출 자료

1. 경상경비(사옥임차료) : 1,200백만원/년(VAT 포함)

- 임대료 : 735백만원/년(61.3백만원×12월, VAT 포함)

- 관리비 : 465백만원/년(38.7백만원×12월, VAT 포함)

※ 사옥임대차 계약서('16년 5월 ~ '18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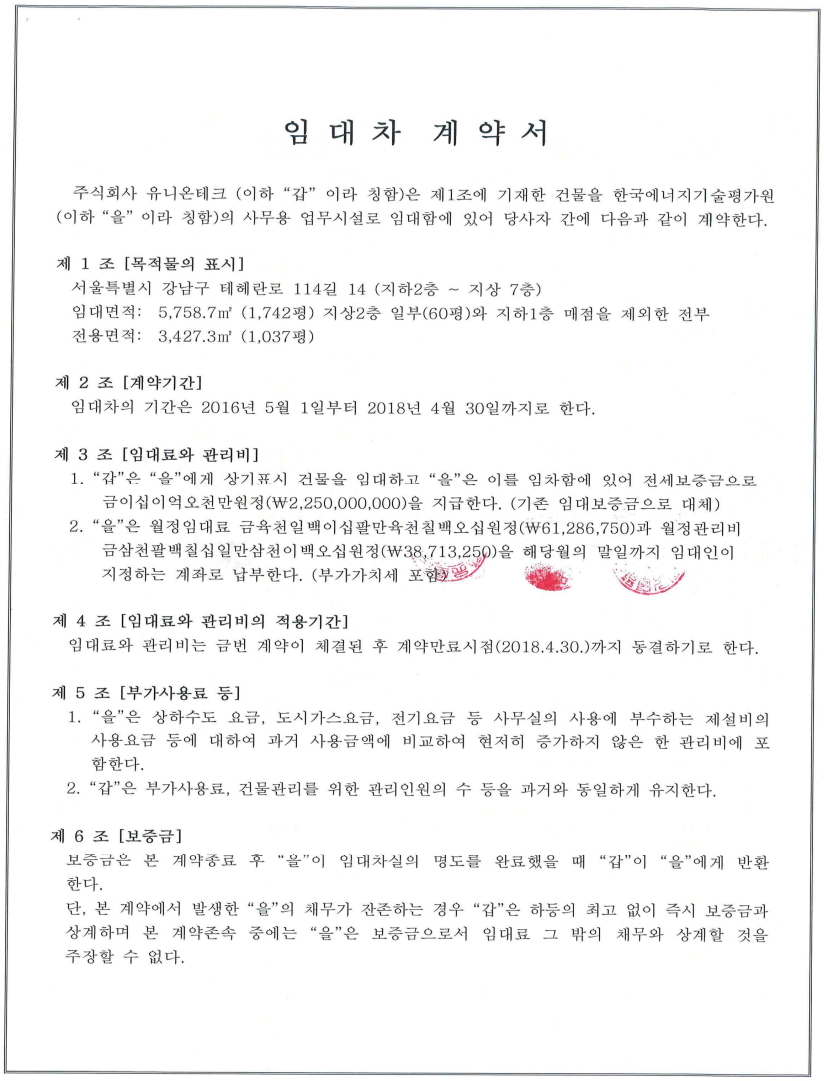

임 대 차 계 약 서

주식회사 유니온테크 (이하 "갑" 이라 칭함)은 제1조에 기재한 건물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하 "을" 이라 칭함)의 사무용 업무시설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지하2층 ~ 지상 7층)
임대면적: 5,758.7㎡ (1,742평) 지상2층 일부(60평)와 지하1층 매점을 제외한 전부
전용면적: 3,427.3㎡ (1,037평)

제 2 조 [계약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임대료와 관리비]
1. "갑"은 "을"에게 상기표시 건물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으로 금이십이억오천만원정(₩2,250,000,000)을 지급한다. (기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2. "을"은 월정임대료 금육천일백이십팔만육천칠백오십원정(₩61,286,750)과 월정관리비 금삼천팔백칠십일만삼천이백오십원정(₩38,713,250)을 해당월의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 4 조 [임대료와 관리비의 적용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금번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만료시점(2018.4.30.)까지 동결하기로 한다.

제 5 조 [부가사용료 등]
1. "을"은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사무실의 사용에 부수하는 제설비의 사용요금 등에 대하여 과거 사용금액에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한 관리비에 포함한다.
2. "갑"은 부가사용료,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인원의 수 등을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 6 조 [보증금]
보증금은 본 계약종료 후 "을"이 임대차실의 명도를 완료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단,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 "갑"은 하등의 최고 없이 즉시 보증금과 상계하며 본 계약존속 중에는 "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대료 그 밖의 채무와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2. 연구활동비(에너지기술R&D교육) : 100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 33.3백만원×3종=100백만원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 (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기술정책수립(R&D)	982	933	914	△19	△2.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3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김영삼), 에너지기술과(나성화, 044-203-4540), 주무관(이수호, 044-203-454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8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Matching-Fund,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중장기 R&D 계획 수립, 에너지기술 동향분석, 신산업발굴을 위한 시장·기술 조사, 온실가스 감축 모델 연구 등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연구 사업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에너지·자원기술분야 기술개발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882백만원

- (기술정책 수립) 중장기 R&D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R&D 전략 수립, R&D 기획·평가·사업화 체계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582백만원
- (정책시행 기반조성) 민간 R&D 투자 및 연구인프라 현황 조사,

기술·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책수립 기반자료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 300백만원

② 기획평가관리비 : 3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신기후체제 출범과 저탄소사회 도래로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가속화 예상

- OECD 비롯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

  * 주요국별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30년 기준): 미국(28%), 중국(20%), EU(27%)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 현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경쟁 촉발

  * (독일) 재생에너지법 제정('00) 이후 '13년까지 GDP 92% 성장, 온실가스 배출 6.5% 감소

-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에너지 신시장 창출 기대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에너지관리(EMS) 등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거래시장도 형성될 전망

○ 신기후체제 이행 및 주요국 에너지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에너지기술정책의 중요성 심화

- 국가 에너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전략적인 R&D 기획 및 정책 발굴 필요

-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R&D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정책목표와 비즈니스모델 구축, 융·복합 R&D 추진 등

- 급변하는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반영

- 에너지기술R&D통계, 시장 생태계 조사, R&D포트폴리오 분석 등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기술R&D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기술정책수립	982	933	914	△19	△2.0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신규) 9개×105.8백만x12/12=952백만원	(신규) 7개×128.6백만x12/12=900백만원	(신규) (단/상) 7개×126백만x12/12=882만원	△18	△2.0
▪ 기획평가관리비	30	33	32	△1	△3.0
□ 비목(합계)	982	933	914	△19	△2.0
○출연금(350-1)	982	933	914	△19	△2.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미래기술 기획 및 전략수립, 전략로드맵 update 등을 통해 R&D와 연계되고 균형 있는 에너지산업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

* 정책과제로 도출된 정책 제안, 제도 개선, 통계정보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하여 중장기 R&D 계획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R&D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 에너지 기술-정책-산업 정보 공유에 의한 에너지산업 기반조성 활성화

○ 에너지기술 R&D 성과창출을 위해 기술의 실증·사업화 및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9.33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9.0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33억원
‘17	9.14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8.82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32억원
‘18	9.14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8.82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32억원
‘19	9.14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8.82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32억원
‘20	8.94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8.64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추진경위

- ’87.12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88년 기술개발 본격 추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06) 수립
- ‘06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
- ‘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 ‘10년 지식경제R&D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R&D)‘로 통합
- ‘11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수립
- ’12년 내역사업인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 ‘13년 내역사업인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은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전력기금)으로 이관
- ’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35),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4~’23) 수립
- ‘14년 에너지 R&D 과목구조개편에 의해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에너지기술정책수립	21.56	10.34	9.82	9.33	9.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1.56 (21.56)	- (-)	- (-)	21.56 (21.56)	21.56 (21.56)	- (-)	- (-)
'14년	10.34 (10.34)	- (-)	- (-)	10.34 (10.34)	10.34 (10.34)	- (-)	- (-)
'15년	9.82 (9.82)	- (-)	- (-)	9.82 (9.82)	9.82 (9.8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산업위 '14년도 결산심사('15)

- (지적사항) 정책지정 방식이 과다하므로 경쟁공모 방식으로 과제선정 절차 전환 필요
- (조치결과) 정책지정은 경쟁입찰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혹은 특정기관의 전문성 필요 또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 운용 예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주요국 에너지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① 미국

○ 기후변화 액션 플랜을 발표('13.7), '20년 미국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20년까지 '05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17% 감축, 풍력·태양광 설비 10GW 구축

○ GPS, 스텔스, 컴퓨터 네트워킹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DARPA를 모델로 에너지부 내 ARPA-E*를 설립·운영('07~)

* 에너지 수입의존 감소, 온실가스배출 감축, 효율향상 등 기술개발 추진

② EU

○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에너지 2020 전략*' 발표('11.10)

*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로 개정('14.1)하고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매년 4~6조원 투자

○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등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중

* 유럽의 100여개 전력사, 연구소 등이 참여중이며, '20년 53억불 시장 전망

③ 일본

○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14.4)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형 에너지정책에서 탈피,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 추구

*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3배,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추진

*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20년 13.5%, '30년 20%로 목표 도입

○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3단계에서 36개 중요기술을 선정, '50년까지 추진과제 및 개발목표를 제시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4.12)

④ 중국

○ 제13차 5개년계획('16.3)을 수립, '2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 15% 달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저탄소 산업 고도화 추진

* '30년 풍력 250GW, 태양광 150GW 설비규모로 에너지의 20% 공급

* '20년까지 신에너지차량 누적 500만대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 등 기술개발 역량 확보로 에너지안보 추진

(5) 사업추진절차

○ 지정공모 :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기한 과제요구서(RFP)를 기준으로 한 수행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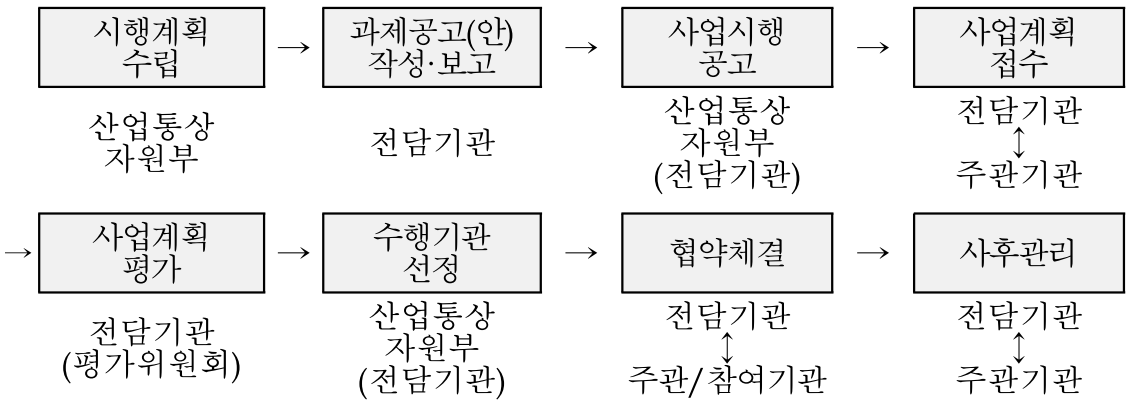

○ 정책지정 : 해당과제의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기한 과제요구서(RFP) 및 수행기관을 주관부처에서 지정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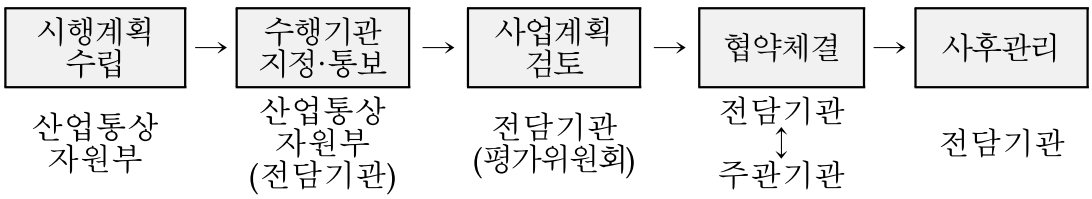

* 정책지정은 지정공모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기관의 전문성 필요 또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운용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지원근거 법령조문

참고 지원근거 법령 조문

□ 에너지법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특) (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6,881	14,464	15,605	1,141	7.9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2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김영삼), 에너지기술과장(나성화, 044-203-4540), 사무관(이춘, 044-203-45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18년(일몰)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7년도 156억원 규모
지원조건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75%이내) 출연 (출연 및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외자원개발협회

2. 사업목적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 조성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에너지융합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기업혁신 역량을 제고할 우수한 학·석·박사급 인력양성 13,825백만원

  · (계속) 35과제, 10,277백만원

  · (신규) 11과제, 3,548백만원

< 내내역사업 >

- **(미래기초인력양성트랙)**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분야에 특화된 다학제 교과커리큘럼 운영을 통한 기업 맞춤형 학부인력양성 2,322백만원
  · (계속) 12과제, 2,322백만원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통하여 학교별 특성화된 자원개발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800백만원
  · (계속) 9과제, 2,800백만원

- **(정책연계 융·복합트랙)** 신기후체제 및 에너지신산업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R&D 프로젝트 기반 고급트랙"에 7,053백만원
  · (계속) 10과제, 3,505백만원
  · (신규) 11과제, 3,548백만원

- **(미래선도인력양성)**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혁신적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이차전지, 자원개발) 최상위급 R&D 인력양성으로 1,150백만원
  · (계속) 2과제, 1,150백만원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 및 산업계 비즈니스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으로 500백만원
  · (계속) 2과제, 500백만원

②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자원안보 및 에너지수출 산업화를 위한 자원부국 및 개도국 유력 인사의 지한파 양성 1,250백만원

- **(글로벌 에너지정책 전문가 양성)** 자원부국 및 에너지산업 수출대상국 유력인사에 대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 과정 지원
  · (계속) 2과제, 1,250백만원

③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획·평가·관리 운영을 위한 5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신산업 창출 방안('14.9), 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4.12) 등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관련 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 필요

- R&D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인력양성 추진으로 에너지 신시장 수요에 대응

○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 합의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확대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은 "Mission innovation"을 출범, 클린에너지 R&D 예산을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를 선언

○ 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을 오픈 이노베이션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간 협력기반 강화

* 대학에서 중소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R&D를 수행하는 'R&D 기반 고급 트랙'으로 추진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인력양성	16,881	14,464	15,605	1,141	7.9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6,300	5,597 (22개×254.4백만)	-	△5,597	△100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8,020	6,917 (17개×406.9백만)	13,825 (46개×300.5백만)	6,908	99.9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1,950	1,500 (2개×750백만)	1,250 (2개×625백만)	△250	△16.7
▪ 인력지원기반조성	100	-	-	-	
▪ 기획평가관리비	511	450	530	80	17.8
□ 비목(합계)	16,881	14,464	15,605	1,141	7.9
○ 연구개발출연금(360-05)	13,381	11,164	12,805	1,641	14.7
○ 민간경상보조(320-01)	3,500	3,300	2,800	△500	△15.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

○ 에너지기술 및 자원분야 산업의 R&D 인력에 대한 수급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양성

○ 기업이 참여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기업 맞춤형 트랙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44.6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55.9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69.2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15억 ▪ 기획평가관리 : 4.5억
'17	179.2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4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89.8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0억 ▪ 기획평가관리 : 5.4억
'18	209.1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55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127.8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0억 ▪ 기획평가관리 : 6.3억
'19	240.0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0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148.8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4억 ▪ 기획평가관리 : 7.2억
'20	258.8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9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167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15억 ▪ 기획평가관리 : 7.8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 해외자원개발법 제10조(보조)

○ 추진경위

- ’02.12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51차 국무회의 심의)
- ’03. 9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착수
- ’06. 5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06~’15, 지식경제부)
- ’06. 5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보고(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 ’07. 3 : “에너지인력 마스터플랜” 수립(지식경제부)
- ’07.12 : 3개 인력양성사업 통합운영(전담기관 일원화) (에너지자원/신재생/전력)
- ’10. 7 :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에 따른 개편
- ‘14.12 :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력양성 계획 포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51	169	169	145	1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51 (151)	0 (0)	0 (0)	151 (151)	151 (151)	0 (0)	0 (0)
’14년	169 (169)	0 (0)	0 (0)	169 (169)	169 (169)	0 (0)	0 (0)
’15년	169 (169)	0 (0)	0 (0)	169 (169)	169 (169)	0 (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 성인지 결산

- (지적사항) 에너지인력양사업은 여학생 수혜비율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목표를 15.4%로 낮게 설정한 점에 기인하므로, 성인지 예산을 확대할 것
- (조치사항) '15년 성인지 예산서에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반영하였음

○ 평가 결과 : '13년 미래부 상위평가결과 우수(82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기 관 명	교육과정	사 업 내 용
미국	인력양성	DOE, Massachusetts 대학, 전력회사, NSTAR 및, WMECO의 지원	MAEEP(The Massachusetts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 산업, 상업 및 공공 단체에 에너지효율기술 및 툴 보급을 지원하는 파트너쉽 - DOE Training 및 Chiller Optimization등 Non DOE Training을 제공
	인력재교육	IEA(Industrial Efficiency Alliance)	DOE, ODOE, Northwest Energy Efficiency Alliance, BPA 등 참여	-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Northwest 지역의 산업계의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 -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Motor Systems, Compressed Air Systems, Pump Systems, Refrigeration Systems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캐나다	인력양성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산하 국립연구소들과 함께 각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o-op Program : 공학·기술 분야를 전공학부생 공동연구 및 기술교육 수행 -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 우수한 연구시설을 활용 및 실무연구능력 교육 시행
일본	인력양성	NEDO	Fellowship	- NEDO에서 에너지 관련 박사급을 선발하여 연계기관(59개, 대학, 연구소, 기업)에 파견
	인력교류	ECCJ	-	- 에너지관련 양국 또는 다국간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영국	산학연계 인력양성	롤스로이스	UTC (University Technology Center)	- 롤스로이스는 자체 R&D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세계 30개 대학기술연구센터(UTC)를 운영 - 대학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펀딩을 제공하여 원천 기술 및 우수 인력을 확보
EU	인력양성	EC	EU FP7 유럽대학 연구/혁신/교육 역량강화 사업	- 에너지기술 부분 대학간 협력 강화(예: 대학간 석박사 교환프로그램) - 에너지기술 산업계-대학 협력체계 활성화 - SET-Plan 관련자-대학간 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EU 역외지역 산학연 연계 추진

(5)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기관	세부 내용
인력 수급조사	전담기관	기업 및 대학 대상 인력 수급조사
과제기획	전담기관	기획(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공고대상 과제 도출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대상과제 확정(필요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지/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전담기관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전담기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연차, 단계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매 1년 단위 연차보고서 제출 - 현장실사, 연차 및 단계평가위원회 - 연차, 단계 목표 달성도 평가 해당 연차별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 목표 달성도 및 실적 평가 사업비 정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인력양성사업 트랙 제도

참고 인력양성사업 트랙 제도

□ 트랙 제도 개요

○ **(트랙)**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교육 커리큘럼 체계

○ **(목적)** 기업의 수요 반영 및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원) 또는 학과신설 절차 없이 다학제/다전공 융복합 협동 커리큘럼 등의 산학협력 체계를 지원하여 융·복합적 인력의 양성

○ **(운영)** 기존 학사 행정과 연계하여 과제별로 적절한 수의 과목들을 묶어 트랙화할 수 있으며 기초·실무·심화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가능

□ 트랙 체계 비교

기존 교육체계	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체계
① 산업현장과 대학교육과의 격차발생 ② 학과간 칸막이, 융복합형 인력양성 어려움 ③ 정성적 성과관리 체계	① 기업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및 인력양성 ②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③ 정량적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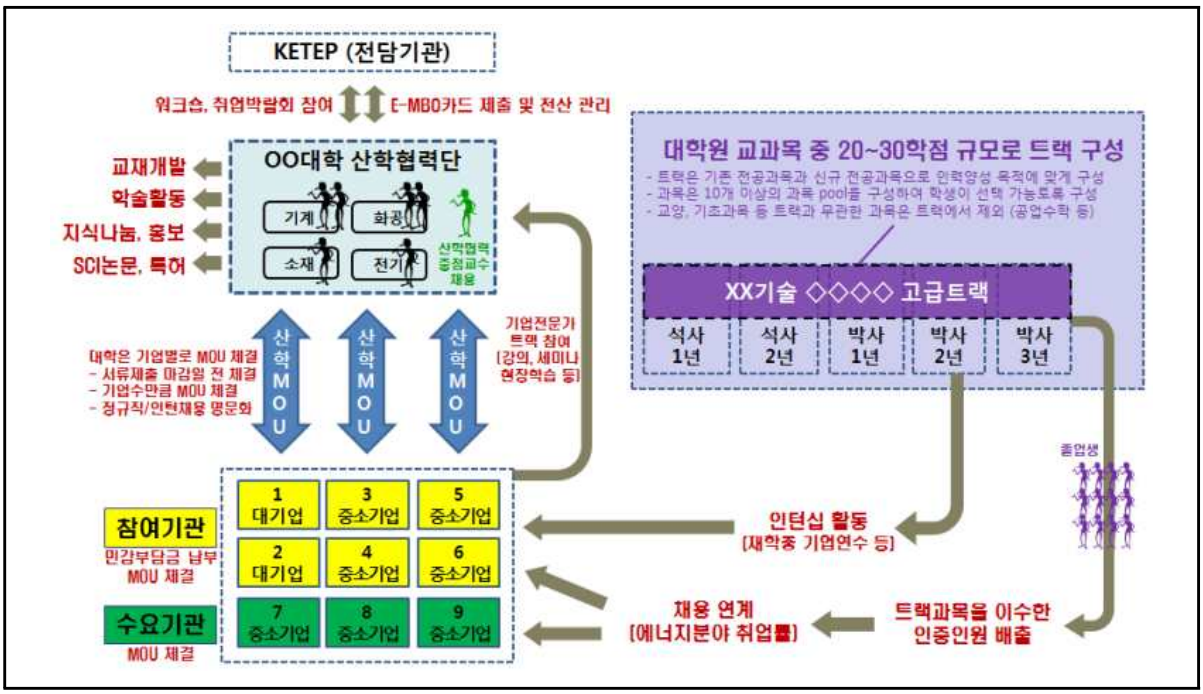
<트랙 예시(고급트랙)>